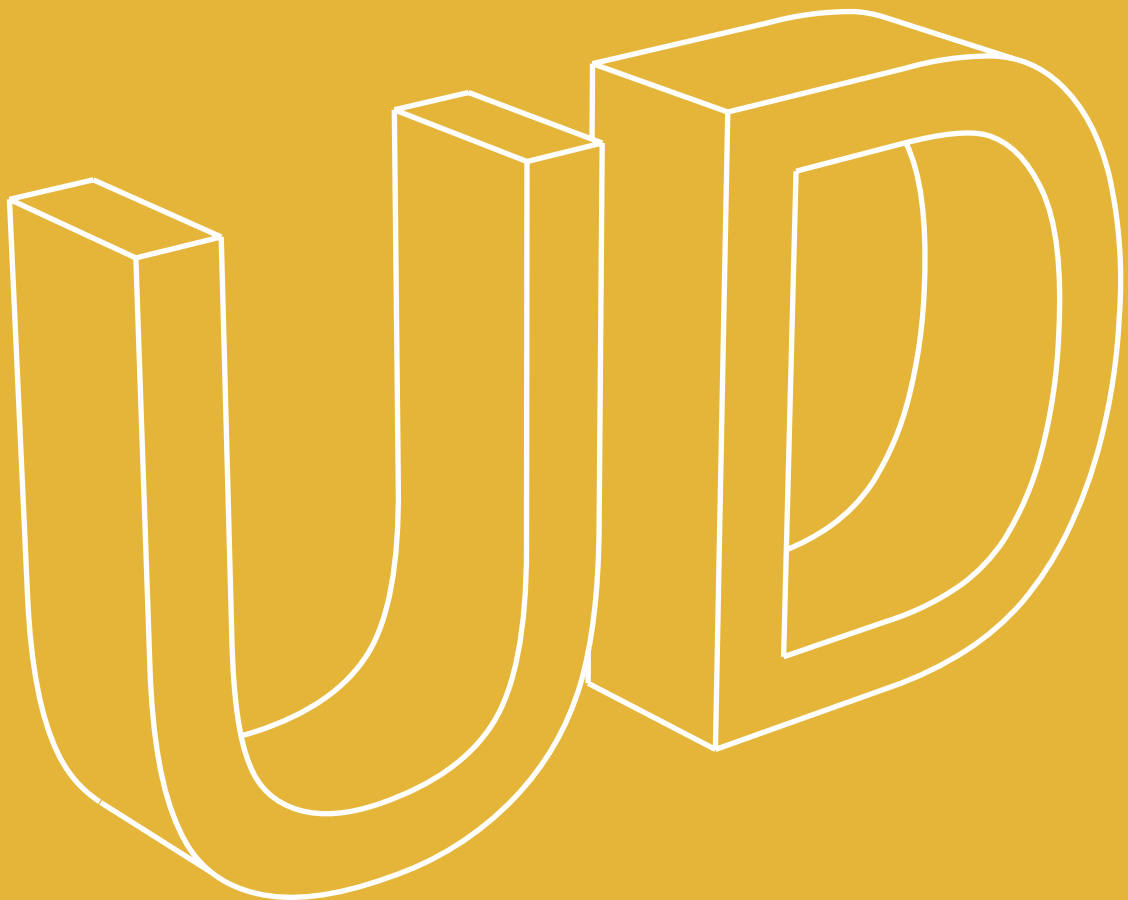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GYEONGGI-DO UNIVERSAL DESIGN
GUIDELINE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과업기간

2010년 6월 1일 ~ 2011년 2월 20일

제출일

2011년 4월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본 가이드라인에 명기된 적용 대상의 명칭이나 정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므로, 현행관련법상 명칭이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1부

| | |
|-------------------------|----|
| I. 개요 | 7 |
| 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 |
| II.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 13 |
|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요 | |
| 2.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사용자 | |
| III. 조사 및 분석 | 25 |
| 1. 경기도의 특성 | |
|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 |
| 3.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 |
| 4. 종합분석 | |
| IV.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 51 |
| 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 |
|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방안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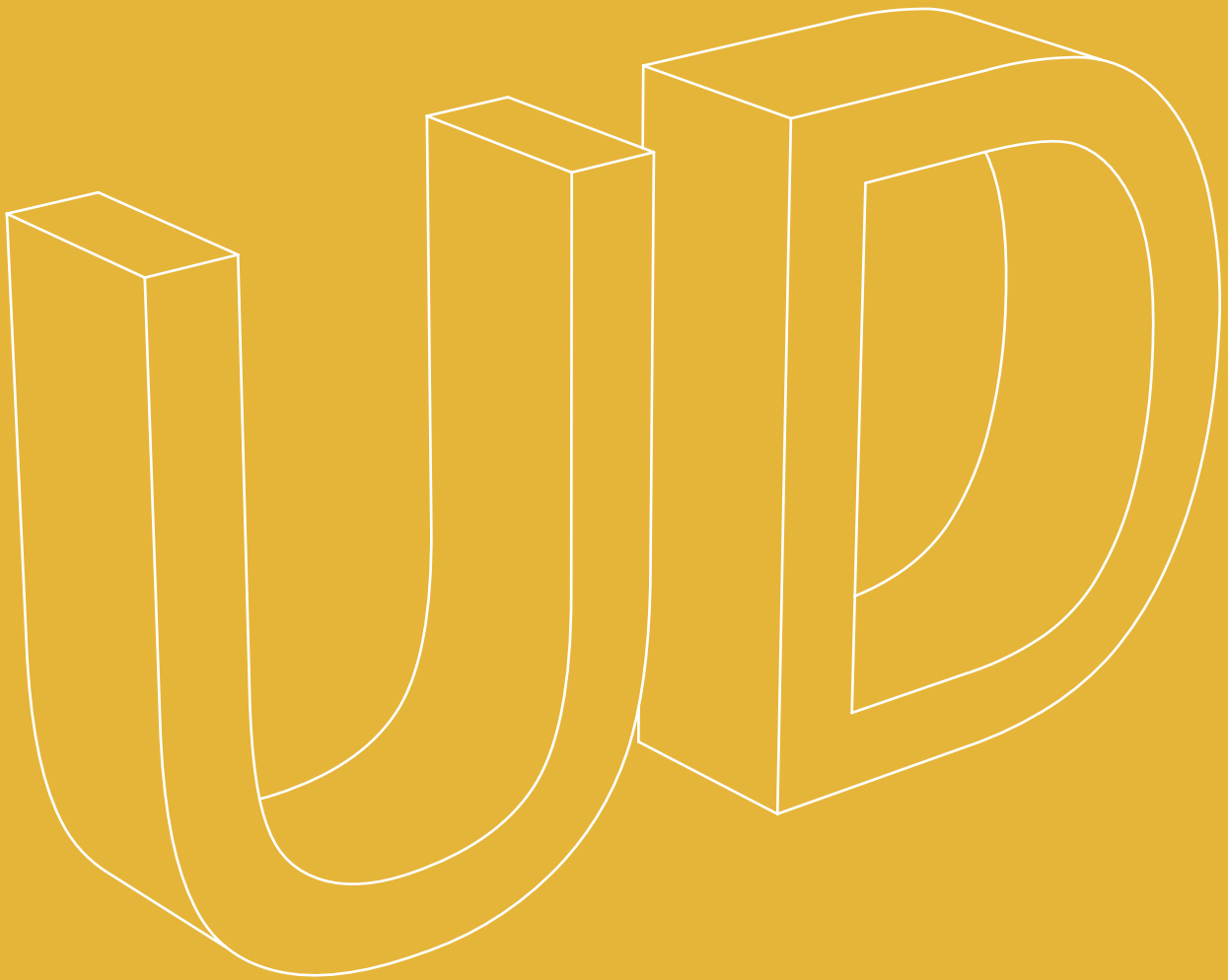
CONTENTS

2 부

| | |
|--------------------|-----|
| I. 가이드라인 개요 | 67 |
| II. 공공공간 | 71 |
| 1. 공공공간 개요 | |
| 2. 가로 | |
| 3. 공원 | |
| III. 공공건축물 | 125 |
| 1. 공공건축물 개요 | |
| 2. 공통공간 | |
| 3. 개별공공건축물 | |
| IV. 도시기반시설물 | 205 |
| 1. 도시기반시설물 개요 | |
| 2. 도시기반시설물 | |
| V. 가로시설물 | 215 |
| 1. 가로시설물 개요 | |
| 2. 교통시설물 | |
| 3. 편의시설물 | |
| 4. 공급시설물 | |
| VI. 공공정보매체 | 237 |
| 1. 공공정보매체 개요 | |
| 2. 공공정보매체 | |
| [부록] | 257 |
| - 참여자 교육 프로그램 | |
| -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1부

GYEONGGI-DO UNIVERSAL DESIGN
GUIDELINE



I. 개요

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 1.1 개요 및 범위
 - 1.2 필요성 및 목적
 - 1.3 구성체계
-

I. 개요

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1.1 개요 및 범위

개요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로 구성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성을 존중하여 아우르는 '마음'과 서로 어우러지게 배려하는 '실천'이 융합하여 "모두 아우르고, 서로 어우러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수립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공평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수립한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¹⁾과의 상호연계하여 사용자 배려차원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체계이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해 사용자 중심의 현황진단 및 방향설정과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의 생활환경 전반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개념 및 방향 정립
경기도 지역 특성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 개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 마련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 개념 수립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영역에 대한 제안
- 각 영역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정책 및 육성방안 제시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방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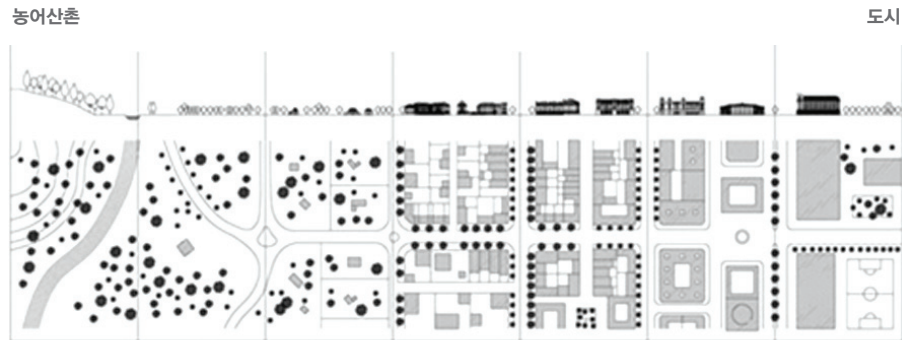
1)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42조(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립되었고,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실제 지침이다.

범위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구성체계에 따른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적 범위는 “모두 아우르고, 서로 어우러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개념과 실천방안, 영역별 가이드라인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1.2 필요성 및 목적**필요성**

- 경기도는 최첨단 도시부터 농산어촌(農山漁村)지역이 혼합된 지리적 특성과 연령·가족구성 다양성을 보이고 있어 물리적, 정서적, 정보적 측면 등에서 차별 없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자를 배려하고,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경기도는 타 광역 단체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31개 시군간의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 시군의 특성에 적합한 어린이나 노인 등을 배려한 생활환경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 특히, 어린이와 노인, 다문화 가정, 관광객, 외국인 인구수가 타광역단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미래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경기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1-1>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특성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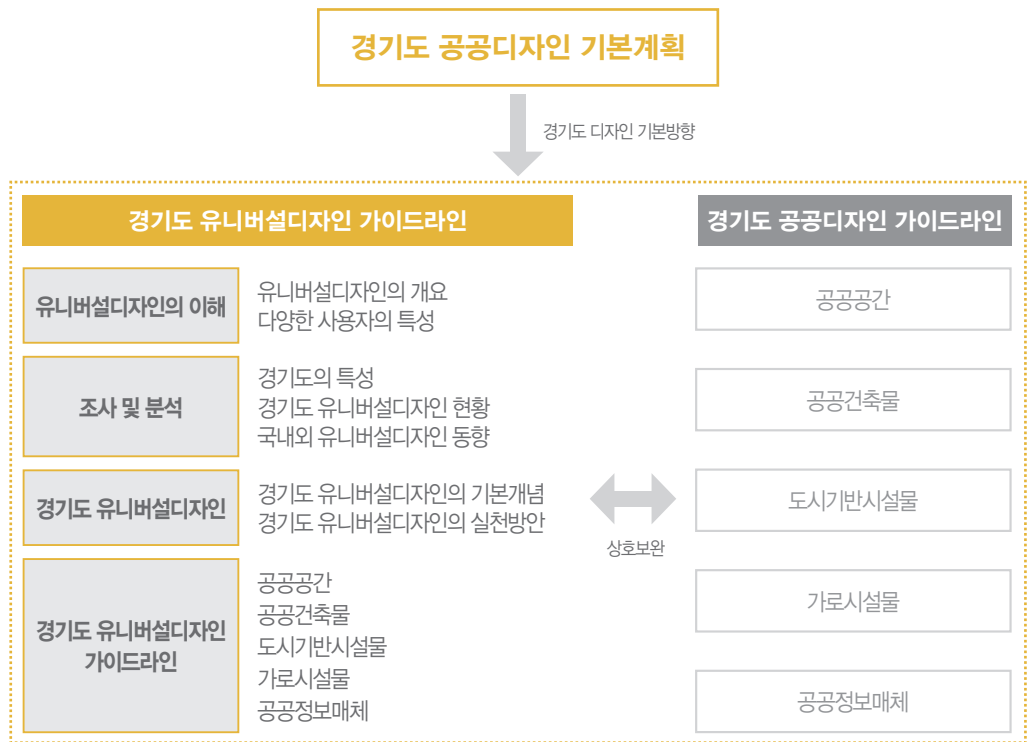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디자인을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을 다양한 사람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 및 방향,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관련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통합적 추진을 도모한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품격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동시에 연령, 성별, 국적,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인간중심의 공공디자인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구성체계

구성체계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개념을 기반으로 경기도 공공디자인 영역 중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만의 지역 특성과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개념 수립을 토대로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활성화 및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의식계몽을 위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행정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

II.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요

- 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범위
- 1.2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와 원칙
- 1.3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방법

2.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사용자

- 2.1 영유아, 어린이 및 동반가족
 - 2.2 임산부
 - 2.3 외국인 및 관광객
 - 2.4 노인
 - 2.5 장애인
-

II.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2. 유니버설디자인의 개요

1.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및 범위

개념

- 우리 사회는 남성, 여성, 아동, 노인 등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 큰 사람과 작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과 약한 사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과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의 다원적 요구(Needs)를 수용하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Wants)를 존중하는 환경 창조를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의 철학이자 가치체계이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주창자인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Ronald L. Mace)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연령과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환경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총체적 접근'이라고 정의하였다.
-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환경, 서비스 등의 구현을 위한 디자인 접근방식(Design Process)을 의미한다.
- 즉,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의 창조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을 위한다'는 철학을 새롭게 부흥시킨 디자인 개념이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건축, 공간 등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교육, 복지, 정보, 서비스 등 사회적 환경의 정비까지 포함한다.
- 사람이나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며, 나아가 사용자(주민)와 행정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용자 참여형의 시스템 구축도 유니버설디자인에 포함된다.



<그림 2-1>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범위

-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양하며,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며, 사회환경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사회생활에서의 제약과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 즉, 유니버설디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사회환경 만들기”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는 인문환경과 이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까지 총체적으로 포함한다.



<그림 2-2> 유니버설디자인의 범위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디자인의 관계

- 유니버설디자인은 무장애(베리어프리; Barrier-free)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되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 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및 심리 특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기술적인 측면의 디자인에 그치지 않고 노인, 아동,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고, 인간의 전체 생애주기를 수용하는 디자인이다.



<그림 2-3>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디자인

|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 |
|--------|--|--|
| 선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사회적 환경만들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이 없는 물리적 환경만들기 장애인에게 평등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한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
| 대상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 건축·공공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 및 행정·교육·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의 장애물 제거 |
|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성, 접근성, 안전성, 보편성 뿐 아니라 경제성, 심미성, 친환경성까지 고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장애를 제거한 접근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를 고려 |
|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계단이나 경사로 등 단차를 만들지 않는 계획 여행가방을 가진 사람도 쉽게 다닐 수 있는 쾌적한 보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휠체어사용자 등 장애인 전용 화장실 건축물의 주출입구 단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사로의 설치 장애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넓은 보도 폭 및 유도블록의 설치 |

<표 2-1>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디자인

1.2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와 원칙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실제 디자인에 올바르게 적용하고,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년 유니버설디자인센터(Center for Universal Design)는 유니버설디자인 4원리를 제시하였고, 이후 유니버설디자인을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이 수립되었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원리와 원칙은 가능한 많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특성을 통합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을 제공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와 원칙은 단지 보편적으로 사용가능한 디자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실제 디자인 시 경제적, 공학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원리

- 유니버설디자인 4원리는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수용가능한 디자인, 접근가능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간, 제품, 환경 등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4원리 | 내용 |
|-------------------------------------|---|
| 기능을 지원하는 디자인 (Supportive Design) | 기능상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되 도움을 제공해 주는데 어떠한 부담도 야기시키지 않음 |
| 수용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 상품이나 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킴 |
| 접근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위협적인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 |
| 안전한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 안전사고 등의 기존 문제를 제거시키기 위해 개선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미연에 방지함 |

<표 2-2> 유니버설디자인의 4원리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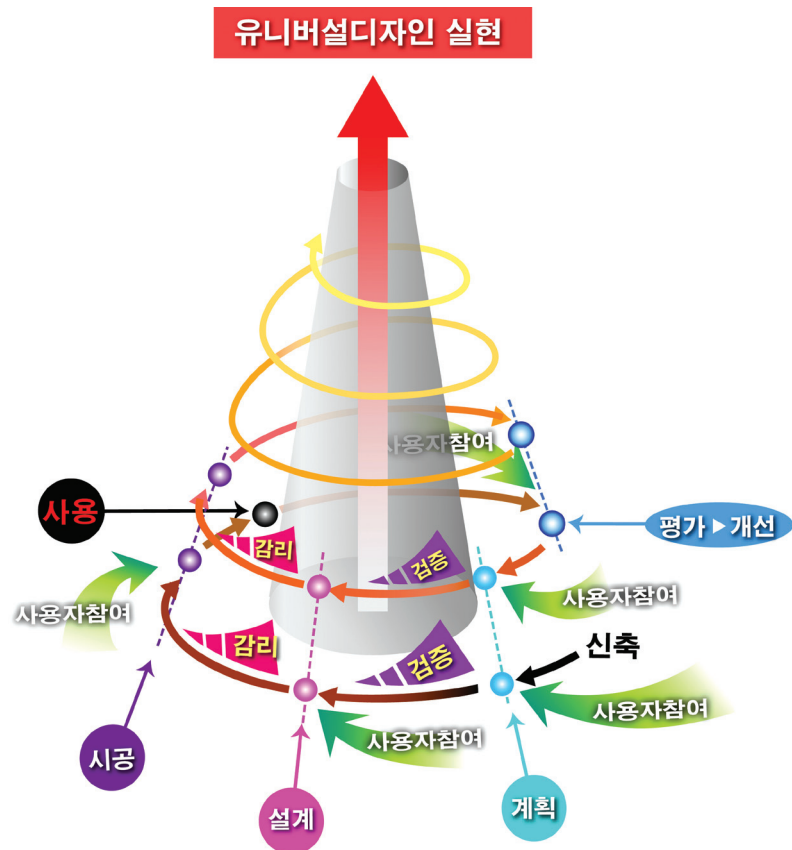
-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은 기존 디자인의 평가, 디자인 프로세스의 방향 선정에 적용 가능하며 사용하기 편리한 좋은 환경, 제품 등의 특성을 디자이너와 사용자를 교육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 7원칙 | 내용 |
|---|---|
| 동등한 사용 (Equitable Use) | 모든 사용자가 디자인의 유용함을 최대한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 |
| 사용의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 사람들마다 다른 다양각색의 선호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디자인 |
|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Intuitive Use) | 경험, 지식, 언어 등 사용자 수준에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
|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 주위의 상태 또는 사용자의 지각능력에 상관없이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오류에 대한 관대함 (Tolerance for Error) | 위험과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최소의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 사용자가 최소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
| 접근과 사용을 위한 크기 및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신체크기, 자세, 이동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고, 손이 닿을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크기와 공간으로 디자인 |

<표 2-3>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1.3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방법

- 유니버설디자인은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프로세스로 사용자의 행태를 비롯한 감성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장소와 시간의 틀 속에서 환경의 특성을 파악, 개선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림 2-4>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방법

-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기술적 지식을 축적하고 반영함으로써 생활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은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의 연속된 장면으로 통합하여 해석하며, 연속된 장면 내에서의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행태,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연속된 장면의 설정 및 시설검증

시퀀스



<그림 2-5> 연속된 장면의 설정 및 평가/검증 예시 : 공공건축물

II.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2.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사용자

2.1 영유아, 어린이 및 동반가족

- 기본특성
 - 어린이는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 및 정도가 월령 및 연령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신체치수, 시선의 높이, 도달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환경의 변화나 상황, 위험물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곤란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며 시야가 성인에 비해 매우 좁다. 또한 호기심이 많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한다.
 -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나 가족은 대부분 유모차와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며, 동반한 영유아의 자녀를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살펴야 한다.
 -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나 가족은 때로는 영유아를 안거나 업어야 하므로 쉽게 피곤해진다.
- 배려사항
 - 어린이의 신체치수 등을 고려해 시설물 등의 높이나 깊이의 치수 등에 유의한다.
 - 긴급 상황의 판단과 대응이 느린 영유아를 위해 돌출물이나 단차를 만들지 않거나 최소화한다.
 -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나 가족을 위해서 기저귀 교환 및 어린이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공간,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휴식공간 등이 요구된다.
 -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다.

2.2 임산부

- 기본특성
 - 일반적으로 임신 및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을 의미한다.
 - 임산부는 멀미 등을 느끼기 때문에 장시간 서있기 곤란하고, 쉽게 피곤해진다.
 - 보통 다른 사용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배려해도 충분하지만, 행동 등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재해 시나 돌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 대응도 배려한다.
 - 출산 후에는 수유실이 요구된다.
- 배려사항
 - 임산부는 발밀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로나 복도에 단차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 적은 힘으로도 열 수 있는 문을 설치하고, 돌출물 등의 위험요소를 두지 않는다.
 - 임산부를 위한 휴게장소를 설치하며, 기저귀 교환과 수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2.3 외국인 및 관광객

- 기본특성
 - 자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와 정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 무거운 여행용 가방을 휴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손에는 지도를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 양손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 배려사항
 - 안내사인에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이나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국제통용의 픽토그램이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영어나 일본어, 한자 등 다국어 문자를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역 등의 시설 및 관광지에는 그림과 다국어로 표기된 안내도를 설치한다.
 - 무거운 여행 가방이나 짐을 가진 사람을 위해 적은 힘으로도 열기 쉬운 문의 폭과 구조로 하며, 통로나 복도에 단차를 만들지 않는다.
 - 잠시 걸터앉아 쉴 수 있는 휴게장소 등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2.4 노인

- 기본특성
 -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감각이 무뎌지며 시야가 좁아지고 쉽게 피로해진다. 따라서 장거리의 연속이동 및 장시간 서있는 것이 곤란하다.
 -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려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진다.
 -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 자력으로 보행이 곤란하거나 관절염,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으므로 지체장애인과 동일하게 배려되거나, 시각 및 청각기능이 저하되므로 시각 및 청각 장애인과 동일하게 배려해야 한다.
- 배려사항
 - 보행로에는 100m 간격으로 잠시 걸터앉아 쉴 수 있는 벤치, 의자, 휴게장소 등을 설치한다.
 - 지팡이나 보행보조기 등의 이용을 고려해 보행로나 문 등의 폭을 여유있게 제공한다.
 - 안내사인의 문자 크기나 명도차를 크게 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횡단보도는 노인의 통행을 고려하여 횡단가능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2.5 장애인

휠체어사용자

- 기본특성
 - 수동휠체어는 자력으로 조작하는 경우와 보조인이 도와주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력 이동을 염두에 둔 계획이 요구되며,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조작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 등 사용자의 대상범위는 보다 넓다.

- 배려사항
 - 휠체어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문턱이나 단차를 만들지 않으며, 복도와 출입문 등의 폭을 넓게 한다.
 - 문을 열고 닫는 동작이나 휠체어 회전을 위해서는 문 주위에 충분한 회전공간이 필요하다.
 - 접수대나 선반 등은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가능한 높이로 하고, 하부는 휠체어 발판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워둔다.

지체장애인

- 기본특성
 - 손이 닿는 범위가 좁아져 물건을 잡거나 세밀하고 정확한 조작이 곤란하다.
 -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2cm의 단차를 넘는 것도 힘들다. 또 보행이 불편한 사람은 쉽게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진다.
 - 상지장애인은 악력이 저하하고 손이 닿는 범위가 좁다.
- 배려사항
 - 불필요한 단차는 만들지 않아야 하며, 평평한 바닥면일지라도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므로 바닥면의 마감에 유의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을 위해 출입문이나 복도 등의 폭을 넓게 하고, 이동보조를 위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건을 잡거나 세밀하고 정확한 조작이 곤란하기 때문에 문 손잡이 등의 크기 및 형태, 조작방법에 배려해야 한다.
 - 조작하기 쉬운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각장애인

- 기본특성
 - 청각장애인은 청각 경로의 이상으로 듣고 이해하는 기능이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결여되는 것으로, 이들은 정보의 인지나 이해에 큰 차이를 보인다.
 - 청각장애인은 언어장애나 발성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다.
 - 청각장애인 중 많은 사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난청자이다.
- 배려사항
 - 혼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 진동 등 복수의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안내설비는 연속성이 있도록 한다.
 - 일상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팩스, 시각정보장치, 화이트보드 등을 설치한다.
 - 문자, 영상통화 등의 통신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고, 사람에 의한 통번역 시스템(문자, 음성 ↔ 수화)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 기본특성
 - 시각에 장애가 있어 현재 위치나 장애물의 인지, 방향 등 여러 가지의 정보가 부족하게 되어 보행이 곤란하다.
 - 약시와 색각장애인은 명암이나 색을 식별하는데 개인차가 크다.
- 배려사항
 - 시각을 대신할 수 있는 음성유도, 점자블록, 향기(냄새) 등과 같이 청각, 촉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배려한다.
 - 보행할 때 발밑 외에도 상부에 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 보조건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보조건의 배설공간, 출입구의 폭 등을 배려한다.
 - 안내사인 등의 문자를 크게 하며 명도, 색채, 휘도 차이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 유도블럭 설치에 있어 휠체어 사용자와 상반된 요구를 가지므로, 이들의 동선과 행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지적장애인

- 기본특성
 - 지적장애인은 뇌 장애로 인해 인지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언어나 공간 인지가 떨어지고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이 곤란하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건물 내의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 곤란하다.
 -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나 행동은 소극적인 편이다.
- 배려사항
 - 문자 판독, 방향, 시력 등의 장애도 있어 안내판 등은 알기 쉬운 문자나 픽토그램, 음성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일되게 디자인하도록 배려한다.
 - 신체가 불안정한 사람도 있으므로 보행공간에는 단차를 만들지 않는다.
 - 기구나 설비 등은 알기 쉽고 조작하기 쉽도록 배려한다.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화이트보드 등을 비치하고, 긴급 시를 위해 인적 대응도 검토한다.

자폐성장애인

- 기본특성
 - 뇌손상으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애이다.
- 배려사항
 - 문자 판독, 방향, 시력 등의 장애도 있어 안내판 등은 알기 쉬운 문자나 픽토그램, 음성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통일되게 디자인하도록 배려한다.
 - 의사소통과 사회적관계가 매우 어렵고, 소리지르기, 부딪히기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므로, 날카로운 모서리 등은 제거한다.

내부신체장애인

- 기본특성
 -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등의 내부장기에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 장시간의 보행 및 서있는 것이 곤란하다.
 - 인공배설기를 사용하는 오스트메이트(Ostmate)¹⁾나 장애에 의해 산소 호흡기 등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간질장애는 발작을 일으킨다.
 - 외견상으로는 장애를 확인할 수 없다.

- 배려사항
 - 쉽게 피곤해지므로 휴게공간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계단이나 경사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거나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배려한다.
 - 인공장기에 의한 배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배설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화장실 설비 (오스트메이트; Ostmate)를 갖추도록 한다.

1) 오스트메이트(Ostmate) : 암이나 사고 등으로 소화기관이나 요관이 손상되어 복부 등에 배설을 위해 인공항문 또는 인공방광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Ⅲ. 조사 및 분석

1. 경기도의 특성

- 1.1 일반현황
- 1.2 경기도민의 다양성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 2.1 현장조사
- 2.2 관련 조직 및 추진사업

3.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 3.1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 3.2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4. 종합분석

- 4.1 시사점
 - 4.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방향
-

Ⅲ.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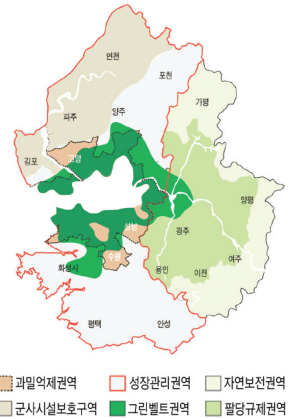


1. 경기도의 특성

1.1 일반현황

위치

-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중앙 지역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86km의 휴전선과 서쪽으로는 332km의 해안선에 접해 있다.
-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도와 인접해 있고, 그 중앙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간의 문화교류 중심지이며 한반도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한국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에 의해 남, 북지역으로 나뉘어져 한수 이북으로는 산간지역이, 한수 이남지역에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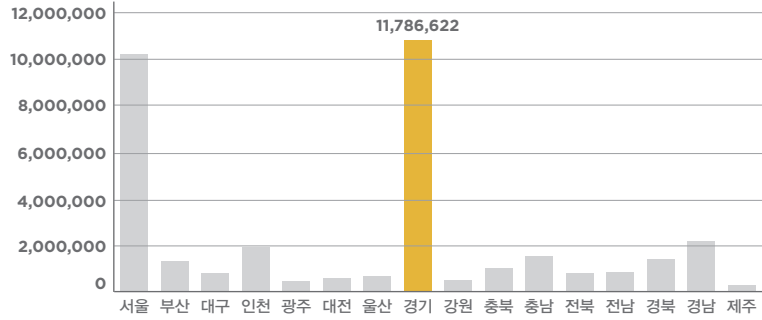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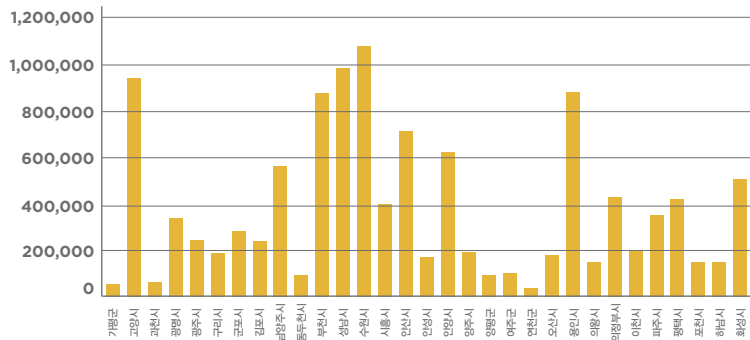
- 경기도의 면적은 전 국토의 약 10%인 10,185.6km²로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 규모이며, 총 31개 시·군 (27개 시, 4개 군)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자치단체이다.
- 경기도의 시·군 중 가장 큰 면적은 양평군(887.8km²)이며, 가장 작은 면적은 구리시(33.3km²)이다.

인구

- 2010년 기준 연령별 인구 분포는 40대가 2,198천명(18.7%)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50대가 158천명(11.9%)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연령별 인구 변화를 보면 10세 미만 인구는 25천명이 감소했으며,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84천명 증가했다.
- 인구가 많은 9개 도시(500천명 이상)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이며 이 중 수원시가 경기도의 9.2%로 인구 규모가 가장 크고 연천군이 0.4%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인구 현황 (2010년도,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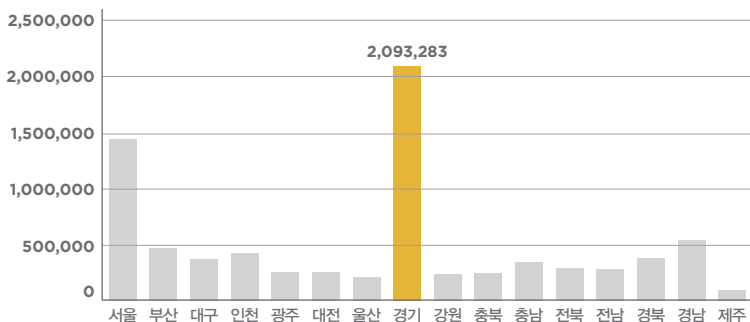


경기도 인구 현황 (2010년도,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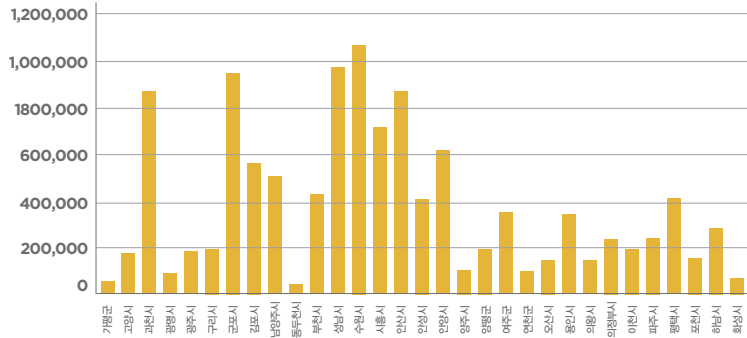
1.2 경기도민의 다양성

영유아 및 어린이

- 2010년 기준 경기도 14세 미만 어린이는 2,093천명으로 전국의 26.1%를 차지하고 있으며, 4세 미만의 영유아 비율은 26.9%, 5세 이상 14세 미만 어린이는 25.8%를 차지하고 있다.
- 전년대비 경기도 14세 미만 어린이는 2.9% 증가하였다. 4세 미만 영유아는 3.0% 증가한 반면 5세 이상 14세 미만 어린이는 3.1% 감소하였다.
- 어린이수가 150천명이 넘는 지역은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성남시로 수원시가 190천명 (9.2%)으로 가장 많으며, 동두천시가 5천명(0.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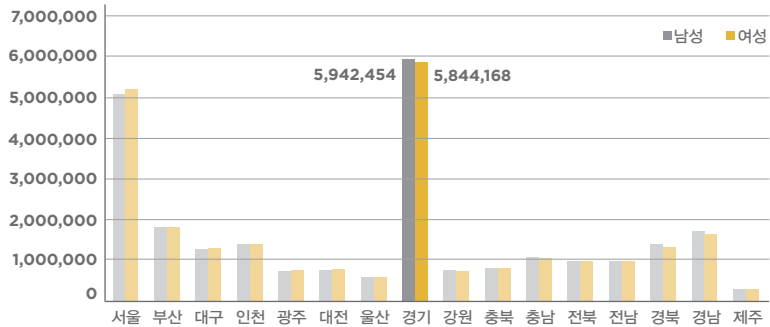
전국 아동인구 현황 (2010년도,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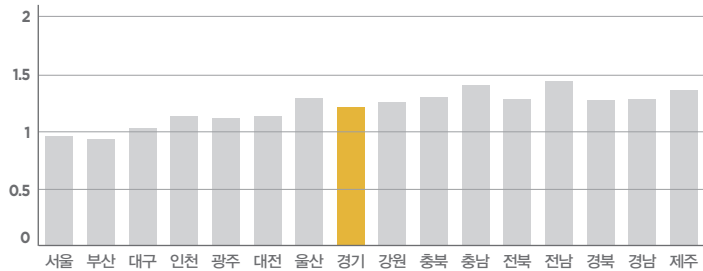
경기도 이동인구 현황 (2010년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성별 및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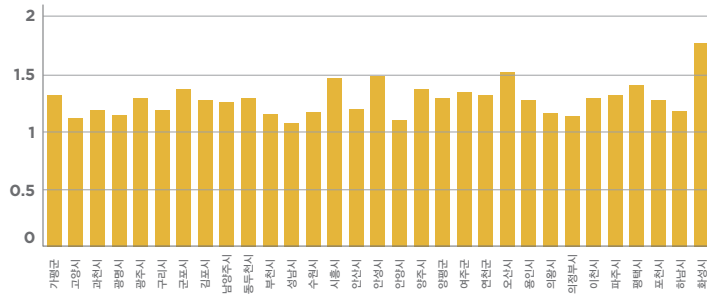
- 경기도 여성인구는 5,844천명으로 전국의 23.2%이며, 남성인구는 5,942천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도 전체 인구 여성비율은 49.6%이며, 남성비율은 50.4%이다.
- 2009년 경기도 출생아수는 113천명으로 전국 출생아수의 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인 1.15명보다 0.08명 높은 1.23명으로 나타났다.
- 출산율은 2007년 1.35명, 2008년 1.29명, 2009년 1.23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전국 남녀인구 현황(2010년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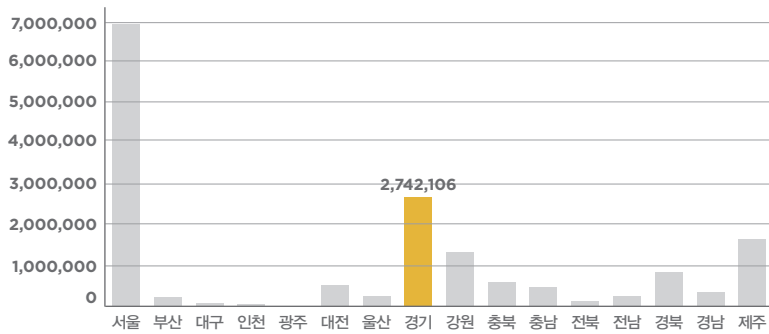
전국 출산율 현황 (2009년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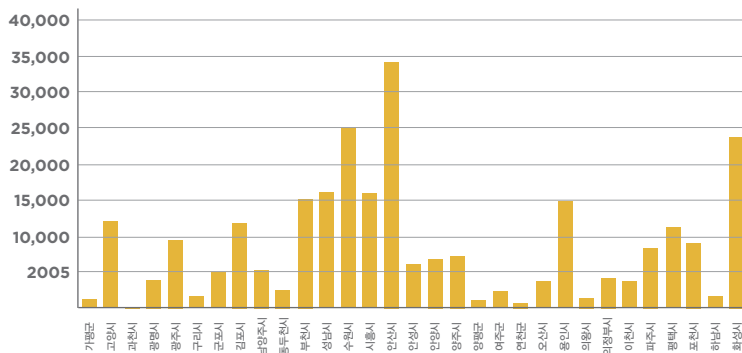
경기도 생산물 현황 (2009년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외국인 거주자

- 2009년 경기도 외국인 거주자수는 266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 외국인 거주자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국적이 많으며, 그 중 중국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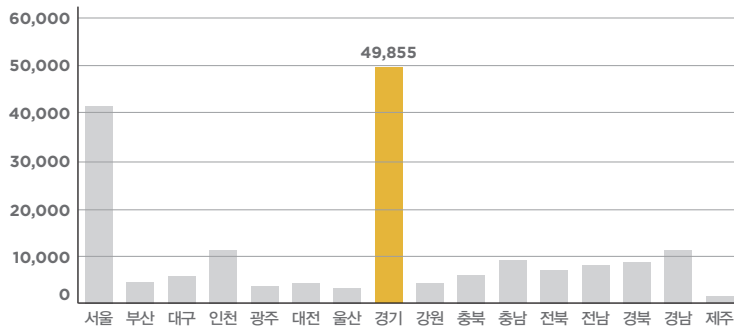
전국 외국인 거주자 (2009년도, 출처: 경기넷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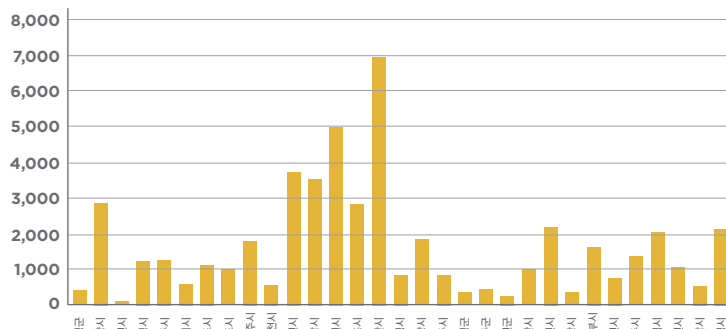
경기도 외국인 거주자 (2009년도, 출처: 경기넷 주민인구통계)

다문화가정

- 2009년 경기도 다문화가정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27.5%로 가장 높으며,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 비율은 1.2%이다.
- 경기도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29천명으로 전국 최대이며, 2008년 68.2%, 2009년에는 169.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0-4세 47%로 가장 많았으며, 5-9세 25.6%, 10-14세 18.5%, 15세-18세 8.9%로 나타나고 있다.
-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3천명(11.6%)인 안산시이며, 가장 적은 곳은 80명(0.3%)인 과천시이다.
- 다문화가정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중국 조선족 포함)이 60.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베트남 15.3%, 필리핀 7%, 일본 3.8% 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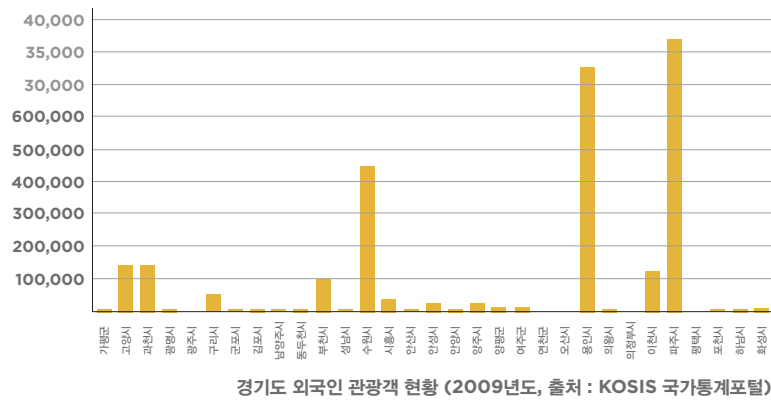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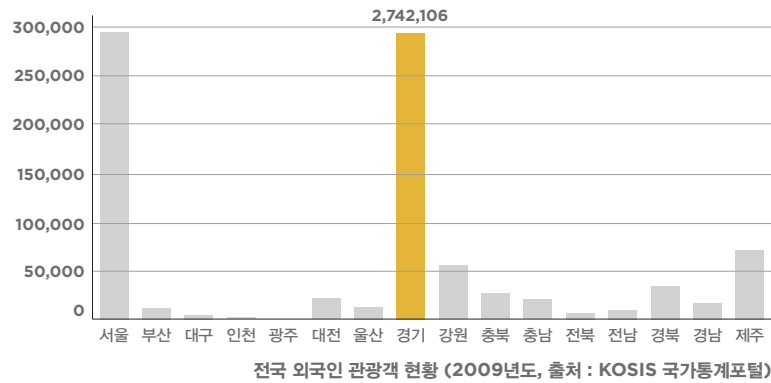
전국 다문화가정 현황 (2010년도, 출처: 경기도)



경기도 다문화가정 현황 (2010년도, 출처: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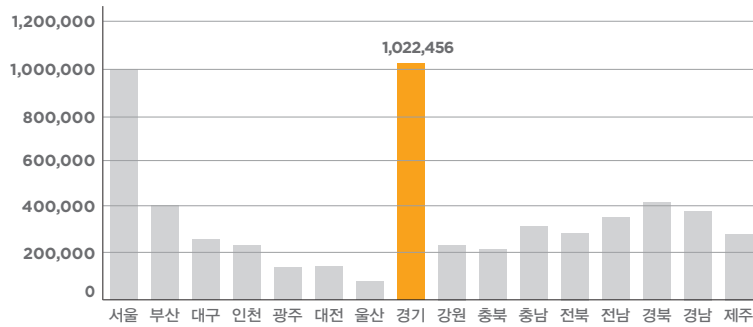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객

- 2009년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은 2,742천명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외국인 관광객의 16.8%를 차지하고 있다.
-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인으로 전체의 39.1%에 이르며, 다음으로는 중국이 17.2%, 미국 7.8%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파주시 30.6%, 용인시 27.6%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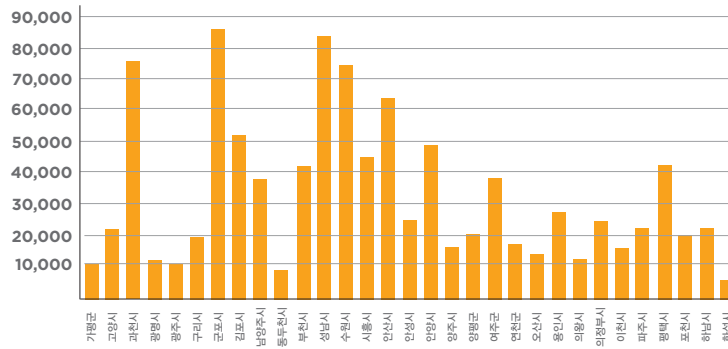


노인

- 2010년 기준 경기도 노인인구는 1,022천명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비율인 18.6%를 보이고 있다.
- 경기도에서 노인인구가 70천명이 넘는 지역은 군포시, 성남시, 과천시, 수원시이며, 10천명이 넘지 않는 지역은 동두천시, 화성시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노인인구 변화추이는 2008년 8.14%, 2009년 8.42%, 2010년 8.6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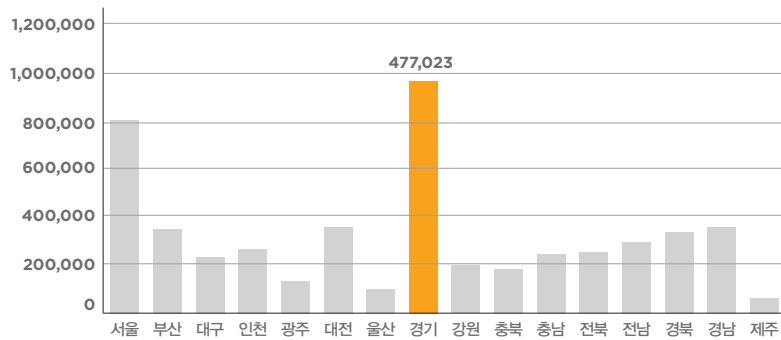
전국 노인인구 현황 (2010년도,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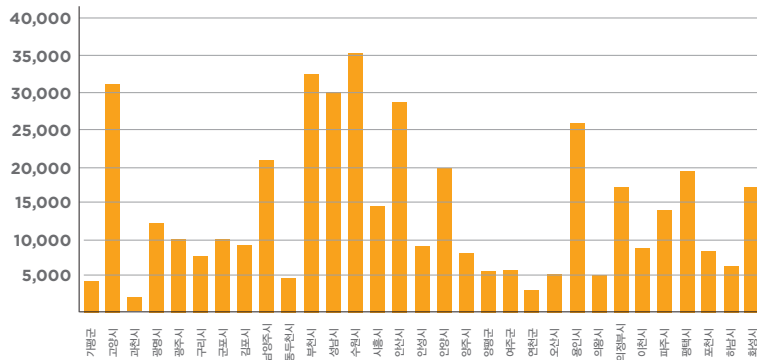
경기도 노인 현황 (2010년도,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장애인

- 2009년 경기도 장애인 등록수는 477천명으로 전국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
- 경기도 전체인구 대비 등록장애인 비율은 3.7%로 평균이 7.7%로 가장 높으며, 과천시가 2.7%로 가장 낮다.
- 장애인 등록수가 많은 지역(30천명 이상)은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이며, 적은 지역(5천명 이하)은 과천시,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이다.



전국 장애인 등록수 (2009년도, 출처: 경기넷, 경기통계연보)



경기도 장애인 등록수 (2009년도, 출처: 경기넷, 경기통계연보)

Ⅲ. 조사 및 분석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2.1 현장조사

개요

-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영역의 경우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 및 요구를 배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현장조사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 특성과 이를 이용하는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특성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경기도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실시하였다.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사용자 행동 특성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분석기준에 따라 평가하였다.
-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별 현장조사 결과를 유니버설디자인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한 현황 및 개선방안 중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분석기준* | 세부 평가항목 |
|---------|--|
| 선택성 | -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공평한 사용에 배려할 것 - 수단이나 사용방법이 다양하여 상황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 - 차별성과 소외감을 주는 사용방법이나 정보를 배제할 것 |
| 심미성 | -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할 것 |
| 안전성 | -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을 것 - 안전하게 조작이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부주의한 실수에도 안전할 것 |
| 쾌적성 | - 쾌적하고 편안함을 주는 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것 -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 조작하거나 이용할 수 있을 것 |
| 편리성 | - 연령, 지식, 능력 등에 관계없이 조작이나 이용하기 쉽고 적절한 장소에 있을 것 - 다양한 사용자의 자세, 동작, 행동패턴 등을 배려할 것 -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직감적으로 사용방법을 알 수 있을 것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으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 |
| 환경성 | - 위생적이며 청결한 느낌을 줄 것 - 자원 및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적이며, 지속적인 사용에 배려할 것 |
| +α(지역성) |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할 것 |

<표 3-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 분석기준

* 분석기준은 한글, 영어 순으로 정렬하였음

공공공간

- 보도 경계석의 과도한 턱 낮추기와 횡단보도와 접한 보도의 일부 턱 낮추기로 인해 보도면의 굴곡이 심하여 보행자가 걷기 힘들며, 특히 유모차의 이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경우, 노인의 경우엔 걷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보행하기 쉽도록 동일한 높이의 보도면과 연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도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평탄치 못하고, 교통 및 전기시설물들이 튀어나오거나 자전거도로와 혼합되어 있는 등 종합적으로 보도가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각종 시설물들이 혼재되지 않도록 한다.
- 횡단보도 앞 경사지에 설치된 점자블록은 눈, 비가 오면 미끄러워 위험하고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높은 구두를 신고 걷기에 힘들다.



파손되거나 굴곡이 진 점자블록



경계석 턱 낮추기와 보도 기울기로 굴곡이 심한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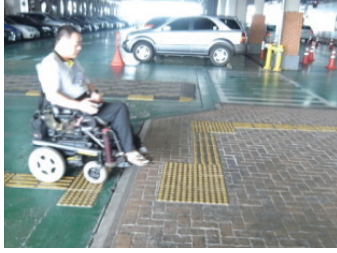
보행이 곤란한 울퉁불퉁한 보도

공공건축물

- 부지 내의 보행진입로에 단차나 계단 등이 있어 유모차와 함께 이동하는 여성이나 노인들이 이동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경사지거나 협소한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건물로의 접근과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진입로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의 보행로에는 단차나 계단, 경사로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할 경우 완만하고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엘리베이터가 주출입구와 동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사용자의 이용동선과 달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주출입구는 계단,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건물 주출입구의 문이 지나치게 무거워 열고 닫기 어렵고, 여닫이문의 경우 무거운 가방이나 유모차가 통행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아동과 유모차, 양손에 짐을 든 사람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 빈도가 높은 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중화장실의 경우 적절한 안내사인이 없어 식별이 어렵고, 내부는 어둡고,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는 사용이 불편하다. 그러므로 적절한 위치에 안내사인을 설치하고 식별이 쉽도록 하며 내부는 밝고 청결해야 하고,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교환대와 영유아용 변기 등의 설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단이나 경사로 등 단차가 없는 주출입구



휠체어나 유모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보도면의 단차



대기공간의 폭이 좁은 엘리베이터 승강장



위치 식별이 어렵고 안내사인이 잘 보이지 않는 공중화장실



어린이나 휠체어를 고려하지 않는 안내카운터



유모차도와 함께 통행할 수 없는 출입문

도시기반시설물

- 보도육교의 마감색채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며, 보도육교를 지지하는 기둥의 구조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미적으로 좋지 않다.
-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나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안내사인의 부재로 쉽게 찾을 수 없으며, 보도육교의 기둥이나 전기배선함 등의 시설물로 인해 엘리베이터 입구로의 접근이 매우 불편하다. 그러므로 계단,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승강방식을 한 곳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내사인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 보도육교 계단 디딤판 끝부분의 식별이 어렵고 디딤판이 평평하지 않아 내려갈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나 야간 사용자를 위해 마감재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과 지나치게 인접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위치를 쉽게 알 수 없는 보도육교



동일 재료로 마감되어 식별이 어려운 계단 디딤판

가로시설물

- 보도로 차량 등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 간격이 좁아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등이 지나가기 불편하며, 딱딱한 재료의 고정된 형태로 된 볼라드는 충돌시 부상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볼라드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시에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며, 사용자의 신체 접촉에 대비하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휴지통은 청결하지 못하고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것이 많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기능적이며 청결하고 통일된 디자인이 필요하다.
- 가로판매대, 자전거거치대 등 가로시설물에 의해 보행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행안전공간과 가로시설물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 버스승차대가 지나치게 높아 유모차나 노인 등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공간이 협소하여 특히 혼잡한 승하차시 버스승차대에서 차도로 내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버스승차대와 보도면에 단차가 없고 유모차가 통행하고 대기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주변과 어울리는 통일된 버스승차대의 디자인이 필요하다.



미적으로 아름답지 못한 볼라드



청결하지 못한 휴지통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가로시설물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펜스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공중전화



보도면과 단차가 있는 버스승차대 공중전화

공공정보매체

-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버스노선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은 글자와 이해하기 어려운 도해로 되어 있으며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인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버스노선도 등의 정보매체는 알기 쉽도록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를 병기해야 한다.
- 안내표지판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나 노인이 읽기 어려우며, 각종 안내판이 혼재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안내표지판 등의 정보매체는 어린이나 노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공공정보매체의 설치기준이 필요하다.



알기 어려운 표기방법의 버스노선도



각종 안내판이 혼재되어 있는 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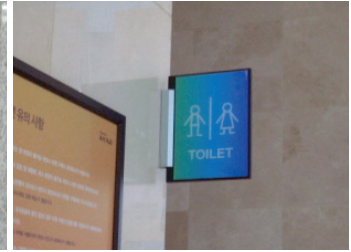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표기가 알기 어려운 사인



눈에 띄지 않는 종합안내도



반사가 심한 시설안내도



디자인이 강조되어 식별이 어려운 픽토그램

2.2 관련조직 및 추진사업

- 경기도의 각 시·국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사업을 계획, 시행하고 있다.

| 관련시·국 | 추진사업 |
|-------|---|
| 기획조정실 | 디자인총괄추진단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공공디자인 마인드 확산 |
| | 정보화기획단 전자도정 운영 지원 정보화 마을 조성 정보통신망 서비스 확대 및 운영지원 |
| 경제투자실 | 경제정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 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수원화성행궁 앞 광장조성사업 공립 박물관 건립 지원 공립 미술관 건립 지원 |
| | 체육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
| 보건복지국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
| |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
| | 장애인복지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
| 복지여성실 | 가족여성담당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
| | 보육청소년담당관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환경개선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아동시설 지원 |
| 교통건설국 | 교통정책과 노인보호구역설치 교통안전도시 조성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교통안전 기본계획 |
| | 대중교통과 버스정보 수집, 제공 시스템 운영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
| | 도로계획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로표지판 정비 지방도 가로등 정비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

<표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Ⅲ. 조사 및 분석



3.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3.1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 구분 | 관계 법규 |
|----------------|---|
| 공공 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
| 공공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문화재 보호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신항만건설촉진법 - 공중화장시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
| 도시기반 시설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
| 가로 시설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령, 고속국도법, 시행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 건널목 개량촉진법, 유료도로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중전화소 시설 및 표지에 관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
| 공공 정보 매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표지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

<표 3-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

국내 중앙부처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10년 제정된 법률로,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보행자길 및 보행권을 정의하고, 보행자길의 통행과 이용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보행이 불편하여 집중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정비하도록 하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해양부)

- 2005년 제정되고 2010년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등의 개선·확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기존의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선진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1997년에 제정되었고, 편의시설 설치의 대상 범위는 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로 구분하였고, 도로와 교통 관련 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대상으로 이전되었다.
- 시행령은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 안내표시 기준, 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시행규칙은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편의증진심의회 구성, 시정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 국내 최초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시작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 ‘장애인복지법’은 2007년에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 2010년 제정되어 차량위주의 교통수단·시설의 설치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이동편의시설의 단순 설치보다는 전체적인 이동 동선 확보가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실시하였다.
-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대상은 신규도시(구역),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인증효과로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 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 생략,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점부여, 건축물 분양가 산정 시 등 공사비용의 추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요구조건이 상이한 대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 복지관 등 불편을 겪는 대상이 오히려 발생하거나, 인증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분석

- 사용자 특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물리적 치수 위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 장애물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대상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 물리적 장애물 제거 외 편리성, 쾌적성, 지역성 등에 대한 고려해야 한다.

국내 자치단체의 동향

대구광역시

- 무장애디자인 차원에서 지역시설에 산재한 문제점 및 현황을 보도 및 차도, 목적건물까지의 접근, 안내표시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대전광역시

- 2008년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도시구조물, 시설물 등을 구축하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거리와 자연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였다.
- 건축물, 도로, 공원, 공공교통시설 등 모든 생활시설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구상·설계단계부터 적용하도록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상북도

- 편의증진국가 종합 5개년 계획의 취지에 따라서 제1차 편의시설확충 5개년 계획 (2000-2004)을 추진했고 제2차 5개년 계획 (2005-2009)을 수립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편의증진요원의 확충, 편의시설 확충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사회인식 개선 및 교육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점검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 충청남도는 도청이전 신도시인 예산과 홍성을 중심으로 장애인·노약자 등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느끼지 않은 무장애 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무장애 도시는 누구나 불편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전용공간 마련,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 설치, 지역 특성에 맞는 입체횡단시설 도입, 공원 및 건축물 접근시설확충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 영등포구는 여의동 여의나루길 ‘국제금융 디자인거리’와 당산동3가 ‘당산로 공공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휠체어 사용자, 노인, 어린이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였다.

- 보도 포장재질을 디자인중심의 재료 대신 목재 등을 사용해 넘어져도 충격이 덜 하도록 할 계획이며, 보도에 설치된 가스등과 휴지통, 벤치 등도 한쪽으로 몰아 보행자의 충돌을 최대한 피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지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및 비상도우미 등 첨단시설들도 거리 곳곳에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광명시

- KTX 광명역세권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조경 설계를 추진하여 공원 및 녹지를 도시의 생태 허브로 조성할 계획이다.
- 광명역세권 조경 설계는 ‘모두가 편리한 환경,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 모두가 즐거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장애인에게도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공간으로 조성키로 하였다.

경기도 화성시

- 모든 시민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상범위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교통 및 교통시설,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

- 이동의 편의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으며, 단편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동의 편의성 및 안전성 뿐만 아니라 심미성, 환경성, 지역성 등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 통합된 시각으로 장기적 로드맵 작성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3.2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 연도 | 관계 법령 | 법제 이외의 시책 등 |
|------|--|--------------------------|
| 1949 | - 신체장애자 복지법 | |
| 1982 | | - 장애인 대책에 관한 장기계획 |
| 1993 | - 심신장애자 대책 기본법 -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보급 촉진법 (복지용구법) | - 장애인 대책에 관한 신 장기계획 |
| 1994 | - 고령자-신체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 (하트빌딩법) | - 생활복지공간 조성 대강 |
| 1995 | - 고령사회대책 기본법 | - 장수사회 대응 주택설계지침 |
| 1996 | | - 고령사회 대책 대강, 복지용구산업 간담회 |
| 2001 | -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베리어프리법) | |
| 2002 | - 하트빌딩법의 일부 개정 | |
| 2004 | | - 유니버설사회의 형성촉진에 관한 결의 |
| 2005 | | -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 |
| 2006 | - 고령자-신체장애인의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베리어프리신법) - 장애인 권리조약 채택 | |

<표 3-4> 일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하트빌딩법 (ハートビル法)

- ‘고령자-신체장애인이 원활하게 이용 가능한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던 1994년에 제정되어 특정건축물 범위확대, 이용의 원활화 기준 적합의무 규정, 규모변경 내용 추가, 지원제도 확대,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 2003년 4월에 개정 시행되었다.

베리어프리법 (バリアフリー法)

- ‘고령자-신체장애자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한 촉진에 관한 법률’로 1949년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 비롯되었는데, 1982년 장애인대책에 관한 장기계획 이후, 1993년 심신장애자대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계획 전략이 정비되었다.
- 2002년에는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본방향을 책정하였다.

교통배리어프리법 (交通バリアフリー法)과 배리어프리신법(新バリアフリー法)

- 일본의 교통배리어프리법은 미국의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 (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를 토대로 2000년 제정되었고, 2006년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구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 반영하였다.
- 배리어프리신법은 2005년에 발표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종합적인 배리어프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트빌딩법과 교통배리어프리법을 혼합한 시스템으로 2006년 12월부터 시행하였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政策大綱)

- 국토교통성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대강의 기본방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였다.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에 따른 다양한 관계자의 참가 구조 구축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에 기초한 평가 및 공유의 구조 창설
 - 일체적·종합적인 무장애 시책의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에 맞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의 책정
 - 마음의 무장애 사회의 실현 등 소프트웨어의 시책 충실
 - 누구나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통의 실현
 - 누구나 안전하고 살기 편한 마을 만들기
 - 다양한 사람 및 활동에 대한 유연한 대응
 - IT 등의 신기술의 활용
 - 선도적 대책의 종합적 추진

일본 자치단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 사용자 중심의 시책 전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서 마음으로 전환, 점적·선적 정비에서 면적 정비로 변화, 사회 전체에 의한 추진을 중심으로 방침을 수립하였다.
- 마음의 무장애화 추진, 생활환경(주택, 건축물, 공공교통기관, 보행공간 등), 교육·문화, 고용·취업, 제품, 정보 등 분야별로 기본 방침을 수립하였다.
- 59개의 지방단체 중 44곳에서 마을만들기 조례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동경 세타가야구의 경우 ‘복지 주택·마을 추진조례’를 폐지한 후 ‘세타가야구 유니버설디자인 추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미에현 하마마쓰시, 동경 히노시, 교토시 등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 구분 | 지침 사례 |
|-------|--|
| 카나가와현 |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촉진 복지만들기 조례 제정 이후 공공시설의 배리어프리화를 추진 |
| 오키나와현 | 사회환경 만들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 모든 주민이 사회의 담당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수반 |
| 사가현 | 전통이라는 부가 가치를 더하여 모든 세대가 휴식하며, 밝고, 즐겁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인재육성까지 고려 |
| 아오모리현 | 안전한 생활과 문화, 동등한 정보 전달, 빈틈없는 서비스, 풍요롭고 친절함을 기반으로 지역성, 참여, 지속성을 중요시하면서 추진 |
| 오카야마현 | 주민 일상생활의 발상 전환과 쾌적성을 유지하도록 매력있는 디자인을 추진 |
| 야마시나현 | 관광자원 및 지역적 특성을 살려 환경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친절함의 마을 만들기와 장기적 순환형 사회 형성을 추진 |
| 후쿠시마현 |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유지하고, 지속되는 디자인을 추구하며 시설을 만들고 참여하며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
| 시주오카현 | 1999년 일본 최초로 현이 추진하는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개인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건물, 시설, 제품, 서비스, 제도, 교육 등을 정비하고 제공하는 노력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음 |
| 하마마쓰시 | 생활공간, 이동공간에서 피난시설까지 실효성 있고 사용자 특성에 맞추어 시민을 배려하고 그들이 원하는 공공건물을 만들 수 있는 지침을 마련 |

<표 3-5> 일본 자치단체의 동향

미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 1961년에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을 최초로 제공하여 많은 주정부가 건축법에 기준을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공공건물에서 신체장애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건축장애법'을 제정하였다.
- 1990년에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 (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여 고용, 공공서비스와 교통, 공공시설, 통신 등 사회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을 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ith Disabiliti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장애는 인간의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 2010년,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IT제품과 서비스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법률의 집행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년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체인 미국의 특성상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수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미국의 연구는 재활공학 등의 장애인을 위한 연구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르웨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 노르웨이는 몇몇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들을 실행하고 있다.
- 노르웨이 정부는 국가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계획안인 ‘노르웨이 유니버설디자인 2025 (Norway Universally Designed by 2025)’를 발표하고 2025년까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노르웨이 국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Accessible)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 이를 위해 노르웨이 아동평등부가 주체가 되어 16개 정부 부처의 정책 영역에 걸쳐 건축, 교통, 야외공간계획,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향후 국가 및 지방 단위의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기존 시설 관리 및 신규 시설 건립에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영국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동향**

- 2012년 런던올림픽을 준비하며 건축위원회(CABE)를 중심으로 공공분야의 디자인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인클루시브(Inclusive)디자인을 통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북미에서 제품 디자인이나 건물 등에 좀 더 치중한다면 영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의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를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용어에 담아 사용하고 있다.

| | |
|----|---|
|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장애디자인 측면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다. - 보다 다양한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
|----|---|

III. 조사 및 분석



4. 종합분석

4.1 시사점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추세로, 무장애디자인에 입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중앙의 추진정책에 맞추어 물리적 장애물의 제거 등 소극적이거나 단순한 문제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을 위한 지침으로 수용 가능성, 이해 가능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친환경적이고 무장애디자인에 기반한 계획을 추진되고 있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현황은 주로 지역에 있는 건축물, 공공시설, 교통기관, 도로, 주거, 상점, 공원, 안내 표지 등을 중심으로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점검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어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 및 분석 결과와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동향을 바탕으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방향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제화를 통한 추진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추진기관 및 조직, 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은 경기도의 특성인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고 섬세하게 배려하는 디자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 정책은 공공환경에서 시작하여 민간영역의 생활환경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분야를 비롯하여 행정 담당자 및 도민의 의식계몽과 교육까지 포함하여 전개되어야 한다.

넷째, 경기도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고 확산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한 경기도만의 정책화, 사업화 방안이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일반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중심 목표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행하는 과정에 요구되는 제품의 산업화는 지역의 기업체를 통해 보급·확산되어야 한다.

| 현 황 |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이후 |
|---|--|
| 장애인 등 특정대상만을 중시 또는 배제 | 특정 대상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 |
| 각 장소별 사용자 행태 미고려 | 사용자 행태를 중심으로 한 연계, 이동 파악 |
| 각 요소중심의 물리적 환경 | 각 요소들의 관계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환경까지 포함한 물리적 환경 |
| 각 개별법안별 적용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등) | 각 법안의 통합적 적용(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 결과물 중시 | 프로세스를 포함한 결과 |
| 점(點)별 정비 | 선(線), 면(面)으로 확대를 통한 조화 |

<그림 3-1> 시사점

4.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방향

-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한 통합적, 총체적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이 성공하기 위한 방향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시한다.



성공적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방향

<그림 3-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방향

IV.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 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
- 1.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실천방안

- 2.1 단계별 추진전략
 - 2.2 법제화 방안
 - 2.3 정책 및 사업방안
-

IV.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

기본개념

- 다양한 지역과 사람들로 구성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성으로 존중하여 아우르는 '마음' 과 서로 어우러지게 배려하는 '실천'이 융합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에 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유니버설디자인이 필요하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함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실천으로 배려하는 공공디자인을 말한다.



<그림 4-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모두 아우르고 서로 어우러지는 경기도 만들기”이다.
-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은 다양함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로 ‘실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요구(Wants)를 반영하는 유니버설디자인, 폭넓은 참여를 중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지속적이며 발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이 중요하다.
- 경기도는 타 광역단체에 비해 아동과 여성, 외국인과 노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은 이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실제 적용하기 위하여 ‘차별없는 접근, ACCESS’를 원칙으로 한다.

| | | | |
|--------------|---|--|---|
| 기본 개념 | 모두 아우르고 서로 어우러지는 경기도 | | |
| 철학 | 다양함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로 실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 사용자의 요구(Wants)를 반영하는 유니버설디자인 - 폭넓은 참여를 중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 지속적이며 발전하는 유니버설디자인 | | |
| 7원칙 | 차별없는 접근, ACCESS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text-align: center;"> <div>심미 Aesthetics</div> <div>편리 Convenience</div> <div>쾌적 Comfortability</div> <div>환경 Eco Friendly</div> <div>안전 Safety</div> <div>선택 Selectivity</div> <div>+α 지역성</div> </div> | | |
| 실천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계몽 - 행정, 도민, 사업자 등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교육 및 계몽, 인재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환경구축 - 도시, 건물, 공원, 교통, 제품 등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에 입각한 환경평가 및 정비, 제품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서비스 - IT, 문서, 인터넷, 광고 등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에 입각한 정보의 체계화 |

<표 4-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

1.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개념 및 철학을 실제 디자인에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한 원칙은 ‘차별없는 접근, ACCESS’이다.
- ‘차별없는 접근, ACCESS’는 구체적으로 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 +(α 지역성)의 7가지 원칙을 포함한다.



<그림 4-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

7원칙의 세부내용

심미성

- 미적으로 아름다우며 주변과 잘 조화될 수 있다.
-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려하고 있다.

편리성

- 사용자의 지식이나 능력, 상황에 관계없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배려하고 있다.
-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알기 쉽도록 배려하고 있다.
- 불필요하고 복잡한 정보나 사용방법을 배제하고 있다.

쾌적성

- 생리적으로 쾌적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
-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느낌을 주도록 소재, 색 등을 배려하고 있다.
- 거부감을 주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환경성

-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 제품 등 환경을 배려하고 있다.
-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을 배려하고 있다.

안전성

- 사용하기에 위험하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누구에게나 위험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 안전하게 접근하고 조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실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선택성

- 개인의 선호도나 능력에 폭 넓게 대응하고 있다.
- 노인, 장애인, 어린이, 외국인 등의 다양한 요구를 배려하고 있다.
- 신체조건이나 능력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쉽게 전달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 α (지역성)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면서 경기도 전체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 지역 상황에 맞도록 7원칙에서 선별하거나 강조하여 특성화하고 있다.

IV.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실천방안

2.1 단계별 추진전략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를 바탕으로 3단계의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먼저 공공영역에서 정보서비스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의식계몽을 실시하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이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그림 4-3>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전략

| 단계 | 도입기 |
|----------------|--|
| 기간 | 2010년 - 2011년 |
| 기본목표 | -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입법화를 추진하며, 광역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제고 및 기반 조성 |
| 중점사업 |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조례, 통합운영체계)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 광역 및 기초지자체차원의 연차별 로드맵 및 실행계획 수립 - 광역차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개발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실시 -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교육프로그램 및 자격증제도 개발 - 시민 대상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광역차원에서의 공공디자인 인식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기초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기반구축 지원 및 유도 |

| 단계 | | 성장기 | |
|------|---|--|--|
| 기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6년 | |
| 기본목표 | - 광역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관련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하여 기초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구축지원 및 유도 | - 기초지자체별 공공영역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본격적 전개와 민간기업 참여 지원방안 및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민간영역으로의 확대 유도 | |
| 중점사업 |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위한 매뉴얼 및 평가도구 개발 - 지자체 주도 공공사업에 대한 광역차원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 광역차원의 주요 공공건축물, 보도, 화장실, 주차장, 공원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디자인안 개발 및 적용사업 실시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산업육성방안 마련 - 전문가 양성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교육 프로그램과 자격증제도 실시 |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반구축 지원 및 디자인 사업개발 - 기초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지역환경 조성사업 및 친화도시 사업(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외국인 친화도시 등) 실행계획 및 지원책 마련 - 기초지자체의 주요 공공건축물, 보도, 화장실, 주차장, 공원 등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 실시 - 기초지자체 단위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교양을 위한 다양한 시민 대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 | |



| | |
|----------------|--|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기초지자체 단위의 활발한 사업전개로 개성있는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주도의 공공디자인 환경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
|----------------|--|

| 단계 | | 정착기 |
|------|---|-----|
| 기간 | 2017년 - 2021년 | |
| 기본목표 | -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민관이 함께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도의 지역브랜드를 제고하고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
| 중점사업 | - 유니버설디자인을 강화한 공공디자인환경 구축 - 기초지자체 단위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산업 활성화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기초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환경 조성사업 실시 -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광역차원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 | |



| | |
|----------------|--|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중심의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환경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브랜드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

2.2 법제화 방안

법제화의 필요성

- 경기도는 공공공간의 품격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디자인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다.
-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의식 계몽이 필요하며, 각종 정보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장애와 관련하여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법 체계는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보다 다양한 사람을 배려하고 총체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조례는 강제성을 우선시하기 보다 사업자의 이해나 자주적인 협력에 의한 운영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자의 의식 고양 도모와 이해 협력을 위한 홍보나 계몽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 생소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경기도민들과 관련사업자, 행정관계자의 이해와 인식 확산을 위해 분야별 시설에 대한 모델 사업 실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조례의 구성체계

- (가칭)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는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 기본방침, 추진계획의 책정,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 가이드라인의 시행, 인증마크의 교부 및 표시,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의 촉진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 조례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부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한다.

추진체계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가 겸한다.
- 위원회는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의 수립·개정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폭넓은 참여를 중시하여 새로운 시책이나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형(스파이럴업; spiral up)의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생활환경 조성사업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경기도의 다양한 사용자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사용자 참여로 조성하며, 사용자의 차별없는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思考) 및 이를 실천하는 사용자 참여형 디자인을 말한다.
2.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이 적용되어 실현된, 사용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을 의미한다.
3. 사용자란 경기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 소수 및 약자를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과 다양한 목적으로 경기도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 등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1. 경기도는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무가 있으며, 시군과 연계 및 협력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영역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비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실현·관리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경기도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시하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1.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영역 : 공공공간, 공공시설, 공공매체
3.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생활환경 전반
4.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의식계몽 및 보급체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제5조(기본방침)

1.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을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기초하여 관련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비가준이 되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2.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경기도의 유니버설디자인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의식을 계몽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시 및 보급·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경기도 및 31개 시군은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며, 이를 촉진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 및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

1. 도지사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이 되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5년마다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변경·수립한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시행)

1. 경기도 및 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이하 '신축 등'이라고 한다)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기존에 조성된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마크의 교부 및 표시)

1.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 관련제품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다는 증표(이하 '인증마크'라고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한 자에게 인증마크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이하 '인증환경') 관련 제품(이하 '인증제품')의 사업자 또는 관리자와 지역의 시·군 단체장은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1. 도지사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의 촉진 등)

1. 도지사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 관련 제품에 대하여 사용자 이용 실태와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기준이 되는 사항과 환경 조성 및 개선에 필요한 각종 설비·기구 및 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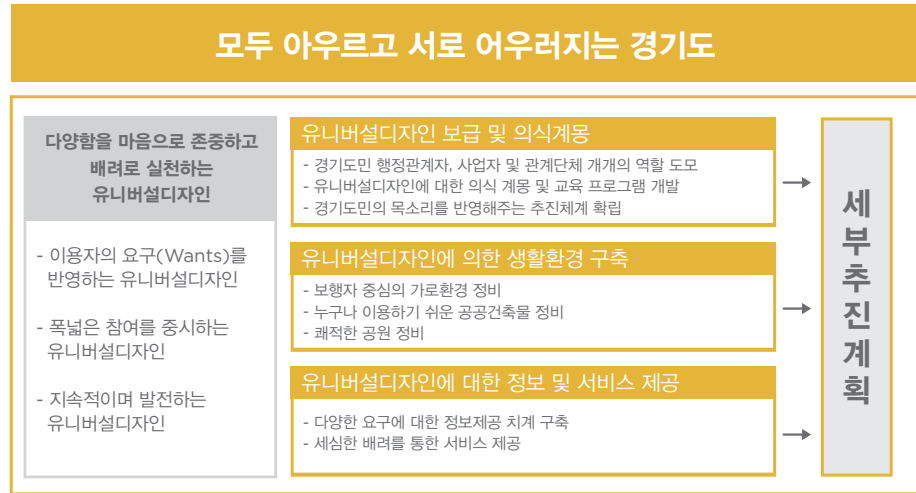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정책 및 사업 방안

중점 정책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을 달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의식계몽,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생활환경 구축,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의 3가지 중점 정책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그림 4-4>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점정책

유니버설디자인 보급 및 의식계몽 방안

경기도민, 행정관계자, 사업자 및 관계단체 개개의 역할 도모

- 경기도민, 행정관계자, 사업자 및 관계단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의식계몽의 촉진
- 경기도민이 유니버설디자인 활동의 추진시 인적, 기술적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활동을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의식계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을 소양시키기 위한 생애학습, 학교의 교육활동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학습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커리큘럼의 구축이나 교재를 충실히 확보
- 행정관계자가 스스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이해하고 보급할 수 있는 충실한 연수프로그램 구축
- 경기도민에게 유니버설디자인을 보급시키기 위해 경기도 전체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운동 및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강좌 실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추진체계 확립

- 계획단계에서부터 평가, 검증까지 많은 경기도민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지속적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정비, 보완하는 추진체계 확립
- 적극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는 사용자를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 공유, 활용
- 각종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추진사업에 경기도민의 참가 및 의견을 반영하도록 관리하고 총괄할 수 있는 체계 확립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생활환경 구축 방안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정비

-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최우선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확보, 보차분리, 보차공존 도로의 정비 등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 정비 기준의 수립
-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길 조성 시범사업 및 인증제도의 실시
- 보행자와 자전거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정비 기준의 수립 및 이에 따른 환경 정비

쾌적한 공원 정비

- 누구라도 쉽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도구 및 기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산책로 및 안전한 화장실 등의 체계적인 정비 기준 수립
- 각 지역의 특성 및 설치 위치에 맞춘 다양한 공원의 정비기준 수립
- 사용자 중심의 가고 싶은 공원 조성 시범 사업 및 인증제도의 실시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공공건축물 정비

- 도내 각종 공공건축물을 차별없이 접근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물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인증을 위한 기준 수립
- 도내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노인 및 아동,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시설의 사용자 특성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정비기준의 수립 및 유도방안의 수립
- 노인과 영유아 가족을 위한 우선 주차장 설치 및 인증제도의 실시

-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를 사용하는 가족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화장실의 정비 및 필요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의 정비 기준 및 설치 유도방안 수립
- 향후 공동주택 및 민간 시설물의 자발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의식향상 시책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에 의한 유도방안 수립

수준높은 사용자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제품의 개발 및 보급

- 지역 내의 산·학·관 및 도민 등이 연계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각종 시설물을 비롯한 전자재, 제품 등을 개발·생산하고, 이를 경기도 내 공공디자인 영역 및 생활환경의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 다양한 사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창구 마련
- 장애가 있거나 외국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다양한 안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다양한 정보매체(홈페이지, 음성안내, 문자안내, 이메일 등)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정비
- IT를 활용한 최신 정보제공 방법에 대한 수용
- 재해를 고려한 안전한 정보제공을 위한 체계 검토

세심한 배려를 통한 서비스 제공

- 물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하드웨어 측면의 정비 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천하는 인재의 양성
- 수화, 통역, 장애인을 위한 시설안내 등의 인적 서비스, 다양성을 배려한 가구 및 설비의 비치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부

GYEONGGI-DO UNIVERSAL DESIGN
GUIDELINE



I.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개요

- 1.1 정의
 - 1.2 가이드라인 범위
 - 1.3 가이드라인 구성
-

I. 가이드라인 개요



1. 가이드라인 개요

1.1 정의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를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의 디자인 방향성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세부 설계지침을 말한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상호 연계되는 설계지침으로 어린이,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방안이다.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목표인 ‘모두 아우르고 서로 어우러지는 경기도 만들기’를 구현하기 위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기본원칙인 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 +α 를 바탕으로 구성한다.



<그림 1-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1.2 가이드라인 범위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 영역과 동일한 분류체계를 유지하여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한다.
- 단,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세부 대상은 각 영역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차별화시켜 구성한다.



<그림 1-2>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범위

1.2 가이드라인 구성

-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상호 연계하는 세부 설계지침이므로,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수립한다.
- 각 영역의 세부 항목별 가이드라인은 기본지침과 세부내용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 중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를 표기하여 강조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기본지침

세부 항목명

이동통로

적극반영

세부내용의 이미지화

권장 : 단차없이 여유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로

적극 반영해야 될 내용의 '권장표기'


법적근거 및 내용을 각주로 표기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디자인 가이드라인 예시

- 도로 및 주차장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동일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산부는 발밀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바닥면에 단차가 없으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로 계획한다.
- 보행접근로의 유효폭은 유모차 및 영유아 동반자가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고 통행하고, 휠체어 등이 회전할 수 있도록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으로 한다.

법적근거 표기

-  가급적 유모차가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1.8m 이상 확보하며,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2.3m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한다.



주출입구 근처에 자전거치대를 설치

시설중합안내도

햇볕,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붕 등을 설치

중단기울기 1/20 이하
횡단기울기 1/100 이하

애완견이나 장애인의 보조견을 묶어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유도폭 1.5m 이상 (1.8m 이상 권장)

보행보조기 등을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선형블록 대신 바닥마감재의 질감차이 등을 이용하여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유도 (폭 1.5m 정도)

배수로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걷기 쉬운 재료로 마감

단차가 없고 계단이나 경사가 없는 보행접근로

70

II. 공공공간

1. 공공공간 개요

1.1 개요

2. 가로

- 2.1 정의 및 적용대상
- 2.2 보도
- 2.3 보차도 분리
- 2.4 횡단보도
- 2.5 차량진출입부
- 2.6 속도저감시설
- 2.7 자전거 도로

3. 공원

- 3.1 정의 및 적용대상
 - 3.2 공원 입구
 - 3.3 공원 보행로
 - 3.4 화장실
 - 3.5 휴게시설
 - 3.6 편의시설
 - 3.7 안내시설
-

II. 공공공간



1. 공공공간 개요

1.1 개요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영역의 공공공간(공원 및 휴양, 가로)을 어린이,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의 사용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 부합되게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가로, 공원 등의 공공공간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의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기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에 의해 정비되어야 할 중요한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다.
- 공원 및 휴양의 영역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항목 중 공원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생태원, 수목원, 휴양림, 식물원 등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므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정비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 가로의 영역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항목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라는 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보행자 전용도로, 스쿨존, 특화가로 등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그림 2-1> 경기도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공공공간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세부 설계지침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타 세부 규정은 아래의 각 법률의 기준에 준한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의 7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한다.
-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향후 수립될 경기도 공공공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수립시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본이 된다.

경기도 공공공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공공공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2011년 개발 예정)



<그림 2-2>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천내용

심미성

- 색상, 재질, 설치방법 등 공공공간을 이루는 요소들이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은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편리성

- 보행동선은 경사로나 단차 없이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동선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 공공건축물,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사용자의 휴식이나 편의를 도모하는 설비나 시설물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편리성을 확보한다.

쾌적성

-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며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테마가 있는 공간, 금연구역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공공공간의 보행통로, 화장실, 휴게 및 편의시설물 등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관리하기 쉽고 쾌적함을 주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환경성

- 신설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공공공간의 모든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소재나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태양, 바람, 식재 등 자연적인 요소를 적극 활용하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재활용 자재의 사용 등을 고려한다.

안전성

- 불필요한 단차나 보행장애물을 없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보행자 동선과 자전거나 자동차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CPTED)¹⁾ 기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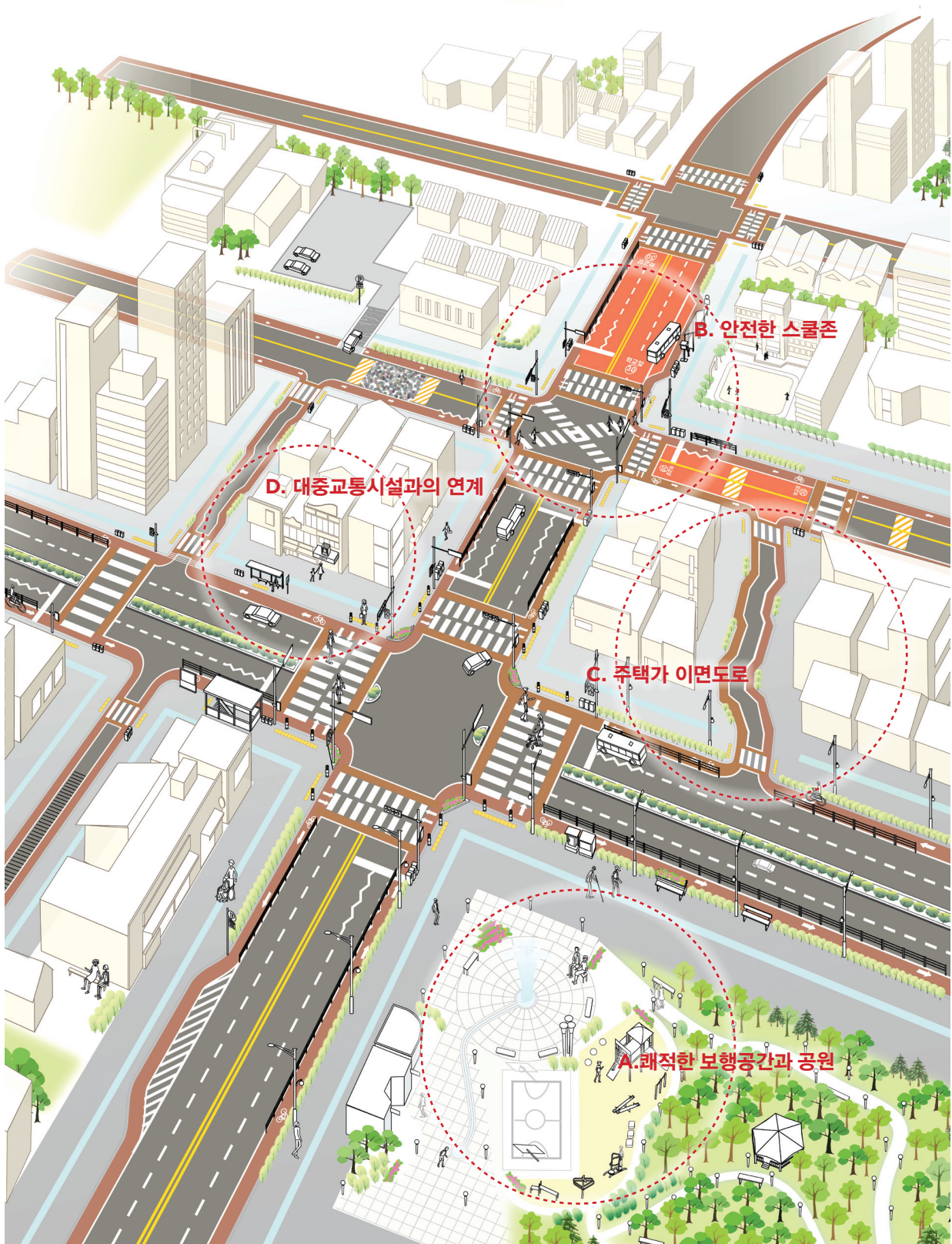
¹⁾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종합적인 대책을 말하는 것으로, 환경을 범죄가 발생하기 불리한 상황으로 설계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CPTED의 기본원리는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 강화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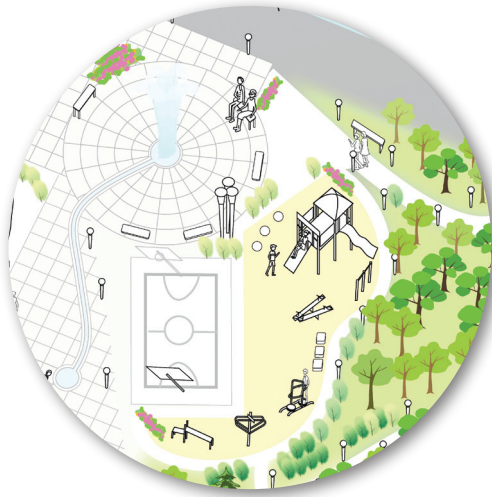
선택성

-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있는 공간은 이용시 차별감이나 소외감이 없도록 동일한 보행동선에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 공공공간의 용도와 이용행태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 α (지역성)

- 각 시·군별로 지리적, 문화·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경기도의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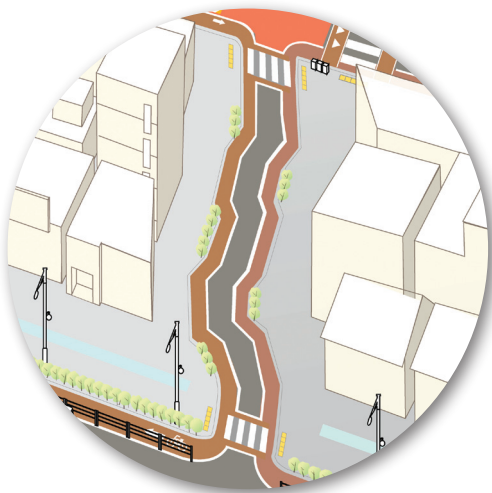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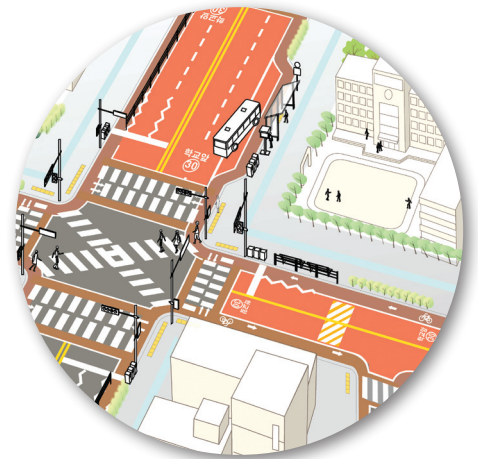


A. 쾌적한 보행공간과 공원

- 단차나 높낮이의 변화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p.79)
-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의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섬식 횡단보도 설치 (p.93)
-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벤치, 공중전화 등의 편의시설물을 적재적소에 설치 (p.228)
- 교차로 등 가로에 접하여 공원이나 광장 등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장소 제공
- 공원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G화장실 설치 (p.112)

B. 안전한 스쿨존

- 학생들이 단차 없이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스크램블 교차로 등 설치 (p.91)
- 학생의 안전을 등하교를 위해 학교 주변에는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노면표시 등의 속도저감시설 설치 (p.96)
- 키가 작은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교차로 주변에는 낮은 식재와 개방감이 있는 보도펜스 설치 (p.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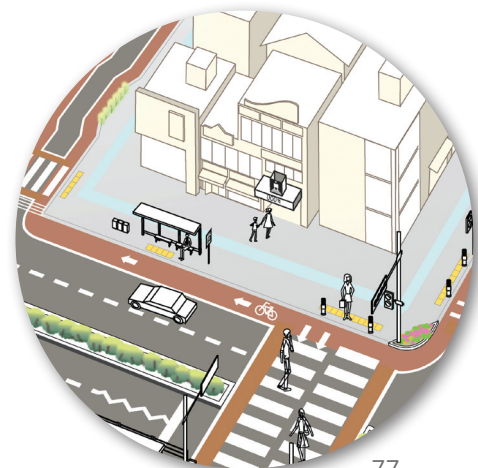


C. 주택가 이면도로

- 단차가 없고 높낮이의 변화가 없는 걷기 쉬운 보도 조성 (p.79)
- 보차도의 경계부분인 횡단보도에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p.92)
-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과속방지턱, 지그재그형 도로 등의 속도저감시설 설치 (p.96)

D.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

-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버스승차대, 택시승차대 등 설치 (p.223)
- 지하철 등의 출입구는 건축물과 연계 설치하여 가로에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 (p.199)



II. 공공공간



2. 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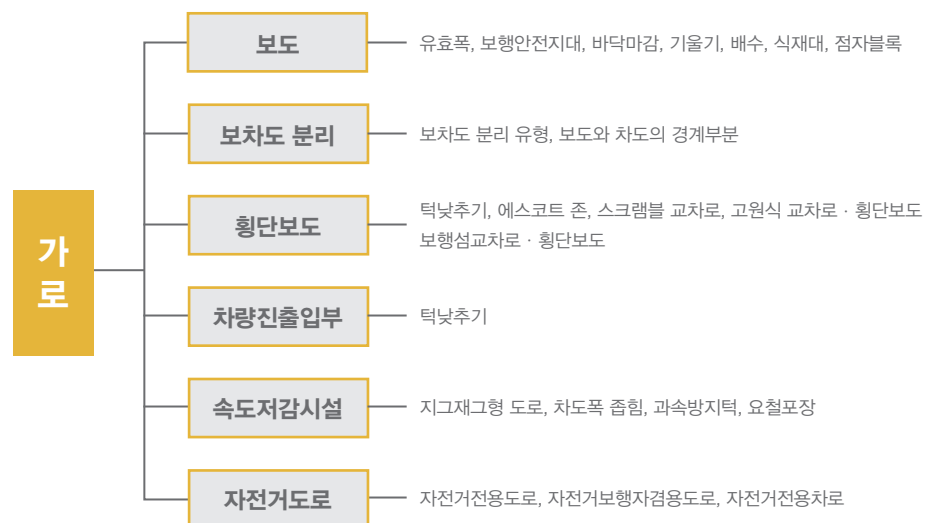
2.1 정의 및 적용대상

정의

- 가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공공공간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의 목적인 경기도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가로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보행자가 불편함 없이 연속적인 통행동선을 확보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 구현 되도록 단차 없는 보도, 보차도 분리, 턱낮추기 등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설치·관리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에 지정하는 가로는 차량통행이 위주인 고속도로 등을 제외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일반도로를 말하며,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
- 본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보도 폭이나 기울기 등의 설계지침을 지형상 등의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기존 도로는 예외로 하지만, 가급적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해하여 다른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림 2-3> 가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2.2 보도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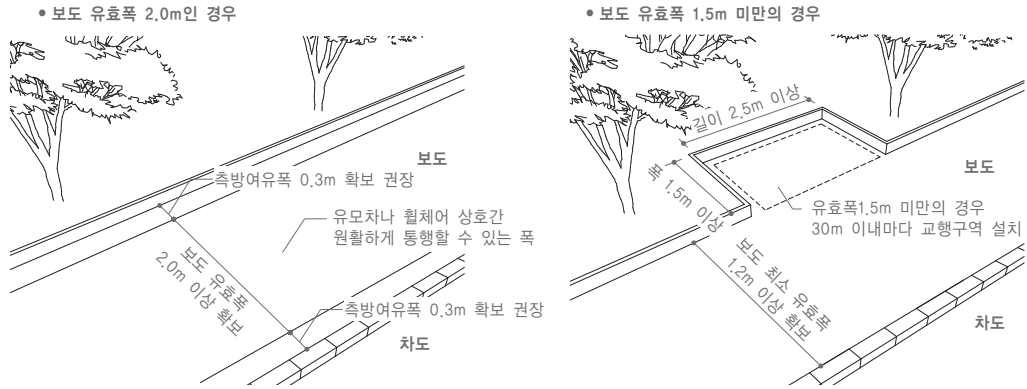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하며,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나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과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하며,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행자는 보도에서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보도의 안전보행로 확보를 위해 간판,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 보행장애물이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보도는 단차가 없고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가급적 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 등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수단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하며, 인근의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 투수성 재료나 친환경 소재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어린이, 유모차,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어느 누구든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
- 우천, 폭염, 폭설 등 기후변화를 반영한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유효폭

- ☑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휠체어 또는 유모차 사용자 상호간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2.0m 이상 확보해야 한다¹⁾.
-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보도펜스, 가로등, 가로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들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²⁾.
-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¹⁾.
- ☑ 유효 폭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30m 이내(법적치수 50m) 마다 폭 1.5m 이상, 길이 2.5m 이상(법적치수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교행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¹⁾.
- ☑ 보도의 유효폭의 양측면에는 측방여유폭을 0.3m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한 보도 유효폭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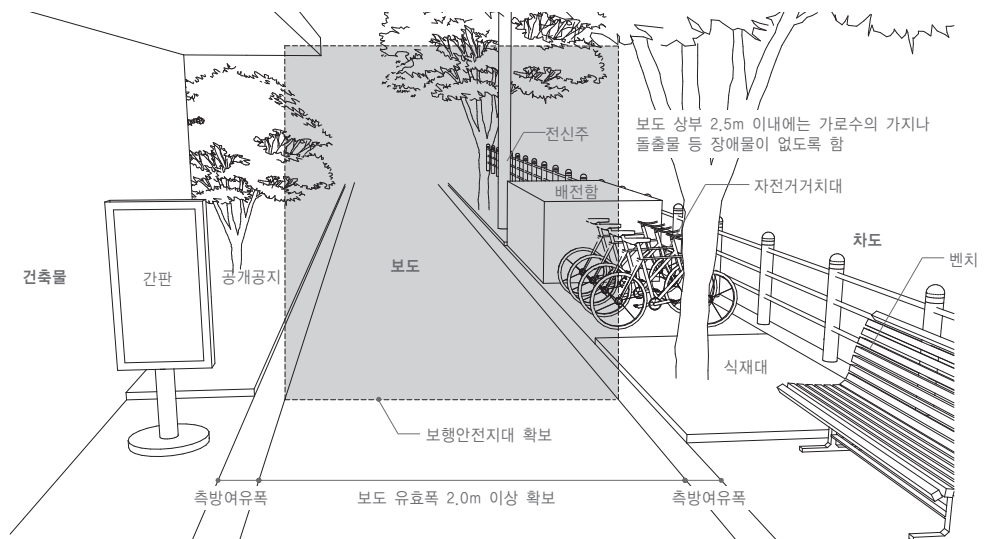
보행안전지대

☑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의 유효폭과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 이내(법적치수 장애물은 2.1m 이하)¹⁾에는 가로수의 가지나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해야 한다.

- 자전거 주행공간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안전지대의 유효폭 경계부분에는 경계석을 설치하고 바닥재의 질감 또는 색상 차이 등을 두어 보행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건물 간판, 가로등, 전신주, 소화전은 물론 편의를 제공하는 벤치, 자전거보관소 등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¹⁾.
- 식재대나 가로시설물 등을 한 곳에 모아서 설치하면 보도내 장애물이 제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 권장 : 보행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보행공간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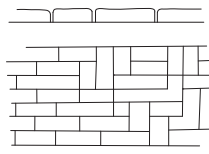
바닥마감

㉔ 바닥표면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¹⁾, 일체성을 가진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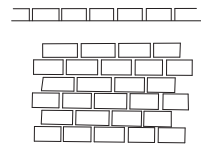
-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유모차가 가급적 흔들리지 않으며, 이음새 틈에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좁고 잘 채워진 이음새로 한다¹⁾.
- 바닥포장재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고 0.5cm 이상의 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바닥포장재는 특정기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색채나 종류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패턴을 사용하는 등의 조잡함을 지양한다.
- 타일계열의 바닥포장재는 줄눈을 좁혀 보행시의 불편을 줄이고, 사고석 계열의 거친 마감은 가급적 지양한다.
- 투수성 보도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보도포장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BPN(British Pendulum Number)²⁾ 기준으로 평지 및 기울기 1/50 이하는 40BPN 이상, 기울기 1/50-1/10의 완경사는 45BPN 이상, 1/10 이상의 급경사는 50BPN 이상으로 한다²⁾.
-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연석과 경계석 모두 미끄럼 저항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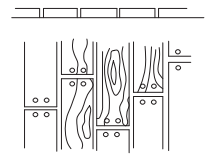
- 넓고 평탄한 바닥마감재
- 이음새 틈이 좁은 표면처리



- 고정되고 단단한 표면처리
- 이음새 틈이 없는 표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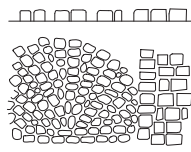


- 평탄한 표면처리
- 좁고 잘 채워진 이음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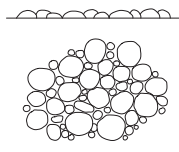


- 잘 고정된 목재데크
- 조밀하고 일정한 이음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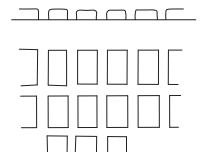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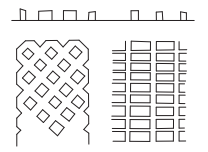
- 잘 채워지지 않은 이음새 틈
- 불규칙한 이음새 틈



- 울퉁불퉁한 표면처리
- 고정되지 않은 바닥마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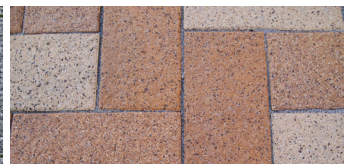


- 디딤면보다 투수면이 큰 블록
- 이음새 틈이 넓은 표면처리



- 디딤면보다 투수면이 큰 블록
- 잘 채워지지 않은 이음새 틈

▲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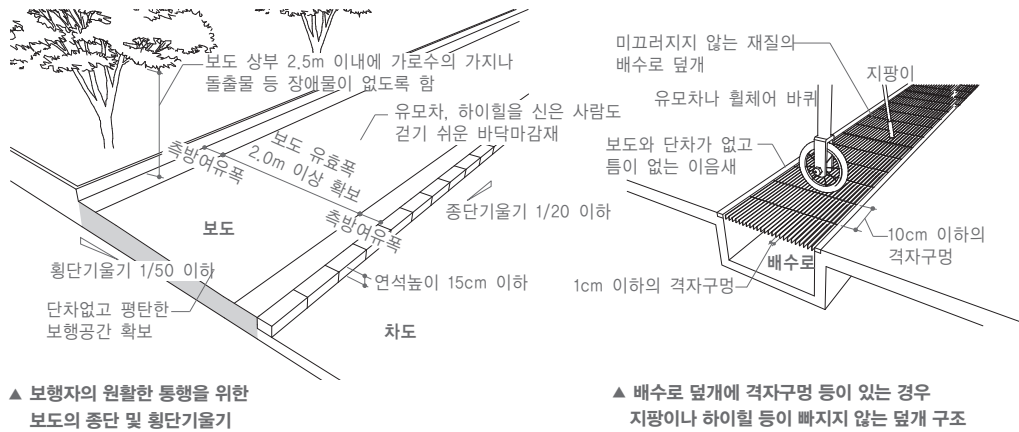
▲ 권장 : 유모차나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걷기 쉬운 바닥마감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2)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여 미끄럼 저항기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현행 일반보도와 횡단보도에 대한 미끄럼 저항 기준은 없으며, 점자블록(KS규격)은 20BPN 이상, 연석은 40BBP 이상이다.

기울기

- 보도는 단차가 없는 평탄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한다.
- ☑ 진행방향의 종단기울기는 1/20 이하(법적치수 1/18 이하)를 권장하며, 지형상 또는 기존 도로의 중·개축시 불가피한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할 수 있다¹⁾.
- ☑ 진행방향의 횡단기울기는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1/50 이하(법적치수 1/25 이하)¹⁾를 권장한다.



배수

- ☑ 보도에 보행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¹⁾,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덮개의 표면은 보도 포장마감재와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며, 보도 포장재와의 이음새 간격을 최대한 좁혀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부득이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1cm 이하의 간격이 되도록 하고¹⁾, 보행자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우수 처리는 보행 진행방향이 아닌 식수대나 차도 쪽으로 배수하도록 한다.

식재대

- ☑ 도로나 건물에 접한 경계부에는 식재대를 적극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보행환경이 되도록 한다.
- 가능한 많은 곳에 녹지대를 조성하며, 식재대 조성 시에는 수목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차단용, 경관용 등 수목의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 수종이나 수목의 높낮이를 다양하게 하여 사계절 전체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섬의 주변에 식재대를 조성할 경우, 횡단대기공간의 좌측 식재대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수목의 높이는 5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확보되는 보도는 점자블록(특히 선형블록)을 설치하기보다는 바닥 포장재의 재질, 색상, 질감 차이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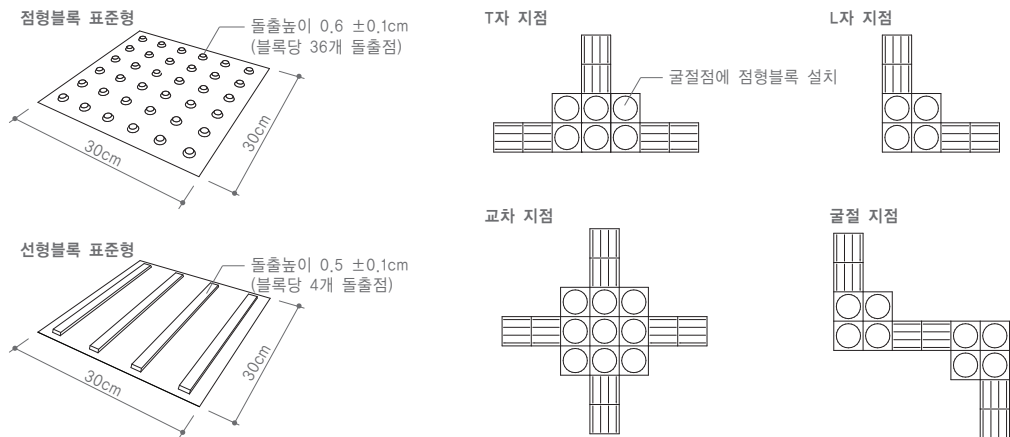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보도,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교통시설, 버스승차대, 횡단보도 등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
-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30cm, 점형블록의 돌출점 높이는 0.6±0.1cm, 선형블록의 돌출선 높이는 0.5±0.1c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¹⁾.
- 점형블록은 건물출입구, 가로시설물 등 장애물이 있는 지점, 방향전환 지점, 보도와 차도가 만나는 지점, 높이차가 있는 바닥면이나 추락위험이 시작되는 지점 등에 경고 및 주의환기용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최소로 한다.

☑ 경고 및 주의환기용 블록은 보도의 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한 유도과 경고가 필요한 지점 등에 반드시 음성이나 진동 등과 함께 복수의 정보를 제공한다.

- 유모차나 휠체어가 선형블록을 직교하여 통과하는 경우, 가급적 충격을 최소화하여 바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선형블록의 돌출선간의 간격을 10cm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점자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40BPN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선형블록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장애물이 완전 배제된 선형블록 좌우측의 최소폭은 각각 최소 0.9m 이상이 필요하며, 가급적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원칙적으로 황색 계열을 사용하되, 설치장소의 주변상황에 따라 조화를 잘 이루면서 명도나 채도의 차이가 큰 점자블록이나 질감이 다른 바닥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²⁾.



▲ 점자블록의 표준형 규격과 설치방법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기타

- ㉔ 버스승차대 및 지하철 등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하고, 보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공원, 광장, 건축후퇴선 내의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공간은 폐쇄적인 담장 대신 식재 등으로 개방감을 확보하여 보행자가 보다 쾌적하며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으로 계획한다.
- 지역의 특성을 문화적 콘텐츠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보행전용거리 등 특성에 맞는 보도로 조성한다.
-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CCTV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 ㉕ 횡단보도 대기공간 주변 등 보도의 적재적소에 잠시 비를 피하거나 여름철에는 그늘을 만들어 쾌적한 공간을 확보한다.
- ㉖ 겨울철의 폭설시 보도에 쌓인 눈을 쉽게 제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뉴욕(NEW YORK)의 가로정비 전후의 사례¹⁾

1) 출처 : www.nyc.gov
2009년 뉴욕시의 미드타운을 위한 그린 라이트 프로젝트(the Green Light for Midtown Project) : 뉴욕의 중심가로를 보행자 최우선으로 정비한 결과, 보행자의 사고가 35% 감소하였고 타임스퀘어와 헤럴드 스퀘어의 보행자 수는 각각 11%,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가로 정비는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2.3 보차도 분리

기본지침

- 보도와 차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도와 차도를 분리할 경우에는 도로 폭, 간선도로 여부, 보행자 및 자동차 교통량, 주택지·상업지 등 주변여건 및 공공시설 유무, 사유지의 높이, 도로의 종횡단 기울기 및 배수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차도 분리 유형을 선택한다.

보차도 분리 유형¹⁾

- ㉠ 횡단보도의 턱낮추기에 발생하는 경사를 최소화하여 가급적 보도면의 높이 변화가 없고 보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유형과 세미플랫폼 유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신설되는 보도의 경우에는 플랫폼유형과 세미플랫폼 유형을 권장하지만, 기존도로의 개보수시에는

- 기존건축물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보도의 유형을 결정하도록 한다.

플랫폼 유형은 보도면이 연석보다 낮고 차도면의 높이와 동일한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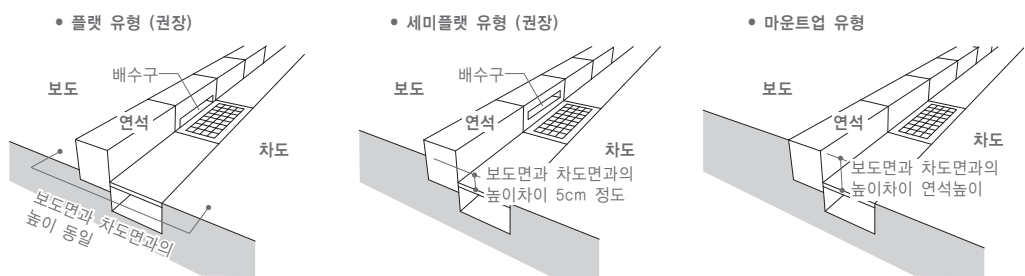
- 자동차 교통량이 적은 도로에 적합하며,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부의 턱낮추기로 인한 경사가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평탄한 보도면을 유지할 수 있지만 배수처리에 주의해야 한다.

세미플랫폼 유형은 보도면이 차도면보다 약간 높고 연석높이보다는 낮은 유형이다.

- 횡단보도나 차량 진출입부의 턱낮추기를 완만한 경사 처리로 가능하며, 보도면의 높이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면을 차도면보다 5cm 정도 높게 하도록 권장한다.

마운트업 유형은 보도면이 차도면보다 높고 연석높이와 동일한 유형이다.

- 자동차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적합하며, 보도면과 차도면의 단차가 커서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의 턱낮추기 부분에 경사부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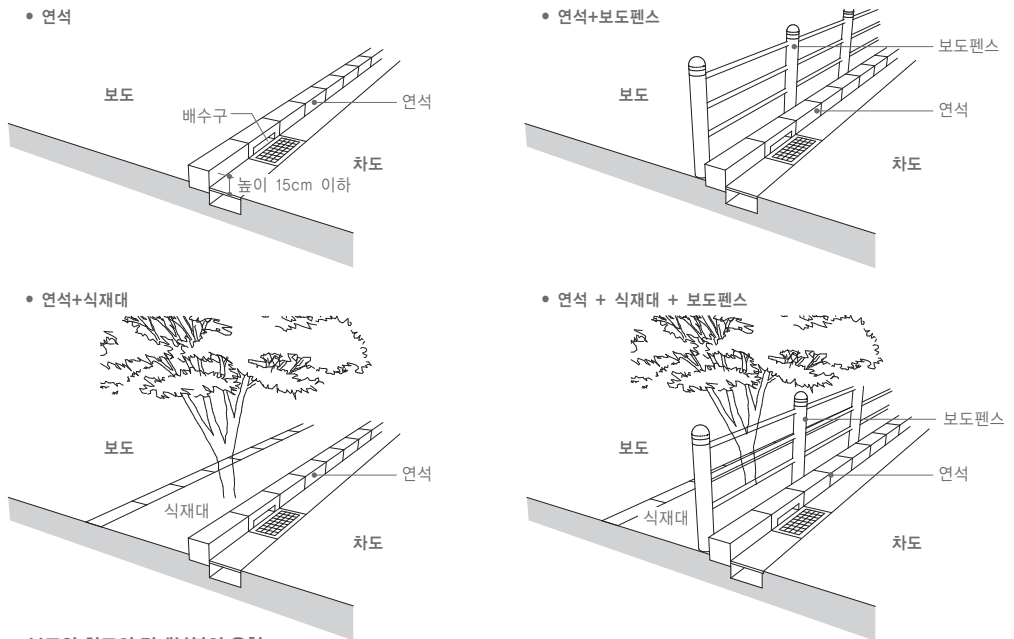


▲ 보차도 분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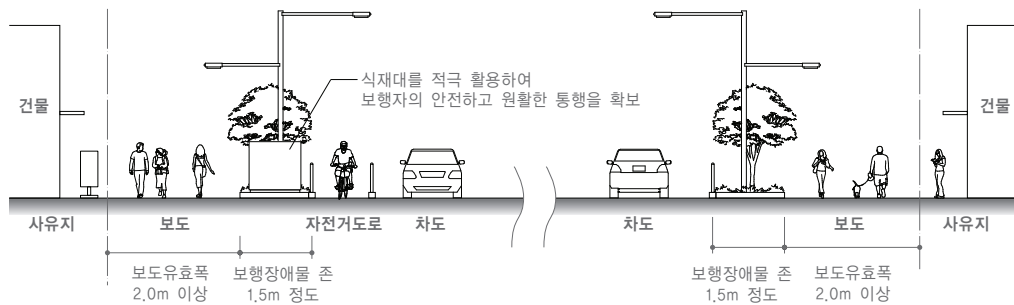
1) 국토해양부 보행우선구역 설계매뉴얼, 2009

보차도의 경계부분

- 보차도의 분리는 연석, 바닥마감재의 질감이나 명도의 차이, 보도펜스, 식재대 또는 이들을 병용하여 통행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
- 보도와 차도의 높이 차이를 둘 경우에는 보도를 차도보다 높게 한다.
- ☑ 보차도 분리를 위한 연석의 높이는 15cm 이하(법적치수 25cm 이하)¹⁾를 권장하며, 식재대나 보도펜스 등과의 병설을 고려하여 가급적 낮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차량통행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연석과 함께 가드레일과 식재대를 병행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연석의 색상은 보도 포장재의 색상과 다르게 하여 식별하기 쉽게 한다.
- 횡단보도와 차도의 교차지점에서도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 단지내 도로,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도로에서는 보차도의 교차시 보도의 높이 유지가 차도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의 유형



▲ 권장: 플랫폼형 또는 세미플랫폼형의 경우 보차도 분리의 설치 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4 횡단보도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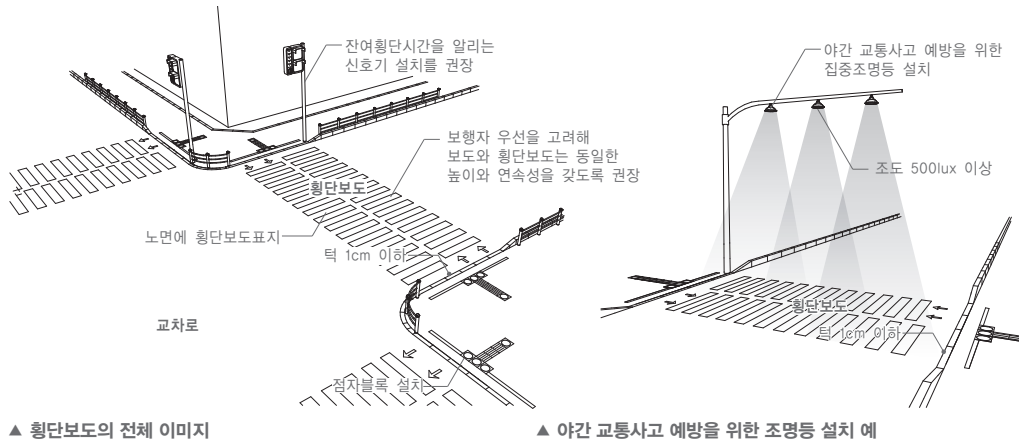
- 보도는 보행자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지하보도나 보도육교 설치를 지양하며, 가급적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보행거리가 짧은 교차로로 계획한다.
- 보행거리를 짧게 하기 위하여 스크램블 교차로 혹은 보행광장 등의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
-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이가 연속되도록 한다.
-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차도면의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도면의 높이에 맞추도록 한다.

일반사항

-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¹⁾.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에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¹⁾.
 - 도로 폭이 넓고 횡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신호등 횡단보도에서는 잔여횡단시간을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해야 한다¹⁾.
 - 횡단보도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한다¹⁾.
 - 차도폭이 약 5.0m 이상의 생활도로로 자동차의 교통량 및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하며, 시야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한다.
 - 보도와의 횡단보도 경계부분에는 배수구 및 맨홀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G** 턱낮추기를 하는 연석과 횡단보도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45BPN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점자블록을 설치할 경우 음향신호기 전면에 우선 위치되도록 한다.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의 가로등은 일반가로등과 달리 집중 조명등을 설치하며 조도는 500 lux 이상으로 한다.
 - 집중 조명등은 편도 4차로 이상 횡단보도에 전범위를 투광할 수 있는 범위에 설치하며, 조명등은 3구 이상을 설치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사고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도록 한다.
-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다.
- 야간에 표시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명한다.



▲ 횡단보도의 전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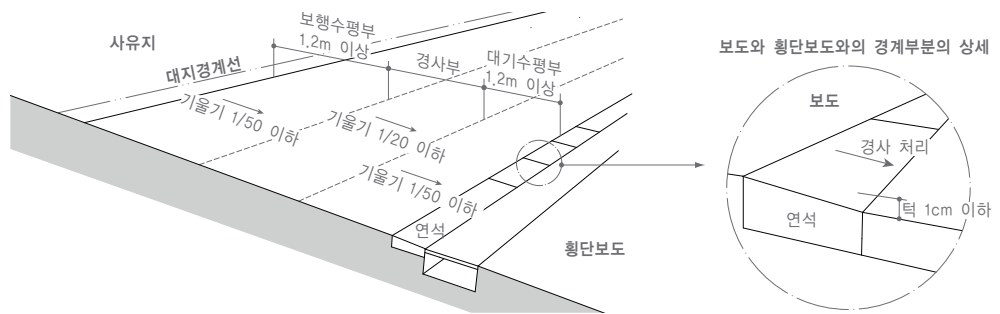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등 설치 예

턱낮추기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¹⁾.
-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1cm 이하(법적치수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되, 연석만을 낮추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¹⁾.
- ☑ 가급적 높이 차이 1cm는 연석에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 주택가 · 학교 주변의 편도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하도록 권장한다.
-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의 구조는 1.2m 이상의 보행수평부, 기울기 1/20 이하의 경사부, 1.2m 이상의 대기수평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의 대기수평부의 폭은 횡단보도의 폭과 같도록 한다.
- ☑ 보도의 보행수평부를 1.2m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좁은 보도의 경우에는 보도면 전체를 턱낮추기 하도록 권장한다.
-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연석경사로와 부분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한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기울기는 1/20 이하(법적치수 1/12 이하)로 하며,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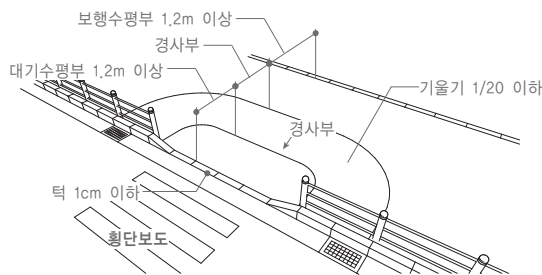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할 수 없거나, 유효폭이 2.0m 이하인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에서는 유효폭이 0.9m 이상인 부분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 바닥감재가 변화하거나 바닥시설물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차로 인해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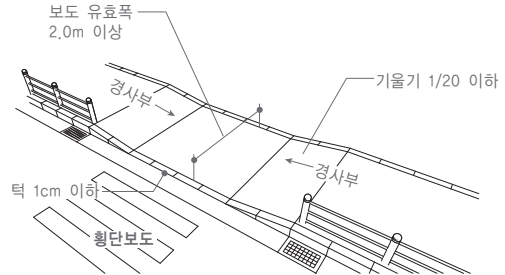


▲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보도면의 설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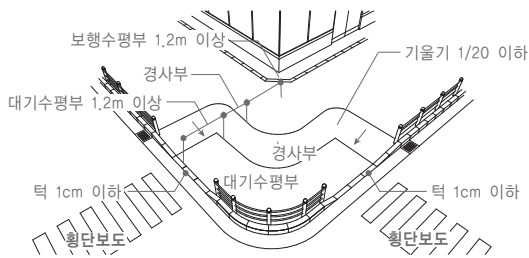
• 보도폭이 넓은 경우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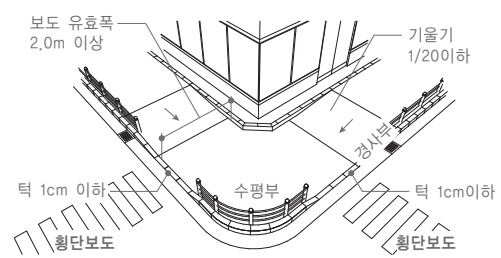
• 보도폭이 좁은 경우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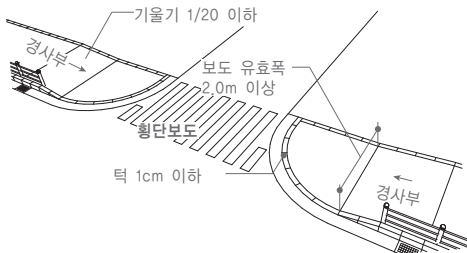
• 보도폭이 넓은 경우 (교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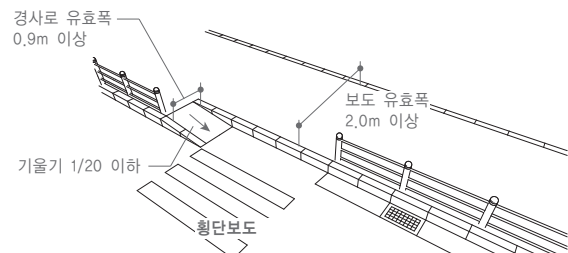
• 보도폭이 좁은 경우 (교차로)



• 곡선부 보도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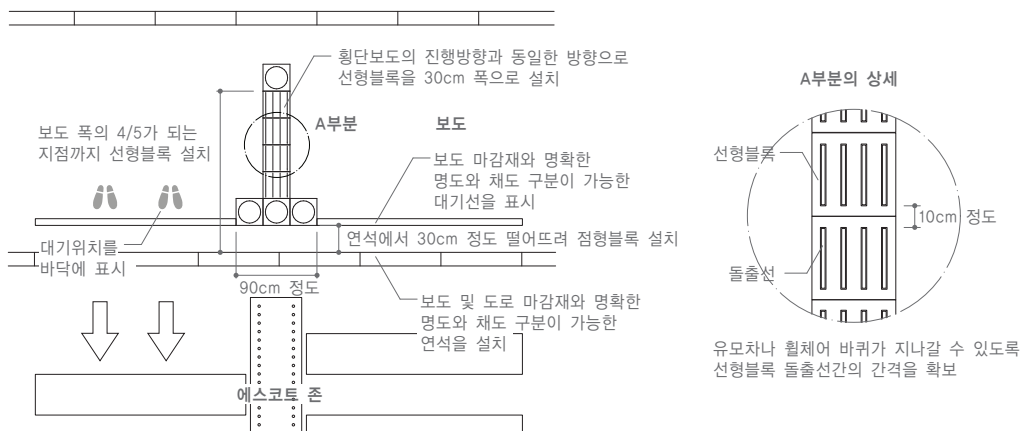
• 보도 전체를 턱낮추기 곤란한 경우 (부분경사로)



▲ 횡단보도와의 단차를 없애는 턱낮추기

점자블록

- 횡단보도나 보행섬의 진입부분 등에는 90cm 정도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중앙에 설치한다.
- 점형블록은 연석에서 30cm 정도 떨어뜨리고, 30cm 정도의 범위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점형블록을 설치하지 않는 진입부분에는 폭 10cm의 백선과 발자국 등의 노면표시를 통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대기하도록 유도한다.
-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치하며,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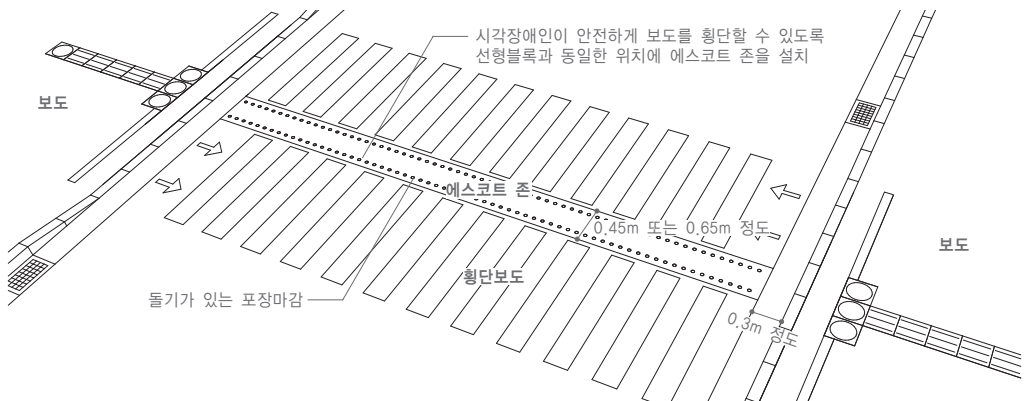


▲ 권장 : 횡단보도에서 점자블록의 설치 예

에스코트 존

☑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 중앙에 돌기가 있는 포장마감으로 처리된 에스코트 존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에스코트 존은 보도의 선형블록 설치방향과 일치하도록 횡단보도 중앙에 배치하고, 포장마감은 돌출높이 0.5cm±0.1cm 정도의 견고한 돌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에스코트 존은 폭 0.45m 또는 0.6m 정도로 하며, 보도와의 경계부분에서 0.3m 정도 떨어뜨려 설치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에스코트 존의 설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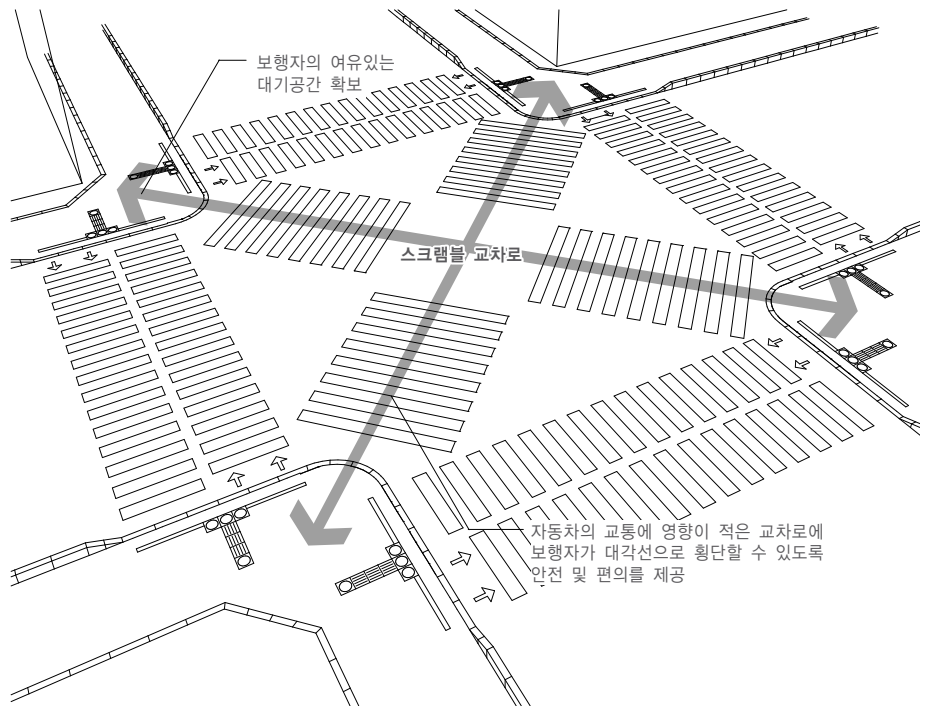
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스크램블 교차로

- 횡단보행자를 위해 차량의 교통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교차로의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막고 보행자가 교차로를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어, 주로 사람의 통행이 많은 변화가의 교차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G 스크램블 교차로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할 때 유리하지만,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교통량이 적은 곳이나 스쿨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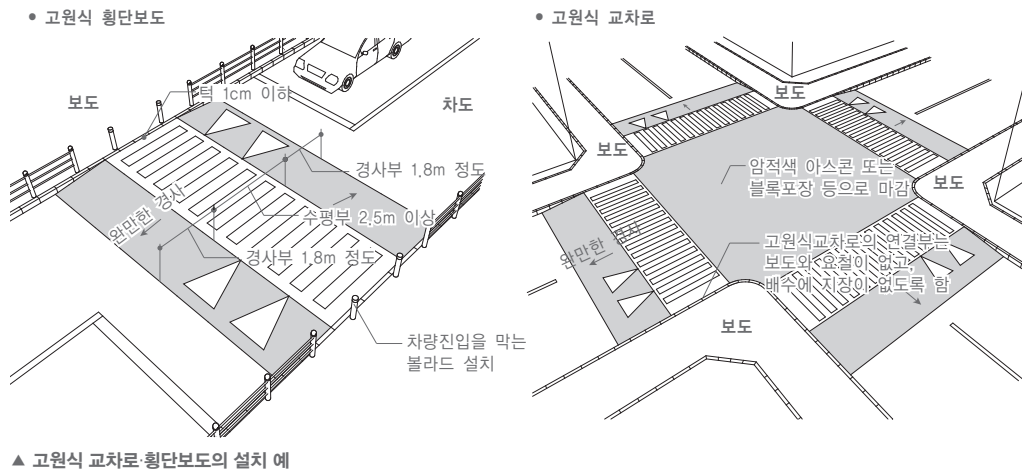
-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시간을 보행자의 통행량에 맞게 조정하며, 보행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보행자의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 스크램블 교차로의 설치 예

**고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 차도 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¹⁾.
- ☑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m 이상으로 해야 한다¹⁾.
-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¹⁾.
-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표지, 볼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¹⁾.
-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해야 한다¹⁾.
-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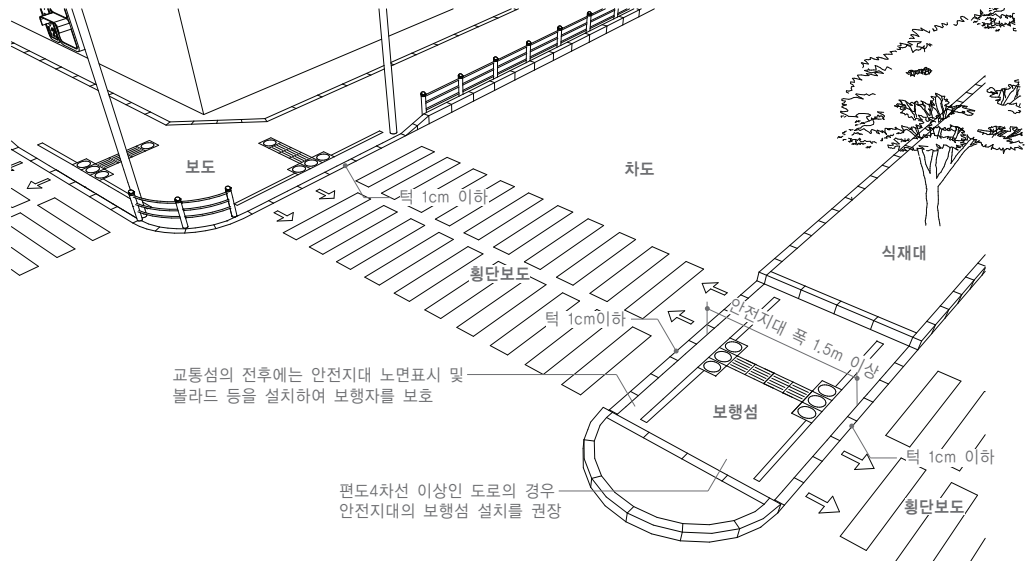


▲ 고원식 교차로·횡단보도의 설치 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보행섬식 교차로
횡단보도**

-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도로의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에 횡단을 위한 일시적인 대기장소(이하 '보행섬'이라 한다)를 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¹⁾.
- 보행섬은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형태 또는 굴절형태의 횡단보도 중앙에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¹⁾.
- 보행섬의 최소 폭은 1.5m로 해야 한다¹⁾.
- 보행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볼라드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를 방지해야 한다¹⁾.
- G 차도의 편도차로수가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중앙에 일시대기 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G 안전지대의 바닥과 차도와의 높이는 1cm 이하(법적치수 2cm 이하)¹⁾로 하며, 가급적 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넓은 차도에서는 안전지대에 보행자용 교통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설치 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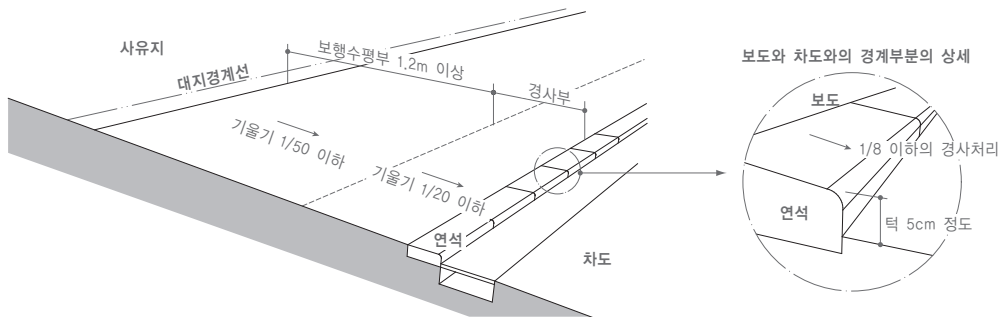
2.5 차량진출입부

기본지침

- 차량진출입부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최소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보도면은 높이변화가 없이 연속성을 갖도록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한다.

턱낮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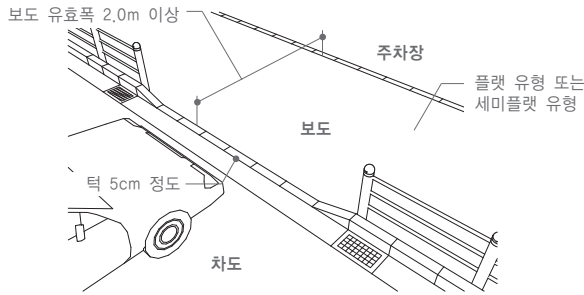
- ㉔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낮추기를 해야 한다¹⁾.
- 차량진출입부의 보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 차이는 5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보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 차이가 5cm 이상인 경우에는 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되, 연석 자체부터 기울기를 만들어 보도에 최대한 경사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㉔ 차량진출입부의 경사로는 보도 유효폭 2.0m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하도록 하며, 식재대가 있는 경우에는 식재대 폭을 활용한 기울기로 경사로를 설치한다.
- 보도 폭이 좁아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 폭 만큼 보도면 전체를 턱낮추기를 한다.
- 차도 부분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배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의 바닥마감재는 색상 및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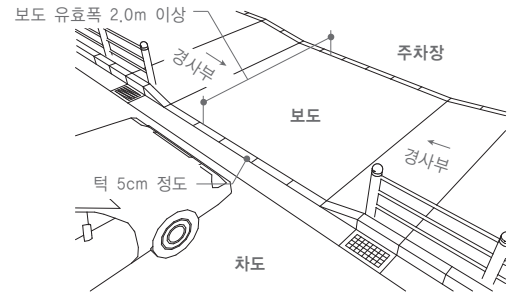
▲ 차량진출입부의 턱낮추기 설치기준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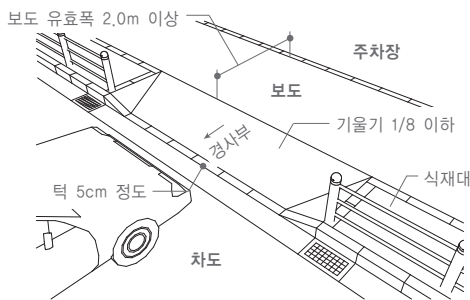
- 차도면의 높이 차이가 5cm 이하의 경우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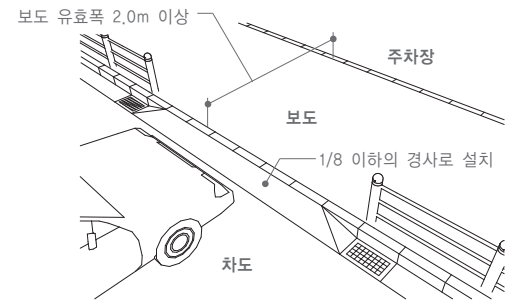
- 보도폭이 좁고 차도면과 높이 차이가 5cm 이상의 경우



- 식재대 등이 있고 차도면과 높이 차이가 5cm 이상의 경우 (권장)



- 차도의 길어깨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차량진입부의 바닥패턴 및 색상을 달리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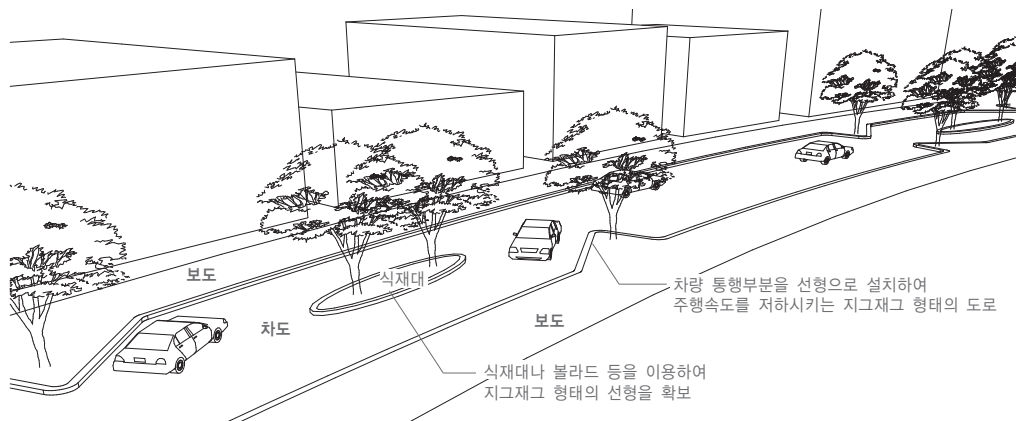
2.6 속도저감시설

기본지침

-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스쿨존 등에는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기 위한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한다.
- 속도저감시설은 도로를 선형의 지그재그형으로 만들기, 차도의 일부 폭을 좁히기, 과속방지턱 설치, 요철 포장 등의 수법을 활용한다.

지그재그형 도로

- 차량통행부분의 선형은 운전자의 빈번한 방향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낮추게 하기 위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할 수 있다.
-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볼라드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지그재그 형태의 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 주차를 허용하는 도로의 좌우에는 교대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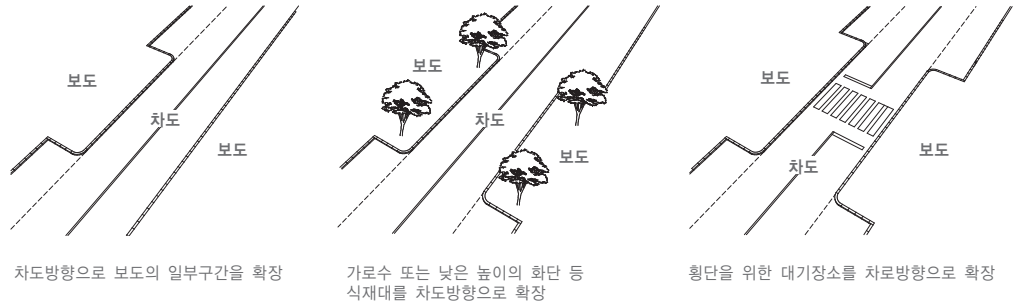
▲ 식재대 등을 활용한 지그재그형 도로



▲ 지그재그형 도로의 설치 예

차도폭 좁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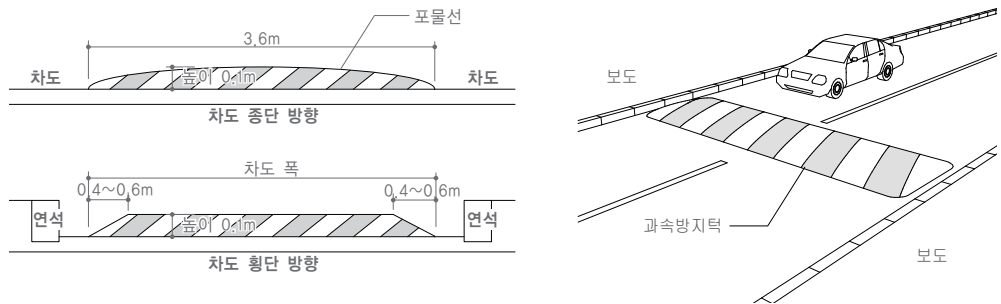
- 보행자를 우선하는 도로에는 차도폭을 좁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확보한다.
- 운전자가 주행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차도의 폭을 좁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도의 폭이 좁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 차도폭 좁힘의 설치 예

과속방지턱

- 도로구간 및 교차로구간에는 운전자의 과속을 억제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연속적인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통과하더라도 승차자, 차체 및 운행 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¹⁾.
- 과속방지턱의 폭은 차축의 폭이 넓은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좁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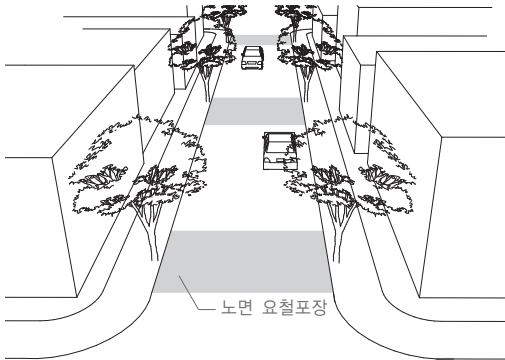


▲ 과속방지턱의 설치방법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요철포장

- 노면을 작은 요철형태로 포장하여 미세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¹⁾.
- 노면의 요철포장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설치하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지양한다¹⁾.
- 횡단보도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는 요철포장의 설치 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2.7 자전거도로

기본지침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자동차와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자전거의 교통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 반영, 연속적인 주행 확보, 자전거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친환경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된다¹⁾.

주행공간

- 자전거도로의 상부, 양측면에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 자전거도로의 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1.1m 이상)²⁾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5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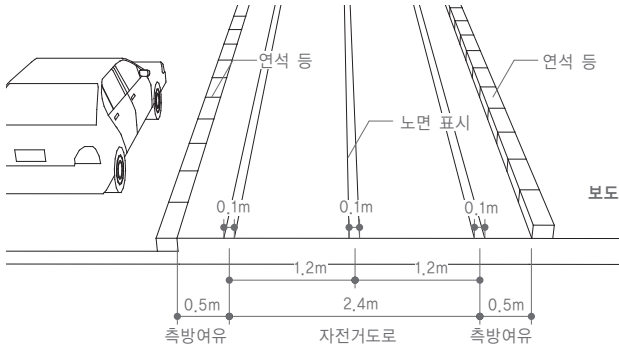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 자전거전용도로는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양방향을 기본으로 하며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도시지역 : 양방향 2.4m (일방향 1.5m)
 - 지방지역 : 양방향 3.0m (일방향 1.5m)
 - 공원, 하천둔치 : 양방향 3.0m (일방향 1.5m)
- 자전거전용도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5m 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차도에 분리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며, 차량이 자전거사용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 폭을 확보한다.
 - 60km/h 이하 : 0.5m 이상
 - 60km/h 초과 : 1.0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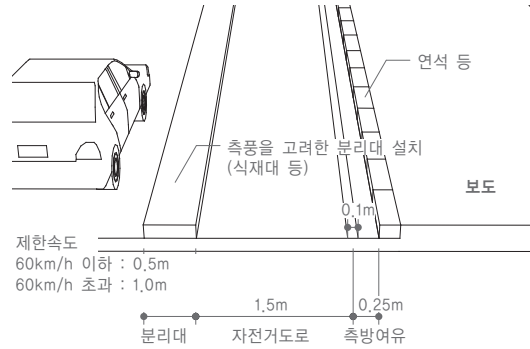
1)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기본형의 경우



• 분리형의 경우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방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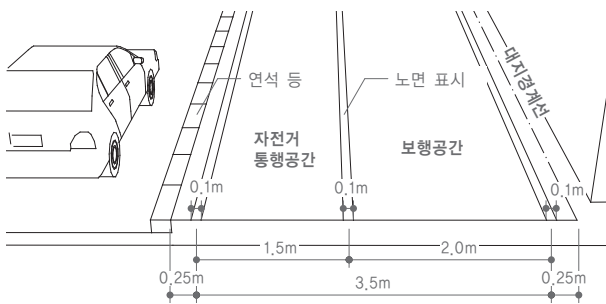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장소에 따라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하며, 분리형과 비분리형의 폭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분리형의 도시지역 : 자전거도로 1.5m(일방향) + 보도 2.0m = 합계 3.5m
- 분리형의 강변 등 : 자전거도로 2.4m(양방향) + 보도 1.5m = 합계 3.9m
- 비분리형의 도시지역과 강변 등 : 3.0m(자전거와 보행자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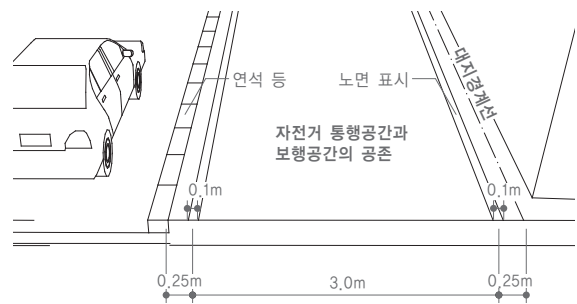
• 분리형으로 설치할 경우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25m 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분리형의 경우



• 비분리형의 경우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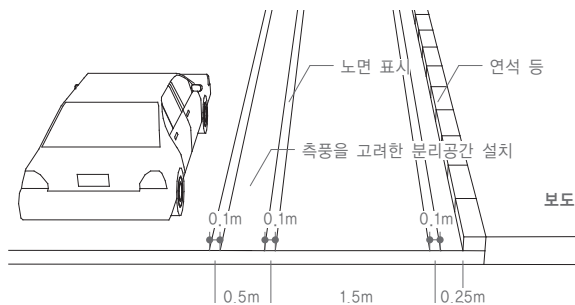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전용차로란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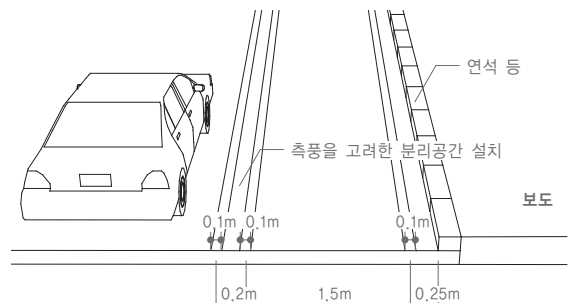
G 자전거전용차로의 폭은 1.5m 이상을 확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 1.2m까지 설치할 수 있다¹⁾.

- 도시지역에서 1.5m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측대를 일부 포함하여 자전거전용차로를 설계할 수 있다.
- 제한속도 60km/h 초과하는 도로에서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지 않는다¹⁾.
- 차량이 자전거사용자에게 미치는 측풍을 고려하여 분리공간을 자전거전용차로와 차도 사이에 확보해야 하며,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공간의 폭을 확보한다¹⁾.
 - 50km/h 초과 ~ 60km/h 이하 : 0.5m 이상
 - 50km/h 이하 : 0.2m 이상
- 분리공간은 백색 복선(실선 또는 점선) 또는 단선으로 표시하며, 차선과 차선의 중앙까지의 폭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전용차로는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과 공유되는 구간의 처리가 중요하다.
- 자전거전용차로의 측면에는 가급적 0.25m 이상의 측방여유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 제한속도 50km/h초과 ~ 60km/h 이하의 경우



• 제한속도 50km/h 이하의 경우



▲ 자전거전용차로 설치 방법

1)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포장 및 배수

- ㉔ 자전거도로의 포장면은 평탄성이 유지되고 다른 도로부분과 구별이 쉽도록 색깔을 달리하여 포장을 해야 한다.
- 자전거전용차로는 차도의 배수기준을 적용하며,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횡단기울기를 1.5%~2.0%로 하며, 적절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측구, 집수정, 맨암거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¹⁾.
- ㉕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자전거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을 BPN(British Pendulum Number) 기준 4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㉖ 우천시 등을 고려한 투수성 포장재를 적극 활용하며, 다설지역에서는 20cm 이상의 비동결 방지층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포장의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로, 이면도로, 시·종점 등 상충구간(Conflict Zone)에는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암적색으로 포장한다¹⁾.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사용자의 즐거움을 위해 노면의 재질, 공원, 하천, 주변 가로수나 상점 등 경관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도로와의 평면교차

-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와 평면교차할 경우, 교차각은 90° 이상으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m 이상 구간은 시야의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¹⁾.
- 교차점으로부터 25m 이상 구간에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기울기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방 3.0m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의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¹⁾.
-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자전거도로의 양측 가장자리에 가로 30cm, 세로 30cm의 야광 백색점선을 설치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II. 공공공간



3.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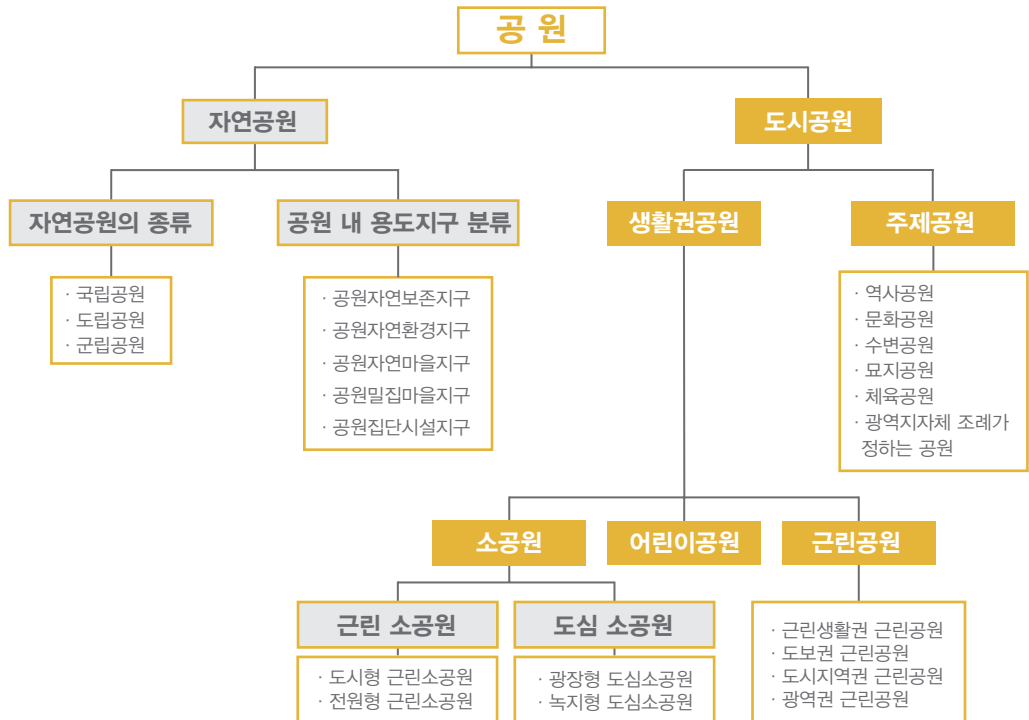
3.1 정의 및 적용대상

정의

- 공원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광장, 수목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공공공간이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공원은 위치, 지형, 이용형태 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설계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물리적인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적 대응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용하기 좋은 공원이 되도록 설치·관리한다.
- 사용자가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입구, 공원 보행로, 화장실,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7가지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설치·관리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중 도시공원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림 2-4> 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색으로 표기된 공원을 본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로 지정함

3.2 공원 입구

기본지침

- 공원 주변에 위치한 대중교통 시설, 주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가급적 최단거리로 보행동선을 연결하여 공원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인지하기 쉬운 곳에 공원 입구의 위치를 지정한다.
- 공원 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어린이, 유모차,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¹⁾.
-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출입구는 각각 분리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 공원 주출입구는 매표시설이나 관리사무소 등에 가까운 곳을 설치하고, 계단 또는 경사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단차 없는 보행접근로로 계획한다.
- 자전거보관소나 주차장은 공원 입구 근처에 확보하며, 공원 내 자동차의 진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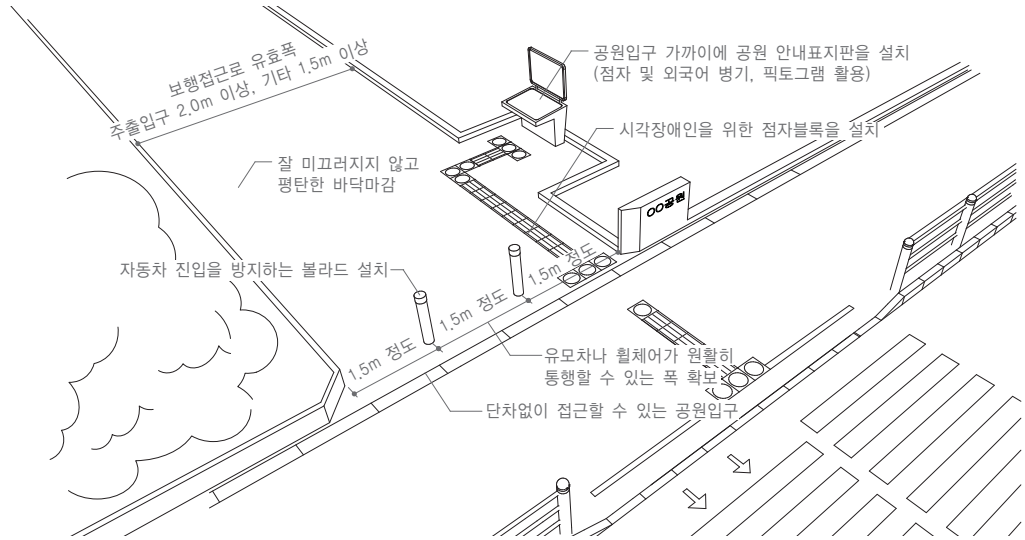
보행접근로

-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모든 보행접근로는 어린이, 유모차,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공원 주출입구의 보행접근로 유효폭은 2.0m 이상, 기타 출입구는 1.5m 이상 확보하며 (법적치수 1.2m 이상)¹⁾, 공원의 규모나 사용자 수 등에 따라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상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cm 이하 (법적치수 2cm 이하)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한다¹⁾.
- 바닥마감은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며, 바닥마감재의 이음새 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¹⁾.
- 공원 입구가 시작되는 보행진입로의 바닥마감재는 포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보도와의 경계를 명시한다.
- ☑ 보행접근로는 공원 내 보행로와 일체감을 주어 별도의 안내표지 없이도 연속성이 유지되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 공원 주출입구 근처에는 공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와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판을 병기한다.
- 자동차의 진입 방지를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해 유효폭 1.5m 내외의 간격²⁾으로 설치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블라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블라드 전후에 유모차나 휠체어의 활동공간을 1.5m 이상의 수평부분(보도 포함)을 확보한다.
- 블라드의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V.가로시설물 중 블라드(p.221)의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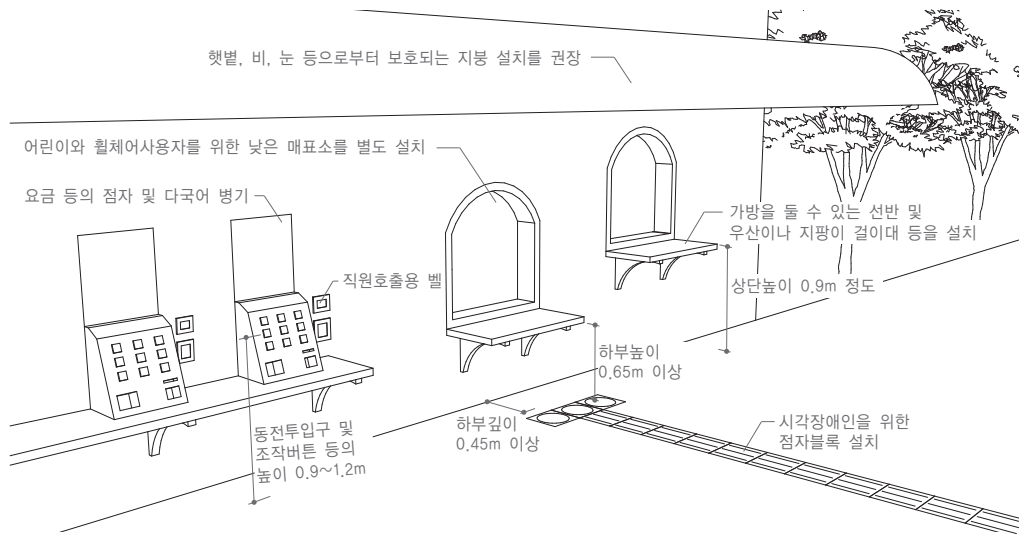


▲ 단차가 없으며 자동차 진입을 방지한 공원 입구

매표시설

- ☑ 어린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표소 또는 매표기를 최소 1개소 이상 확보하며,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¹⁾.
- 매표소와 매표기의 전면에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접근하고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1.5m x 1.5m 이상 확보해야 한다.
- ☑ 매표소와 매표기의 상부에는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공원 출입구에서 매표소와 매표기 전면까지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매표기에는 점자표기와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표기를 병기한다.
- 매표소와 매표기에는 가방을 놓을 수 있는 선반, 우산이나 지팡이 걸이대 등을 설치한다.
- 매표소 및 매표기의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III.공공건축물 중 매표소 및 자동매표기(p.201) 규정에 준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어린이와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한 매표소와 매표기를 설치

주차장

- ☑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공원 보행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 공원의 효율 증진을 위해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며¹⁾, 법적 주차 설치대수 중 20% 이상을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G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G주차구역은 공원 주출입구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G주차구역에서 공원 입구의 보행접근로까지 이르는 보행안전통로는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고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G주차구역의 기타 세부기준은 Ⅲ.공공건축물 중 주차장(p.137)의 규정에 준한다.

자전거보관소

- ☑ 자전거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공원 보행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자전거보관소는 공원 출입구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 자전거도로와 공원 외곽부가 만나는 곳에 설치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지역권 이상의 근린공원 및 소공원을 제외한 공원 내에는 자전거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자제한다.
- 공원 외곽에 자전거 순환도로를 조성하여 외부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한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대수는 자전거 통행 용량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대수 중 특수용도의 자전거보관을 위한 거치대를 10% 정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관리사무소

- G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에는 관리사무소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감시기능과 안전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한다.
- G 관리사무소가 없는 도심 소규모 공원에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등에 안전지역을 지정하도록 권장하며, 관리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는 3면 이상의 벽면에 창을 설치하여 공원 내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에너지 절감을 위해 벽면 녹화를 권장한다.
- 비상구급약을 비치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근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원 보행로, 주차장 등 주요시설물과 연락 가능한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며, 인근 파출소로 연결되도록 한다.

3.3 공원 보행로

기본지침

-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원 시설의 접근 통로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 등이通行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¹⁾.
- 공원 내 보행자 동선은 원칙적으로 자동차 동선과 명확히 분리해야 하며, 서비스 차량의通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볼라드를 설치하여 차량 이용에 제한을 두도록 한다.
- 보행로의 주변에는 화초, 휴게공간, 부드러운 빛의 가로등,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도로 또는 대중교통시설을 연결하는 공원 내 보행로에는 바닥마감재의 재질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책로

- ☑ 모든 사용자의通行을 고려한 주요 산책로에는 공원의 주요 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 공원 내 산책로는 유효폭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¹⁾, 높이 2.5m 이내(법적치수 2.1m 이내)¹⁾에는 가로수 등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지형상 불가피할 경우 보행안전통로는 최소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 ☑ 모든 산책로는 원칙적으로 단차가 없어야 하며, 지형상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cm 이하(법적치수 2cm 이하)¹⁾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한다.
- 산책로의 바닥마감은 우천시 등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표면에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마감하도록 한다¹⁾.
-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바닥 마감재의 이음새 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¹⁾.
- 산책로의 횡단 기울기는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의 원활한通行을 위해 1/100 이하의 기울기로 한다.
- ☑ 산책로는 자동차 및 자전거도로와 교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보행자의通行 우선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보행자의通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와 볼라드의 기타 설치기준은 II.공공공간 중 횡단보도(p.87), V.가로시설물 중 볼라드(p.221)의 규정에 준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책로가 차도와 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 마감재의 색상 및 질감 등을 변화시켜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에게 주의환기 또는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인 공원에는 산책로의 일부 구간을 애완견 동반 산책로를 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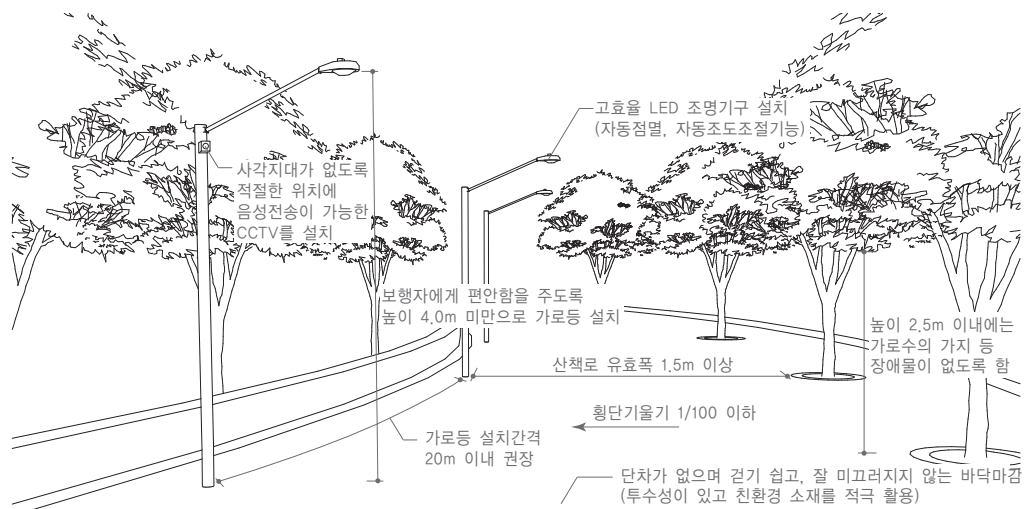
G 시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책로에는 음성전송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산책로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보행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높이는 4.0m 미만으로 하며, 설치간격은 가로등은 20m 이내에 조도 15-30lux(바닥위 85cm 측정값 : KS 조도기준) 이상이 유지되도록 권장한다.

- 산책로의 조명은 고효율의 LED조명기구를 설치하며,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자동점멸이나 조도조절기능이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G 산책로의 포장은 투수성 블록이나 잔디 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적극 사용하며, 개보수가 용이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의 연속성 있는 보행을 위해 물리적 환경의 연속성은 물론 전자식 신호장치나 산책로의 양옆에 보행유도띠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턱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 권장 : 단차가 없고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산책로

계단

- ㉔ 지형상 부득이하게 산책로에 높은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구조와 형태의 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경사로의 병설을 검토한다.
- ㉔ 계단의 유효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¹⁾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높이 1.8m 이내마다 길이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의 수평부분이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¹⁾.
- ㉔ 계단의 디딤판 너비는 0.3m 이상, 철평 높이는 0.16m 이하(법적치수 디딤판 0.28m 이상, 철평 0.18m 이하)를 권장하며, 계단 중간에 디딤판 너비와 철평 높이를 바꾸지 않고 동일한 치수로 해야 한다¹⁾.
- ㉔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하며, 야간에도 디딤판, 철평, 계단코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조명등을 설치하거나 마감재의 색상이나 재질 등을 달리하도록 한다¹⁾.
 - 점자블록은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서 0.3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¹⁾.
 - 손잡이는 가급적 양측면에 2단손잡이를 설치하고, 계단의 폭이 3.0m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서는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며, 문자정보와 함께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¹⁾.
 -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Ⅲ.공공건축물 중 계단(p.158)의 규정에 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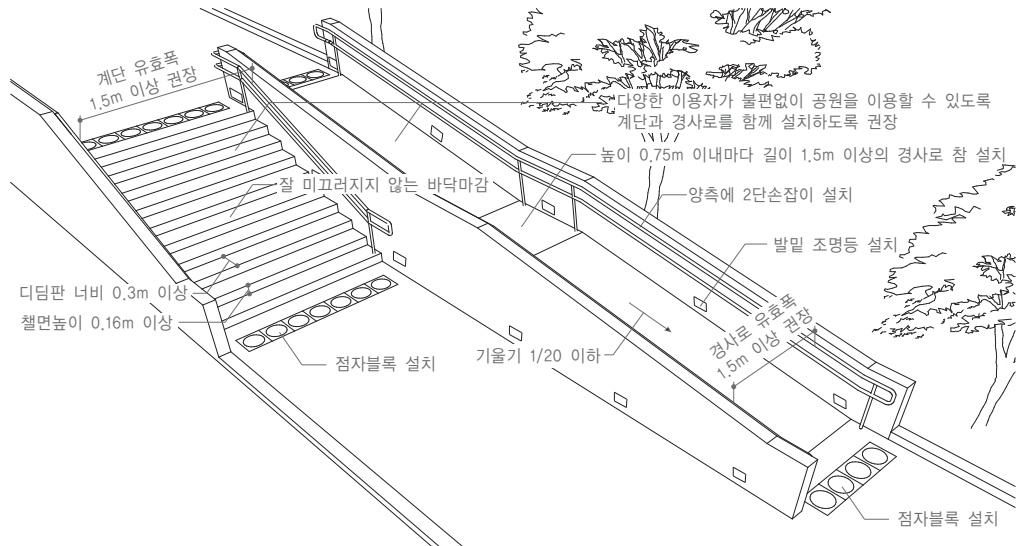
경사로

- 지형상 공원 내 산책로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를 활용하며, 계단을 병설하도록 권장한다.
- 경사로의 유효폭은 최소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¹⁾ 확보하며, 가급적 보행로와 동일한 폭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 경사로의 종단기울기는 1/20 이하(법적치수 1/18 이하)¹⁾의 완만한 경사를 권장하며,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12 이하로 할 수 있다.
- 경사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높이 0.75m 이내마다¹⁾ 길이 1.5m 이상의 수평부분이나 참을 설치해야 한다.
- 우천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¹⁾.
- ㉔ 경고용 점자블록은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서 0.3m 정도 떨어뜨려 설치한다.
- 손잡이는 가급적 양측면에 2단손잡이를 설치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계단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에서는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며, 문자정보와 함께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¹⁾.

-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III.공공건축물 중 경사로(P.161)의 규정에 준한다.



▲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무빙워크를 설치한 예 (일본 종합운동공원)²⁾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출처 : www.ecopa.jp/facilities/ud.html

3.4 화장실

기본지침

- 공원 주출입구의 안내표지판 등에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 유도하는 표시를 하며, 공원 어디서나 접근하고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되는 개방적인 위치에 설치하며, 24시간 방법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용자에게 따라 행하는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전용 화장실 대신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G화장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공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으로 계획하며,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자재와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원활한 공기순환으로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거나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여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한다.
- 화장실의 세부 설치기준은 Ⅲ.공공건축물 중 화장실(p.170)의 규정에 준한다.

접근로

- ㉔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㉔ 화장실에 이르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¹⁾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출입구는 자연채광이나 인공조명 등으로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G화장실

- ㉔ 공원에 설치하는 G화장실은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며, 2개소 설치할 경우에는 설비 등의 위치에 따라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 또는 설비 등의 종류가 다른 G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㉔ G화장실에 설치하는 부대설비로는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기저귀교환대나 영유아거치대, 잠시 누워서 쉴 수 있는 접이식 간이침대, 어린이용 대변기, 오스트메이트 등이 있으며, 공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반화장실

-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를 남자 및 여자용으로 각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¹⁾.
- ☒ 임신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자화장실¹⁾은 물론 남자화장실에도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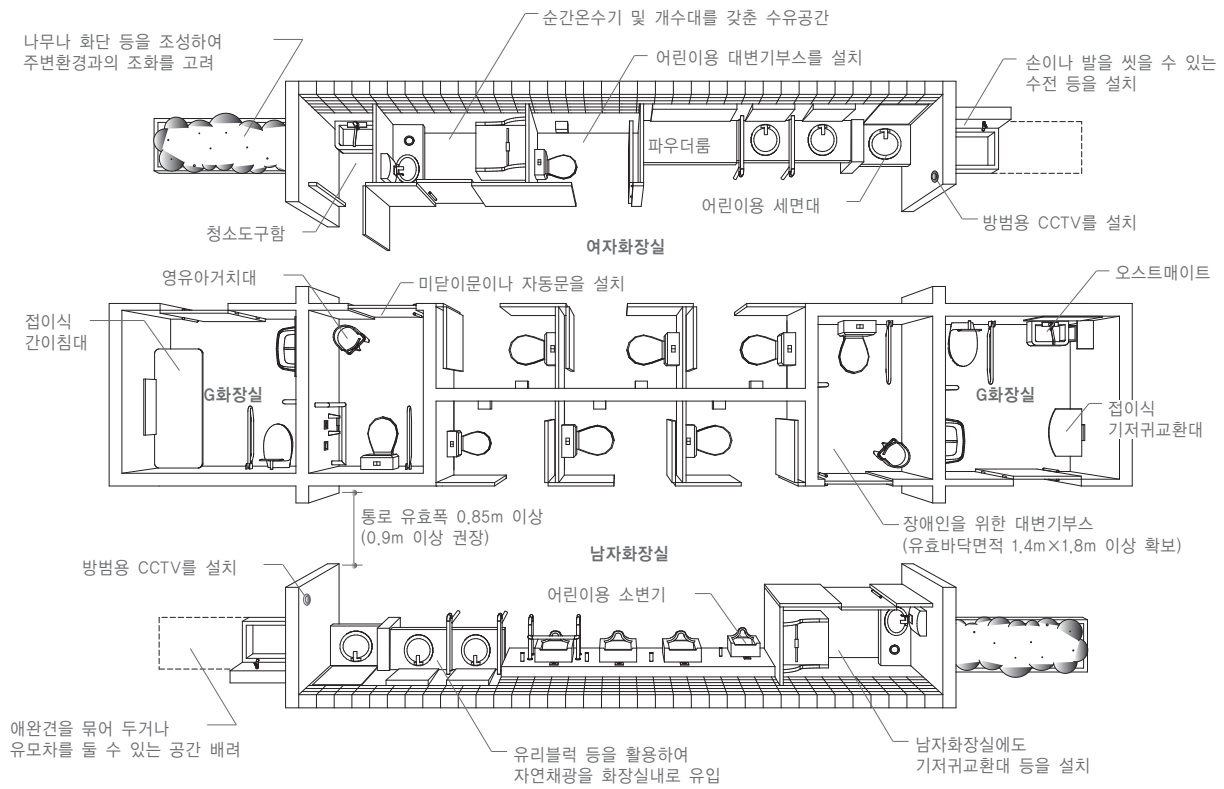
방법 및 안전

- 관리사무소 등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 등은 G화장실과 남녀 화장실 내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한다.
- ☒ 비상호출장치는 G화장실과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가급적 모든 단위부스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화장실 주변은 항상 밝게 유지하고 화장실 내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알리는 안내를 게시한다.
- 비상시 피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의 설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기타

- ☒ 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과도한 외관 디자인은 지양하며, 개방감 있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외관은 원색적이며 과도한 색채사용은 지양하고, 실내는 편안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주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색채로 계획한다.
- 주간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며,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면서 눈부심이 없는 부드러운 조명기구를 채택하도록 한다.
- ☒ 벽면에 유리블럭 등을 사용하거나 천창을 설치하여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하며, 악취 제거 등을 위한 환기는 자연환기만으로도 원활한 공기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 마감재는 친환경적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적극 사용하며, 외벽에는 식재나 벽면녹화, 고효율 LED조명기구 등으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공원화장실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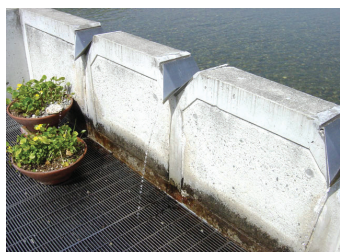
3.5 휴게시설

기본지침

- 공원 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나 공원보행로 주변 등에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마다 쾌적한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시선이 차단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안정감을 주도록 하며, 접근하기 쉽고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휴게시설에는 벤치, 탁자 등을 적절히 설치하며, 자동판매기, 음수대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 가족 등 여럿이 이용하는 경우나 혼자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한 크기의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공원보행로에 인접한 경우 보행로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 휴게시설은 공원 테마에 어울리며 주변과 잘 조화되는 재질과 형태로 디자인한다.
-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는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며, 사용자가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오감을 이용하여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오감으로 즐기는 자연공간

-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오감을 이용하여 공원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식재 및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사용자나 어린이도 쉽게 접근하여 관찰하거나 만질 수 있는 자연공간을 적극 조성한다.
- 가급적 직접 만지거나 먹을 수 있는 채소류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는 것을 고려한다.
- 사계절 전체에 걸쳐 계절감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 물을 직접 만져보거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수변공간



▲ 식물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화단

휴게소

- ☑ 휴게소에 이르는 통로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¹⁾.
- ☑ 휴게소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¹⁾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휴게소에 이르는 통로는 우천시 등에도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¹⁾,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휴게소는 수변공간, 미술품, 전시물 등의 주변 여건과 잘 연계되도록 한다.

휴게소는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며,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높이
 - 0.5~0.7m 정도의 수목을 식재한다.
- ☑ 휴게소 상부에는 그늘을 제공하며,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유모차를 두거나 휠체어의 접근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1.5m(법적치수1.4m×1.4m 이상)¹⁾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야간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도록 한다.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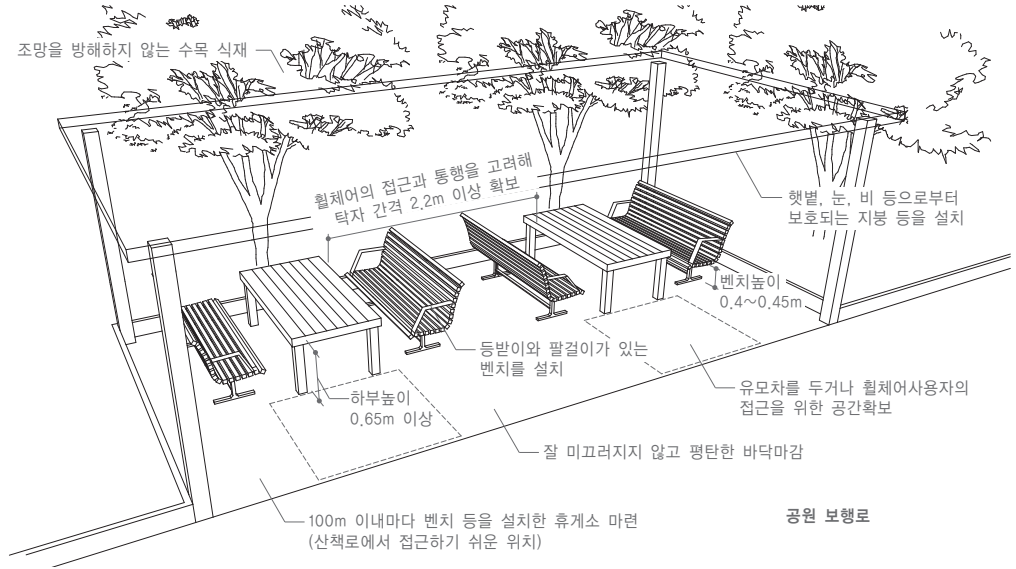
- ☑ 공원 내 벤치는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노인 등이 산책 중에 손쉽게 접근하여 휴식할 수 있도록 50~10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공원 내 보행로에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벤치에 앉은 사람의 발이 보행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보행로에서 0.6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한다.
 - 벤치는 4인 이용을 기준으로 하며, 2인용과 1인용을 적절히 혼합하여 설치한다.
 -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V.가로시설물 중 벤치(p.230)의 규정에 준한다.

야외탁자

- ☑ 어린이나 노인 등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높이나 형상 등이 다른 다양한 벤치의 설치를 고려한다.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야외탁자는 상부면 높이를 0.7m 정도로 하며,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¹⁾을 확보한다.
 - 야외탁자 주변에는 유모차를 두거나 휠체어의 접근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야외탁자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야외탁자를 복수 설치할 경우, 탁자 상호간의 간격은 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해 2.2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권장 :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공간확보, 벤치와 탁자를 설치한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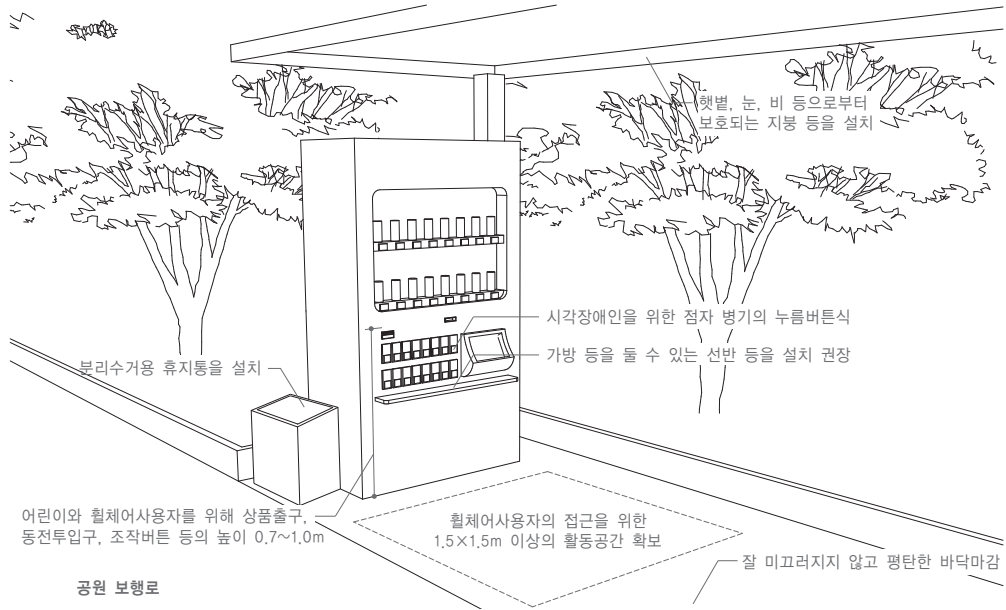
자동판매기

☑️ 공원 내 매점이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자동판매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자동판매기는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1.0m(법적치수 0.4-1.2m)¹⁾의 범위가 되도록 권장한다.

- 자동판매기의 조작버튼은 품목이나 금액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도록 점자²⁾가 병기된 누름버튼식으로 한다.
- 자동판매기는 음료수뿐만 아니라 위생용품 등 필요한 제품을 적절히 선정하여 설치한다.
- 자동판매기 주변에는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설치하도록 한다.



▲ 권장 :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해 조작버튼 등이 낮은 자동판매기

휴지통

- 휴지통은 보행로의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고, 통행이나 사용자가 많은 장소나 머무는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 사용자가 많은 장소에는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용 휴지통을 설치하며, 그 외 장소에는 일반쓰레기 겸용의 간이용 휴지통을 설치한다.
- 쓰레기 수거방법을 감안하여 공원 내 청소 및 관리동선은 공원 사용자의 휴식 및 보행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3.6 편의시설

기본지침

- 공원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편의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 영유아 동반자나 임산부 등을 위한 수유실을 설치하여 공원의 가족 이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 애완견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애완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애완견을 동반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한다.
- 공원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중전화,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역 등을 지정한다.

수유실

- ☑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수유나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으며, 임산부 등이 휴식할 수 있는 수유실을 공원 내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수유실은 유모차 등이 접근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G화장실 내부에 기저귀교환대나 수유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거나 관리사무소 등에 별도의 수유실을 마련하도록 권장한다.
-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위해 관리사무소 또는 인근에 유모차 대여시설을 마련하며, 유모차 대여시설의 규모는 공원 이용객을 감안하여 충분한 대여대수를 확보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공원에는 미아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 수유실의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III.공공건축물 중 수유실(p.180)의 규정에 준한다.

애완견 보호시설

- ☑ 애완견을 동반한 사용자를 위해 공원 내에 애완견 보호시설이나 애완견 보호구역을 최소 1개소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애완견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애완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애완견을 맡기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애완견 보호시설이나 애완견 보호구역은 관리사무소, 공원 입구 등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애완견을 동반하여 공원을 입장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걸어서 다른 공원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한다¹⁾.
- 공원 내 애완견 배설물은 주인이 반드시 처리하도록 한다¹⁾.

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중전화

-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를 설치하며, 공원 입구나 사용자가 많은 장소 등에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공원 보행로에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공원 사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행로 밖에 설치하도록 한다.
-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V.가로시설물 중 공중전화(p.232)의 규정에 준한다.

음수대

- 공원 내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를 1개소 이상 설치한다¹⁾.
- ☑ 음수대의 설치는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 등을 위해 높이가 낮은 음수대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공원 내에 설치하는 음수대는 손이나 발을 씻을 수 있는 수전을 별도로 설치하며,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해야 한다.
-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V.가로시설물 중 음수대(p.229)의 규정에 준한다.

금연구역

- ☑ 공원은 가족, 어린이, 청소년 등의 이용을 고려해 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한다.
-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원은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금연 표지판을 설치한다.
- 공원 일부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3.7 안내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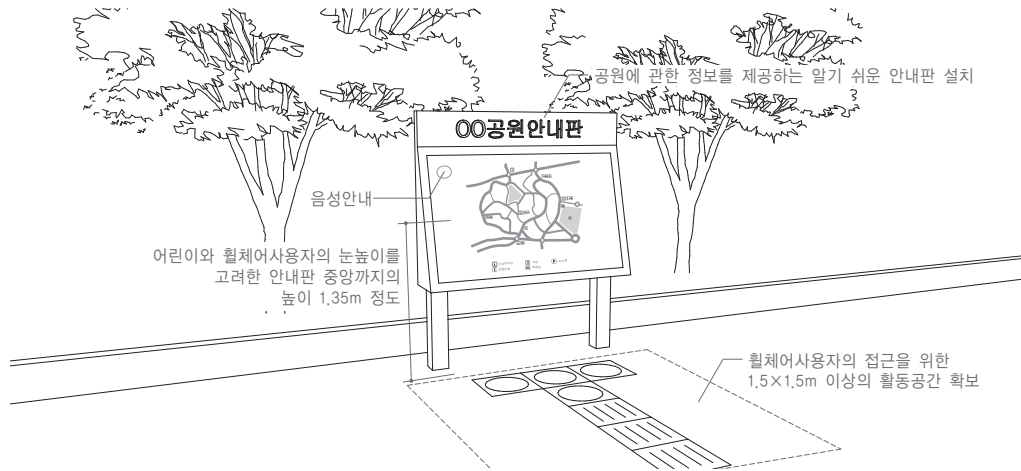
기본지침

- 공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각종 안내판이나 유도사인은 누구나 알기 쉬운 표기내용과 방법 및 사용하기 쉬운 형상으로 설치한다.
- 안내판은 정확한 정보표시 및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간결하고 심미성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안내판은 성인은 물론 키가 작은 어린이도 표기내용을 알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한다.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정보 전달방법을 배려한다.
- 각종 안내판이나 유도사인의 서체, 색상, 픽토그램 등의 세부 설치기준은 VI.공공정보매체 (p.241)의 규정에 준한다.

안내판

- 안내판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 안내판의 설치 위치는 공원 입구, 보행로의 분기점, 주차장, 주요 시설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 ☑ 성인은 물론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바닥면으로부터 안내판의 중앙까지의 높이는 1.35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 각종 안내판이나 유도사인은 사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을 고려하여 안내판 전면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 보행로나 통로의 상부에 유도사인 등의 안내판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판 하단의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2.5m 이상(법적치수 2.1m)¹⁾ 되도록 설치한다.
- ☑ 안내판에는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로 병기하며,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 등을 설치하여 필요한 안내정보를 적절히 전달하도록 한다.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게시판, 문자정보모니터 등을 설치하여 필요한 안내정보를 적절히 전달하도록 한다.
- 안내판에는 야간에도 문자 등 안내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조도를 확보한 고효율의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성인은 물론 어린이나 노인도 이용하기 쉬운 높이의 안내판

종합안내도

- ☑ 공원 입구 등에 설치하는 종합안내도에는 유모차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배치나 경로를 표시하도록 한다.
- 종합안내도의 설치 위치는 공원 입구, 보행로의 분기점, 주차장, 주요 시설 주변 등에 최소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 종합안내도에는 현재 사용자의 위치를 표기하며, 현재 위치의 방향과 안내판의 설치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 종합안내도에는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위치, 연락처 등을 표기하여 응급 상황 발생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에는 공원 입구나 주요 시설의 인근에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배치, 경로 등을 점자·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야 한다¹⁾.
- 공원 종합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 병기 및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한다¹⁾.
-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에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전달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1.2m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며, 부득이 내용이 많아 곤란한 경우에는 1.0-1.5m의 범위로 할 수 있다¹⁾.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안내판의 전면 0.3m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휠체어의 접근이나 이동을 위한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화장실 등 한정된 공간을 인지하기 위한 안내판은 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 인터넷이 가능한 무인정보 검색대(무인키오스크)를 관리사무소 또는 공원 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한다.
- 관리사무소 등에는 공원 안내를 위한 종합안내소 또는 인근지역의 현황 등을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공원 내·외부의 편의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정보 전달방법은 VI.공공정보매체(p.241)를 참조한다.

Ⅲ. 공공건축물

1. 공공건축물 개요

1.1 개요

2. 공통공간

2.1 정의 및 적용대상

2.2 접근공간

2.3 이동공간

2.4 위생공간

3. 개별 공공건축물

3.1 공공청사

3.2 문화복지시설

3.3 교통시설

3.4 환경시설

Ⅲ. 공공건축물



1. 공공건축물 개요

1.1 개요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영역의 공공건축물(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을 어린이,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의 사용자에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 부합되게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공공건축물이지만, 기존 공공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할 것을 권장한다.
- 향후 적용대상시설의 범위를 공공건축물에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므로 가급적 민간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정비해 나갈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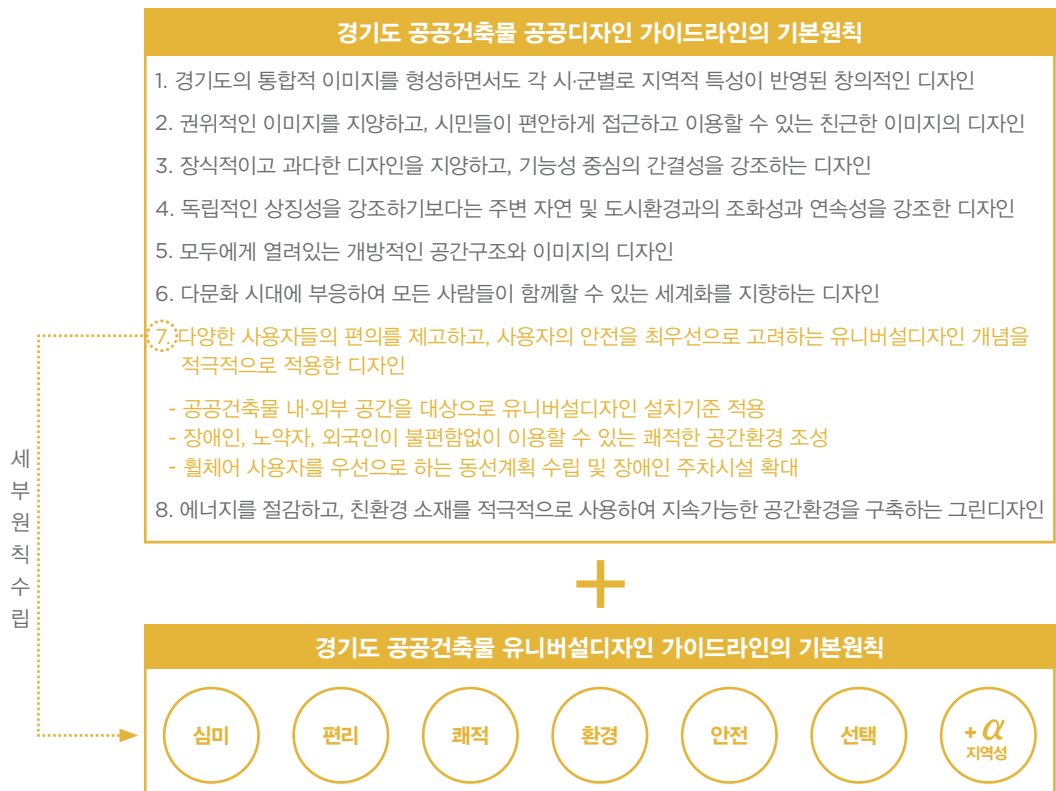
<그림 3-1> 경기도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관련법규

- 본 가이드라인은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공공건축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세부 설계지침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타 세부 규정은 아래의 각 법률의 기준에 준한다.
 - 건축법, 시행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 공중화장시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중 ‘다양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디자인’을 보완하여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에 부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천내용을 수립한다.



<그림 3-2>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천내용

심미성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색채계획, 마감재, 공간구성, 설비 등이 상호간 조화를 이루도록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며, 사용하기에 편리한 공간과 설비 등은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주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편리성

- 도로에서 건축물 내 목적지까지 불편함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동선이 끊기지 않고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 동선계획은 명쾌하고 알기 쉬워야 하며,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주요 시설들은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도 사용하기 쉽고 조작하기 쉬운 구조와 형태로 공간과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G주차구역을 주출입구 근처에 적극 설치하도록 한다.

쾌적성

- 공공건축물의 금연건물지정, 옥외공간의 녹화 등 사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하며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한다.
- 유모차, 휠체어사용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활동공간, 폭, 높이 등 여유 있는 치수로 공간을 계획하여 쾌적함을 주도록 한다.

환경성

-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 자연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며, 태양광, 지열,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기법이나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에너지 소모량의 절감 기술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재활용 자재의 사용, 투수성 재료 채택, 녹화 등을 활용하여 환경을 고려한다.

안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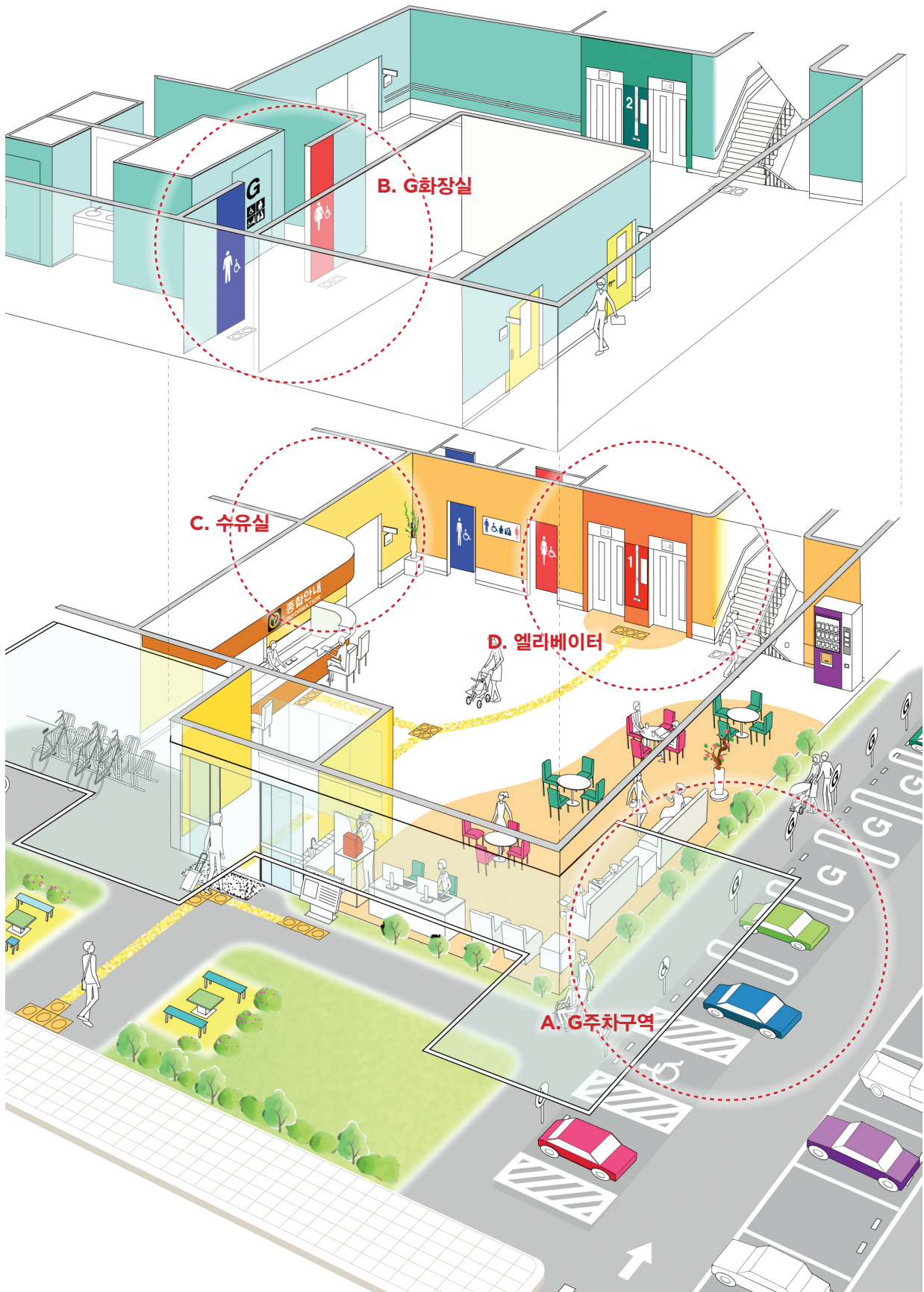
- 불필요한 단차는 만들지 않고 바닥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사용자의 보행동선과 자전거나 자동차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이동시 넘어지거나 보행장애물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이나 경사로 등은 추락방지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 재해시 알기 쉽고 안전한 피난경로를 설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설비나 적절한 유도 및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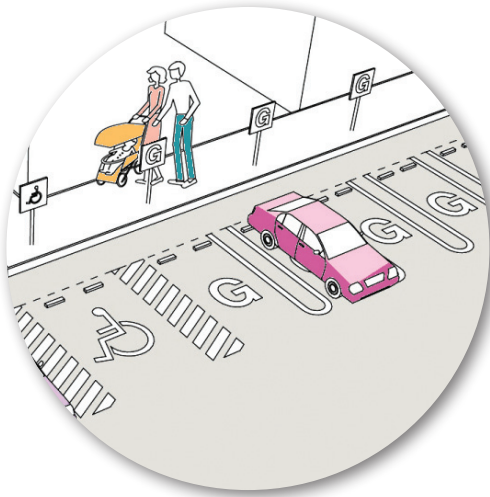
선택성

- 유모차, 휠체어사용자 등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동선으로 공간 및 설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감이나 소외감이 없는 공평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은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이용행태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장애인 등 특정 계층만을 위한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확보하기보다는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 많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G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한다.

+ α (지역성)

- 각 시·군별로 지리적, 문화·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경기도의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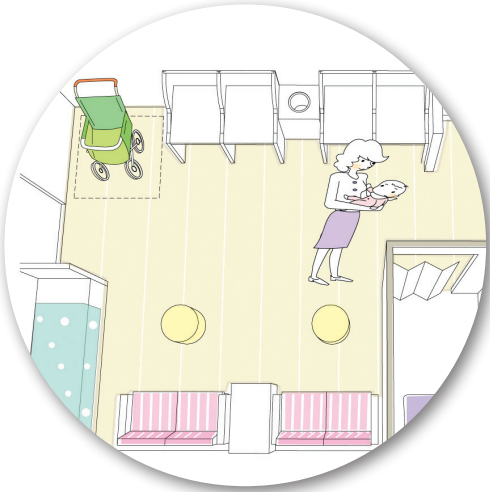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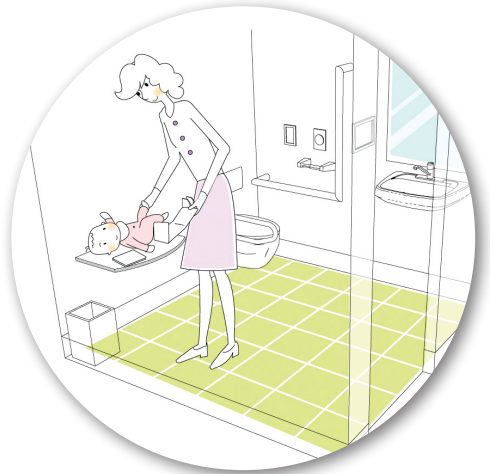


A. G주차구역

- 주출입구 근처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일시적인 부상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G주차구역 설치
- G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유모차나 휠체어가 통행하기 쉬우며, 바퀴달린 가방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쉬운 단차 없는 보행안전통로 확보
- 주차장 입구에서 눈에 쉽게 띄어 식별하기 쉽고 시야가 트인 장소에 설치

B. G화장실

-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화장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G화장실 설치
-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접의식 간이침대,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어린이용 대변기, 오스트메이트 등의 설치를 배려
- 가급적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사용하기 쉬운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비의 위치에 따라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으로 설치
- 각 층별 G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



C. 수유실

-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수유나 기저귀를 갈아입힐 수 있고, 임산부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수유실 설치
- 남녀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모유를 주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
- 가급적 독립된 실로 설치하며, 이용하기 쉬운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

D. 엘리베이터

- 2층 이상의 건물에는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등의 원활한 수직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며,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조작버튼 및 설비 설치
-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을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수직이동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
- 승강로비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알기 쉬운 사인을 설치



Ⅲ. 공공건축물



2. 공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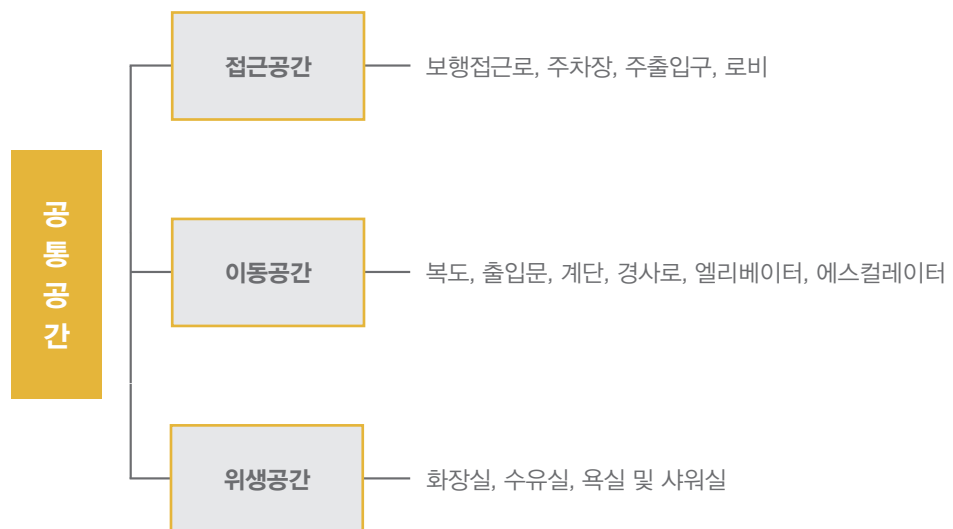
2.1 정의 및 적용대상

정의

- 공통공간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분류한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을 어린이,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공간요소를 말한다.
- 공통공간은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로비까지 접근하는데 필요한 접근공간, 이용목적에 의해 건축물 내에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이동공간, 건축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위생공간으로 분류한다.
- 사용자가 건축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이 적재적소에 유기적으로 배치되고, 사용자 동선은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공통공간의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접근공간(보행접근로, 주차장, 주출입구, 로비), 이동공간(복도, 출입문,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위생공간(화장실, 수유실, 욕실 및 샤워실)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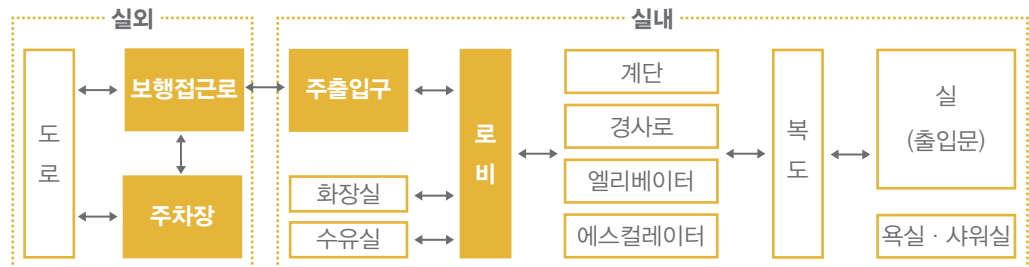


<그림 3-3> 공통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2.2 접근공간

가이드라인 방향

- 접근공간은 도로에서 건축물 내의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간으로 보행접근로, 주차장, 주출입구, 로비가 해당된다.
- 다양한 사용자가 도로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게 여유 있는 폭과 통행하기 쉬운 접근경로를 계획한다.
- 모든 사람이 가급적 동일한 동선으로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유모차, 휠체어, 바퀴달린 가방이나 짐을 가진 사람이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계획하여, 차별감과 소외감을 주지 않는 공평한 접근방법을 배려한다.
- 건축물 내의 공간이나 시설물의 각 요소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더라도 접근성이 나쁠 경우 이용할 수 없으므로, 도로 또는 주차장 - 보행접근로 - 주출입구 - 로비까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한다.
- 접근공간은 어린이, 여성, 노인, 외국인, 장애인, 짐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 및 동작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계획한다.
- 유모차, 하이힐을 신은 사람도 걷기 쉽도록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바닥의 재질이나 마감방법으로 설치한다.



<그림 3-4> 접근공간의 공간요소

접근공간 - 보행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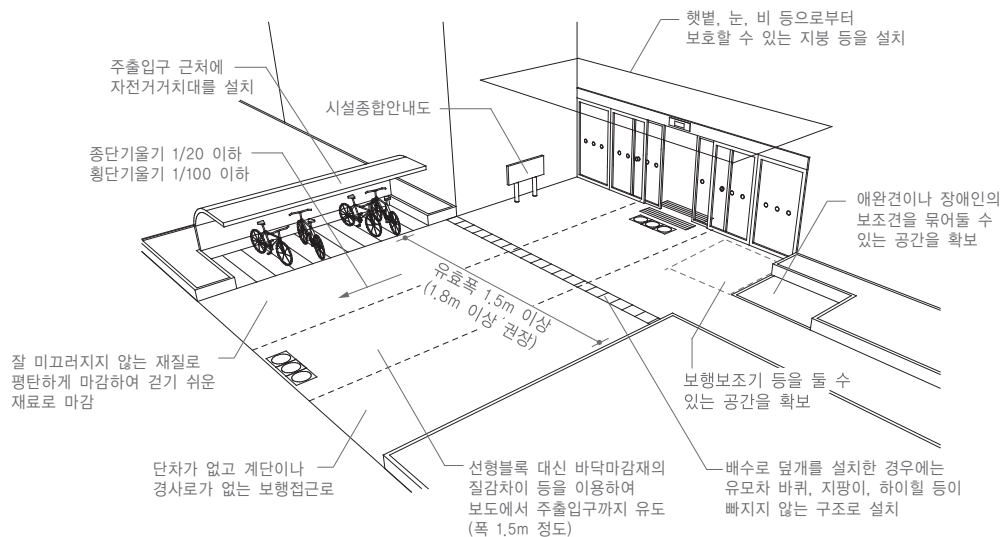
기본지침

- 도로 및 주차장에서 건물 주출입구까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고, 동일한 경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차가 없도록 하며, 부득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만한 기울기로 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동선과 자동차 동선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 보행접근로는 유모차, 휠체어 등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단차, 유효폭, 마감재의 재질, 구조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비상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보행접근로가 되어야 한다.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지출입구

- ☑ 부지출입구는 개방감이 있고 도로에서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우며,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 ☑ 보도와 부지내 보행접근로와는 단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복수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부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복수로 설치한다.
- ☑ 보행자 및 자전거사용자와 자동차의 동선은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권장 : 도로에서 주출입구까지 단차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충분한 유효폭을 확보한 보행접근로

이동통로

- ☑ 누구나 동일한 경로로 안전하게 건축물 주출입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보행접근로를 계획한다.
- 보행접근로의 유효폭은 유모차 및 영유아 동반자가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고 통행하고, 휠체어 등이 회전할 수 있도록 최소 1.5m 이상(법적치수 1.2m)¹⁾을 권장한다.
- ☑ 가급적 유모차나 휠체어 상호간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1.8m 이상 또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2.3m 이상의 보행접근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㉔ 보행접근로에 단차가 있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짐을 가진 사람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로의 종단기울기는 1/20 이하(법적치수 1/18 이하)¹⁾로 하며, 횡단기울기는 1/100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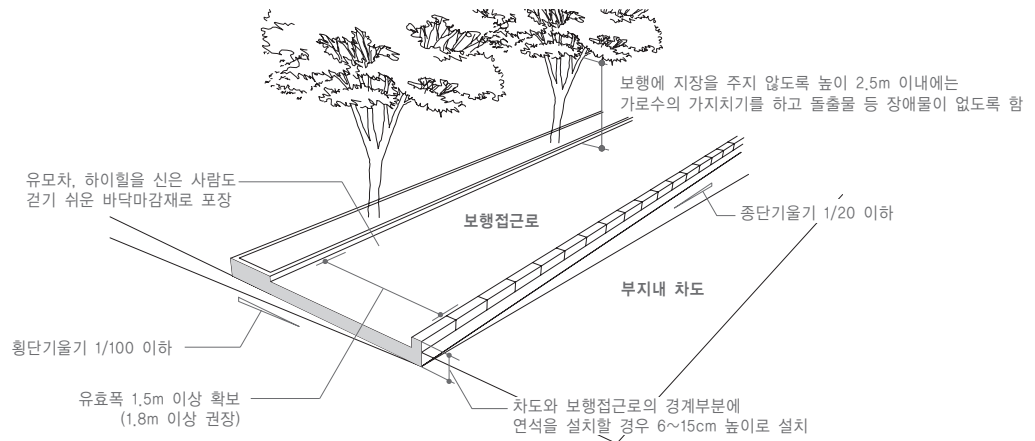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30m 마다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수평 참을 설치한다¹⁾.

㉕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있는 경우 1cm 이하(법적치수 2cm 이하)로 한다¹⁾.

- 보행접근로에 부득이하게 단차가 있어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잡이, 주의환기용 점자블록 등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㉖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등·전주·간판 등의 보행장애물은 보행접근로의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지면에서 높이 2.5m 이내(법적치수 2.1m)에는 가로수의 가지나 상부돌출물이 없어야 한다¹⁾.

- 보행접근로와 부지내 차도는 분리하도록 하며, 부득이 동선이 교차한 경우에는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 보행접근로와 부지내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6~15cm의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¹⁾, 휠체어사용자가 차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보행접근로에는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을 설치하며, 가급적 LED 조명을 적극 활용한다.
- 외벽의 소재나 색채, 주변의 경관이나 식재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보행접근로가 되도록 한다.



▲ 권장 : 배수가 잘 되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유효폭과 기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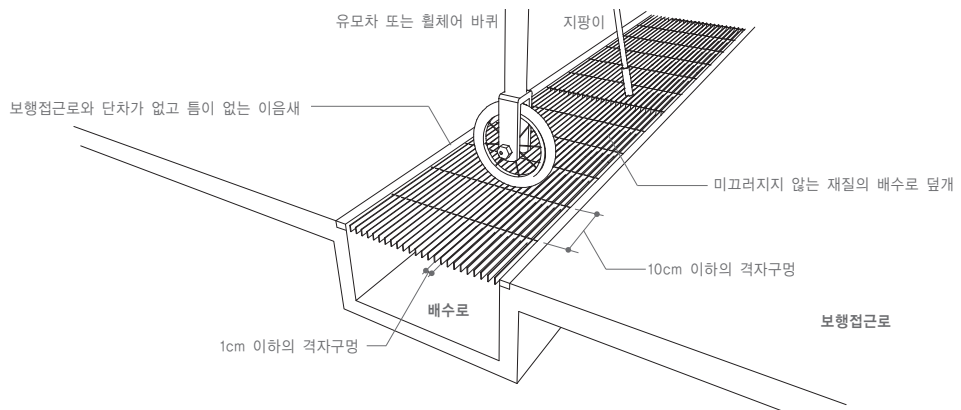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닥마감

㉔ 바닥은 우천시 등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¹⁾.

㉕ 블록 등으로 보행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 틈에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아야 하며,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¹⁾. 바닥포장마감은 II.공공공간 중 보도의 바닥마감(p.81)을 참조한다.

- 우천시 등을 고려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접근로와 부지내 차도의 바닥재 질감을 달리하며,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재질이나 색채로 마감한다.
- 보행접근로에는 배수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행접근로의 포장면과 단차가 없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틈새가 없거나 격자구멍이 1cm 이하(법적치수 2cm 이하)인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¹⁾.



▲ 권장 : 유모차 바퀴, 지팡이, 하이힐 등이 빠지지 않는 배수로의 덮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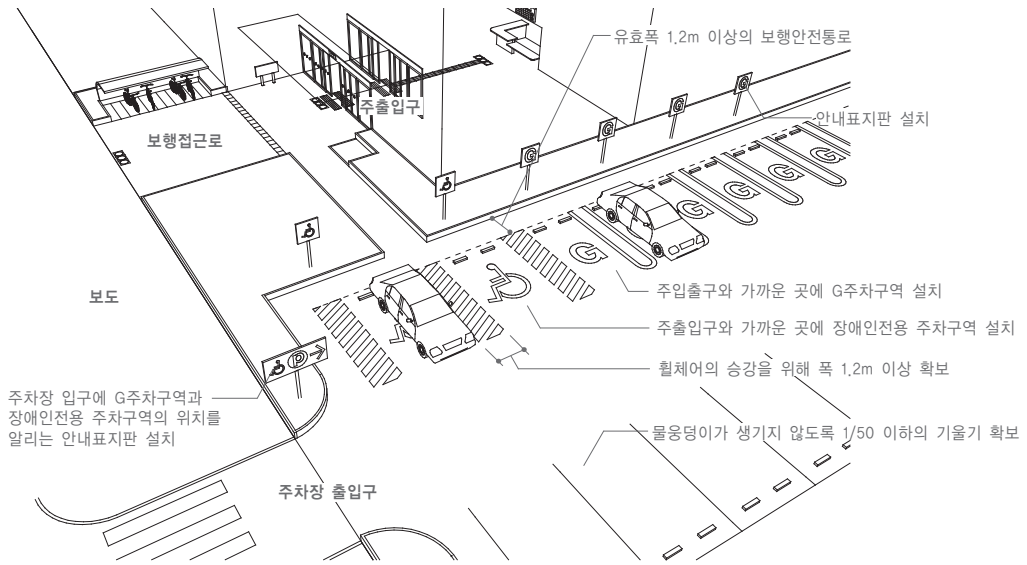
유도 및 안내

- 시각장애인을 위해 바닥재를 달리하거나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경우엔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보행접근로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부지경계부분이나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㉔ 선형블록은 맨홀 등에 의해 꺾이지 않고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각장애인과 약시자를 위해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보행접근로 바닥마감재와의 명도차이, 휘도차이 등에 유의해야 한다.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점자블록 대신에 바닥마감재의 질감 차이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설명칭이나 간판 등의 안내표시는 미관을 고려하며,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주출입구 근처에 설치된 G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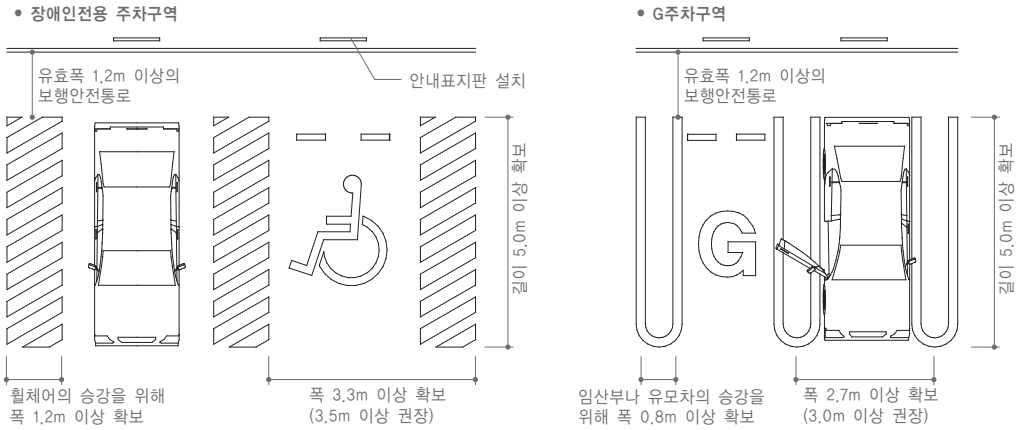
G주차구역

- ☑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의 주차대수 중 20% 이상을 G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G주차구역의 폭은 2.7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하며, 가급적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폭은 3.0m 이상을 권장한다.
- ☑ 차량 측면에는 임산부나 유모차등의 통행이나 승강을 위해 폭 0.8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폭은 3.3m 이상, 길이 5.0m 이상으로 하며¹⁾, 가급적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폭은 3.5m 이상을 권장한다.
- 차량 측면에는 휠체어의 통행과 승강을 위해 폭 1.2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언제나 주차할 수 있도록 복수로 설치하며, 좌·우측 어느 방향에서도 승강할 수 있도록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에는 유효 폭 1.4m 이상의 보도와 접하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한다¹⁾.
- 직원 중에 휠체어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사용자와는 별도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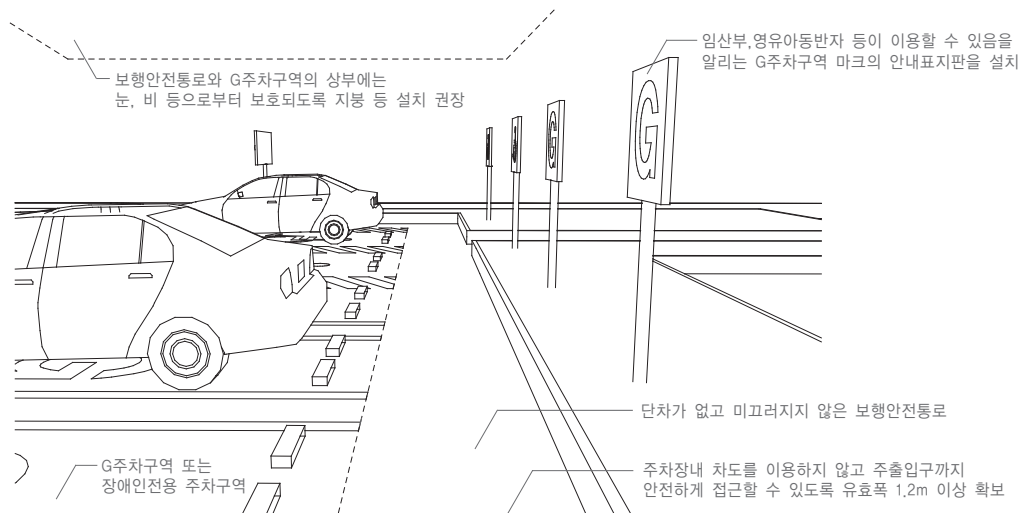


▲ 권장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G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보행안전통로

G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효폭 1.2m 이상²⁾의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안전통로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 짐 운반 등을 고려해 바닥에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안전통로에 단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1/20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보행안전통로와 G주차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상부에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권장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닥마감

- 주차구역 및 보행안전통로의 바닥면은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¹⁾, 물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1/50 이하의 기울기로 한다.
- 주차구역 및 보행안전통로의 바닥표면은 우천시 등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¹⁾.

☑ 바닥마감재는 가급적 투수성 포장재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유도 및 안내

- G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및 경로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는 주차장 출입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각각의 주차구역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주차장 내¹⁾의 적절한 위치에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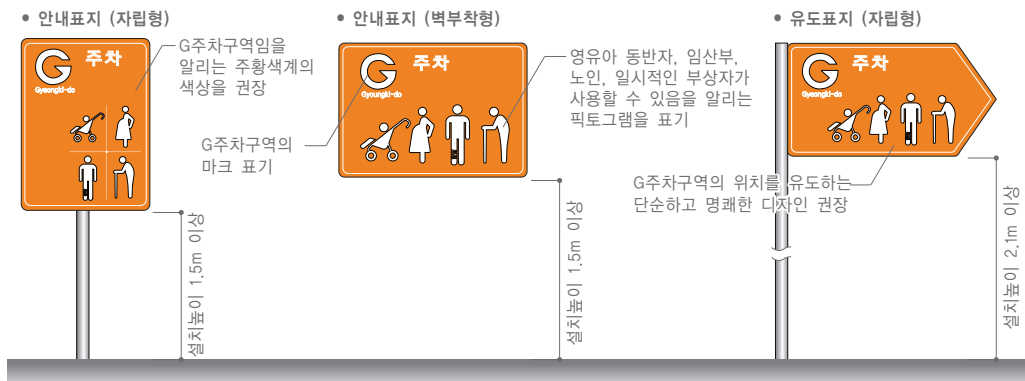
☑ G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노인, 일시적인 부상자가 이용할 수 있다는 G마크 표시를 하고, 입식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 G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입식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한다¹⁾.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유도 및 안내표지판에는 장애인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며, 배경색은 청색계열을 권장한다.

☑ G주차구역의 유도 및 안내표지판에는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일시적인 부상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며, 배경색은 주황색계열을 권장한다.

- 필요에 따라 후방확인을 위한 거울, 음성·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해 자동차의 출고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



▲ 권장 : G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예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G 차량에서 내린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도록 한다.

- 차로에는 일시정지선의 표시 등에 의해 서행이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야간의 이용을 고려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계획과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미니버스 등이 있는 시설은 여유있는 크기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며,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도록 한다.
- 방법 등에 대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접근공간 - 주출입구

기본지침

- 주출입구는 도로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안전한 동선을 확보한다.
- 주출입구의 전후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 사이에는 단차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가급적 자동문을 설치하여 어린이, 유모차, 장애인,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출입구 주변에는 시설 안내판, 안내데스크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부출입구도 주출입구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위치

- ㉔ 주출입구의 위치는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 주출입구에서 로비로 들어서면 엘리베이터, 계단, 안내데스크 등이 한눈에 알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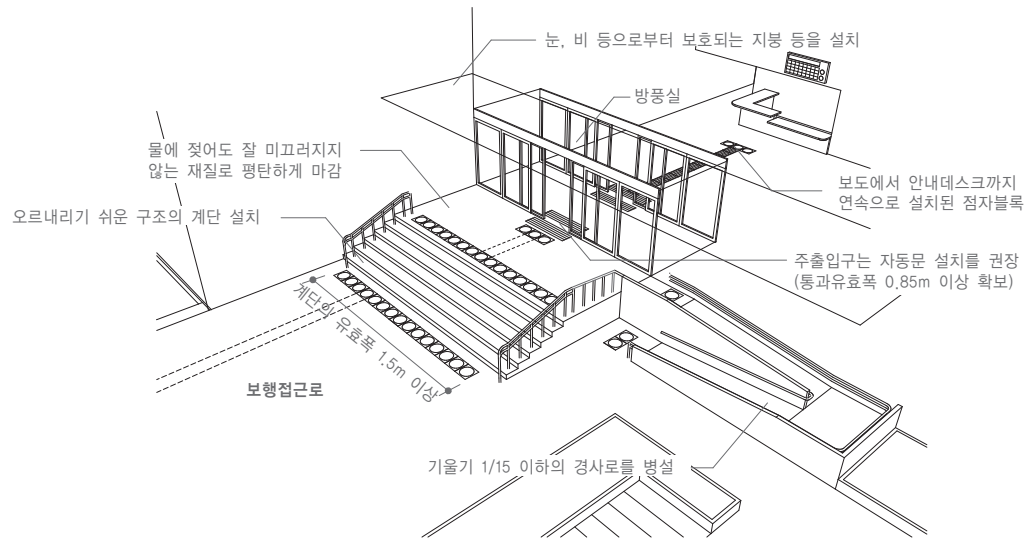
바닥마감

- ㉔ 우천시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 바닥면이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 ㉔ 출입문의 문턱이나 홈 등에 의해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¹⁾.

주출입구 전면공간

- ㉔ 보행접근로에서 건축물 내부까지 단차 없이(법적치수 2cm 이하)¹⁾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경사로 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㉔ 부득이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노인, 유모차,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해 계단과 기울기 1/15 이하(법적치수 1/12 이하)¹⁾의 경사로를 병설한다.
- 계단과 경사로는 사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이동거리가 짧은 곳에 설치한다.
- ㉔ 주출입구 전면공간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며, 상부에는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을 설치한다.
- 주출입구 주변에는 필요에 따라 노인의 보행보조기나 시각장애인의 보조건을 묶어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야간에도 충분한 밝기의 조도를 확보하며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 기타 계단과 경사로의 세부 설치기준은 Ⅲ.공공건축물 중 계단(p.158)과 경사로(p.161)의 규정에 준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보행접근로와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한 예

방풍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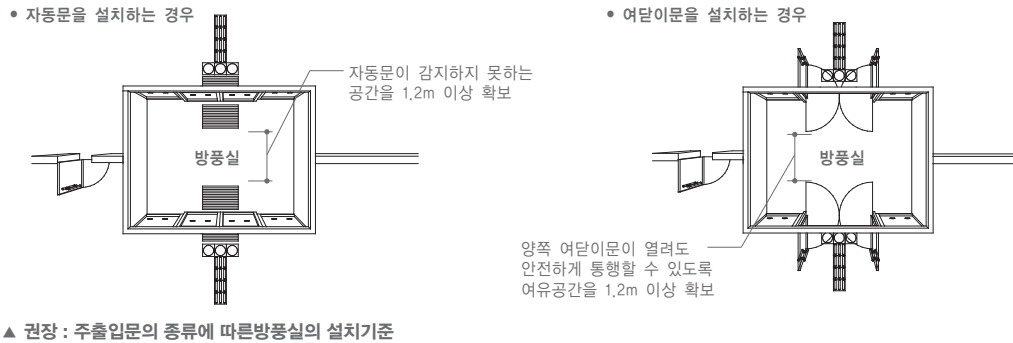
- ☑ 주출입문의 유효 폭은 0.85m 이상(법적치수 0.8m 이상)¹⁾으로 해야 하며, 통행량이 많은 경우에는 1.2m 이상을 권장한다.
- ☑ 주출입문은 회전문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¹⁾, 유모차나 양손에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위해 가급적 자동 미닫이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시를 고려해 별도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여닫이문이나 미닫이문을 병설한다.
- ☑ 주출입문을 수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손잡이의 높이는 0.8-0.9m로 해야 하며¹⁾, 형상은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하여 누구나 열기 쉬운 구조로 한다.

 - 방풍실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회전 및 출입문의 개폐 동작을 위해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¹⁾.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자동문을 설치한 방풍실 내부는 자동문이 감지하지 않는 공간을 1.2m 이상 확보하고,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가도 양측의 문이 열리는 일이 없는 구조로 한다.
- ☑ 방풍실에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통행량이 많은 경우에는 여유 있는 크기로 하며, 방풍실 내부에서 방향 전환하지 않고 실내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방풍실 내부나 외부에 우산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하며,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한 출입문

- ㉔ 자동문은 문 유리에 충돌하거나 신체의 일부가 문에 끼이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의 키나 문 주위에서 쪼그려앉는 특성을 고려하여 문틀 좌우와 0.5-0.7m의 적절한 높이에 안전센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 ㉔ 어린이는 출입문 옆의 유리창에 손을 댄 채 밖을 보기도 하므로, 열리는 문에 손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 ㉔ 출입문 바깥부분의 전면이 차로나 주차장과 바로 인접한 경우에는 어린이가 뛰쳐나가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펜스 등을 적절히 설치하도록 한다.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해야 한다¹⁾.
 - 문의 개폐에 의해 위험하지 않도록 미닫이문은 문이 만나는 부분에 쿠션재를 설치하며, 여닫이문은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²⁾ 확보되는 도어체크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배려한다.
- ㉔ 유리면에는 충돌방지를 위해 시선 높이에 주의환기용 표식 등을 붙이고, 파손되더라도 위험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에 배려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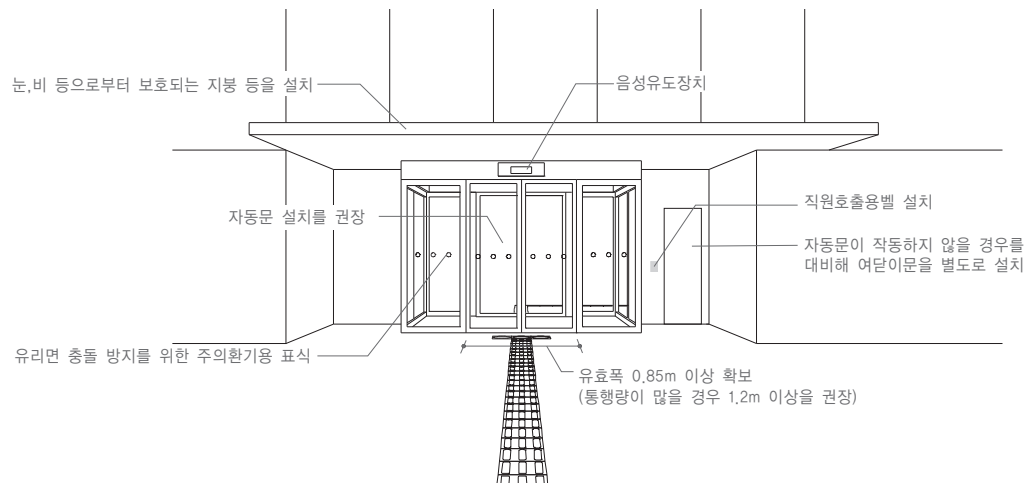
유도 및 안내

G 주출입구 주변에는 건축물의 종합적인 정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며,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도 보기 쉬운 위치와 높이에 설치한다.

- 안내판 전면에는 유모차 동반자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반경 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형블록과 음성안내 및 점자표시를 병기한다.

G 안내판은 문자의 크기나 색상 등을 고려하여, 시력이 좋지 않는 사람도 인지하기 쉽도록 하며,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병기와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출입구 주변에는 유도벨 또는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주출입문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 등을 달리해야 한다¹⁾.
- 자동문을 설치한 경우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직원 호출용 벨이나 인터폰 등을 자동문 옆에 설치한다.



▲ 권장 : 자동문을 주출입문으로 할 경우의 설치 예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접근공간 - 로비

기본지침

- 안내데스크는 주출입구에서 인식하기 쉬우며,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 안내데스크는 키가 작은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을 배려하여 높이가 낮은 안내데스크나 작업대를 설치한다.
- 어린이나 노인이 의자에 앉아 기록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하며, 유모차나 짐을 일시적으로 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안내데스크는 시력이나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 시각정보와 청각정보를 동시에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한 인적 또는 설비의 대응이 필요하다.
- 로비에 설치하는 가구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접근은 물론 누구에게나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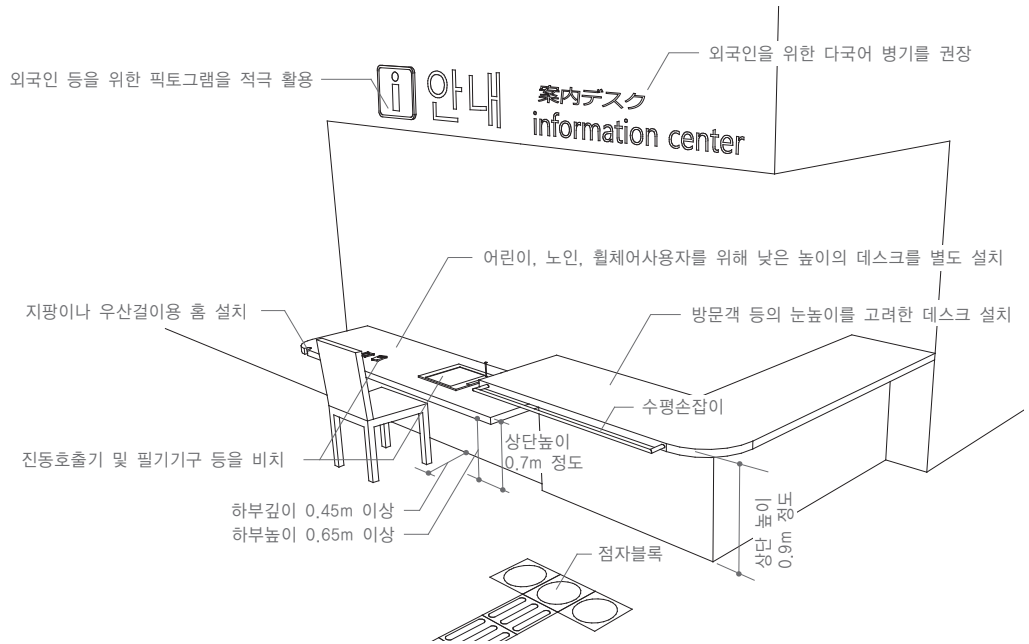
위치

- ☑ 안내데스크나 종합안내판은 로비에 들어서면 누구나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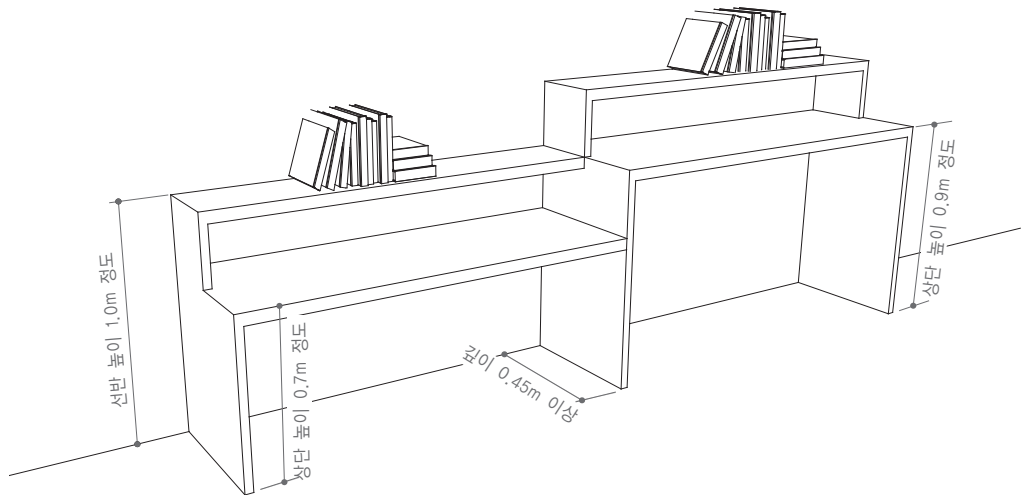
안내데스크 및 작업대

- 안내데스크 및 작업대의 전면에는 유모차를 둘 수 있는 공간과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¹⁾.
- ☑ 안내데스크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0.7-0.9m의 범위 내로 해야 하며¹⁾, 특히 휠체어사용자는 물론 어린이나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 0.7m 정도의 선반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안내데스크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¹⁾.
- 안내데스크에서 방문객을 접할 때는 가급적 동일한 눈높이가 되도록 한다.
- ☑ 작업대에 물건을 놓는 선반을 설치할 때에는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서 손이 닿는 범위가 되도록 하며, 선반 높이는 1.0m 정도가 되도록 한다.
- 안내데스크 및 작업대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며, 몸을 지지하기 쉬운 형상으로 하거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 ☑ 안내데스크 및 작업대에는 지팡이나 우산을 걸 수 있는 훔이나 걸이대를 설치하거나 가방이나 짐 등을 놓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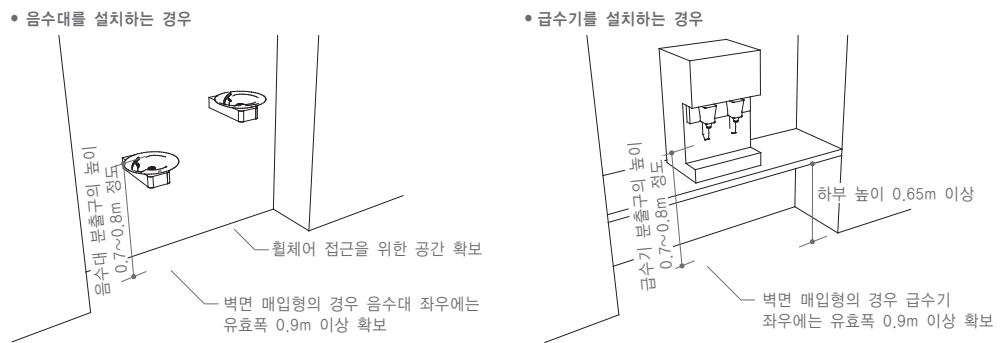
▲ 권장 :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낮은 카운터를 별도로 설치한 안내데스크



▲ 권장 :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낮은 카운터를 별도로 설치한 작업대

음수대

- 음수대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¹⁾.
- ☑ 벽면 매입형인 경우에는 전면 접근이 가능하도록 0.9m 이상의 좌우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음수대 분출구의 높이는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가 마시기 쉽도록 고려하여 바닥면에서부터 0.7~0.8m로 한다¹⁾.
- 급수전에 전면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수대 하부가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되어야 한다.
- ☑ 급수기 경우도 음수대와 같은 구조 및 높이, 활동공간을 갖추도록 한다.
-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 자동감지식 음수대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해 수동식을 병행하도록 권장한다.



▲ 권장 :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음수대와 급수기

공중전화

-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설치해야 한다¹⁾.
- 바닥은 통로와 단차가 없어야 한다¹⁾.
- 전화대 뒤편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여 높이가 다른 전화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1.4m로 한다¹⁾.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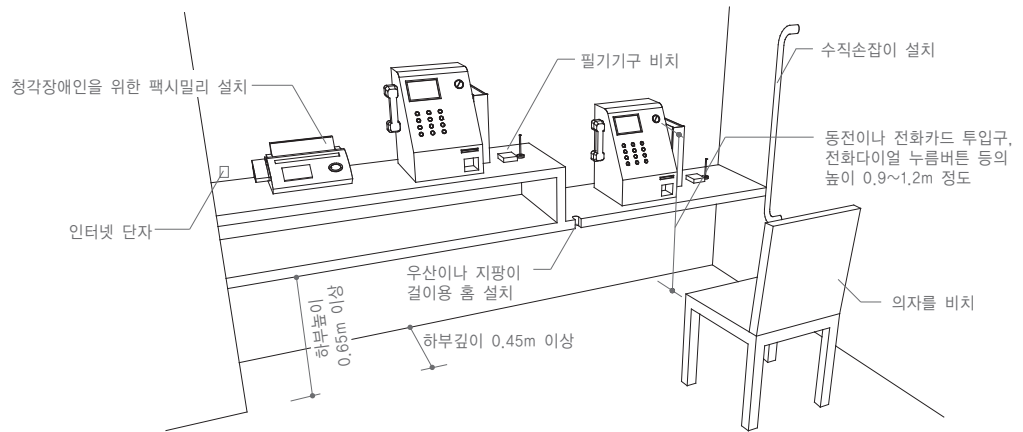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¹⁾.

☑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전화대에는 메모지나 필기구 등을 비치하며,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 인터넷 단자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팩시밀리 등을 비치하도록 권장한다.

- 외국인을 위해 사용법 등을 다국어로 병기하도록 권장한다.



▲ 권장 : 어린이, 임산부, 노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공중전화

유도 및 안내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필기구를 비치하고, 약시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설비, 난청인을 위해 진동호출기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 전광판 등을 이용한 문자안내 표시는 방송과 같은 음성 안내를 듣지 못하는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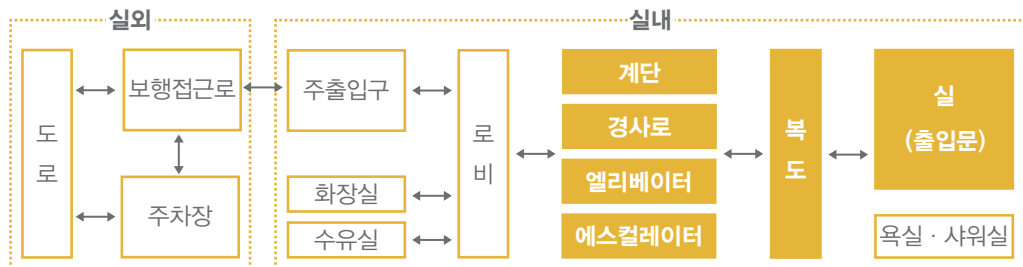
☑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를 병기한 사인이나 문자안내를 제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인적 대응도 배려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이동공간

가이드라인 방향

- 이동공간은 실과 실을 연결해 주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복도, 출입문,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해당된다.
- 로비나 홀에서 건물 내 각 실까지 사용자의 이동경로는 연속성이 있도록 하며, 단차가 없도록 계획한다.
- 이동경로에는 적재적소에 손잡이를 통일되게 설치하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감재를 선택한다.
- 유모차,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가장 기본적인 실은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수평이동을 기본으로 하여 배치하고 가급적 수직이동은 피한다.
- 건물 내의 실 배치는 건물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도 알기 쉬운 이동경로로 계획하며, 가급적 머리 속으로 건물의 지도를 그리기 쉽도록 직교하는 이동경로로 계획한다.
- 어린이, 장애를 가진 사람 등 신체조건이나 동작속도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치수나 폭으로 계획한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은 장시간 서 있거나 보행할 경우 쉽게 피로해지므로, 엘리베이터 홀이나 복도 등에는 의자를 두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 임산부, 휠체어사용자,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피난 방법 및 경로의 연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며, 가급적 인적 대응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 복수의 수법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림 3-5> 이동공간의 공간요소

이동공간 -복도

기본지침

- 복도는 실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동공간이므로 사용자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의 용도와 규모 등에 적절한 여유 있는 폭을 확보해야 한다.
- 사용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고, 설비기구나 기둥 등의 돌출물이 없도록 한다.
- 복잡하게 연결하거나 방향전환이 적은 복도로 계획하여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한다.
-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유도·안내정보를 적재적소에 설치한다.
- 마감재는 각 층별 또는 조닝별로 다른 색상이나 패턴을 활용하여 현 위치를 인지하기 쉽게 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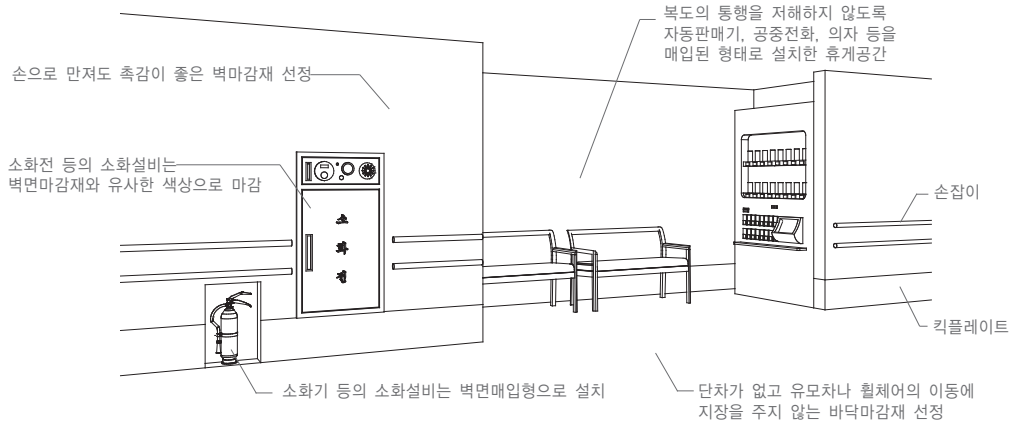
유효폭

- ☑ 유모차 이동이나 휠체어의 방향전환 등을 고려해 유효폭은 1.5m 이상(법적치수 편복도 1.2m 이상, 중복도 1.5m 이상)¹⁾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 통행량이 많은 복도의 경우에는 가급적 1.8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관리자용 복도는 1.2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행장애물

- ☑ 벽면이나 독립기둥 등에는 안전을 위해 돌출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0.6~2.1m의 높이에 돌출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벽면의 돌출부 폭은 0.1m 이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부 폭은 0.3m 이하로 한다¹⁾.
- ☑ 소화기 등은 벽 매입식을 채용하고, 실 안내판은 바닥 설치식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복도상부는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해야 하며, 부득이 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바닥면에서 높이 0.6m 이하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해야 한다¹⁾.
- ☑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의 설비는 벽면에 매입된 형태로 하여 복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복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휴게공간과 소화기구

바닥마감

☑ 복도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¹⁾.

☑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¹⁾.

- 바닥마감재로 카펫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모차, 휠체어, 짐수레 등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행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한다.
- 백내장의 사람이 단차로 오인하기 쉬운 문양을 가진 바닥마감재는 지양한다.
-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공간 등 일부 바닥면은 마감재의 패턴을 달리하여 단순한 이동공간이 아닌 변화가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복도 폭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통행하기 쉬운 마감재와 시각장애인 등이 걷기 쉬운 마감재 등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한다.



▲ 휠체어사용자, 장애인은 물론 일반사용자를 고려한 바닥마감 예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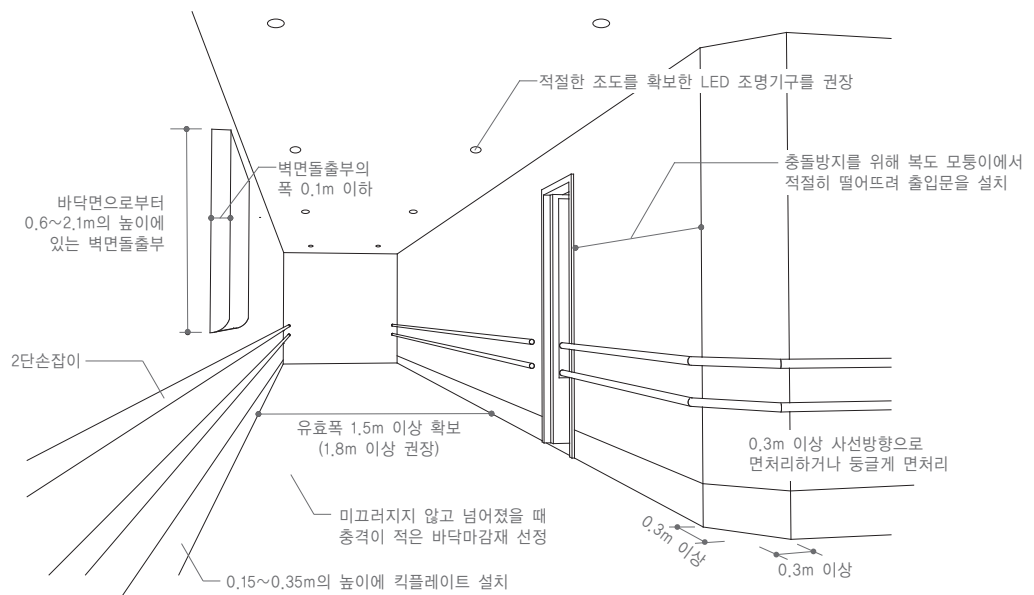
벽 마감

□ 벽 마감재료는 손으로 만져도 촉감 등이 좋은 것으로 채용하며, 소화전 등 소화설비의 마감색상도 가급적 벽면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벽면이나 바닥 마감재료의 질감, 색상 등을 층별이나 조닝별로 달리하여 건물 내 사용자의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유도 및 경고용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원활한 이동을 위해 벽이나 기둥 모서리는 각 벽면 0.3m 이상을 사선방향으로 면 처리하거나 둥글게 마감하도록 권장한다.

-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0.35m의 높이에 킥플레이트를 설치한다¹⁾.



▲ 권장 :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복도공간

유도 및 안내

- 통행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눈부심이 없도록 하며, 발밑조명, 비상용 조명장치를 적절히 설치한다.

- 약시나 어느 정도 빛을 느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급적 중복도가 아닌 편복도로 하여 자연채광을 확보하거나 한쪽 벽면의 색을 바꾸어 방향성을 인식하기 쉽도록 한다.

□ 점자블록보다 바닥패턴, 손잡이, 벽면의 요철, 음성 또는 음향신호, 소리, 냄새, 빛 등 복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목적지까지 유도한다.

□ 목적지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높이에 유도 및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며,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 병기나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잡이

- 노인이나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의 복도에는 손잡이를 방화문 등이 설치되는 부분을 제외한 설비기구나 점검용 문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하여 설치해야 하며¹⁾, 가급적 양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손잡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므로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손잡이를 잡으면서 이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지방법으로 설치한다.

☑ 키가 작은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이 사용하기 쉽도록 2단손잡이를 권장한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pm 5cm$ 에 설치하며, 2단손잡이의 경우 상단손잡이의 높이는 0.85m 내외, 하단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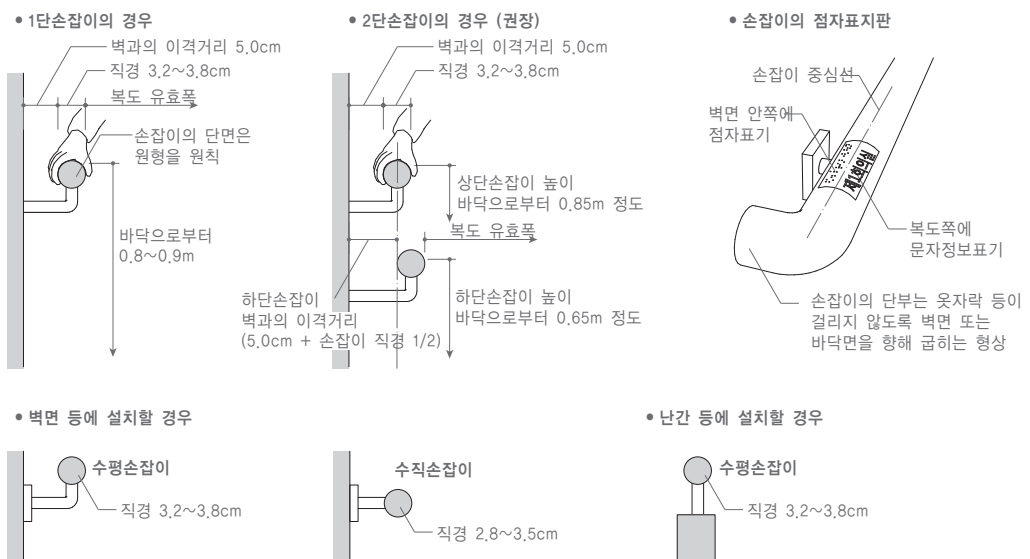
-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벽과 손잡이 사이 간격은 5cm 정도로 하며¹⁾, 2단손잡이의 경우 하단손잡이는 손잡이 직경의 1/2 정도를 더하여 상단손잡이보다 복도측으로 설치한다.

- 움켜잡기 쉬운 손잡이의 직경은 3.2cm~3.8cm 정도이며¹⁾, 기립할 경우 움켜잡기 쉬운 수직손잡이의 직경은 2.8~3.5cm 정도를 권장한다.

-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의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는 형상이어야 한다.

☑ 내구성이나 내식성이 우수하며,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온도변화 등을 고려하여 따뜻하고 감촉이 좋은 재질로 한다.

☑ 시각장애인에게 현재의 위치, 진행방향,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안쪽 상부면 권장)해야 하며¹⁾, 바깥쪽 상부면에는 문자정보를 병기하도록 한다.



▲ 권장 : 손잡이의 설치기준과 점자 및 문자정보 표기방법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동공간 - 출입문

기본지침

-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 노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폭을 확보하며, 문턱 등에 단차가 없도록 한다.
- 양손에 짐을 든 사람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문의 형태 및 구조가 되도록 한다.
- 열린 출입문으로 인해 복도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시각장애인 등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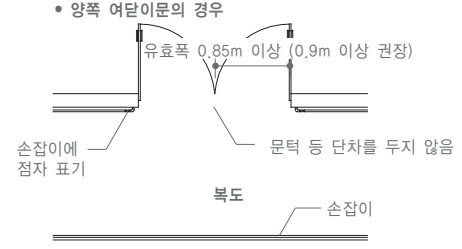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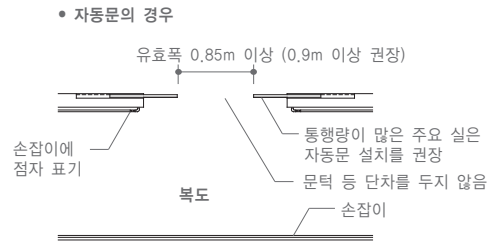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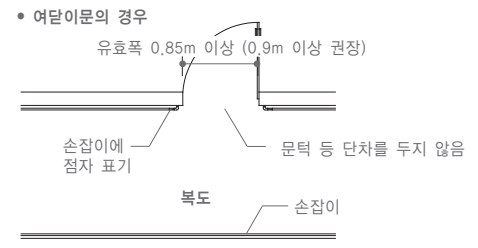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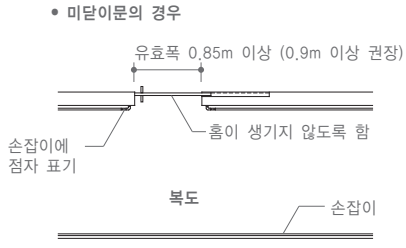
유효 폭

- ☑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은 0.85m 이상(법적치수 0.8m 이상)¹⁾으로 하며, 유모차나 큰 물건의 운반을 고려하여 0.9m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문의 개폐를 위해 문의 전면에는 1.2m 이상의 유효거리를 확보하되,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¹⁾.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문 손잡이가 있는 부분의 측면은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문을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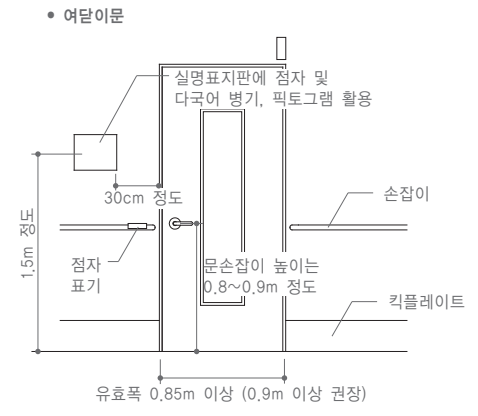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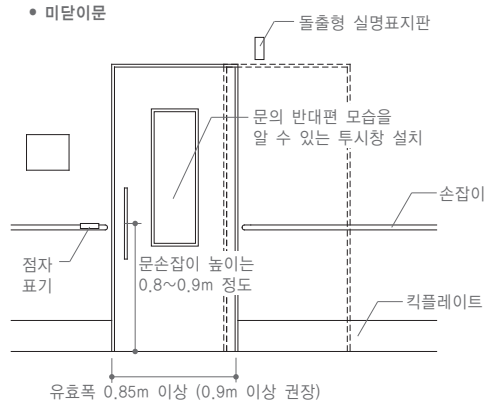
형태 및 구조

- ☑ 출입문은 회전문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¹⁾, 통행량이 많은 주요 실의 출입문을 가급적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출입문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홈 등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¹⁾.
- 미닫이문은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을 위해 가벼운 재질로 하며, 도어체크를 설치한 여닫이문은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확보해야 한다¹⁾.
- 열린 출입문이 복도 등의 통로를 차단하거나 돌출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
-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 등의 출입문은 어린이, 임산부, 유모차, 노인, 휠체어의 통행을 고려해 문 반대편의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투시창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실의 문은 충돌방지를 위해 복도가 꺾이는 모퉁이 부분에서 충분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 자동문 등 전면이 투명유리로 된 출입문은 충돌방지를 위한 표식 등을 보기 쉬운 높이에 붙이도록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출입문의 종류에 따른 평면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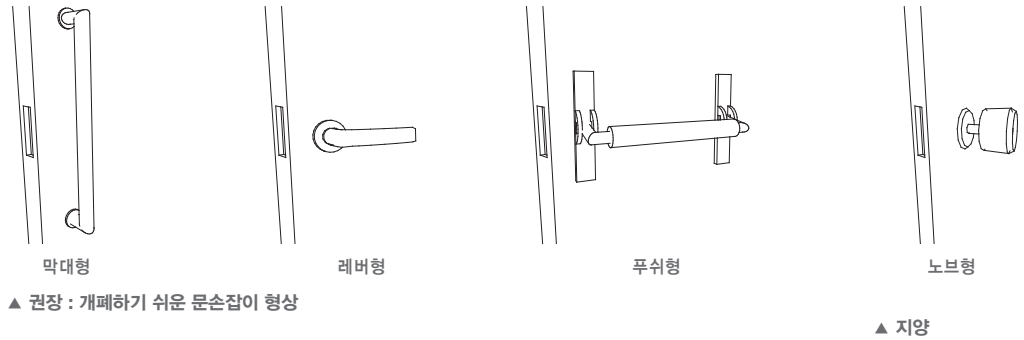


▲ 권장 : 출입문의 종류에 따른 입면 설치방법

문손잡이

- 문손잡이의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며¹⁾, 키가 작은 어린이의 사용을 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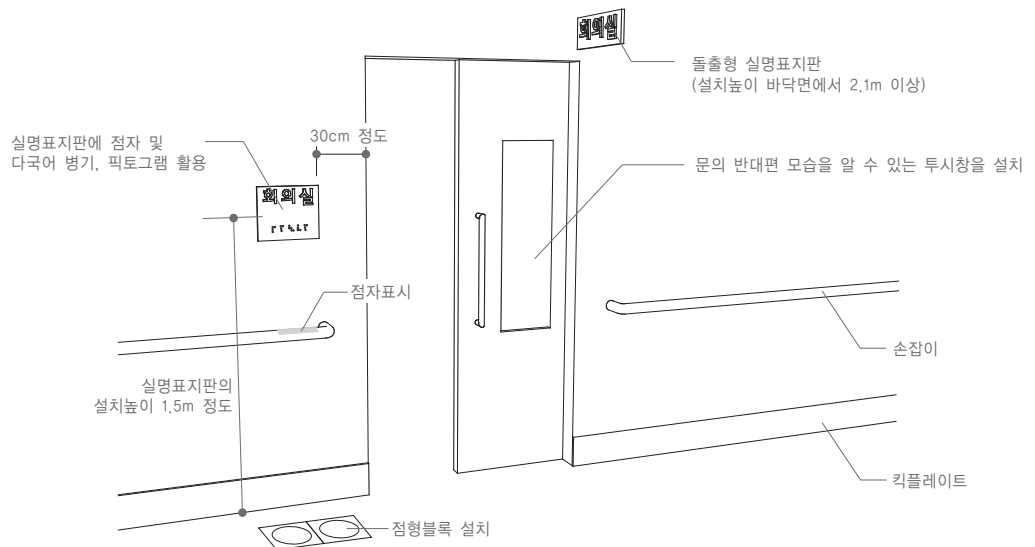
☑ 문손잡이의 형상은 적은 힘으로도 개폐할 수 있도록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한다.



유도 및 안내

☑ 주된 실의 출입구에는 양측 손잡이 및 문손잡이 측의 벽면에 1.5m의 높이¹⁾에 실명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를 병기한다.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은 출입문 전면의 측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



▲ 권장 : 출입문 주변의 각종 유도 및 안내방법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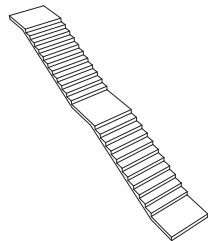
이동공간 - 계단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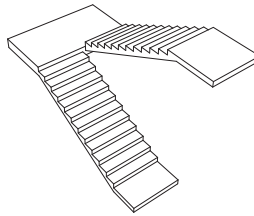
- 계단은 오르내리는 동작을 행하는 장소로,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계단코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첩면 높이 및 디딤판 넓이는 중간에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한다.
- 계단 손잡이는 양측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구조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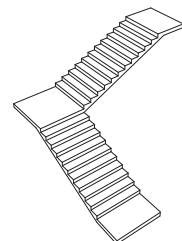
- ☑ 관리자용 계단을 제외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으로 하며, 돌음 또는 나선형 계단으로 해서는 안된다.
-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관리자용 계단을 제외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양손에 짐을 든 사람이나 목발사용자,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¹⁾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옥외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직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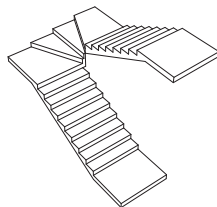


꺾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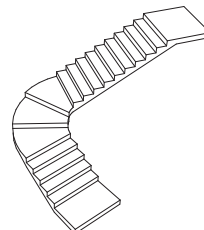


꺾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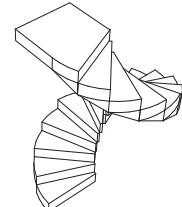
▲ 권장 : 오르내리기 쉬운 안전한 계단 형상



돌음형



돌음형



회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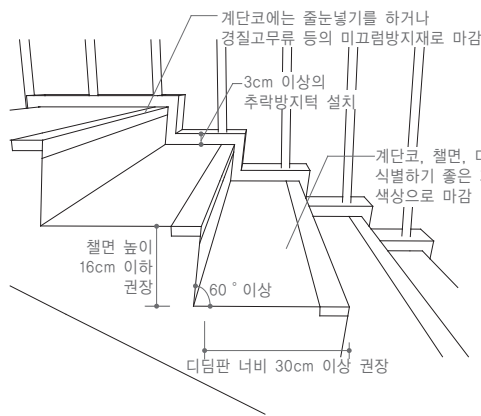
▲ 지양 : 오르내리기 어려운 계단 형상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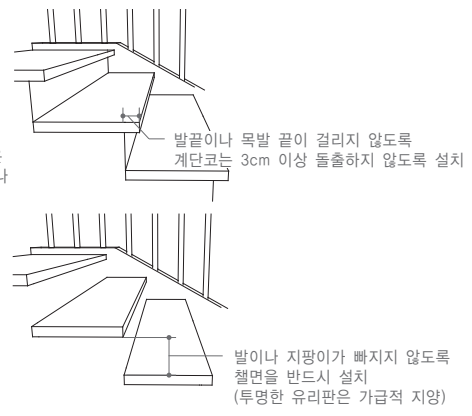
☑ 디딤판의 너비는 30cm 이상, 철평의 높이는 16cm 이하(법적치수 디딤판 28cm 이상, 철평 18cm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에서 치수를 도중에 바꾸지 않고 균일해야 한다¹⁾.

☑ 계단에는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철평을 반드시 설치하며¹⁾, 투명한 유리판으로 된 계단은 지양한다.

- 디딤판의 끝부분은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않도록 철평의 기울기를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하며, 계단코는 3cm 이상 돌출하지 않아야 한다¹⁾.
- 계단 하부의 높이가 2.1m 이하인 경우에는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망이나 의자, 식재, 점자블록 등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 권장 : 계단의 디딤판, 철평의 설치 방법



▲ 지양 : 안전하지 못한 계단 구조

바닥마감

☑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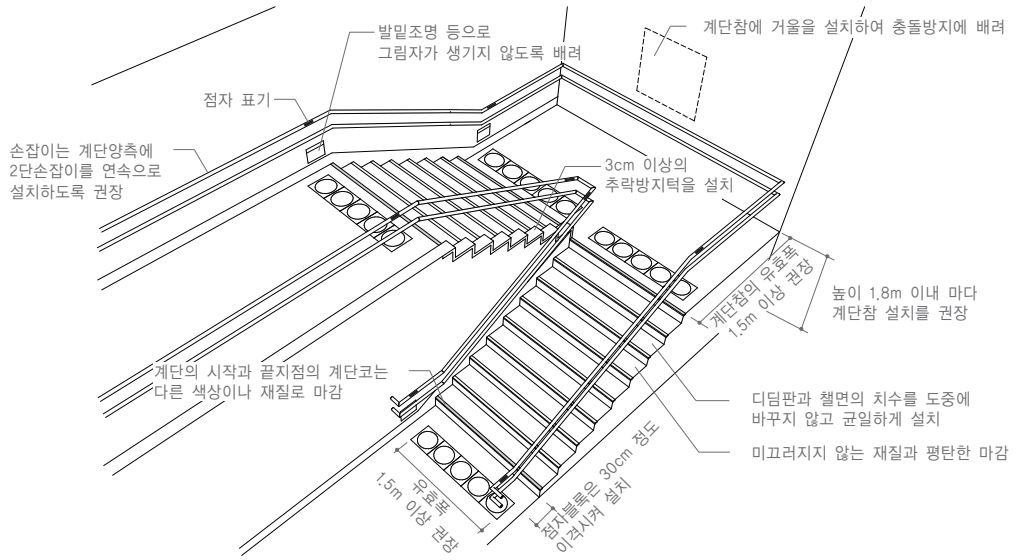
-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해야 한다¹⁾.

☑ 계단코, 철평, 디딤판은 약시 등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명도차이, 채도차이, 질감차이, 조명의 밝기 등을 배려하여 안전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계단의 시작 및 끝지점의 계단코는 색상 등을 달리하여 식별성과 안전에 최대한 배려하도록 권장한다.

-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색상 등을 달리해야 한다¹⁾.
-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실이 없는 층(기계실이 있는 지하층이나 옥상 등)으로 연결되는 계단에는 반드시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안전하고 편리한 계단 구조

난간 및 손잡이

- ☑ 계단 측면이 벽면이 아닌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형식으로 하며, 난간하부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3cm 이상(법적치수 2cm 이상)¹⁾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 지팡이나 목발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 ☑ 계단 손잡이는 방화문 등이 설치된 곳을 제외하고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계단 참을 포함하여 연속되게 설치하며¹⁾, 계단의 양측에 2단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며¹⁾, 손잡이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구부린다.
 - 수평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¹⁾ 문자를 병기해야 한다.
 - 높이가 1.0m 이하인 계단을 제외한 계단 폭이 3.0m를 넘을 경우에는 중앙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 기타 손잡이의 세부 설치기준은 Ⅲ.공공건축물 중 손잡이(p.154)의 규정에 준한다.

조명

- ☑ 계단은 수직이동하는 장소로 안전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자연채광이나 조명장치 등을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철편과 디딤판의 구별이 쉽도록 한다.
 - 발밑조명이나 비상용 조명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외벽에 면한 계단은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작은 창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배려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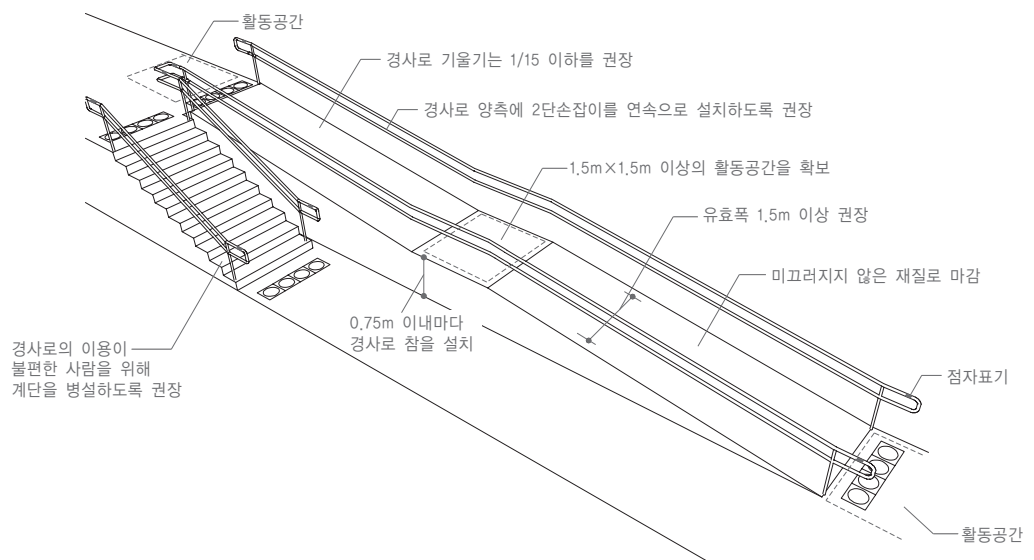
이동공간 - 경사로

기본지침

-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부득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설치위치, 기울기, 폭, 바닥마감재, 경사로 참, 손잡이 등을 배려한다.
- 보행자, 유모차, 휠체어사용자, 짐수레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폭으로 계획하도록 배려한다.
- 경사로의 이용이 불편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 어린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계단을 병설하도록 배려한다.

구조 및 형태

- ☑ 경사로의 유효 폭은 복도와 동일한 1.5m 이상(법적치수 1.2m 이상)¹⁾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가급적 계단과 병설하도록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굴절지점,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¹⁾.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¹⁾.
- ☑ 경사로의 기울기는 가급적 완만한 경사가 되도록 1/15 이하(법적치수 1/12 이하)¹⁾를 권장한다.



▲ 권장 : 계단을 병설한 경사로의 설치 방법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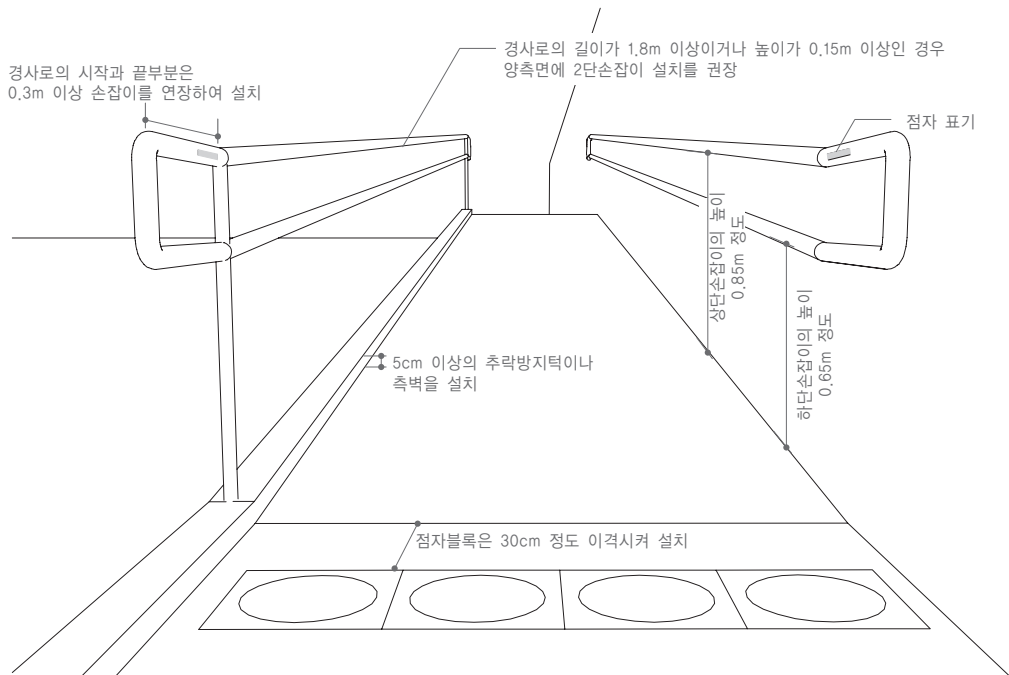
마감

☐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되¹⁾, 휠체어의 주행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않도록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한다.
-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벽면 충돌을 대비하여 벽면에 충격 완화용 매트를 부착할 수 있으며, 주변과 조화를 이룬 재질이나 색상으로 마감한다.

☐ 어린이, 노인, 약시자 등이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 경사부분과 수평한 참부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명도차이, 채도차이, 질감차이, 조명발기 등을 배려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지점, 참 등의 0.3m 전면에는 경사로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한다.



▲ 권장 : 경사로의 손잡이 및 점자블록의 설치 방법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잡이

-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며¹⁾, 양측면에 2단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해야 하며¹⁾, 손잡이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이나 벽 방향으로 구부린다.
- G** 수평손잡이의 양끝부분에는 현재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과 문자를 병기한다.
- 기타 손잡이의 세부 설치기준은 III.공공건축물 중 손잡이(p.154)의 규정에 준한다.

유도 및 안내

- 경사로의 위치를 유도하고 안내하는 사인을 연속하여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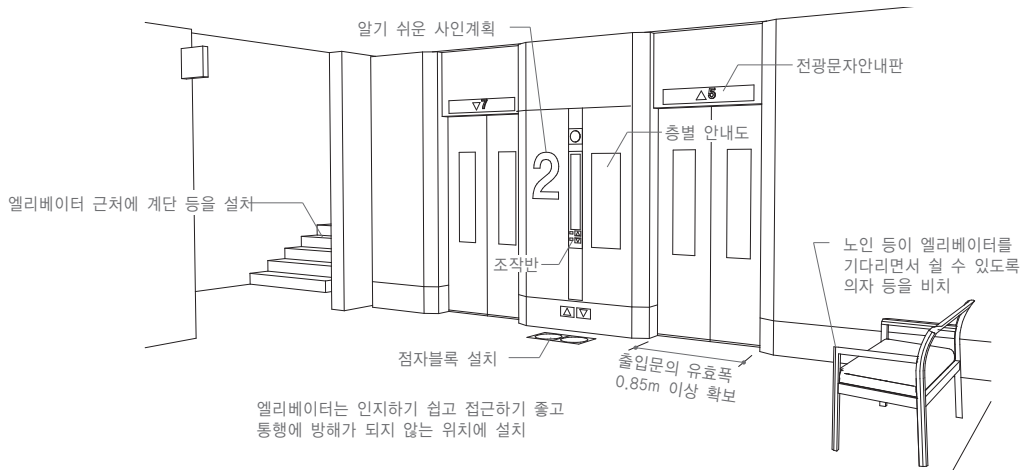
이동공간 - 엘리베이터**기본지침**

- 엘리베이터는 상하층의 이동수단으로서 이용빈도가 매우 높은 설비이며,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층 규모와 상관없이 설치한다.
-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며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
- 엘리베이터의 조작반은 키가 작은 어린이, 외국인, 노인, 시각장애인 등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의 신체특성을 고려한다.

위치

- G** 건축물의 주출입구나 안내데스크에서 가까우며, 복도에서 인지하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¹⁾.
- G**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수직이동 수단과 근접하게 설치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배치가 되도록 권장한다.
- G**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유모차, 짐을 가진 사람, 휠체어,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해 저층건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접근하기 쉽고 인지하기 쉬운 엘리베이터 승강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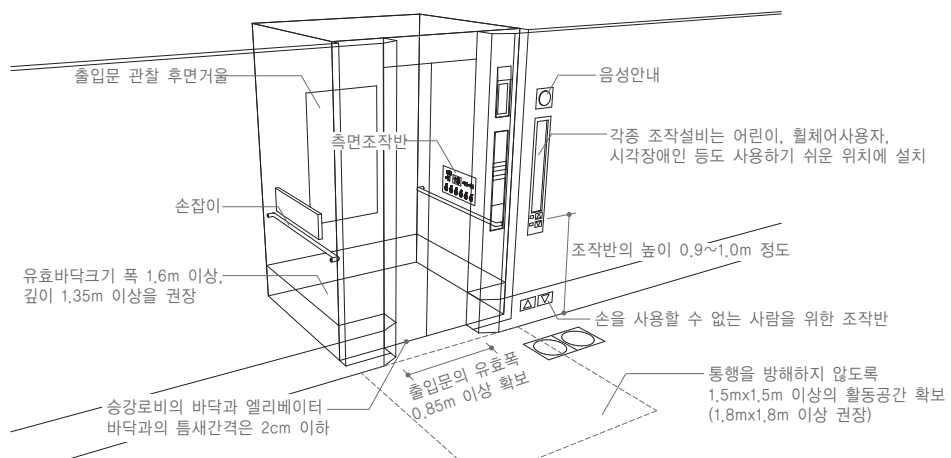
구조 및 형태

☑ 엘리베이터 승강로비는 복도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1.5m×1.5m 이상(법적치수 1.4m×1.4m 이상)¹⁾의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교행이나 회전을 위해 1.8m×1.8m 이상을 권장하며, 이용량이 많은 층은 가급적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출입문 일부에 투시창 설치를 고려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하며¹⁾, 유모차나 휠체어 등 이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측면조작판, 출입문 관찰 후면거울, 관통형 출입문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한다¹⁾.
- 필요에 따라 걸터앉을 수 있는 의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권장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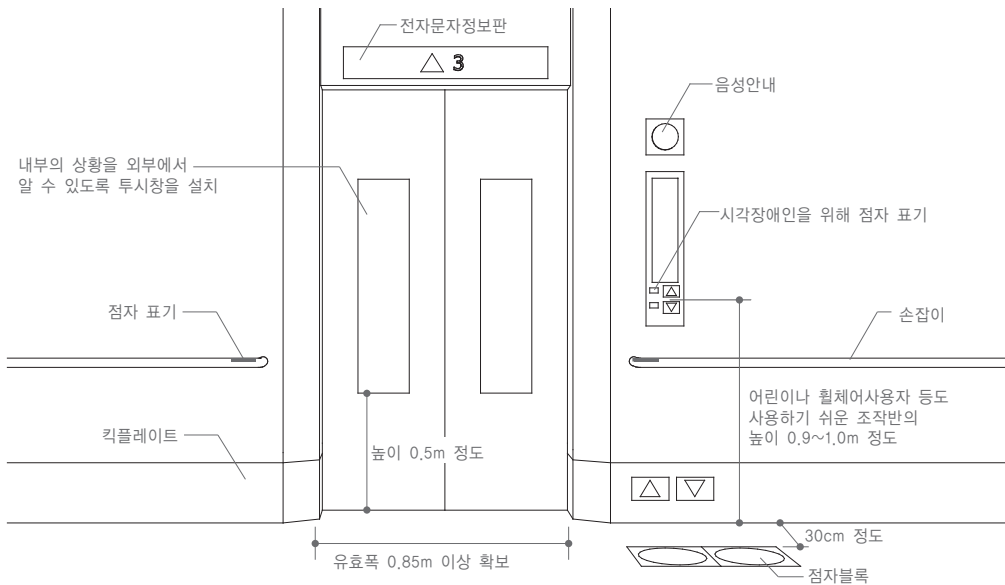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출입문

☑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5m 이상(법적치수 0.8m 이상)¹⁾으로 하며, 영유아 동반자, 유모차, 휠체어의 이용이나 큰 짐의 운반을 고려해 0.9m 이상을 권장한다.

☑ 승강로비의 바닥과 엘리베이터 바닥의 틈새 간격은 2cm 이하(법적치수 3cm 이하)¹⁾를 권장한다.

-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1.4m 높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¹⁾.
- 사람이나 물체가 엘리베이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한다¹⁾.
- 노인, 장애인 등은 행동특성상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문의 닫히는 속도를 열리는 속도보다 느리게 하는 방법 등을 배려한다.



▲ 권장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입구 주변

조작설비

☑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엘리베이터의 안쪽에 설치하는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에 설치해야 한다¹⁾.

-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설치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유효 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¹⁾.
-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충수 등을 점자로 병기한다¹⁾.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㉔ 조작버튼은 손등이나 팔꿈치로도 누를 수 있는 큰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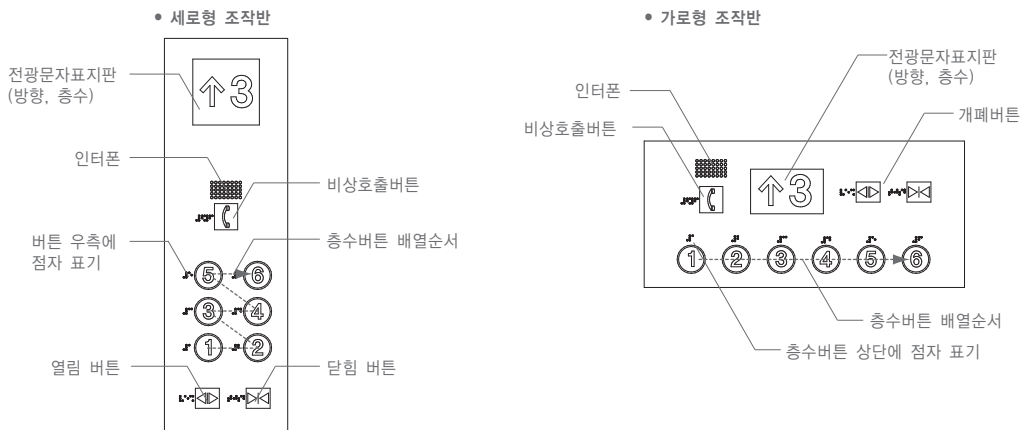
-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¹⁾.

㉕ 세로형 조작반의 배열은 아래에서부터 개폐버튼(오른쪽 열림, 왼쪽 닫힘) - 층수 버튼 - 비상호출버튼(인터폰) - 문자정보판(층수 및 방향표시)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버튼의 좌측에 점자를 표기하도록 한다.

㉖ 세로형 조작반의 층수 버튼의 배열은 낮은 층수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지그재그로 층수를 표기하도록 한다.

㉗ 가로형 조작반의 배열은 상단 좌측에서부터 비상호출버튼(인터폰) - 문자정보판(층수 및 방향표시) - 개폐버튼(오른쪽 열림, 왼쪽 닫힘)의 순서로 배열하며, 하단에는 층수 버튼을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㉘ 가로형 조작반의 점자는 층수 버튼의 상단에 표기하며, 나머지 버튼은 좌측에 표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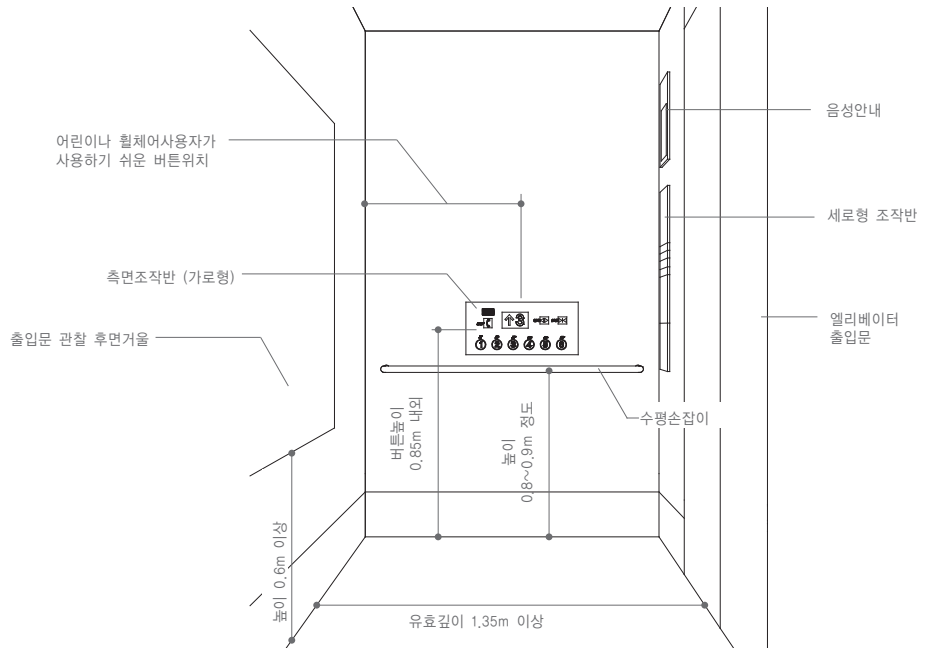


▲ 권장 : 세로형과 가로형 조작반의 버튼 배열 방법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잡이

- 엘리베이터 내부의 수평손잡이는 높이 0.8-0.9m의 범위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 손잡이와 벽면 사이 간격은 3cm 이내로 하며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한다¹⁾.
- 기타 손잡이의 세부 설치기준은 III.공공건축물 중 손잡이(p.154)의 규정에 준한다.



▲ 권장 : 엘리베이터 내부의 손잡이 및 버튼 높이

유도 및 안내

- 엘리베이터의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 lux 이상으로 한다¹⁾.
- ㉔ 각 층의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한다¹⁾.
- ㉔ 엘리베이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¹⁾.
- 층수 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한다¹⁾.
-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¹⁾.
- 승강로비의 조작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¹⁾.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동공간 - 에스컬레이터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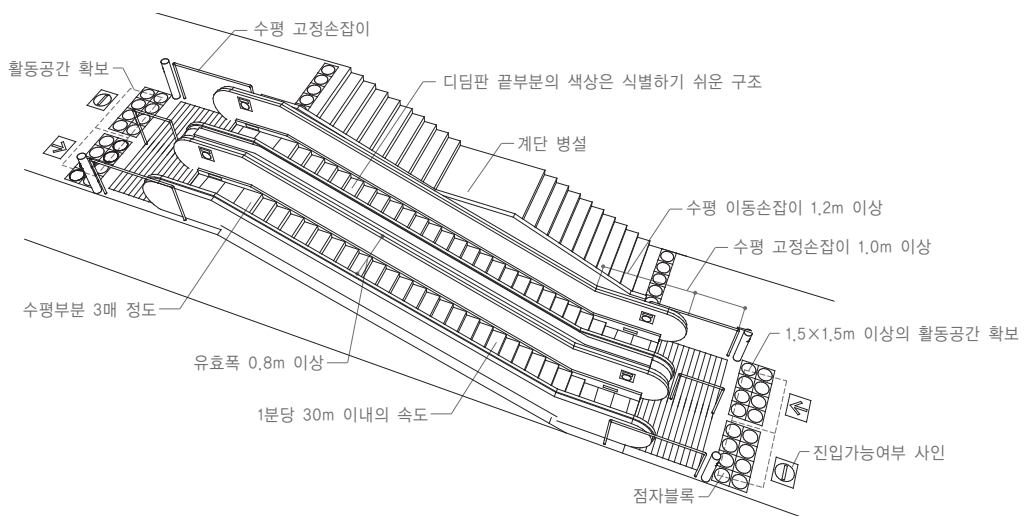
- 에스컬레이터는 상하층의 이동수단으로서 이용빈도가 매우 높은 설비이므로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도록 한다.
- 휠체어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인 경우에는 인적대응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가까운 거리에 엘리베이터를 병설하도록 한다.

구조 및 형태

-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한다¹⁾.
-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수단이 없는 경우 휠체어의 승·하강을 고려해 수평부분의 디딤판을 3매 이상¹⁾ 또는 1.2m 이상 수평상태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 ☑ 디딤판의 끝부분은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색상, 재료 등으로 구분하도록 권장한다.
- 에스컬레이터 속도는 1분당 30m 이내로 한다¹⁾.

승강장

- ☑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고, 주변 바닥마감재와 질감, 색상 등의 차이를 두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승강장 전면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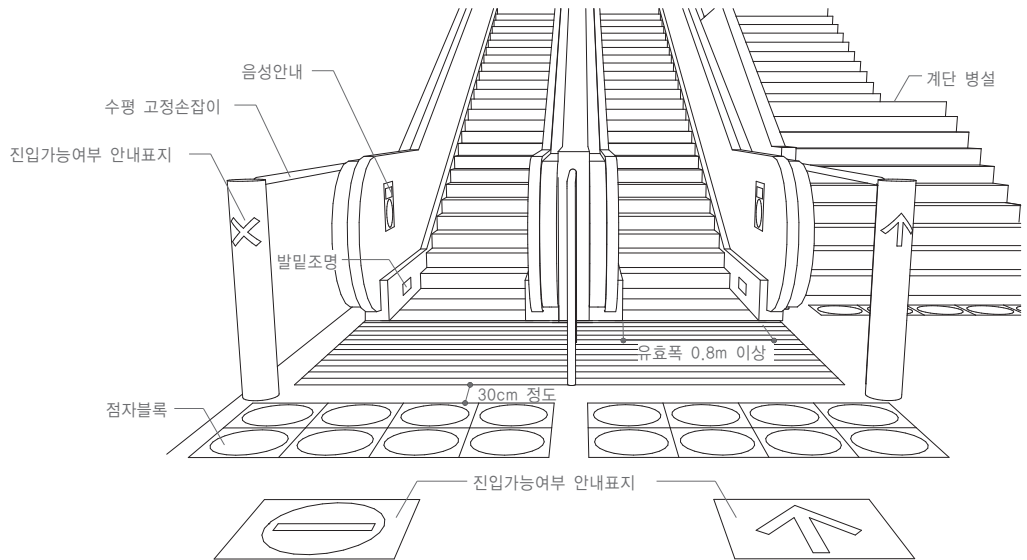


▲ 권장 :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예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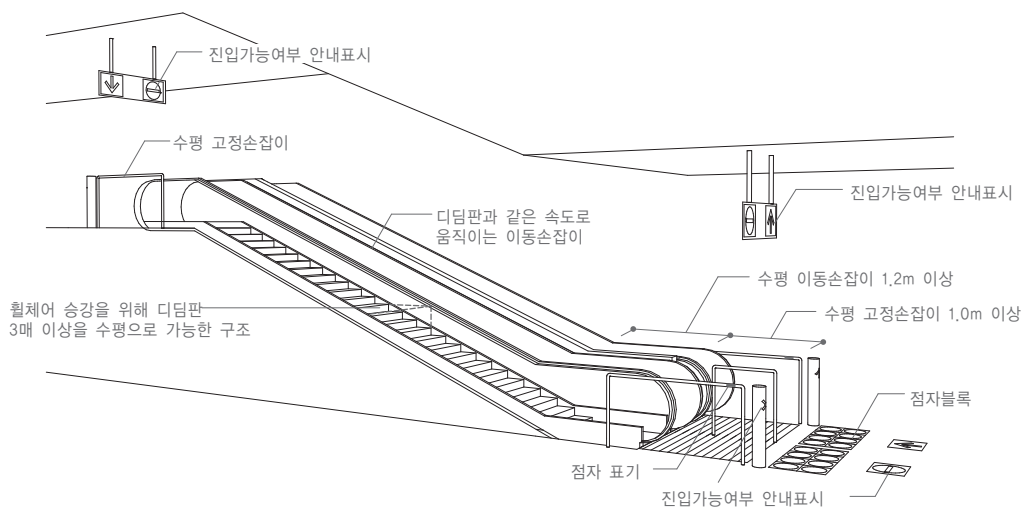
-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한다¹⁾.
-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에는 수평 이동손잡이를 1.2m 이상 설치한다¹⁾.
- 수평 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0m 이상의 수평 고정손잡이를 설치하며, 수평 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한다¹⁾.



▲ 권장 : 에스컬레이터의 진출입구

유도 및 안내

- ☑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의 가까운 곳에는 진입가능여부를 표시하거나 음향안내 등의 안내 사인을 설치한다.
-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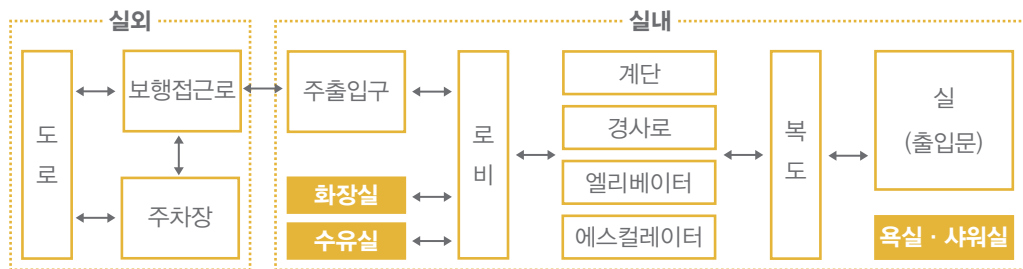
▲ 권장 : 에스컬레이터의 유도 및 안내사인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 위생공간

가이드라인 방향

- 위생공간은 기본적인 배설하고 몸을 씻는 동작 외에도 휴게장소로 활용되는 등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동작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화장실, 수유실, 욕실 및 샤워실이 해당된다.
-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외국인, 노인,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등 서로 다른 동작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작의 치수, 속도, 정확성 등을 배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 화장실이나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행동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동작하는 일련의 행동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 화장실이나 욕실 등은 좁은 공간을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수나 사고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 어린이나 성인 또는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 등 사용자에 따라 동작영역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작치수를 배려한 계획이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 위생공간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환기나 설비기구 등을 채용하며, 쾌적하고 미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그림 3-6> 위생공간의 공간요소

위생공간 - 화장실

기본지침

- 화장실은 누구나 일상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생활공간이며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동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람에 따라 행하는 동작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기 쉬운 설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도 이용할 수 있는 G화장실을 설치하고, 필요한 설비와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일반화장실에도 영유아 동반자나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며,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
- 각 층마다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으나, 가급적 일반화장실 내에 일반 대변기 단위부스 중 하나를 장애인용 부스로 설치한다.
- 폭이나 천정고는 가급적 넓고 높게 하여 폐쇄감을 없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추고 생리, 위생 이외의 문화적인 욕구까지 충족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항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조건으로 방법 및 경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상시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한다.
- 배수가 용이하며 항상 청결하고 보행에 안전한 화장실 바닥을 유지해야 한다.
-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고 원활한 공기순환과 밝기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한다.
-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의 절약사용을 위하여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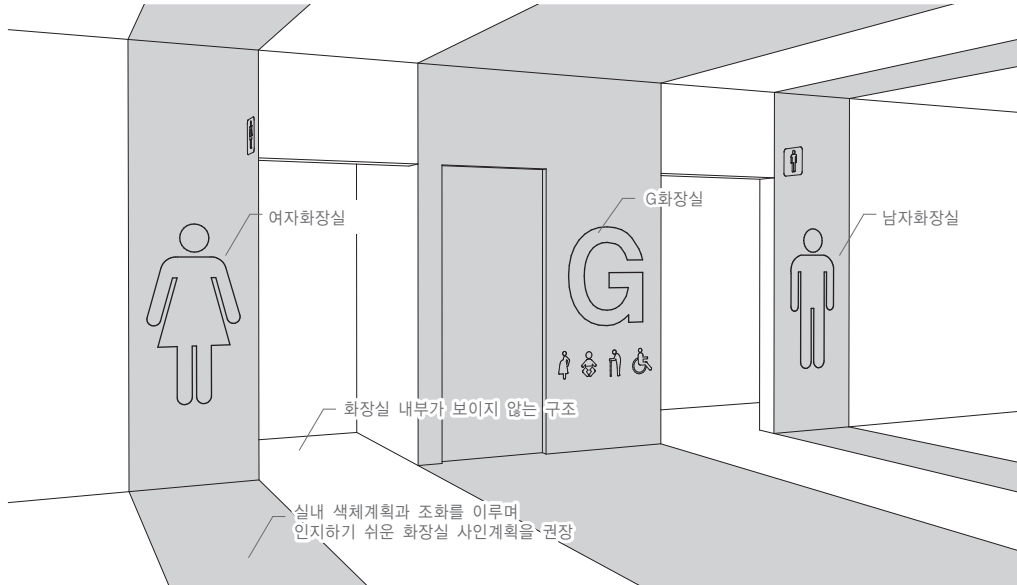
화장실 입구

- 남녀 화장실을 완전 분리시켜 출입구를 따로 설치함으로써¹⁾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화장실 입구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위치나 방향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 ☑ 화장실 내부로 연결되는 통로 유효폭은 0.85m 이상으로 하며, 가급적 0.9m 이상 확보되도록 권장한다.
- ☑ 화장실의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내부가 시각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며, 출입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미닫이문을 권장한다.
-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 G화장실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¹⁾.
- 화장실 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한다¹⁾.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시설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¹⁾.

☑ 외국인을 위해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알기 쉬운 사인으로 계획한다.



▲ 권장 : 누구나 알기 쉬운 화장실 사인계획



▲ 권장 : 남녀용 화장실, 어린이 화장실, G화장실의 구분이 알기 쉬운 사인계획

마감

☑ 화장실의 출입구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¹⁾.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¹⁾,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오염에 강하고, 자국이나 흠집이 쉽게 생기지 않는 내마모성 재료를 사용한다.

☑ 청소하기 용이하도록 틈새가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파손시 개보수가 용이하며 미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마감재를 활용한다.

- 청결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색채의 마감재를 선정하며, 실내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색채계획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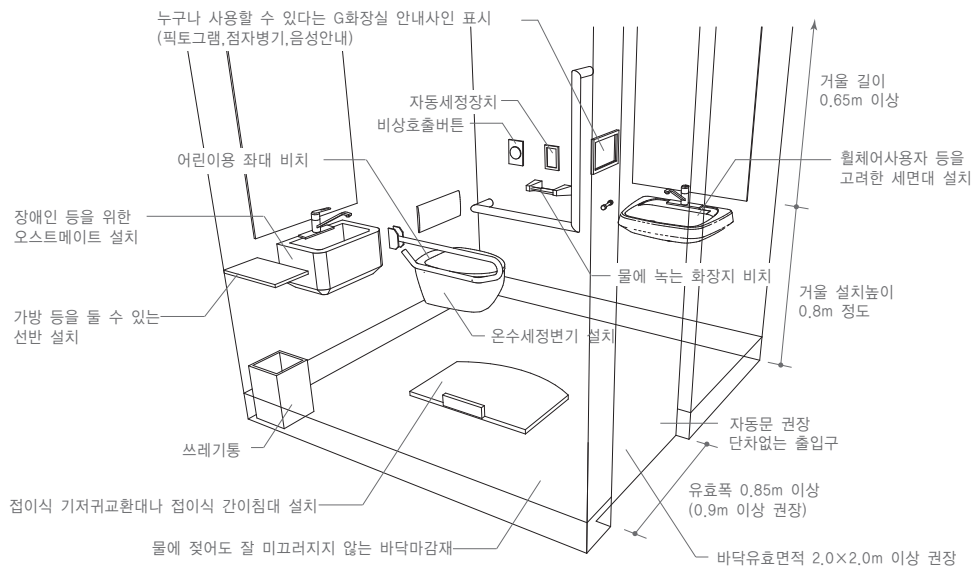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G화장실

- G** 남녀 장애인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기 보다는 G화장실을 각 층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가급적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비의 위치에 따라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G** G화장실의 크기는 2.0m×2.0m 이상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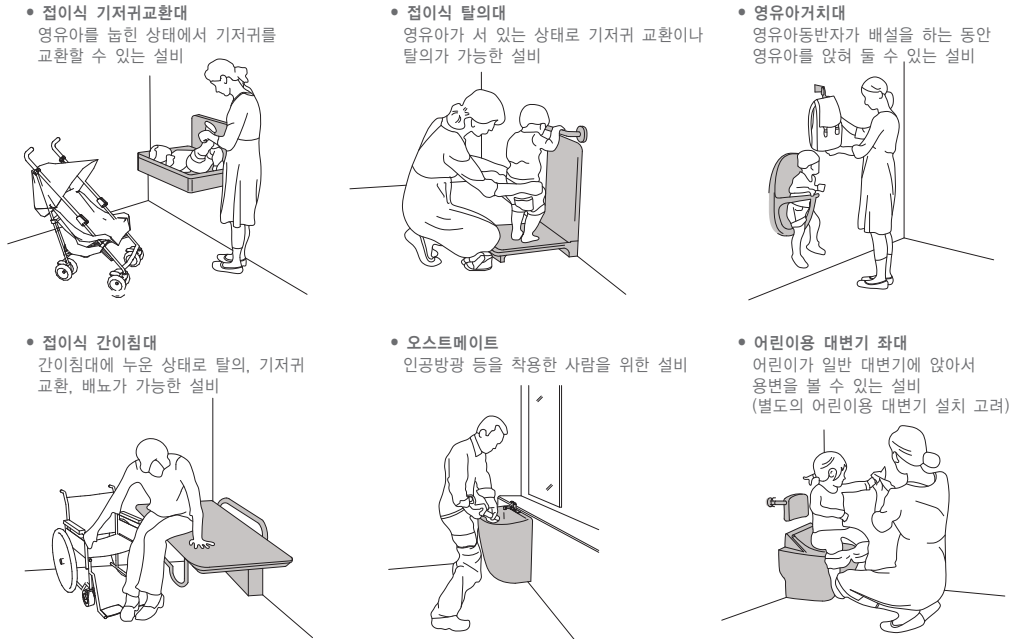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 세면대, 손잡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 G** 다양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위부스 내에 소지품을 둘 수 있는 선반, 외투걸기, 소형거울, 에티켓벨, 영유아거치대, 손잡이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G**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기저귀교환대, 임산부나 노인을 위한 간이침대, 내부장애인을 위한 오스트메이트 등 필요한 설비나 가구를 비치한다.
- G** G화장실로 연결되는 통로와 출입구의 유효 폭은 0.85m 이상(법적치수 0.8m 이상)¹⁾으로 하며, 가급적 0.9m 이상을 권장한다.
- G** G화장실의 출입문 형태는 미닫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가급적 자동문을 권장한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장애인 외에는 사용을 삼가하라는 안내표시를 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 기타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p.175), 세면대(p.177)의 규정을 참조한다.



▲ 권장 : G화장실의 설치 예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G화장실에 설치되는 다양한 기기를 사용하는 장면



▲ 권장 : 건축물 용도에 따라 G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

장애이용 대변기 부스

☑ 일반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장애이용 대변기 부스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며,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와 출입문의 유효폭 0.85m 이상(법적치수 0.8m 이상)¹⁾으로 한다.

☑ 출입문 형태는 가급적 미닫이문이나 접이문을 권장하며, 여닫이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부스 내부에 휠체어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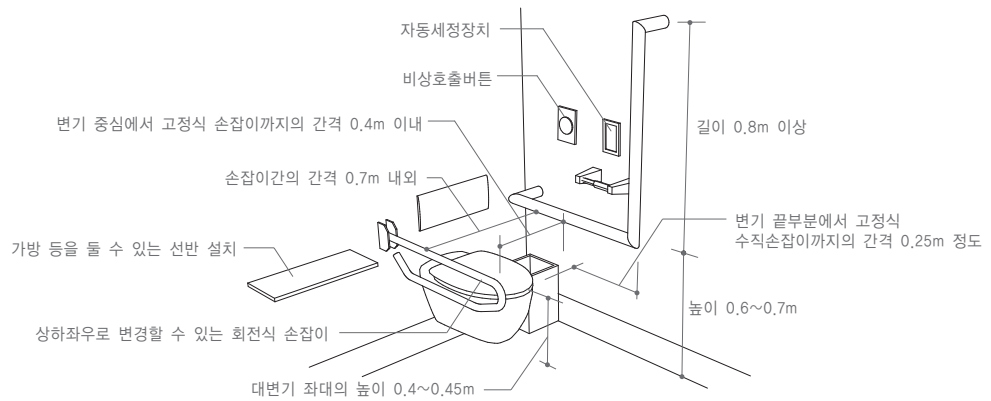
•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한 단위부스의 크기는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¹⁾.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 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하며¹⁾,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대변기는 양변기로 하되, 바닥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않는 형태로 한다¹⁾.

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의 범위 내로 한다¹⁾.
- 대변기의 양옆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6-0.7m의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며, 한쪽에는 고정식으로, 다른 쪽에는 회전식으로 하며, 손잡이간 간격은 0.7m 내외로 한다¹⁾.
- 고정식 수평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한다¹⁾.
- 회전식 수평손잡이는 접어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좋고, 좌우로 접는 경우에는 변기 바깥쪽으로 접혀야 한다.
- 대변기의 한쪽 옆에는 길이 0.9m 이상의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며,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한다¹⁾.
- ☑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 레버식 등¹⁾ 손, 팔꿈치 등으로도 작동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점자표기를 병기하고 자동세정장치는 작동안내표시를 해야 한다.
- 세정장치,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¹⁾.
- ☑ 비상호출장치는 대변기에 앉은 자세에서 또는 바닥에 쓰러진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와 조작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



▲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의 손잡이 설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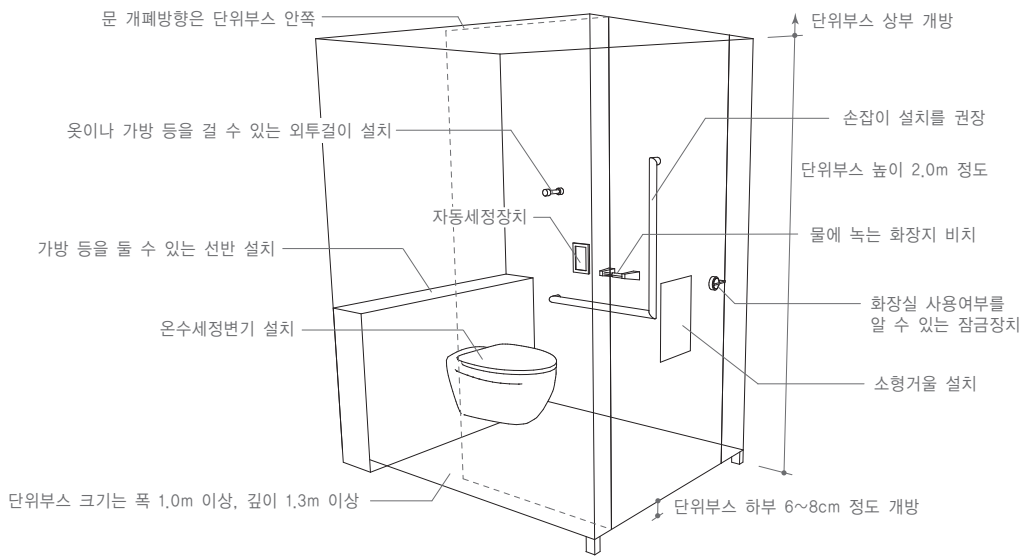
**대변기
단위부스**

- 대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
- ☑ 일반적인 단위부스의 크기는 폭 1.0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가급적 여유있게 확보한다.
- 휠체어사용자나 노인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한 단위부스의 크기는 폭 1.1m 이상(법적치수 폭 0.85m 이상)¹⁾, 깊이 1.3m 이상을 확보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²⁾.
- 출입문의 잠금장치는 견고하면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고 내부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에서 열 수 있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출입문의 개폐방향은 통로가 아닌 단위부스 안쪽으로 열리도록 한다.
-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틈새를 확보하여, 비상시에는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단위부스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6~8cm 정도의 틈새를 확보하여,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 단위부스 높이는 2.0m 정도로 하며, 상부는 환기를 고려하여 개방된 구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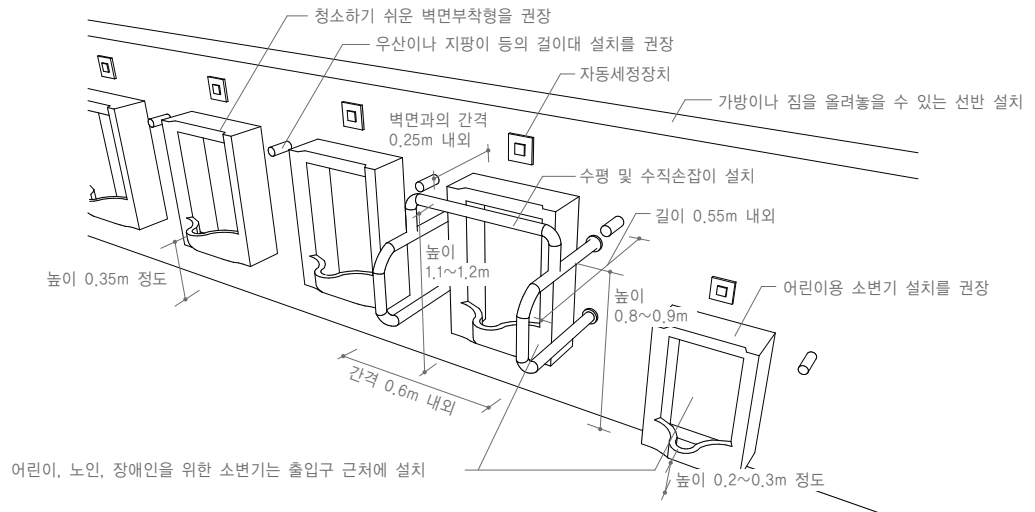
▲ 권장 : 대변기 단위부스의 설치 예

소변기

-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
- 소변기는 1인 점용 폭을 0.75m 이상 확보하며, 칸막이나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¹⁾.
- ☑ 소변기는 화장실 바닥면을 청소하기 쉽도록 가급적 벽면 부착형을 권장한다.
- ☑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한 소변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는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고 후면에는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²⁾.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한다²⁾.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1.2m,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²⁾.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소변기의 설치 예

세면대

- 노인이나 목발사용자 등을 위한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¹⁾.

G 세면대 수는 대변기 단위부스 2개당 1개의 비율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정도,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며, 세면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¹⁾.

G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를 위해 높이가 낮은 세면대를 별도로 설치한다.

- 세면대는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고,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를 설치하며, 냉·온수의 구분을 색상과 함께 점자를 병기한다¹⁾.

- 세면대의 거울은 어린이, 키가 큰 사람,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를 배려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세면대 상단부터 세로길이 0.65m 이상으로 한다. 특히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거울상단부분을 15°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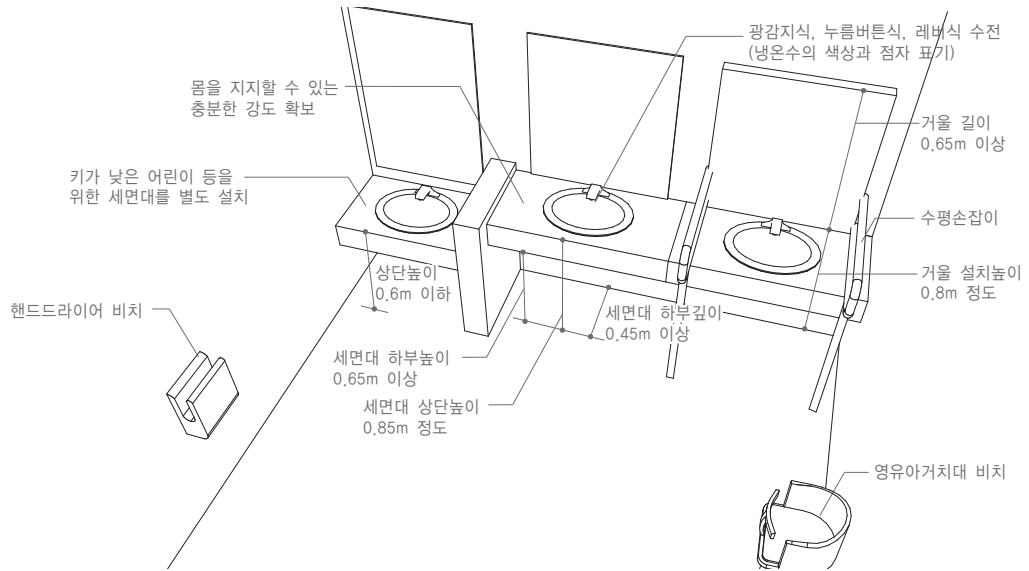
G 여자 화장실의 세면대는 파우더 룸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파우더 룸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 세면대 주변에 핸드드라이어와 종이타올을 설치한다.

G 수전은 거울철을 고려하여 온수를 공급하도록 하며, 어린이나 노인 등을 위해 높이가 낮은 핸드드라이어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세면대에는 선반, 외투걸이, 우산걸이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영유아 동반자가 많은 건축물의 경우 세면대 주변에는 영유아거치대의 설치를 고려한다.



▲ 권장 : 어린이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한 세면대의 설치 예

영유아용 설비

- ☑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은 어린이용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어린이용 화장실은 부모의 동행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밝고 청결하며 경쾌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색채계획이나 마감재 등을 선정한다.
- ☑ 어린이용 화장실이나 어린이용 설비는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어린이용 대변기 및 소변기, 어린이의 키 높이를 고려한 세면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어린이용 대변기를 양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해야 하며, 일반 양변기와 겸용할 경우에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대를 설치해야 한다¹⁾.
 -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0.2-0.3m의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¹⁾.
 -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0.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해야 한다¹⁾.
- ☑ 여자 화장실은 물론 남자 화장실에도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기저귀나 옷을 갈아 입힐 수 있는 접이식 또는 벽면 수납형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일반화장실 내에는 세면대 주변이나 영유아거치대가 있는 대변기 부스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반화장실의 일부분에 모유수유나 기저귀를 교환하기 위한 유아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순간온수기, 개수대, 기저귀교환대, 기저귀휴지통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어린이의 사용을 고려하여 핸드드라이어는 손의 직하투입형 등 설치 높이나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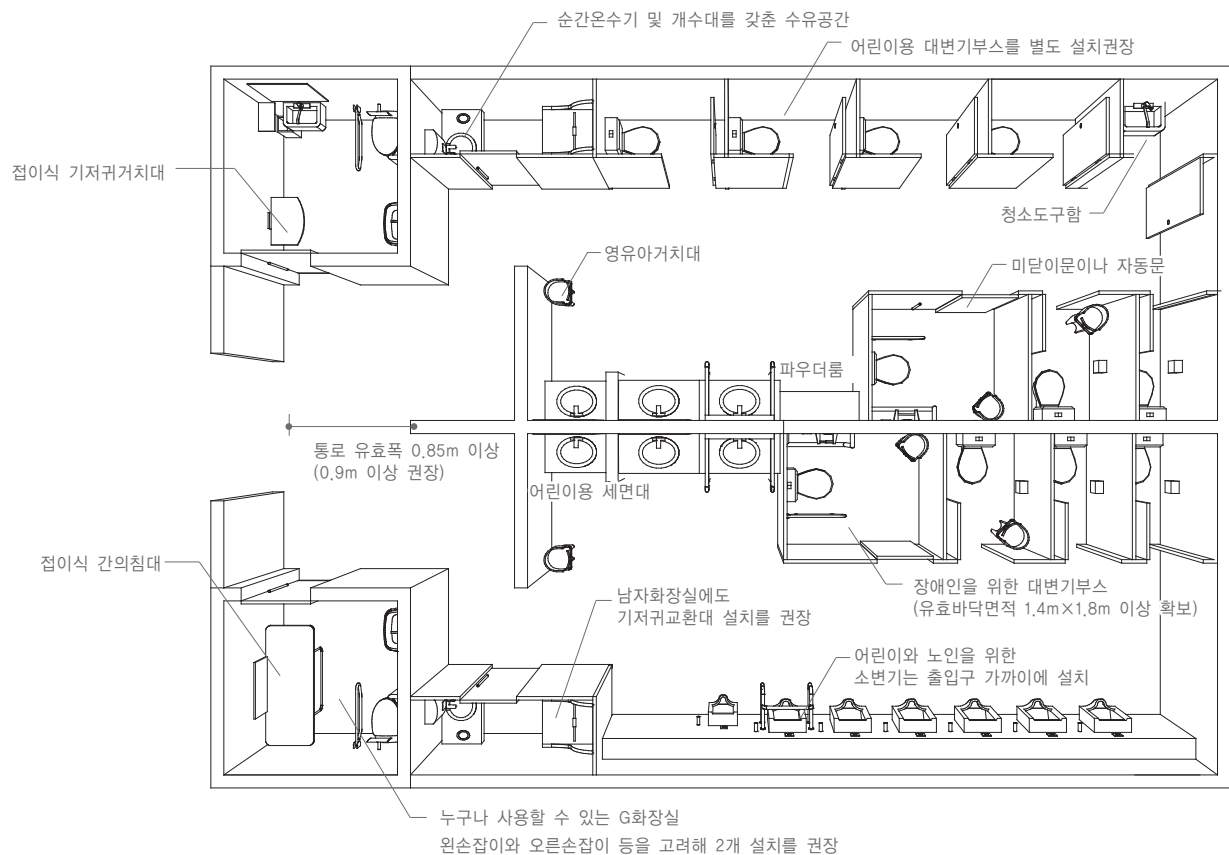
☑ 화장실 벽면 중 하나는 외기에 면하도록 배치하여,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조도기준을 저녁시간과 흐린 날을 기준으로 높여 부족한 조도를 향상시키고 눈부심 없는 부드러운 불빛을 유지해야 한다.

- 조명은 발열량이 적고 고효율인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한다.

☑ 실내마감재와 어울리는 조명등과 색상을 고려하여 청결하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 화장실 입구, 통로, 단위부스, 세면기, 소변기 등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위치별로 조도를 확보한다.



▲ 권장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화장실의 예

위생공간 - 수유실

기본지침

- 영유아 동반자를 위해 유모차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수유나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고, 임산부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배려한다.
- 수유실 등은 남녀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모유를 주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위치

- ☑ 영유아 동반자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장소나 기저귀교환 장소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유모차는 물론 휠체어사용자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¹⁾.
- ☑ 수유실은 가급적 독립된 실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로비나 민원실 등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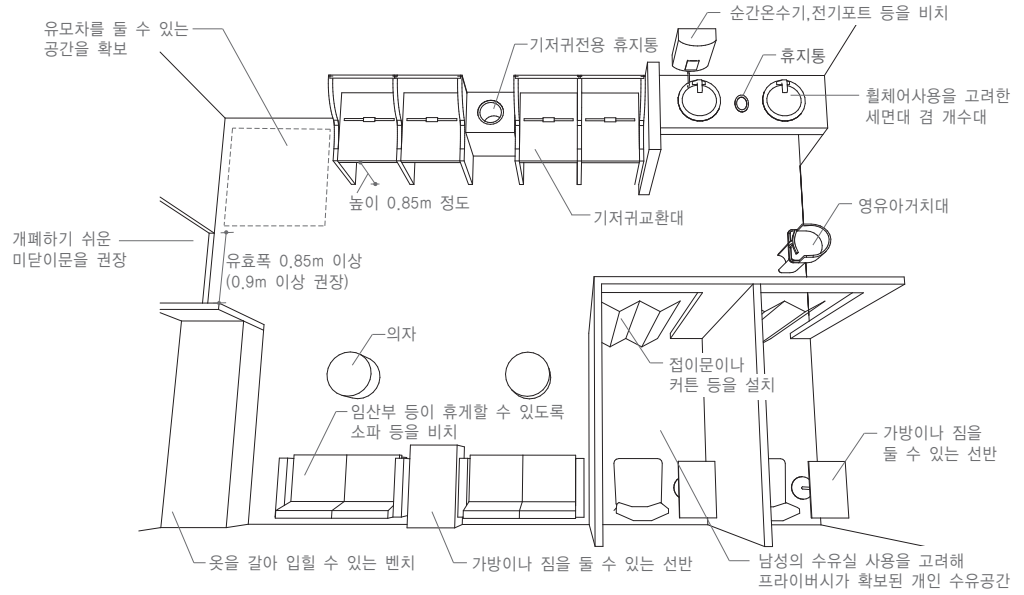
출입문

- ☑ 영유아 동반이나 유모차의 출입을 위해 자동문 또는 적은 힘으로도 개폐하기 쉬운 미닫이문을 권장한다.
- 출입문의 유효폭은 0.85m이상으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0.9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구조 및 형태

- 수유공간과 분리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며,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¹⁾.
- ☑ 수유실은 남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유를 주는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독립된 실 또는 커튼 등을 설치한다.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법적치수 1.4m×1.4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¹⁾.
-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¹⁾.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남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실

기타 설비

- 수유를 위한 아기침대 및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할 수 있다.
- ☑ 물을 끓일 수 있는 탕비실 등을 인접하게 설치하거나 순간온수기, 전기포트, 개수대 등을 설치한다.
- 분유병의 소독 등이 가능한 설비를 구비하도록 한다.

위생공간 - 욕실 및 샤워실

기본지침

- 욕실 및 샤워실은 반드시 물을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마감, 단차, 손잡이 등 안전에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 입욕이나 샤워 전후의 온열환경변화에 따른 신체상황의 급변을 배려한다.
-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편안하며 기분전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배려한다.
- 여러 명이 동시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은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옷을 갈아입을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도록 배려한다.
- 욕실 및 샤워실은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한다.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욕실, 샤워실(샤워부스), 탈의실(탈의부스)은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출입문

- ☑ 출입문은 미닫이문이나 접이문 등 개폐하기 쉬운 구조로 하여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욕실, 샤워실, 탈의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5m 이상으로 하며, 가급적 0.9m 이상을 권장한다.
- 욕실 및 샤워실의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지제 등 안전한 유리를 사용한다.

바닥마감

- ☑ 욕실 및 샤워실은 수증기 등으로 시야가 흐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하며, 단차가 없어야 한다.
-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며, 바닥면의 기울기는 1/30 이하로 한다¹⁾.
- ☑ 실내 온도차로 인해 혈압 등이 갑자기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난방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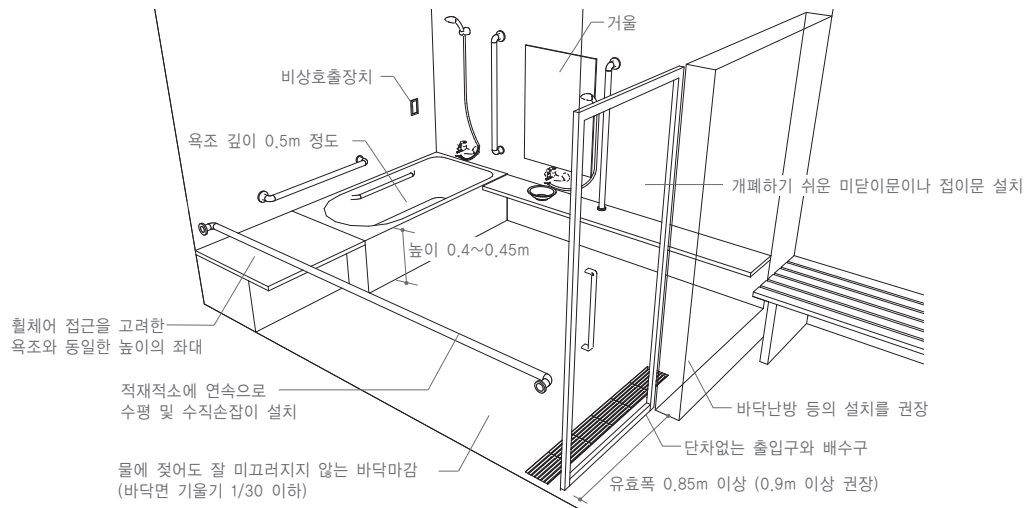
욕실

-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¹⁾.
- ☑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하며¹⁾, 욕조의 측면에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G 욕실을 복수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 등 설비의 위치가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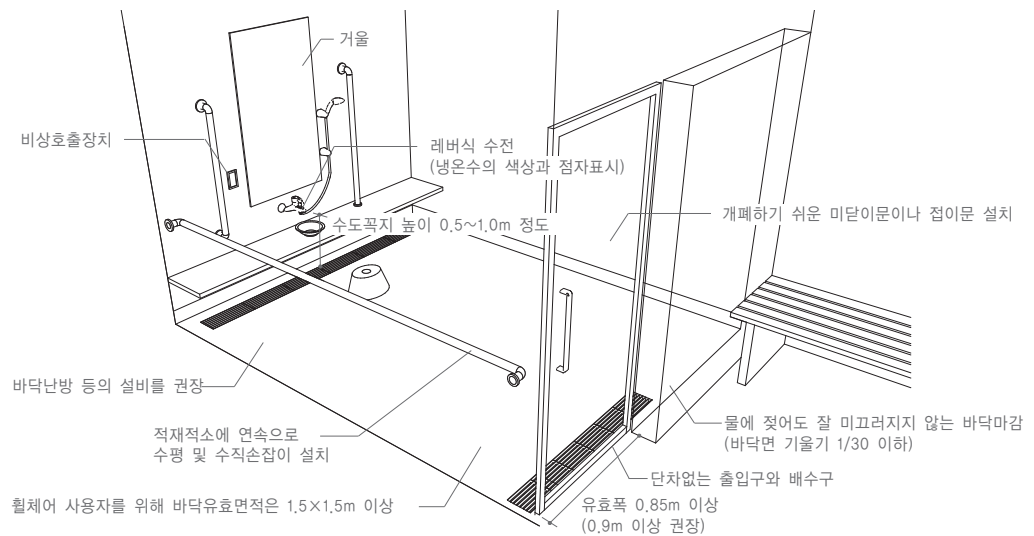
- 여러 명이 사용하는 욕실은 씻는 곳의 수전이나 샤워후크 등을 다양한 높이로 설치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사용하기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장 : 휠체어 사용자 등도 이용하기 쉬운 욕실의 예

샤워실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샤워부스는 적어도 1개소 이상 설치하며,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크기(법적치수 0.9m×0.9m 또는 0.75m×1.3m 이상)¹⁾를 권장한다.
- 샤워용 접이식 의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의 높이로 설치한다¹⁾.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한다¹⁾.



▲ 권장 : 휠체어 사용자 등도 이용하기 쉬운 샤워실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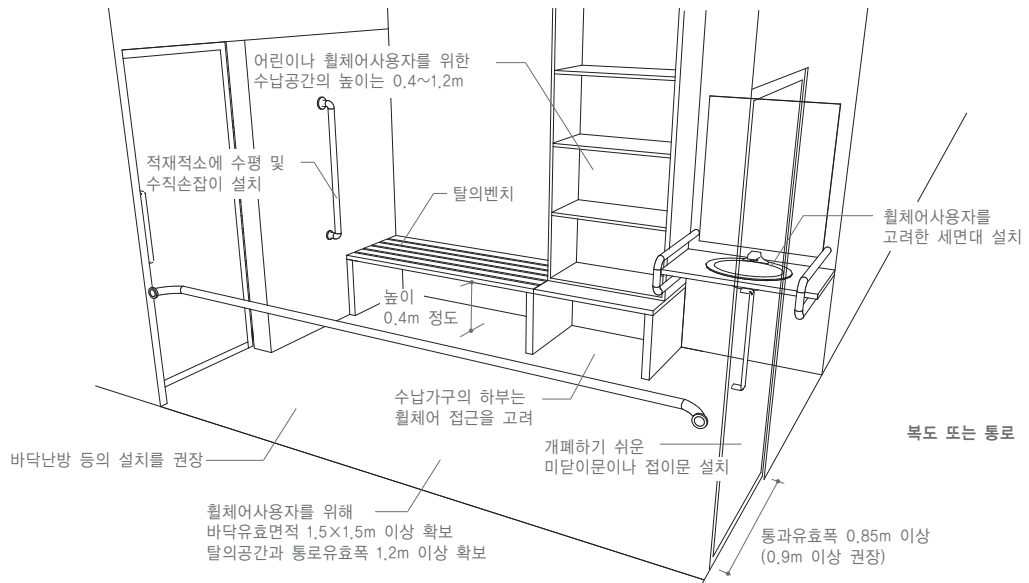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탈의실

- 수납공간의 높이는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1.2m로 설치하며, 수납공간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¹⁾.

☑ 탈의실 내 벤치나 의자는 높이 0.4m 정도로 하며, 여러 명이 사용하는 탈의실의 경우에는 유효폭 1.2m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 여러 명이 사용하는 탈의실은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탈의부스를 적어도 1개소 이상 설치하며,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m×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권장 : 휠체어사용자 등도 이용하기 쉬운 탈의실의 예

손잡이

☑ 탈의실 출입구에서 욕실 및 샤워실 내부까지 연속으로 손잡이를 설치하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샤워부스나 탈의부스 내부에도 손잡이를 설치한다.

☑ 욕실 및 샤워실에는 출입구, 실내 보행, 욕조 출입, 입욕 중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신체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적재적소에 설치한다.

기타설비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색상과 함께 점자로 표시한다.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에서 손이 쉽게 닿는 위치¹⁾ 혹은 샤워실 및 탈의실 내의 적절한 위치에 비상호출장치를 설치한다.

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II. 공공건축물



3. 개별 공공건축물

3.1 공공청사

정의

- 공공청사는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반적인 서비스 용도로 제공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교육 및 연수시설, 공공안내소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 한다.
- 공공청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 방향(개방성, 상징성, 친근성, 조화성, 국제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 + α)에 따라 계획한다.

기본지침

- 공공청사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건축물이므로 개방적이며 청결한 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유모차,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치수로 계획한다.
-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비치되는 가구나 공간, 설비 등에 여유있고 가변성 있게 계획한다.
-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노인 등을 위해 G주차구역, G화장실, 수유실 등은 알기쉽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이나 관광객 등 외국인들을 위해 다국어 병기와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공공청사 - 지방자치단체 청사·동사무소

일반사항

- 도로, 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등은 보행접근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고, 건물 내 각 실까지 사용자의 이동경로는 연속성이 있도록 한다.
- ☑ 유모차,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 휠체어사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G주차구역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주출입구 근처에 계획한다.

- ㉔ 주출입구의 전후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며, 주출입구 문은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자동문을 권장한다.
- 필요에 따라 노인의 보행보조기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애완견이나 시각장애이용 맹견을 묶어 둘 수 있는 공간을 주출입구 근처에 설치한다.
- 영유아 동반자, 노인, 휠체어사용자는 수직이동이 힘드므로 1층에 민원공간을 계획한다.
- 수유실이나 G화장실 등의 위치는 알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 ㉕ 민원실에 설치하는 의자나 작업대 및 안내데스크는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높이가 다양한 것을 설치한다.

민원·행정 창구

- 민원·행정 창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창구로서 각종 증명서 발급, 민원신고 업무수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민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간이므로, 안내데스크, 대기공간, 사무공간 등의 계획시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 ㉔ 민원데스크 및 서류기재 작업대는 누구나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한 구조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가 다른 책상을 나란히 배치하도록 한다.
- 공공청사에서 비치하여야 할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해야 한다¹⁾.

| 대상시설 | 의무 비치용품 | 권장 비치용품 |
|-----------|---|---|
| 지방자치단체 청사 | 점자업무 안내책자 (시·군·청),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보청기기 | 점자업무 안내책자, 편의시설 안내지도,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
| 읍·면·동사무소 | 점자업무 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보청기기 | 편의시설 안내지도 |

▲ 공공청사의 비치용품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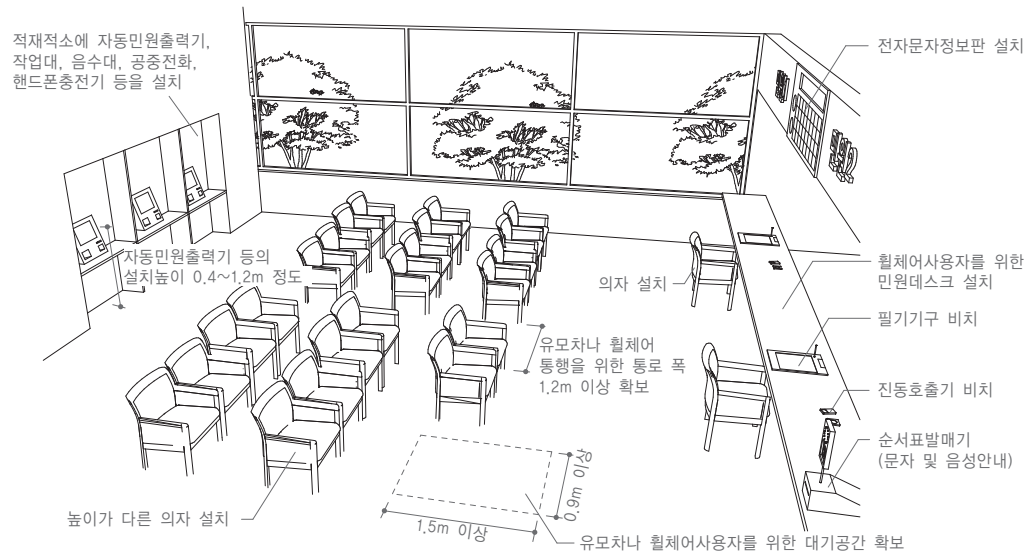
- 공중모사전송기(팩시밀리)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안내표시를 붙이고, 민원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자를 배치하도록 권장하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수화통역자와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화상전화기 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설치하거나 필답이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도록 한다.
- ㉔ 비치하여야 할 비치용품 이외에도 인주, 휴지, 쓰레기통, 불펜, 달력(당일의 날짜와 요일이 표기된 날짜안내판), 돋보기 안경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대기공간

☑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민원데스크와 민원인 대기 의자 사이의 통로공간에 대기하게 되어 사용자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민원인 대기공간에는 민원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함께 유모차나 휠체어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대기공간에서 민원데스크까지 가는 경로상의 통로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유모차 및 휠체어 대기공간은 가능한 여러 곳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순서표발매기, 자동민원출력기, 음수대, 핸드폰충전기, 도서대 등의 주된 이용 높이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0.4~1.2m에 설치한다.



▲ 권장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민원공간

공공청사 - 공공교육 및 연수시설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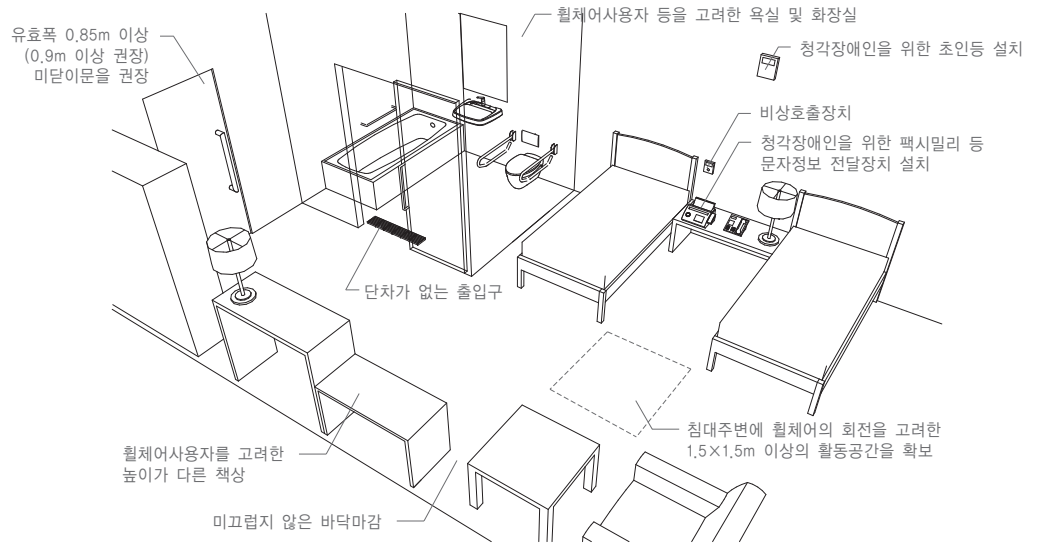
- 공공교육 및 연수시설은 일반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공공도서관, 공무원 연수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이 해당된다.
- G주차구역, 자전거보관소 등은 건물 주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보행접근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내의 각 실까지의 사용자 이동경로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폭이 넓기 때문에 높이가 다양한 화장실, 책상, 의자, 음수대 등 설비나 가구의 설치높이에 유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 학교시설은 어린이, 청소년 등 연령별로 신체조건이나 행동에 큰 차이를 보이므로, 초·중·고등학교별 공간의 치수, 폭 등에 유의한다.

- 초·중·고등학교의 복도 유효폭은 복도 양옆에 교실 등의 거실이 있는 경우 2.4m 이상, 그 밖의 경우 1.8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숙박실

- ㉔ 영유아 동반자나 장애인을 위한 숙박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며¹⁾, 엘리베이터가 가동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㉔ 출입문의 유효폭은 0.85m 이상으로 하며, 휠체어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0.9m 이상을 권장한다.
- ㉔ 숙박실 내부는 물론 숙박실 출입문, 실내 화장실 등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¹⁾.
 - 노인 등 좌식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위한 온돌방,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침대방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숙박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장애인을 위한 숙박실은 출입구 전후, 화장실, 욕실, 침대 주변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¹⁾ 1.5m×1.5m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화재 등 비상시 발코니, 테라스 또는 기타 피난경로에 직접 연결되도록 배려한다.
 - 출입문 옆, 침대주변, 화장실 및 욕실에는 적재적소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㉔ 설비기구 및 침대 등의 위치가 왼손잡이용과 오른손잡이용으로 구분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숙박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하며, 침대의 측면에는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¹⁾.
 - 노인,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에 설치하며¹⁾, 침대주변은 0.8~0.9m 정도가 적절하다.
 - 책상이나 옷장 등의 가구는 가급적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전면에 1.5m×1.5m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붙박이 옷장이나 수납장은 미닫이문을 권장한다.
 - 실내조명은 사적인 공간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안전을 배려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다.
 - 출입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접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¹⁾.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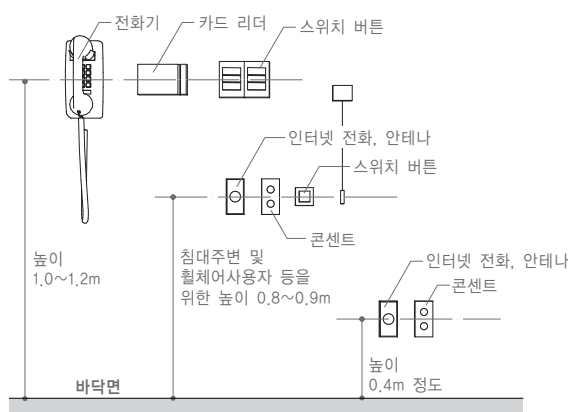


▲ 권장 : 영유아 동반자나 장애인 등도 이용하기 쉬운 숙박실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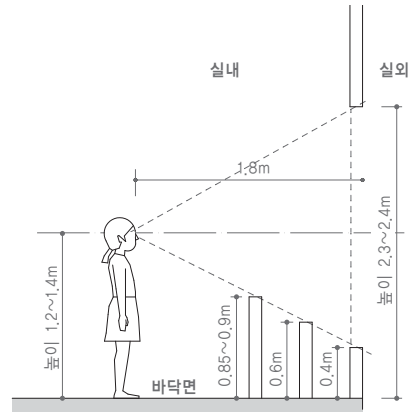


▲ 권장 : 휠체어 사용자를 배려한 가구 설치

- 청력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숙박실에는 실내 및 화장실에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종과 팩시밀리 등 문자정보 전달장치를 설치하며, 건축물 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한다¹⁾.
- 시각장애인을 위해 비상대피경로와 대피요령 등은 점자로 안내되어야 한다.



▲ 권장 :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



▲ 권장 : 어린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배려한 창문의 높이

- ☑ 어린이, 휠체어사용자 및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창문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5~0.7m 정도가 되도록 한다.
- 창대의 하부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창문을 개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열람실

- ☑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¹⁾, 바닥면에 단차가 없도록 한다.
- ☑ 통행량이 많은 주요 통로나 휠체어 좌석까지 연결되는 통로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하며, 그외 통로는 1.2m 이상으로 한다.
- 열람석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로 하며, 열람석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¹⁾.
- 어린이를 위해 다양한 높이의 책상이나 의자 등의 열람석을 설치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청사 - 공공안내소

일반사항

- 지역정보 제공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방문객에게 해당 지역이나 시설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시설로 휴식, 홍보, 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의 역할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 사용자가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국어 정보 표기, 픽토그램 등 시각적으로 식별하기 쉬운 사인계획이 필요하며, 가급적 외국어 회화가 가능한 인적 대응을 배려한다.
- 어린이나 노인 등의 방문을 고려하여 높이가 낮은 안내데스크, 작업대, 의자 등을 비치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등을 설치하며, 발성이 안되는 장애인을 위해 필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권장한다.
- ☞ 알기 쉬운 팸플렛이나 관광안내지도 책자 등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자서체나 색상을 배려하며, 외국어 등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 인터넷, 국제검용공중전화, 팩시밀리 등 다양한 정보검색코너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3.2 문화·복지시설

정의

- 문화·복지시설은 시민들의 문화생활, 건강한 생활체육, 쾌적한 여가활동을 위해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경기장, 체육관, 공연장, 기념관, 시민회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문화·복지시설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 방향(개방성, 심미성, 친근성, 조화성, 국제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 + α)에 따라 계획한다.

기본지침

- 문화·복지시설은 사용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요구되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의 용도에 적합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유모차,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치수로 계획한다.
- 문화·복지시설은 사용자의 이용패턴에 따라 요구되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의 용도에 적합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되도록 계획한다.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유모차,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치수로 계획한다.
-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비치되는 가구나 공간, 설비 등에 여유가 있고 가변성 있게 계획한다.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G주차구역, G화장실, 수유실 등은 인지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마련한다.
-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문화 가정이나 관광객 등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정보표기나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문화·복지시설 - 체육관·경기장

일반사항

- 체육관은 주로 실내 운동경기 또는 교육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며, 경기장은 스타디움, 축구장, 야구장, 아이스링크 등 운동경기에 참여하거나 관람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 운동 장소나 관람석 등 이외에도 식당, 푸드코트, 판매샵 등의 편의시설을 시설 내에 갖추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연령층, 외국인, 장애인 등의 이용을 배려한 계획이 요구된다.

- ☑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등이 주출입구에서 관람석 등 목적지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성이 있는 이동동선으로 계획하며, 최대한 알기 쉽고 최단거리로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G주차구역, G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한다.

관람석

- ☑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경기장이 잘 보이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며, 출입구에서 단차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휠체어 관람석까지 연결되는 통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휠체어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5m 이상(법적치수 폭0.9m 이상, 깊이 1.3m 이상)¹⁾으로 하며, 바닥면은 평탄하며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휠체어가 좌우 또는 전후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0.3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1.1m 정도의 난간을 설치한다.
 - 휠체어사용자가 경기장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한다.
 - 야간의 경기장 이용을 고려해 발밑 조명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복지시설 - 공연장·기념관·시민회관·박물관·미술관·전시장 등

일반사항

- 공연장은 무대와 관중석을 갖춘 시설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객석 등에 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시민회관은 문화예술 창조의 발표의 장으로서 지역문화 거점공간의 성격을 갖는 시설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접근공간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공간 및 설비 계획이 요구된다.
-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은 역사, 전통, 예술, 문화 등을 홍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연속성이 있는 이동동선 계획이 요구된다.
- ☑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G주차구역, G화장실, 수유실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인적 대응을 배려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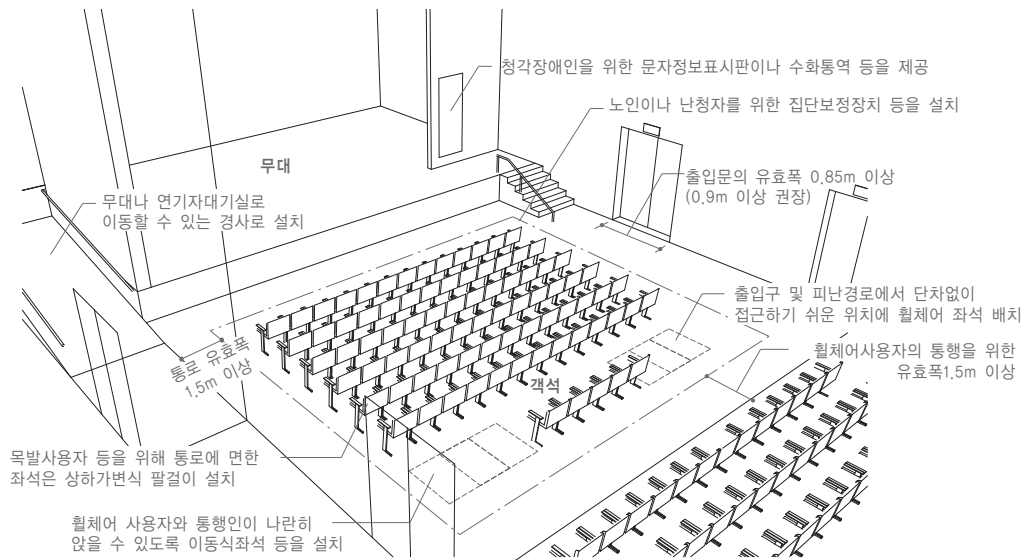
객석

-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석은 무대 등이 잘 보이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¹⁾, 출입구에서 단차가 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 **통행량이 많은 주요 통로나 휠체어 객석까지 연결되는 통로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하며, 그외 통로는 1.2m 이상으로 한다.**

- 휠체어 객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5m 이상으로 하며¹⁾, 바닥면은 평활하며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 **휠체어사용자와 동행인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동행인 좌석을 인접하여 설치하거나 이동식 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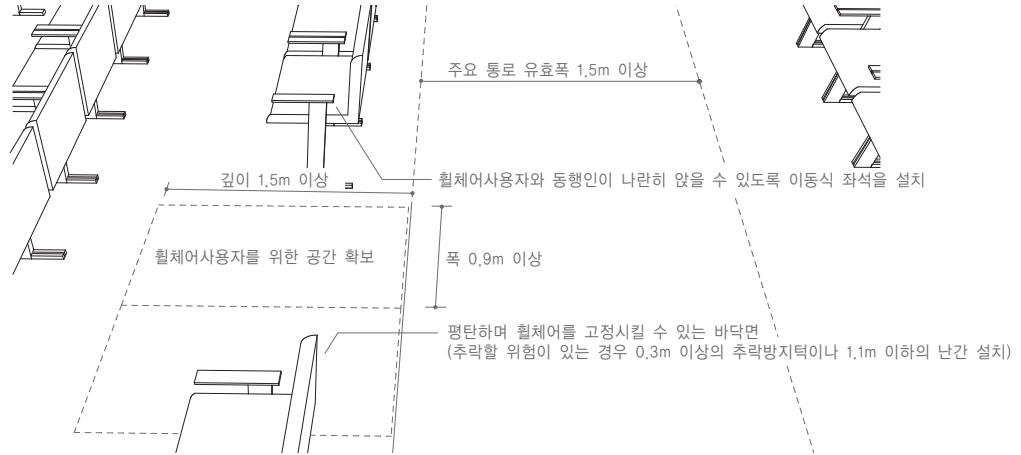


▲ **관중 : 휠체어사용자, 청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객석 예**

- 휠체어가 좌우 또는 전후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0.3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1.1m 정도의 난간을 설치한다.
- 휠체어 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휠체어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는 등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석을 항상 마련해야 한다¹⁾.
- 휠체어사용자가 무대 및 연기자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한다.
- 노인이나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루프시스템, 적외선 및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통로에 면한 좌석은 목발사용자 등 발을 굽힐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통로쪽 좌석 팔걸이는 상하가변식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발밑 조명등을 설치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 함께 영화나 연극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영유아 동반 가족실을 설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권장 : 휠체어사용자를 배려한 좌석 확보

문화·복지시설 - 복지시설·의료시설 등

일반사항

- 복지시설은 양로원, 모자원, 보육원, 아동상담소, 점자도서관 등이 포함되며, 시민의 사회 복지를 위한 시설이므로 영유아, 여성, 노인 등 주된 사용자의 행동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간 및 설비계획에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G 복지시설은 시설의 용도 특성상 여유 있는 G주차장, G화장실, 수유실 등을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확보해야 한다.

-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이 포함되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이므로,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기능과 더불어 쾌적한 공간계획이 요구된다.

G 사용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의료시설을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환자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일 수 있으며, 누구나 차별감과 굴욕감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환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을 존중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쾌적하고 피로가 적은 환경을 구축하며, 여성직원 등을 위해 보육시설을 갖추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환자, 가족, 직원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요양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미술작품이나 음악 등을 적극 활용하며,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의료기술 및 기기의 진보를 포함한 시설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알기 쉬운 동선과 사인계획으로 이용자가 헤매지 않도록 환경을 구축하며, 환자가 직원과 얘기를 나누거나 시선을 마주하기 쉽도록 공간을 배치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환자마다 신체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험을 적극 예방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의 설치, 중증 환자의 관찰, 야간조명, 화장실의 위치 등 24시간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한다.
- 햇빛, 바람, 식물 등 자연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역의 중추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친숙하며, 재해시 지역의 방재거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중정에 면한 휴게공간



▲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



▲ 자연채광과 환기가 좋은 식당

접근공간

- 도로에서 알기 쉬운 곳에 주출입구를 배치하며, 야간에도 식별하기 쉬운 조명과 사인을 설치한다.
- ☑ 도로에서 로비(중합안내)까지 단차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통로 폭을 확보하며, 휠체어나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을 위해 보행접근로에는 계단이나 경사로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한다.
- 이용객이 많은 시설은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주출입구를 계획하며, 원활한 출입을 위해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일반 내방객의 자동차, 택시, 구급차, 물품 반출입 차량의 동선은 명확히 분리하도록 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G주차구역은 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근처에 설치하도록 한다.
- 응급실이 있는 병원 등은 구급차 전용 진출입구와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야간 이용객을 위해 도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응급실을 배치하도록 한다.
- 장래식장이 있는 병원 등은 일반 환자의 동선과 명확히 분리되는 장소에 배치하며, 운구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동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G주차구역, 택시 승강장, 구급차 승강장은 눈, 비로부터 보호되는 지붕을 설치하며, 여유 있는 대기공간을 확보한다.
- ☑ 중합안내는 노인이나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카운터와 의자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방문객이 사용하는 자동화 기기는 휠체어사용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구조로 설치한다.
- 외국인을 위해 다국어 병기 및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 통역 등 인적 대응을 고려한다.



▲ 주출입구 근처에 마련된 주차구역



▲ 편안한 분위기의 로비 (중합안내)

이동공간

☑ 환자와 문병객 동선, 의료진과 직원의 동선은 명확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복도 등의 바닥에는 단차가 없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고, 통로 양측면에 2단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병원의 복도는 휠체어를 포함하여 침대, 배식차, 의료기기 등 각종 운반용 기기의 이동이 많으므로 적절한 통로 폭을 확보하며 벽면에는 보호대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 외래환자나 문병객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알기 쉬운 공간 배치와 체계적인 사인을 계획한다.

☑ 진료과목별 외래환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순서를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도록 한다.

- 진료실과 대기공간은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의료진과 직원들의 이동 동선은 작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소화하며, 휴게실이나 식당 등 직원 전용 후생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근무 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 화재, 지진, 홍수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중환자 및 자립 피난이 곤란한 환자들을 위해 안전한 피난경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 외국인을 위해 적재적소에 다국어어를 병기하며, 픽토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 중정에 면해 자연채광이 좋은 복도



▲ 진료실 앞 대기공간

이동공간

- ㉔ 노인, 휠체어사용자, 장애를 가진 사람 등이 많기 때문에 환자 등이 이용하는 층에는 G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어린이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일반화장실 내에 어린이용 대변기 및 소변기, 세면대, 영유아거치대 등을 설치한다.
- ㉔ 화장실 내(특히 대변기 부스)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어도 손이 닿는 곳에 외부와 연결되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수유실을 로비 주변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목욕실이나 샤워실은 혼자 입욕하기가 곤란한 환자 등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나 가족 등이 수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침실·병실 등

- ㉔ 영유아나 노인 등이 거주하는 침실은 시설적인 분위기를 배제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병실은 의료적 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환자의 특성별 적절한 병실 규모로 계획하며, 치료를 우선으로 한 치료환경이 되도록 한다.
- ㉔ 침실과 병실의 출입문 유효폭은 휠체어, 간이침대 등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1.2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출입문이나 실 내부의 바닥면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높이 0.4-0.45m로 하며, 침대 주변에는 휠체어 등의 회전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가급적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확보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물리적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
- ㉔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도록 한다.
- 누워있을 경우 휘도가 높은 직접조명은 지양하며, 간접조명이나 눈부심이 없는 조명기구를 채택한다.

3.3 교통시설

정의

- 교통시설은 여객 기능 외에 교통, 여가, 문화, 화물 운송 등을 제공하는 도시교통의 촉진 동시에 서비스의 축이 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터미널과 역사 등의 여객시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교통시설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 방향(개방성, 상징성, 편리성,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 + α)에 따라 계획한다.

기본지침

- 교통시설 중 여객시설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최단 거리에 연속성이 있고 알기 쉬운 이동경로로 계획한다.
- 교통시설 중 여객시설은 외국인, 관광객 등을 비롯해 누구에게나 알기 쉬운 사인 계획을 제공해야 한다.
- 터미널 및 역사 내의 매표기, 화장실 등의 시설물이나 설비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성능 등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시설 - 버스터미널·철도역사·경량전철역사 등

일반사항

- 버스터미널이나 역사는 시민의 장·단거리의 이동을 위한 교통시설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행자나 방문객에게는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 버스터미널이나 역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여유 있는 공간, 설비, 시설물 계획이 필요하며,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병기, 픽토그램, 노선도, 시설 및 관광안내도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지하철 등의 출입구는 건축물과 연계 설치하여 가로에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한다.

접근공간

- ☑ 보행접근로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이므로 통행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하며, 다수의 통행을 고려하여 최대한 여유 있는 통행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접근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 자전거보관소 등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며, 보차 분리를 명확히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주출입구의 유효폭은 0.9m 이상, 유효높이는 2.1m 이상 확보해야 하며¹⁾, 가급적 자동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이동공간

㉔ 복도나 통로는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이므로 통행 유효폭은 2.0m 이상을 확보 하며¹⁾, 다수의 통행을 고려하여 최대한 여유 있는 통행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통로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해야 한다¹⁾.
- 계단 및 경사로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¹⁾.

㉕ 엘리베이터는 접근하기 쉬운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가급적 터미널이나 역사 등의 주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¹⁾.

- 지상에서 대합실까지의 엘리베이터는 도로 양측에 최소 1개소씩 설치해야 하며, 지상 횡단이 가능한 곳은 도로편측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¹⁾.
- 플랫폼이 양방향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플랫폼까지 각각의 플랫폼에 엘리베이터를 최소 1개소씩 설치해야 하며, 플랫폼이 중앙식인 경우에는 대합실에서 플랫폼까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¹⁾.
- 엘리베이터의 수송능력 및 규격은 15인승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¹⁾.
- 에스컬레이터는 주변보도 여건 및 승객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한다¹⁾.
-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 내부의 모든 계단에는 상행 및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1개소 이상씩 설치해야 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층에 걸쳐 연속 설치한다¹⁾.

위생공간

㉖ G화장실은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고려하여 가급적 2개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장애인용 대변기 부스는 남자 및 여자 일반화장실 내(법적내용 남자용 및 여자용)에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¹⁾.
- 남자 및 여자 화장실 내에 영유아용 거저귀교환대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²⁾.
- 영유아 동반자나 임산부 등이 휴게할 수 있는 수유실을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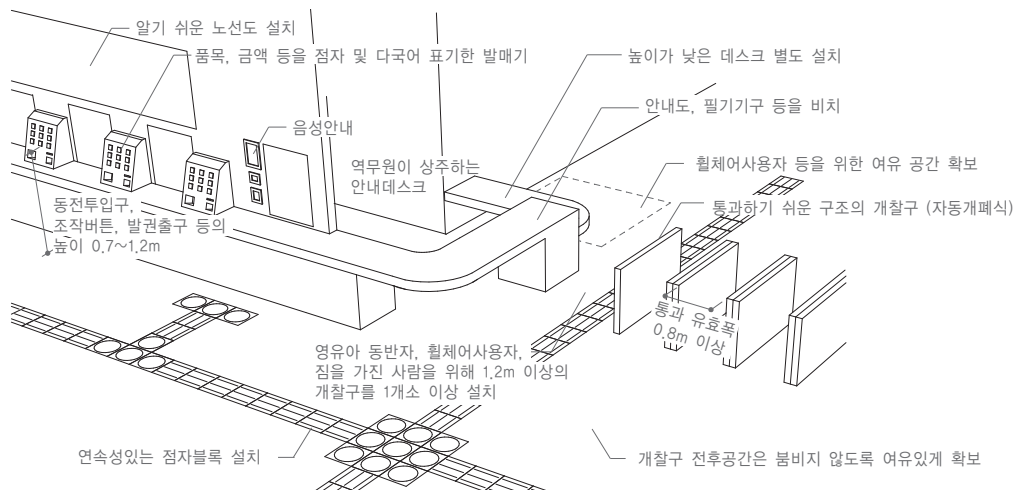
개찰구

☑ 모든 개찰구(법적내용 1개 이상)는 가급적 자동개폐식을 권장한다¹⁾.

☑ 개찰구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¹⁾, 최소 1개소는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사용자, 가방이나 짐을 가진 사람 등을 위해 1.2m 이상의 개찰구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개찰구 전후 공간에는 붐비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개찰구 옆에는 역무원이 상주하는 안내데스크를 설치하여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를 위해 높이가 낮은 카운터를 병설하며, 여행자나 방문객 등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안내도, 발성이 안되는 사람을 위해 필기구 등을 비치하도록 권장한다.



▲ 권장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개찰구 및 매표소

매표소 및 자동발매기

- 매표소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의 높이로 해야 한다¹⁾.

- 매표소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¹⁾.

-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해야 한다¹⁾.

☑ 점자표시 발매기는 반드시 음성안내시스템과 동시에 갖추어 제기능이 발휘되도록 한다.

☑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발권취출구 등은 휠체어사용자 등의 손이 도달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7-1.2m(법적치수 0.4-1.2m)의 높이로 해야 한다¹⁾.

-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한다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역사 플랫폼

- 역사 플랫폼의 바닥 기울기는 1/100 이하로 하며,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¹⁾.
- 플랫폼의 가장자리로부터 0.3~0.9m 범위 안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¹⁾.
- 플랫폼과 차량의 간격은 5cm 이내로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한다¹⁾.
- 플랫폼과 차량의 승강구 또는 바닥면 간의 간격이 넓거나 높이 차이에 의해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승·하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하차를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¹⁾.

☑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 난간식 스크린도어, 안전펜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¹⁾.

- 추락할 우려가 있는 플랫폼의 양끝부분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m~1.5m 이하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¹⁾.
- 플랫폼에는 차량의 접근을 경고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¹⁾.
- 차량 안에 설치된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 통하는 승강구와 접하는 플랫폼에는 휠체어사용자의 승차위치를 표시해야 한다¹⁾.

버스터미널 플랫폼

- 버스터미널의 플랫폼은 유도차로 및 차량의 통행·정류 또는 주차용으로 제공된 장소로 플랫폼의 끝부분에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 또는 점형블록을 설치한다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3.4 환경시설

정의

- 환경시설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위생시설을 말하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환경시설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가이드라인 방향(개방성, 안전성, 친근성, 조화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 + α)에 따라 계획한다.

환경시설 - 공중화장실

일반사항

- 공중화장실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공중화장실은 자연 및 도시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체육시설, 공항시설 등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장소 등에 설치해야 한다¹⁾.
-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하며,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 이 경우에는 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0㎡ 이상으로 하며, 여자 대변기 5개 이상, 남자 대변기 3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²⁾.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해야 하며²⁾, 필요시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²⁾.
- 기타 세부설치기준은 II.공공공간 중 화장실(p.112)과 III.공공건축물 중 화장실(p.170)의 규정에 준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IV. 도시기반시설물

1. 도시기반시설물 개요

1.1 개요

2. 도시기반시설물

2.1 보도육교

2.2 지하보도

IV. 도시기본시설물



1. 도시기본시설물 개요

1.1 개요

도시기본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영역의 도시기본시설물을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의 사용자에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 부합되게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도시기본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도시기본시설물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도육교, 지하보도를 가이드라인 수립의 대상으로 지정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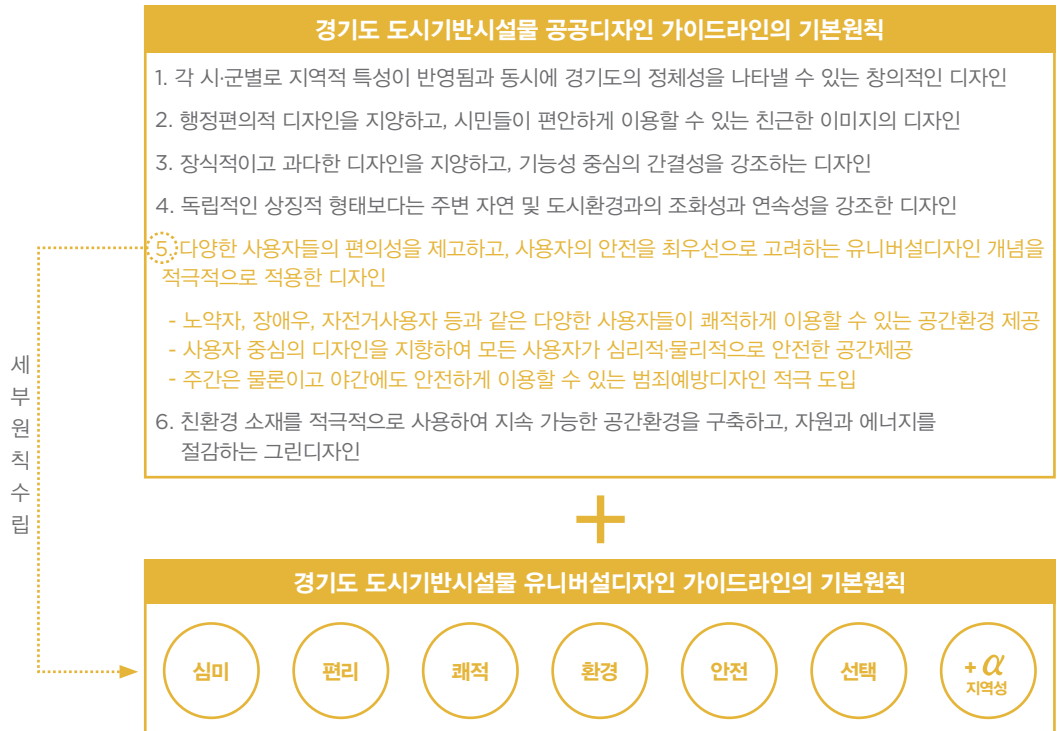
<표 4-1> 도시기본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관련법규

- 본 가이드라인은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도시기본시설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세부 설계지침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타 세부 규정은 아래의 각 법률의 기준에 준한다.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지하도로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기반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도시기반시설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중 ‘다양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디자인’을 보완하여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에 부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천내용을 수립한다.



<그림 4-2> 도시기반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도시기반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천내용**

심미성

- 색상, 재질, 형태 등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기능을 중시하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편리성

-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사용자를 고려하여 동선이 연속성을 갖도록 보도육교나 지하보도를 계획하며, 수직이동을 위해 계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병설하여 편리성을 확보한다.

쾌적성

-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필요한 구조와 설비를 제공하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쾌적함을 주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환경성

- LED 조명기구 등 에너지 소모량이 적은 기술과 친환경적인 소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을 고려한다.

안전성

- 도시기반시설물에 설치되는 계단 등의 바닥마감은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추락이나 전락사고 방지 등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나 조명계획 등에 유의하여 안정감을 주는 계획을 한다.

선택성

-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도시기반시설물을 동일한 동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차별감이나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α (지역성)

- 각 시·군별로 지리적, 문화·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경기도의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IV. 도시기반시설물



2. 도시기반시설물

2.1 보도육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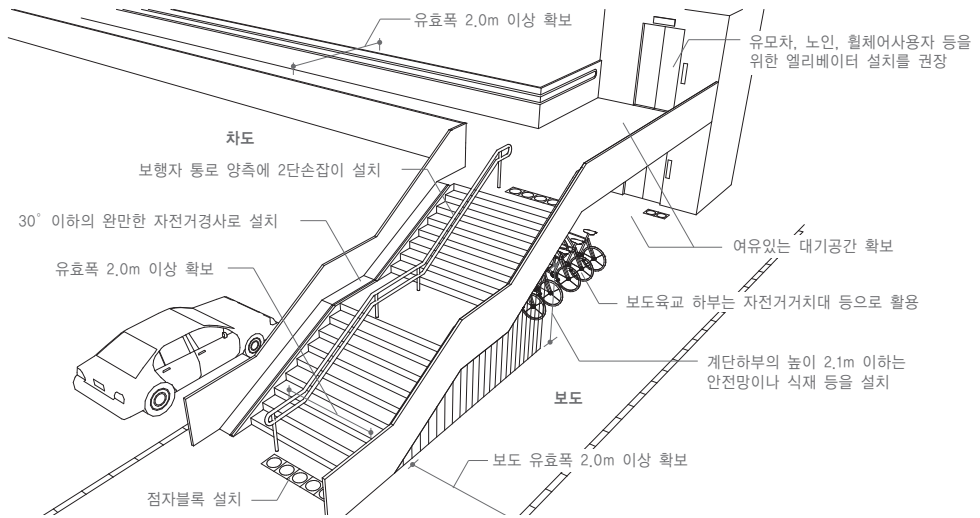
기본지침

-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보도육교는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¹⁾.
- 보도육교에는 완만한 경사로를 계단으로 갈음하거나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보도육교에는 장애인 등의 승강을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며,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는 보도육교에는 인접한 곳에 횡단보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
- 기타 계단과 엘리베이터의 세부설치기준은 III.공공건축물 중 계단(p.158)과 엘리베이터(p.163)의 규정에 준한다.

구조와 형태

- G** 유모차, 노인, 장애인,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 자전거사용자 등은 보도육교를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G** 부득이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또한 자전거경사로의 병설 등 수직이동이 어려운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 G** 보도육교의 설치로 인해 보도의 유효폭이 2.0m 이상 확보되지 않는 곳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며, 보도육교의 계단이나 통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G** 보도육교의 통로유효폭은 2.0m 이상을 확보하며, 양측에 2단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자전거 사용자 등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권장 : 엘리베이터와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한 보도육교의 예

계단

- 계단참이 없는 구조는 피하고, 규칙적으로 꺾임 또는 중간참이 있는 직선계단이 적합하며, 돌음계단이나 계단참에 단차가 있는 꺾임계단은 피한다.

㉔ 계단의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양측에 2단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손잡이는 계단 및 통로의 양측에 모두 설치해야 하며, 계단의 시작지점 등에는 육교명칭, 시설안내, 설치장소 등에 대한 점자안내표시를 한다.

㉔ 디딤판의 너비는 30cm 이상, 철편의 높이는 16cm 이하로 해야 하며, 돌의 합은 46cm 정도가 되도록 한다.

- 디딤판과 철편의 규격은 모두 일정해야 한다.

㉔ 디딤판의 바닥표면은 평탄해야 하며, 우천시 등을 고려하여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야 한다.

㉔ 디딤판과 철편은 명도, 색상 등의 차이가 뚜렷해야 하며, 특히 계단코는 명확히 식별되어야 한다.

- 계단코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 고무류 등의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해야 한다.

- 보도육교에는 반드시 조명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계단의 디딤판은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계단의 시작과 끝부분은 조명을 밝게 하여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엘리베이터

- G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 등을 고려하여 보도육교에는 경사로 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비는 승하차하는 사람들로 번잡하지 않도록 가급적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 보도육교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는 자전거의 승강이 가능한 크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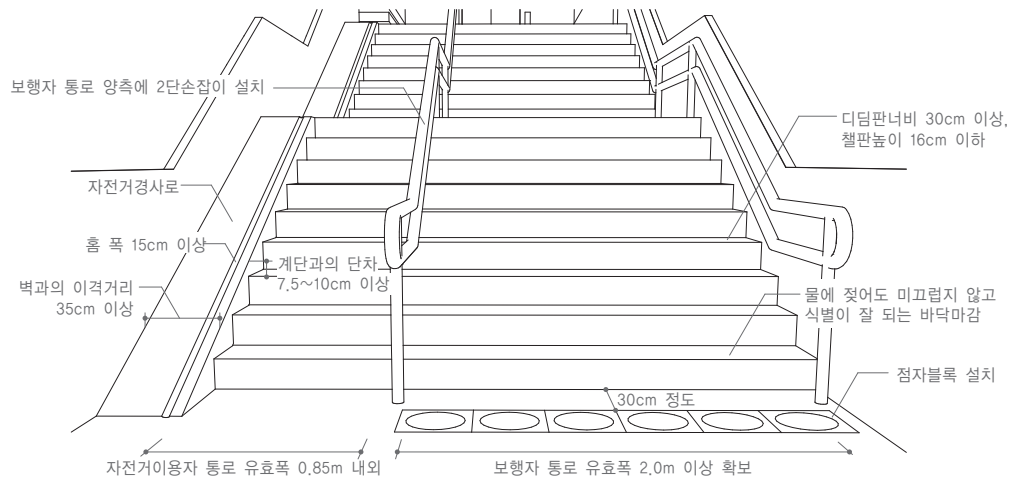
경사로

-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기울기는 1/20 이하로 하며, 바닥은 물에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경사로의 유효폭은 2.0m 이상을 확보하며, 양측에 2단손잡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자전거 사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 적절한 위치에 휴식할 수 있는 경사로 참을 설치하며, 경사로 참의 수평부 길이는 2.0m 이상 확보한다.

자전거경사로

- G 자전거경사로를 보도육교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며, 겨울철에는 미끄러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육교 200m 이내에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G 자전거경사로의 기울기는 가급적 30° 이하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G 보행자의 계단 통로 유효폭은 2.0m 이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전거경사로는 계단의 한쪽면에만(법적내용 양측 또는 중앙) 설치하고 자전거를 끌고 오르내릴 수 있는 유효폭 0.85m 내외의 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¹⁾.
- G 자전거사용자와 일반 보행자가 서로 교차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각 통로는 분리하며, 그 사이에는 2단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 G 보도육교에 설치하는 자전거경사로는 보행자의 계단부 통행을 위한 최소 유효폭 2.0m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계단부의 전체 폭이 3.0m 이상일 경우에만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자전거경사로의 흠 폭은 15cm 이상, 벽면 등과의 이격거리 35cm 이상, 계단과의 단차는 7.5-10cm로 하며, 계단 높이가 3.0m 이상일 경우 3.0m마다 1.2m 이상의 수평면을 설치한다¹⁾.
- 자전거보관소가 지하층 등에 있는 경우 어린이, 노인, 무거운 짐을 실은 사용자가 안전하고 쉽게 오를 수 있도록 전동식의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승강속도에 유의하도록 한다.

¹⁾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권장 : 계단에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한 예



▲ 전동식 자전거경사로의 설치 예

2.2 지하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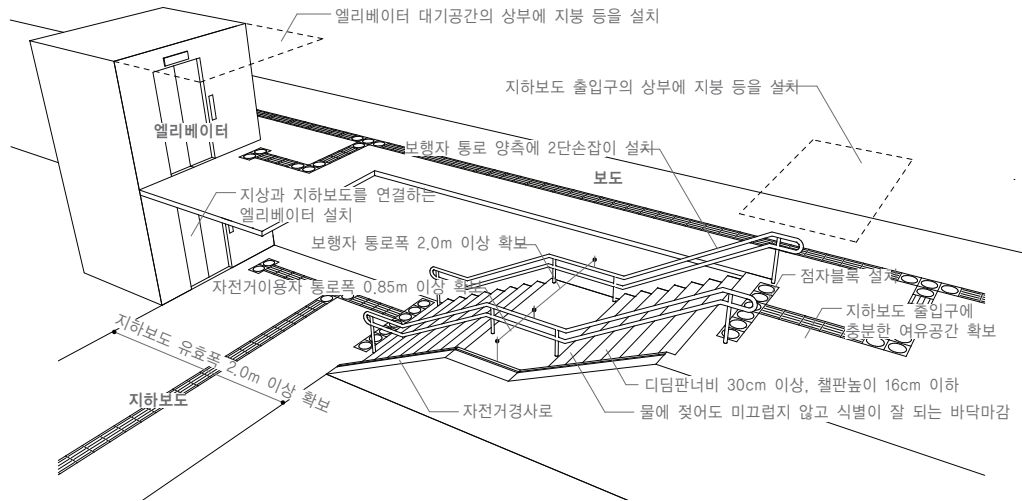
기본지침

- 주변 3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하보도는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¹⁾.
- 지하보도에는 완만한 경사로를 계단으로 갈음하거나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경사로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지하보도에는 장애인 등의 승강을 위해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며,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¹⁾.
-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없는 지하보도에는 인접한 곳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 가로상에 지하보도로의 출입구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물내에 지하 출입구를 설치한다.
- 기타 세부설치기준은 III.공공건축물 중 계단(p.158)과 엘리베이터(p.163), 에스컬레이터(p.168)의 규정에 준한다.

구조와 형태

- ☑ 유모차, 노인, 장애인,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 자전거사용자 등은 지하보도를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인근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부득이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또한 자전거경사로를 병설하여 수직이동이 어려운 사용자를 배려해야 한다.
- ☑ 지하보도의 통로와 계단의 유효폭은 2.0m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지하보도의 입구 전면에는 여유공간을 확보하며, 여유공간의 상부에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지하보도의 통로나 계단에는 야간에도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CCTV 등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조명기구는 발열량이 적고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LED 조명기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 지하보도의 통로는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감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블록이나 손잡이는 지하보도 입구에서 반대편 출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지하보도 200m 이내에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만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IV.도시기반시설물 중 자전거경사로(p.211)의 규정에 준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권장 : 엘리베이터와 자전거경사로를 설치한 지하보도의 예

V. 가로시설물

1. 가로시설물 개요

1.1 개요

2. 교통시설물

- 2.1 정의
 - 2.2 보도펜스
 - 2.3 블라드
 - 2.4 버스·택시승차대
 - 2.5 신호기
-

3. 편의시설물

- 3.1 정의
 - 3.2 음수대
 - 3.3 벤치
 - 3.4 공중전화
-

4. 공급시설물

- 4.1 정의
 - 4.2 맨홀
 - 4.3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등
-

V. 가로시설물



1. 가로시설물 개요

1.1 개요

가로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영역의 가로시설물(교통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을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의 사용자에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 부합되게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가로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자문 및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가로시설물을 가이드라인 수립의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림 5-1> 가로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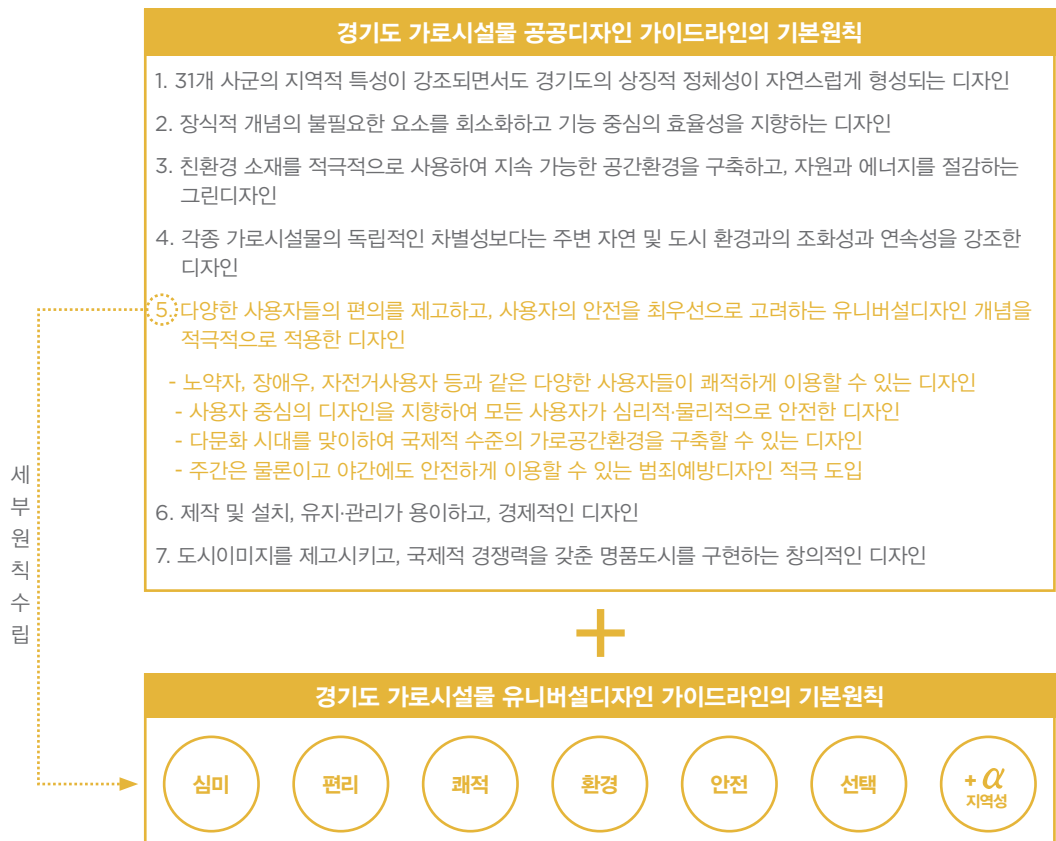
관련법규

- 본 가이드라인은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로시설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세부 설계지침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타 세부 규정은 아래의 각 법률의 기준에 준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도로법, 시행령
 - 고속국도법, 시행령
 - 도시철도법, 시행령
 - 건널목 개량촉진법
 - 유료도로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중전화소 시설 및 표지에 관한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상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가로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가로시설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중 ‘다양한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디자인’을 보완하여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에 부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천내용을 수립한다.



<그림 5-2> 가로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도시기반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천내용

심미성

- 색상, 재질, 형태 등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기능을 중시하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편리성

-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교통시설물이나 편의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고 다양한 행동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쾌적성

-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정돈된 가로공간환경을 구현하여 쾌적함을 주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환경성

- 친환경적인 소재나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제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환경을 고려한다.

안전성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가로시설물이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게 집중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선택성

-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용이 되며, 사용자에 따라 선택가능한 가로시설물을 적절한 위치와 기능을 갖추도록 배려한다.

+ α (지역성)

- 각 시·군별로 지리적, 문화·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경기도의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V. 가로시설물



2. 교통시설물

2.1 정의

정의

- 교통시설물은 공공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을 말하며,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한 가로시설물 중 보도펜스, 볼라드, 버스 및 택시승차대, 신호기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교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안전성, 편의성, 지속성, 효율성, 조화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 + α)에 따라 계획한다.

가이드라인 방향

- 교통시설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교통시설물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하며, 주변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한다.
- 교통시설물과 조경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어디서나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트인 공간감을 가지도록 한다.
- 횡단보도의 진입부, 보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대중교통 출입구 등 높낮이의 연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곳에는 가급적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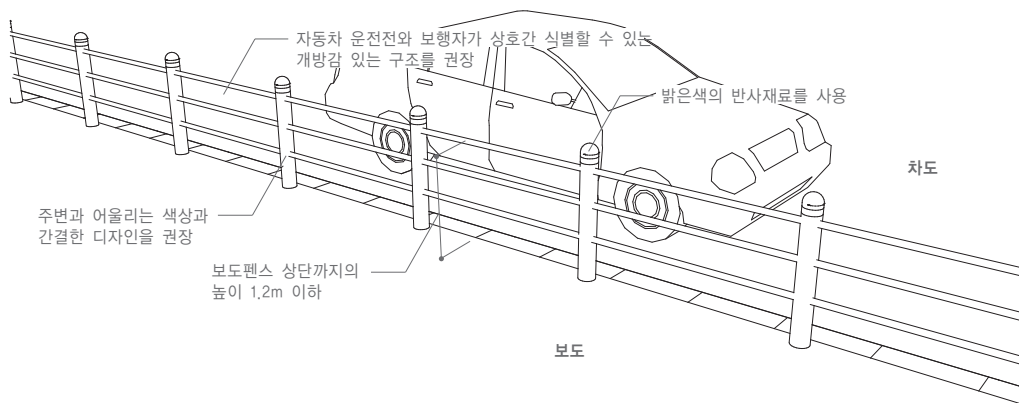
2.2 보도펜스

기본지침

- 보도펜스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으로서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해야 한다¹⁾.
- 보도펜스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차도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도로의 유지·관리 및 배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¹⁾.

구조 및 형태

- 보도면에서 보도펜스 상단까지의 높이는 보행자와 자전거사용자의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1.1m 내외로 한다.
- ☑ 너무 높은 보도펜스는 보행자에게 압박감을 주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1.2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도펜스는 개방감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 어린이가 상호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보도펜스의 부재 사이의 틈새는 어린이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간격이 되도록 디자인한다.
- 지주는 토압저항을 고려하여 도로면에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주의 깊이는 사용제품의 성능시험에 적용한 길이를 그대로 적용한다.
- 기타 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 권장 : 보도펜스의 설치 예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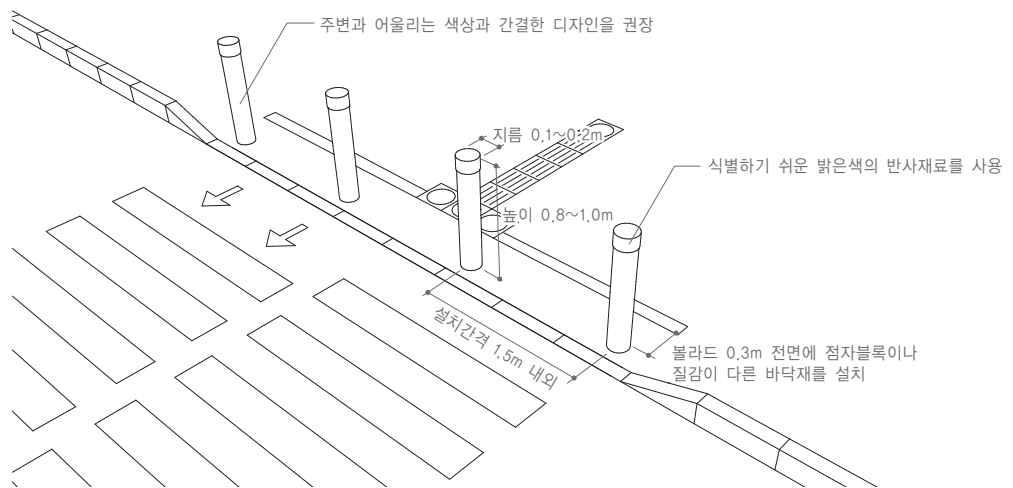
2.3 블라드

기본지침

- 블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며¹⁾,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 노인이나 장애인 등과 블라드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블라드 주변에 접자블록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참조한다.

설치위치

- ☑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
-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블라드를 설치한다.
- 보차공존도로, 왕복4차선 이상 도로에는 블라드를 설치하도록 한다.
- 자동차가 보도로 불법 진입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 블라드는 고원식 횡단보도·교차로에서 자동차가 오르막 경사면을 타고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와 차도폭 좁힘 구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보도에 블라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크기나 위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권장 : 횡단보도의 경계부분에 설치한 블라드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구조 및 형태

- 볼라드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8-1.0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0.1-0.2m 내외로 한다¹⁾.
 - 볼라드는 차도와 횡단보도의 보행자 대기공간의 경계가 되는 곳에 1.5m 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¹⁾.
 - 볼라드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¹⁾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볼라드는 고정식과 가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볼라드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가동식 볼라드의 경우 시간대에 따라 자동차 통행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설치할 수 있다.
- ㉔ 횡단보도와외의 경계부분에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질 및 색채

- 재질은 보행자나 자전거사용자 등이 부딪힐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재 대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¹⁾.
- 모서리가 부드러운 모양으로 디자인하며, 가급적 탄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밝은 색의 반사도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주·야간에 관계없이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한다¹⁾.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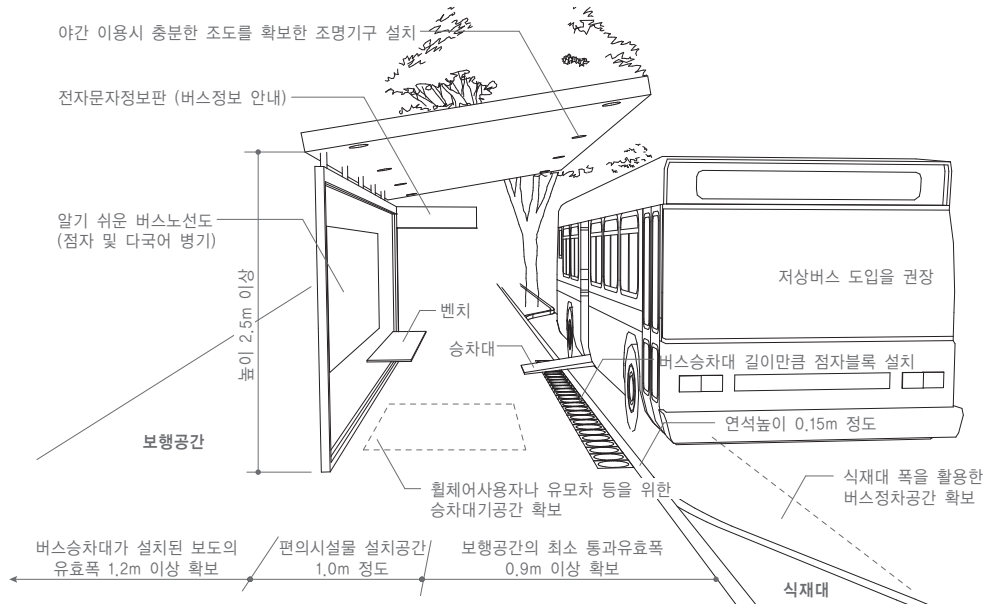
2.4 버스·택시 승차대

기본지침

- 버스 및 택시 승차대는 도로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야간 모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안전한 승차대가 되도록 한다.
- 버스승차대는 반드시 쉘터(앉아 쉬는 것 포함)를 포함하여 설치해야 하고, 버스승차대 주변에는 시야 차폐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에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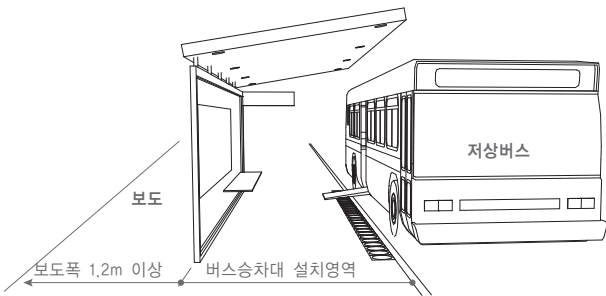
버스승차대

- G 버스승차대를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15cm 이하로 하며, 연석은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한다.
- G 유모차, 휠체어의 진출입·회전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버스승차대의 설치로 인해 보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다.
- G 행선지, 시각표 등 버스의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은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안내판은 점자안내 및 음성안내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린이, 휠체어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 조회버튼을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내에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이 차도와의 경계부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며, 승강장의 폭에 따라 선형블록이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 적절히 유도되도록 한다.
- 차량도착 정보안내시스템은 휠체어나 장애인의 대기공간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서비스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G 버스 통행이 많은 지역 등에 설치할 경우, 버스 진입방향에는 측면광고면을 설치하지 않으며, 우천시 등을 고려하여 지붕이 있는 형태를 갖추도록 한다.
- 승차대대기공간의 상부 높이는 2.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승차대대기공간의 지지부를 중심으로 1.0m 이내에 벤치, 안내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의
-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 광고면은 버스노선도 등 안내판을 보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로 설치한다.
- G 장애인 등을 위한 승차대대기공간의 주요 사용자는 휠체어사용자 또는 유모차 동반자이므로 벤치를 설치하지 않으며, 지체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수평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 벤치의 설치 높이는 40~45cm 정도로 설치하며, 차가운 금속 재질은 지양하고,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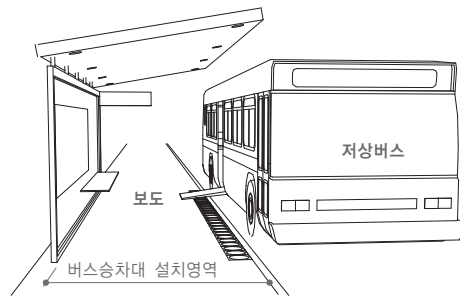


▲ 권장 : 버스승차대 설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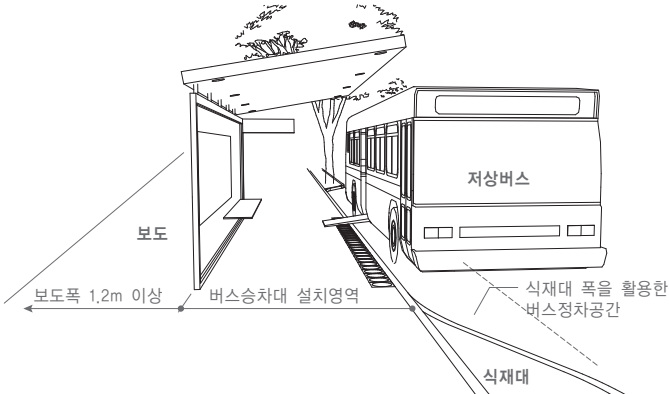
• 보도폭이 넓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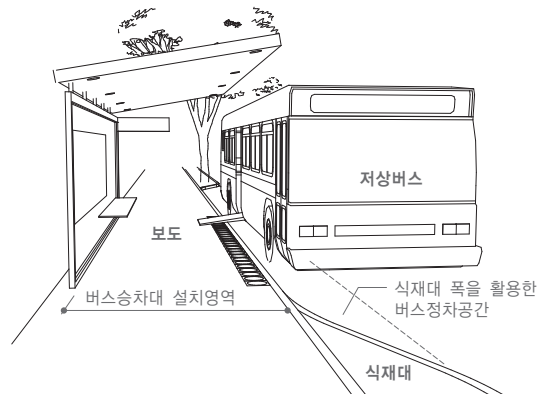
• 보도폭이 좁은 경우



• 보도폭이 넓고 식재대가 있는 경우



• 보도폭이 좁고 식재대가 있는 경우



▲ 권장 : 보도폭에 따른 버스승차대 설치방법

택시승차대

㉔ 거리 중에 활용빈도가 높고 대중교통과 환승되거나 주요시설이 집중되는 곳을 선정하여 안전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설치위치를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한다.

- 주변으로부터 시야가 확보되도록 하고,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하도록 주변 조명기준 이상으로 조명을 설치한다.
- 야간에도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㉕ 보도 등 주변여건에 따라 차도와의 경계부분을 낮추거나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사용자나 영유아 동반자 등이 승하차하기 쉽도록 한다.



▲ 보도의 폭을 활용한 택시승차대 설치 예



▲ 경기도 유니버설형 택시승차장¹⁾

1) 출처 : 경기도 택시승강장 디자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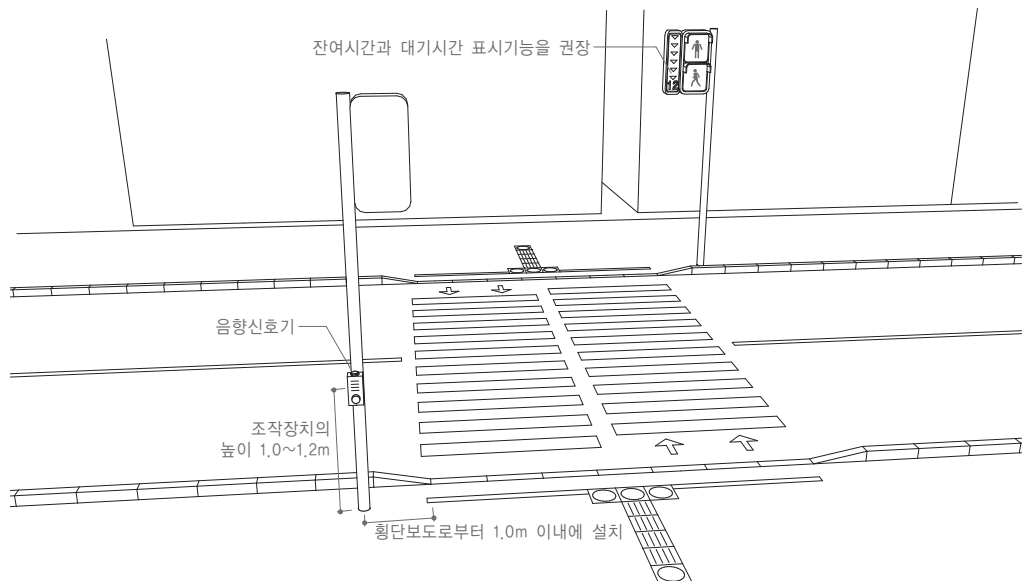
2.5 신호기

기본지침

- 신호기의 설치로 인해 보도의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한 위치에 설치하되 식별이 잘 되도록 한다.
- 장애인의 신체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조작버튼의 설치 높이를 결정하며, 시각, 청각 등 복수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해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¹⁾.
 -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신호를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지점에 설치하되,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m 이상 1.2m 이하로 해야 한다¹⁾.
 - 리모콘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동식 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해야 한다¹⁾.
- ☑ 음향신호기의 음량은 소음이 되지 않고 적절한 일정 범위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 음향신호기의 소리는 불쾌함을 주지 않는 듣기 좋은 신호음이 되도록 하며, 통일된 신호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권장 : 횡단보도에 설치한 음향신호기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신호기

- 보행우선구역 안의 교통신호기에는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녹색신호 변경버튼을 설치해야 한다¹⁾.
- ☒ 교통신호기는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하며¹⁾, 적절한 음량과 듣기 좋은 소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시간은 노인, 장애인 등이 횡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 ☒ 횡단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급적 잔여시간 표시기능과 대기시간 표시기능을 겸한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 잔여시간 표시기능은 횡단 보행자의 이용현황, 횡단시간,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V. 가로시설물



3. 편의시설물

3.1 정의

정의

- 편의시설물은 시민들에게 각종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가로시설물 중 벤치, 음수대, 공중전화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교통시설물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편의성, 효율성, 안전성, 조화성, 국제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 + α)에 따라 계획한다.

가이드라인 방향

- 편의시설물은 주변지역여건을 잘 파악하여 사용자의 사용빈도와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 동일 시설물을 일정거리를 두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인근에 설치되는 여러 종류의 가로 시설물은 가급적 통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편의시설물은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가급적 편의시설물 주위에는 식재를 활용하되, 과도한 식재로 인해 시설물의 식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3.2 음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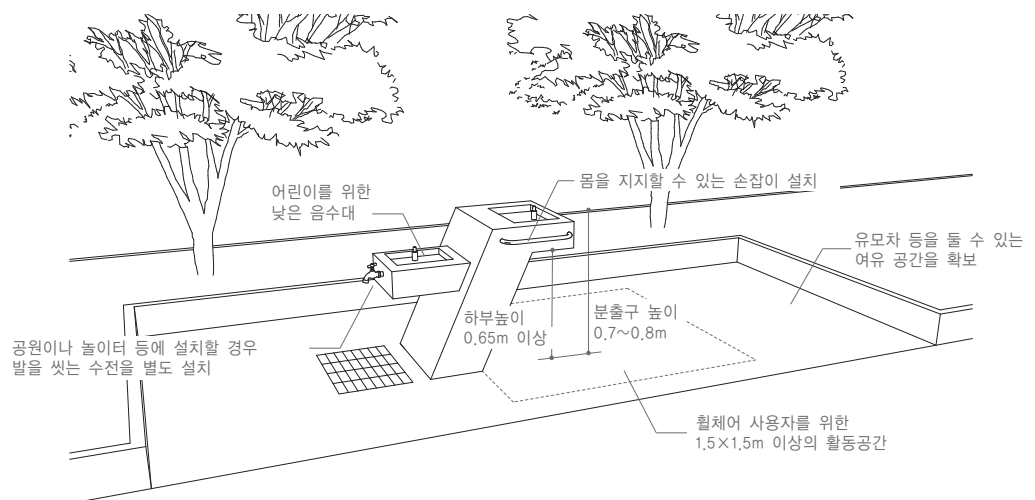
기본지침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가로나 공원 등 공공공간에 식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이므로,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음수대의 높이나 구조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지팡이 사용자 등도 자연스러운 자세 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배려한다.

형태 및 구조

G 키가 작은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하여 높낮이가 다른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음수대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¹⁾.
- 음수대 분출구의 높이는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가 마시기 쉽도록 바닥면에서 0.7~0.8m의 높이로 한다²⁾.
- 휠체어사용자가 급수전에 전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수대 하부높이는 0.65m 이상, 깊이는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벽면 매입형인 경우에는 전면 접근할 수 있도록 좌우 유효폭을 0.9m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음수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³⁾.
- 자동감지식 음수대를 설치하는 경우 수동식을 병행하도록 권장한다.
- 공원이나 놀이터 등에 설치되는 음수대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수전을 별도로 설치하며,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 권장 : 높낮이가 다른 음수대의 설치 예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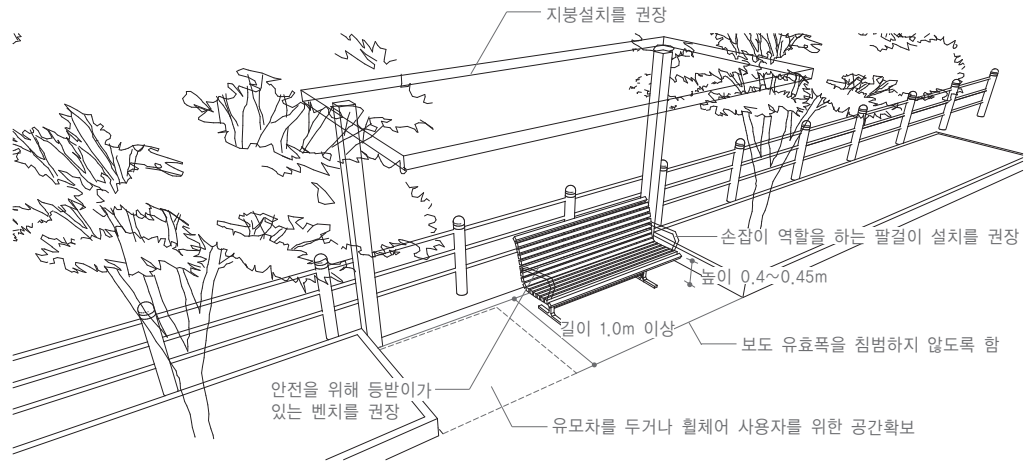
3.3 벤치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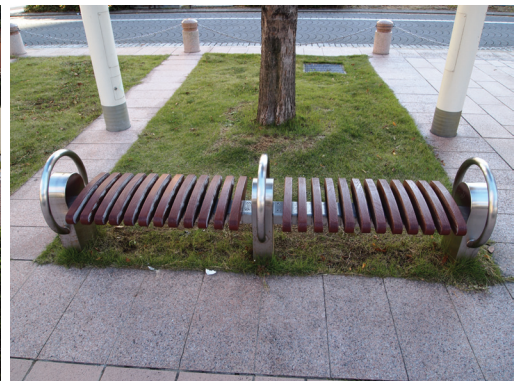
- 벤치는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시선의 은폐와 차단이 생기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심터와 연계하여 소공원, 수변공간, 미술품, 전시물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200m마다 설치하고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한다.
- 등받이를 설치하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를 설치한다.

구조 및 형태

- ☑ 벤치를 설치할 때에는 식재나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며, 친환경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 벤치는 손잡이 및 등받이가 있는 구조로 하며, 휠체어사용자 등이 옆에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 노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에는 반드시 등받이를 설치한다.
- 단단히 고정된 손잡이가 없으면 이용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 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 벤치 높이는 0.4-0.45m가 적당하며, 특히 발이 닿는 위치가 평탄하고 주변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설치한다.
- 벤치 공간의 상부에는 햇볕,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지붕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벤치의 모서리 부분은 모두 둥글게 처리한다.
- 벤치는 4인 이용 기준으로 설치하며, 2인용과 1인용을 적절히 혼합하여 설치한다.
- 벤치 배치는 독립된 공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만큼 이격시킨다.
-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한다.



▲ 권장 :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벤치를 설치한 예



▲ 벤치 설치의 예

3.4 공중전화

기본지침

- 공중전화는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배려한다.
- 언어나 청각장애인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의 설치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 휠체어가 접근, 이동할 수 있는 위치와 구조로 하며, 바닥에 단차가 없도록 한다.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전화부스)를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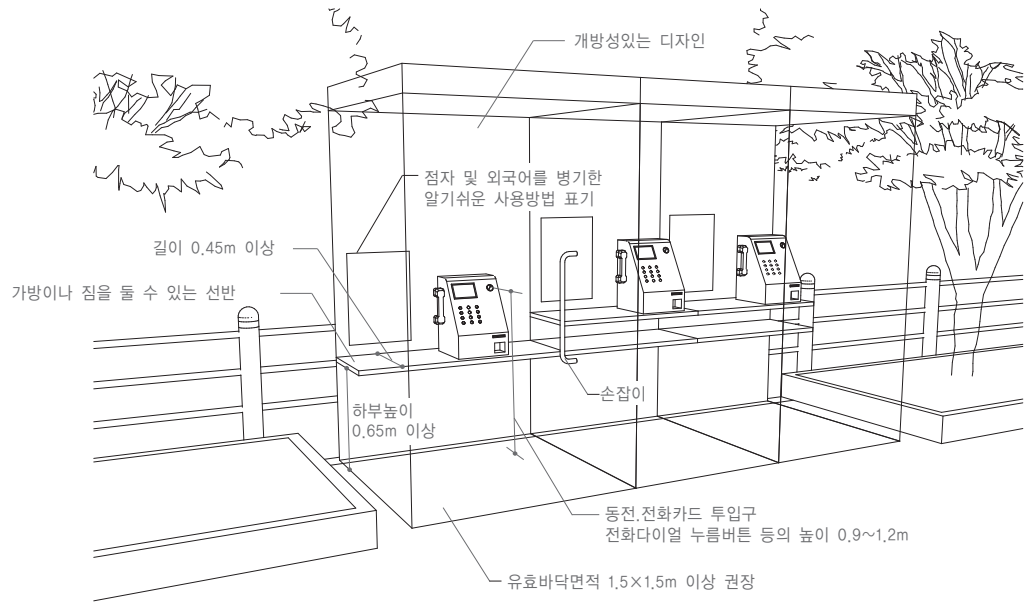
구조 및 형태

- 어린이, 노인, 휠체어사용자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한다¹⁾.
- ☑ 전화부스를 포함하여 바닥은 보도 또는 통로와 단차가 없어야 한다¹⁾.
- 전화대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 전화부스 등 구획된 공간일 경우,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해 출입구의 유효폭은 0.8m 이상, 내부 폭은 0.9m 이상, 깊이는 1.4m 이상을 확보한 공중전화를 최소 1개소 설치한다.

전화대

- ☑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 등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하여 높이가 다른 전화대를 설치한다.
-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¹⁾.
-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하며,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1.4m로 해야 한다¹⁾.
-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를 배려할 경우 0.9-1.2m 정도의 높이가 사용하기 편리하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권장 : 전화대의 높이가 다른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한 예



▲ 휠체어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차를 제거한 공중전화

V. 가로시설물



4. 공급시설물

4.1 정의

정의

- 공급시설물은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필요한 수도·전기·가스·방송·통신시설 등의 공공서비스 관련 시설물을 말하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가로시설물 중 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규정한다.
- 공급시설물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지속성, 조화성, 효율성,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심미성, 편리성, 쾌적성, 환경성, 안전성, 선택성)에 따라 계획한다.

가이드라인 방향

- 공급시설물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가급적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 설치하여 정돈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고려한다.
- 주변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는 재질과 형태로 디자인한다.

4.2 맨홀

구조 및 형태

- 맨홀의 표면 마감재는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 보도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포장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도록 권장한다.
- 보도에 설치하는 맨홀은 단차가 없도록 하여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들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용 지시가 맨홀에 의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바닥마감과 어울리도록 맨홀을 설치한 예

4.3 배전함·가로등제어함 등

구조 및 형태

- ㉔ 보행자 및 자전거사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설치가능한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치를 결정하며, 다른 가로시설물과 통합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㉕ 색상은 원색이나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는 색상으로 디자인하도록 권장한다.
 - 시설물의 하부는 가급적 불필요한 받침대나 펜스 등은 설치하지 않는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시설물의 모서리는 보행자나 자전거사용자가 충돌하여도 큰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둥글게 마감하도록 권장한다.
- ㉖ 보행공간인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 공개공지 또는 식재대 등에 설치하도록 한다.



▲ 보행장애물 존에 설치한 배전함 등의 설치 예

VI. 공공정보매체

1. 공공정보매체 개요

1.1 개요

2. 공공정보매체

2.1 시각정보

2.2 청각·촉각·후각정보

2.3 안내시설물

VI. 공공정보매체



1. 공공정보매체 개요

1.1 개요

공공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의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영역의 공공정보매체를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의 사용자에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에 부합되게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공공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공공정보매체 영역에 해당되는 요소를 시각, 촉각, 청각, 후각정보로 분류하여 가이드라인 수립 대상으로 지정한다.



<그림 6-1> 공공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관련법규

- 본 가이드라인은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공공정보매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중요한 세부 설계지침을 중심으로 다루며, 기타 세부 규정은 아래의 각 법률의 기준에 준한다.
 - 도로표지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공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의 기본개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의 7가지 기본원칙을 수립한다.
- 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은 향후 수립될 경기도 공공정보매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수립시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본이 된다.

경기도 공공정보매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고, 공공정보매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경기도 공공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원칙



공공정보매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세부 실천내용

심미성

- 색상, 재질, 형태 등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기능을 중시하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편리성

- 개개의 공공정보매체는 목적별, 장소별로 체계적이고 통일감을 주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연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확보한다.
- 누구에게나 알기 쉬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다국어 표기 등을 적극 활용하며, 식별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쾌적성

- 많은 정보가 범람하지 않도록 통일감 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환경성

- 빛, 바람, 소리, 향기 등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하거나 건물내에는 천정높이를 달리하는 등 공간감각을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수법 또는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안전성

- 재해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누구에게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정보매체로 계획한다.
- 물리적인 공공정보매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적 대응 등 소프트웨어에 의해서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선택성

- 다양한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수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시각, 촉각, 청각 등 사람의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배려한다.
- 공공정보매체는 단순히 일방적인 정보제공 보다는 상호간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공공정보매체가 되도록 배려한다.

+ α (지역성)

- 각 시·군별로 지리적, 문화·역사적, 사회적 상황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경기도의 통합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창의적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VI. 공공정보매체



2. 공공정보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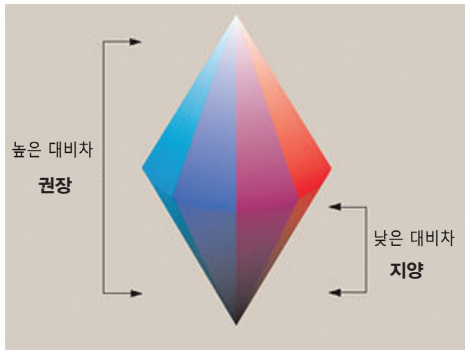
2.1 시각정보

기본지침

- 시각정보는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며,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 시각기능이 저하된 노인이나 약시자를 위해 사인본체의 색채나 설치장소의 조명 등을 배려한다.
- 일상적인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치된 시각정보는 비상시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체계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 IT기술을 이용한 시각정보 전달장치는 급속하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정보로 대체하여 향후 시스템 갱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다른 공공정보매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색

- 적색은 진한 적색이나 강한 적색을 사용하지 않고 자주색이나 주황색을 사용한다.
- 녹색은 적색이나 갈색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청색이 혼합된 강한 녹색을 사용한다.
- 밝은 녹색과 황색을 함께 사용하면 식별하기 힘들므로 황색, 황녹색, 밝은 녹색은 가급적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색각이상자를 배려해 적색과 녹색의 중간색이나 청색이나 자주색의 중간색을 사용하지 않는다.
- ☑ 난색계열(적색-녹색)과 한색계열(녹색-청색)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난색과 한색이라 하더라도 같은 명도의 색을 함께 사용하면 식별하기 힘들므로 명도차를 크게 한다.
- ☑ 두가지 색이 명확히 다르더라도 비슷한 명도라면 식별하기 쉽지 않으므로, 색의 명도차를 크게 한다.
- ☑ 색의 대비차를 크게 하여 인지하기 쉽도록 반대계열 색을 사용하며, 인접한 색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3색 이상을 사용할 경우 색상은 물론 명도의 차이를 크게 하며 밝은 색, 중간 색, 어두운 색을 조합한다.
- 원색끼리나 원색과 파스텔칼라의 대비는 좋지만, 채도가 낮은 색끼리나 파스텔칼라끼리의 조합은 지양한다.



▲ 색의 명도차 컬러차트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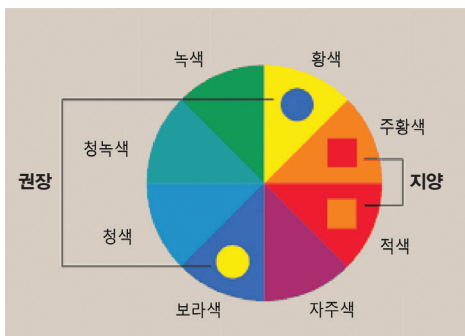
식별하기 쉬운 색의 명도차 (권장)



식별하기 힘든 색의 명도차 (지양)



▲ 색의 명도차 조합에 따른 식별정도



▲ 색의 대비차 컬러차트¹⁾

식별하기 쉬운 색의 대비차 (권장)



식별하기 어려운 색의 대비차 (지양)



▲ 색의 대비차 조합에 따른 식별정도

문자 - 색

☑ 글자색은 배경색과 대비차를 크게 하여 식별하기 쉽도록 한다.

- 노인이나 부분적 시야손상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어두운 배경의 밝은 글자가 밝은 배경의 어두운 글자보다 식별하기 쉽다.

☑ 출력물은 일반적으로 검정색과 흰색의 대비가 가장 읽기 쉬우며, 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목이나 경고문구와 같이 강조가 필요한 곳에 사용한다.

- 작은 글자는 색을 사용하지 않고 굵은 글자를 사용한다.

문자 - 서체

☑ 원거리에서 보는 문자는 고딕계의 굵은 서체를 사용하며, 근거리에서 보는 문자는 약간 얇은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 제목은 고딕계의 서체를 원칙으로 하며, 문장은 명조계의 서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설치장소에 따라 적절한 서체와 가독성이 우수한 서체를 사용하도록 한다.

- 복잡하고 장식적인 서체를 비롯하여 이탤릭체나 비스듬히 기울인 서체는 지양한다.

☑ 숫자는 시간이나 요금 등의 약시자 등이 오독을 피할 수 있는 서체를 선택한다.

¹⁾ 출처 : www.lighthouse.org

| | 권장서체 | 사용 가능한 서체 |
|--------|---------------|---------------------------------|
| 한글 | 고딕 | 윤고딕, 유디고딕, 산돌고딕, 한길체 등의 고딕계 |
| 로마자 | Helvetica | Sans-serif, 윤고딕, Universe 등 고딕계 |
| 기타 외국어 | MS UIゴシック, 黑体 | 고딕계 |

▲ 권장 서체와 사용 가능한 서체

| | | | |
|----|---------------------------|----|---------------------------------------|
| 지양 |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접근 가능 | 권장 | 1 2 3 4 5 6 7 8 9 → 1 2 3 4 5 6 7 8 9 |
| 권장 |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접근 가능 | 지양 | 1 2 3 4 5 6 7 8 9 → 1 2 3 4 5 6 7 8 9 |
| 지양 |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이 접근 가능 | | |

▲ 한글 표기시 권장 서체

▲ 숫자 표기시 오독을 피할 수 있는 서체 권장

| | | | |
|----|---|----|-----------------|
| 권장 | Sans-Serif typefaces are effective. | 권장 | すべての人が差別なしに接近可能 |
| 지양 | <i>Bickham typefaces are effective.</i> | 지양 | すべての人が差別なしに接近可能 |
| 권장 | Helvetica typefaces are effective. | 권장 | 不受歧视地为大家访问 |
| 지양 | Gill Sans typefaces are effective. | 지양 | 不受歧视地为大家访问 |

▲ 외국어 표기시 권장 서체와 지양 서체

문자 - 글자크기

- 활자의 종류와 정보물의 성격에 따라 가독성이 좋은 글자 크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G 표지판의 글자크기는 표지판의 크기, 색상, 시인거리에 따라 적합한 글자크기를 사용한다.

| | 원칙 | 시인거리 10~20m | 시인거리 1~2m |
|--------|------------------------------|-------------|-----------|
| 한글 | 받침이 있는 글자 중 가장 높은 글자를 기준 | 70 mm | 10 mm 이상 |
| 로마자 | 첫 번째 대문자 기준, 한글 세로크기의 70% 수준 | 50 mm | 8 mm 이상 |
| 기타 외국어 | 첫 번째 문자를 기준, 한글 세로크기의 80% 수준 | 56 mm | 8 mm 이상 |

▲ 시인거리별 적절한 글자크기

문자 - 간격 및 장평

- ☑ 글자의 자간은 글자 크기 또는 글자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표기해야 한다.
- 글자의 자간은 너무 가까우면 보기 어렵다.
- 글자의 장평은 글자의 가로와 세로 크기가 동일한 정비율보다 세로 100%, 가로 90% 내외의 비율로 표기한다.
- 자간보다 문단 간격을 넓게 하며, 문단 간격보다는 행 간격이 넓게 한다.
- 부분적 시야손상을 가진 시각장애인은 행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다음 행의 시작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행간은 글자 크기의 최소 25%~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정보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문단이나 행 사이의 적절한 여백을 주어 정보를 읽기 쉽도록 한다.

문자 - 다국어 표기

- ☑ 다국어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서체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로에서 차량유도를 위한 안내표시는 한글과 영어의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 ☑ 보행자를 위한 안내표시는 한글과 영어의 병기를 원칙으로 하며, 일본어, 중국어 등의 표기를 권장한다. 단,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빈도 등을 고려하여 표기하는 외국어의 종류를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 표기 배치는 한글 문장을 모두 표기한 후 영어 문장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하 배치시 한글을 위쪽, 영어를 아래쪽에 표기하며, 좌우 배치시 한글을 왼쪽, 영어를 오른쪽에 표기한다.
- 다국어 표기순서는 한글 - 영어 - 기타 외국어 순서로 표기하며, 기타 외국어의 표기순서는 수교국가 순서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다.
- 중국어 표기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체 또는 번체로 표기할 수 있다.

문자 - 기타

- 조명이나 태양광에 반사되어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보물의 재질은 빛반사가 없는 재질로 선택한다.
- ☑ 복수의 정보가 비슷한 내용으로 숫자만 다른 경우에는 색, 사이즈, 포맷 등을 다르게 하여 전달하려는 부분이 두드러지게 한다.



▲ 복수의 정보가 비슷한 경우의 식별정도

픽토그램

☑ 눈에 잘 띄고 연령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 픽토그램은 ISO, KS규격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 복수의 픽토그램을 병행 표기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배경크기를 같은 치수로 한다.
- 가까운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의 한글, 영문 등을 병기하도록 권장한다.

I 편의시설 I



I 교통시설 I



I 기타 I



I 여객처리시설 I



▲ 한국산업규격의 공공안내 픽토그램

색각이상자 배려

- 눈의 망막에는 빨강, 녹색, 파랑색을 구별하는 3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어 여러가지 색깔을 인식할 수 있는데, 이 중 하나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색각이상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색각이상자는 남성의 경우 1,000명 중 60명, 여성의 경우 1,000명중 4명 정도이며, 제1종(적)과 제2종(녹) 색각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제1종과 제2종 색각이상자는 적색-녹색의 파장영역에서 명도가 유사한 색의 구분이 힘들어지며, 특히 적색과 녹색, 황녹색과 황색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지양한다.
 - 색각이상이 없는 사람은 보통 적색과 녹색 정보를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제3종(청) 색각이상자의 색구별은 색각이상이 없는 사람과 비교적 가깝지만, 청색과 녹색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지양한다.
 - 색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을 전색맹이라 하며, 색을 흑백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명도차가 큰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 점자블록의 색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는데, 황색은 색각이상자는 물론 약시자도 인식하기 쉬운 색이므로 주의환기용에 사용할 수 있다.
- ☑ 전자문자전광판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정보를 적색으로 표시할 경우 검정으로 보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다른 색이나 명도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 ☑ 도로표지판의 금지에 사용되는 적색은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적색과 다른 색의 경계부분에 얇은 흰선을 넣어 식별하기 좋도록 한다.
- 학교 등에서 칠판에 사용되는 분필 중 백색과 황색은 식별할 수 있지만, 적색 분필은 매우 식별하기 힘드므로 다른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 ☑ 도표에서 색을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색으로 버스노선도, 전철노선도 등을 표현할 경우에는 패턴 등도 함께 활용하도록 한다.
- ☑ 빛을 발하는 LED의 조명 색은 적색, 백색, 청색을 조합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적색, 주황색, 황색, 녹색의 LED는 거의 유사한 색으로 보이므로 함께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색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여 작성된 동경의 지하철 노선도. 각 노선을 교차점마다 하얀 선을 넣어 위계를 주고 있으며 또한 노선별로 영어표기를 삽입하여 색상이 제거되어도 인지 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2.2 촉각·청각·후각정보

기본지침

- 사람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약 80%는 시각에 의해 습득하지만, 시각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시각정보 이외의 정보전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 IT기술을 이용한 촉각·청각·후각정보 전달장치는 급속하게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정보로 대체하여 향후 시스템 변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다른 공공정보매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비상시를 고려하여 인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전달매체를 복수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촉각정보

- ☑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중요한 정보획득 수단으로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이므로 촉각을 최대한 활용한 문자생활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각종 안내판이나 손잡이에는 점자표기를 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 공공공간의 가로나 공원, 공공건축물 등에는 적재적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점자표기의 기본원칙은 한국점자규정(문화관광부고시 2006-39호)에 준한다.
 - 한국 점자는 한 칸을 구성하는 점 6개(세로 3개, 가로 2개)를 조합하여 만든 63가지의 점형으로 적는다.
 - 한 칸을 구성하는 점의 번호는 왼쪽 위에서 아래로 1점, 2점, 3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4점, 5점, 6점으로 한다.
 - 글자나 부호를 이중으로 적지 않도록 한다.
 - 한글 이외의 점자는 세계 공용의 점자와 일치하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국 점자는 풀어쓰기 방식으로 적는다.
 - 한국 점자는 책의 부피를 줄이고, 정확하고 빠르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청각정보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의 위치 또는 건축물내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 방향이나 서비스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장소에서는 적절한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음악이나 물소리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인지시키는 경우에는 복수의 음 정보가 범람하여 시각장애인이 혼란해하지 않도록 음량, 음질 또는 방향성에 배려한다.

가로나 공공건축물 등에 청각정보를 제공하는 소리는 적절한 일정범위 내에서 인지할 수 있는 음량과 듣기 좋은 쾌적한 소리로 하며, 설치장소별 체계적이고 통일된 소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 공공건축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방송 및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권장 : 청각정보를 제공하는 신호장치의 설치 예

후각정보

보도나 건축물내 복도가 깔리는 모퉁이 등에 향기가 있는 식재나 꽃을 두거나, 지역별 또는 층별로 서로 다른 향기를 내도록 하는 등 후각에 의한 정보제공을 배려한다.

기타

- 공공건축물내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 안내시설물

기본지침

- 다양한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수법을 검토하고 시각, 촉각, 청각 등 사람의 오감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배려한다.
- 개개의 안내시설물은 목적별로 체계적이고 통일감을 주도록 하며, 연속으로 설치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내시설물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며 미적 감각을 가진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 안내시설물은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요한 위치에 적절한 개수를 설치하도록 한다.
- 안내시설물은 사용자가 보도나 복도 등에서 인지하기 쉬운 적당한 위치와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내표지판 - 기본사항

- 사용자의 행동특성은 연령, 이용목적 이외에도 물론 지역, 장소, 건축물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다양한 사용자의 행동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적재적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 다양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시설물은 정보전달체계, 설치방법, 표기방법,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정보전달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 기억하기 쉽고 이미지화하기 쉬운 표현이나 용어를 사용한다. ·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 사용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한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너무 많거나 적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정보량을 제공한다. |
| 설치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 사람이나 시설물 등이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사람이나 시설물 등의 그림자에 가리지 않는다. · 정보량이 많은 경우 사용자의 흐름을 분산시켜 차분하게 읽을 수 있다. · 사람이나 시설물 등이 시야를 가지는 그림자에 가리지 않는다. · 근접해서 읽을 경우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다. · 편한 자세로 읽을 수 있다. · 주변 광고물과 잘 구분되어 인지하기 쉽다. ·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루며 적절한 강조를 가진다. · 야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
| 표기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감이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갖는다. · 내용은 간결하고 단순하게 배열한다. · 읽기 쉬운 서체를 사용한다. · 문자, 그림, 기호, 픽토그램 등의 크기가 적절하다. · 명도 등의 대비가 잘 이루어진다. · 안내를 위한 그림, 기호, 픽토그램 등 적절하게 사용한다. · 외국인을 위해 중요한 정보는 다국어를 표기한다. · 오독의 소지가 없는 적절한 화살표의 방향 표현을 사용한다. · 안내표지판의 안내도 방향은 사용자가 보는 방향과 일치한다. · 안내도는 너무 복잡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적절히 제공한다. · 눈부심이나 빛 반사가 없다. |
| 유지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지거나 표면 등이 잘 벗겨지지 않는 구조이다. · 청소하기 쉽고 잘 더러워지지 않는 재질 등을 사용한다. ·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

▲ 안내시설물의 설치시 기본적인 배려사항

전달기능에 따른 분류
- 안내표지

- 안내표지는 각종 출입구에 위치하여 일정 구역이나 건물 전체를 나타내는 지도를 제공하며,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의 관계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이다.

☑ 안내표지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안내표지는 사용자의 동선과 대면하는 방향에 설치하고, 다른 사용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멈춰 서서 읽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공간상의 제약으로 사용자의 동선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 안내표지의 설치 위치에 대한 표지를 진행방향에서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안내도, 시각표 등의 설치 높이는 어린이, 휠체어사용자 등도 보기 쉬운 높이로 한다.

- 공공청사처럼 목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체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를 중점적으로 배치하며, 많은 사람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 동일 시설 내에서 복수의 건물이나 많은 층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출입구에는 시설 전체를 알리는 종합안내도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홀 등에는 일정 구역을 자세하게 알리는 상세안내도를 배치하여 안내표지의 기능을 분담한다.



▲ 각 구역별로 다른 색상을 사용한 안내표지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역 지하도)

전달기능에 따른 분류
- 유도표지

- 유도표지는 시설이나 주요 목적지 등의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이다.
- 일반적으로 방향을 알리는 화살표와 함께 목적지명, 이동거리 등을 넣어 표시한다.
- ☑ 사용자들이 주로 이동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른 시간에 정보를 읽고 진행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표기 내용을 정리하고, 직감적으로 알기 쉽고 명쾌한 디자인으로 한다.
- 목적지에는 눈에 잘 띄는 시설명 위치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유효하다.
- 가로, 공원 등의 유도표지는 폴(Pole) 등의 지주가 있는 자립형으로 설치하여 유도표지 하부의 여백공간을 비워 경관 등의 시야를 확보하며, 도로나 보행로의 갈림길에 설치하도록 한다.
- 공항, 역 등의 교통시설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목적지가 한 곳이므로, 최단 경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동선의 분기점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필요한 정보를 연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배치한다.
-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유도표지는 먼 거리에서도 보면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 등의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정보를 습득하기 쉽다.
- ☑ 표기하는 정보량이 많은 경우, 경로를 구성하는 주요한 공간(출입구, 승강장, 비상구 등)과 원활한 이동 및 편의를 위한 주요한 장소(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수유실, 매표소 등)를 우선적으로 표기한다.
- 이동거리가 긴 경우,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병기하도록 한다.



▲ 걸으면서 방향과 주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설치된 유도표지 (일본 하마마쓰 역)



▲ 교차로에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방향지시와 주요한 정보를 표기한 유도표지 (일본 하마마쓰 역)

전달기능에 따른 분류
- 위치표지

- 위치표지는 원활한 이동 및 편의를 위한 주요한 장소(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수유실, 매표소 등)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이다.
- ☑ 시설의 명칭만을 표기하지 않고 가급적 안내를 위한 기호, 로고, 픽토그램 등을 병기하도록 한다.
- ☑ 유도표지를 따라 찾아오는 사용자가 목적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형태로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배치한다.
- 위치표지에 표기하는 정보량 내용이 많은 경우, 원활한 이동 및 편의를 위한 주요한 장소 외에 경로를 구성하는 주요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표기한다.



▲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각종 위치표지 (일본)

전달기능에 따른 분류
- 규제표지

- 규제표지는 사용자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이다.
- ☑ 금연이나 진입 금지 등 위반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관적으로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설치한다.



▲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제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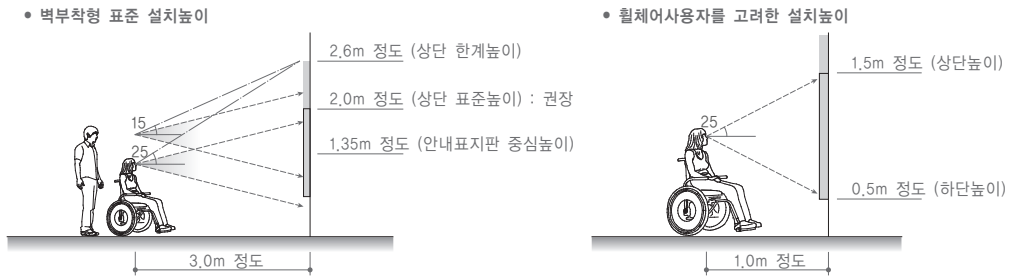


▲ 회전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표기가 부착된 규제표지

설치방법에 따른 분류
- 벽부착형

- 벽부착형은 벽면 등에 설치하여 안내표지, 유도표지, 위치표지, 규제표지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설치방법이다.

- ☑ 표기내용의 시인거리는 3.0m 이하의 근거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한다.
- ☑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 등을 위해 벽부착형 안내시설물의 상단 높이는 2.0m 정도가 적절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대 2.6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버스시간표와 같이 손으로 짚어가며 정보를 확인하는 안내시설물은 표기내용을 서서 손이 닿는 범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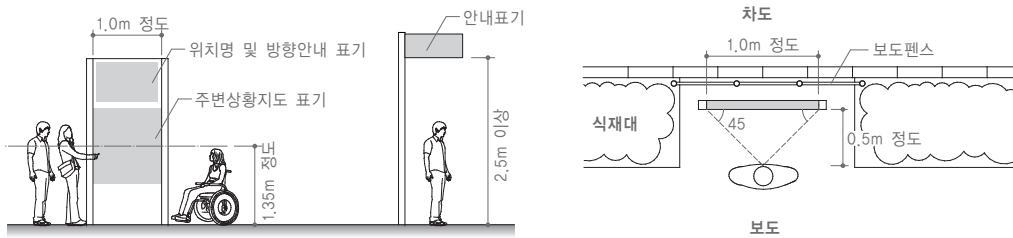


▲ 벽부착형 안내시설물의 설치방법

설치방법에 따른 분류
- 자립형

- 표지의 존재를 강조하는 경우나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 등이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방법이다.

- ☑ 전달하고자 하는 표지의 기능, 표기하는 정보내용, 시인거리 등에 유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자립형 안내시설물의 설치방법

설치방법에 따른 분류

- 돌출형

- 돌출형은 벽면 등의 상부에 통로 측으로 조금 돌출되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좁은 통로에 면한 시설이나 실 입구 등에 설치하여 각종 공간명이나 시설명의 위치표지로 사용된다.

- ☑ 안내시설물에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바닥면에서 표지판 하단까지의 높이는 건축물 외부의 경우 2.5m 이상, 내부의 경우 2.1m 이상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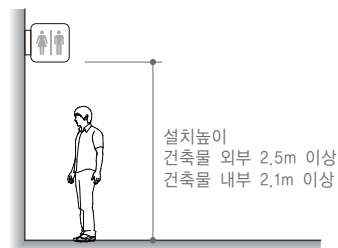
- 바닥형

- 바닥형은 바닥면에 색 라인 등에 의한 유도 또는 경고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자블록이나 피난 유도등 등이 대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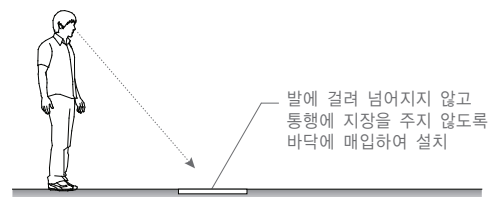
- ☑ 문자나 도형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표기내용이 마모되지 않도록 한다.

-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돌출형의 설치방법



• 바닥형의 설치방법



▲ 돌출형과 바닥형 안내시설물의 설치방법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야 한다¹⁾.
-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¹⁾.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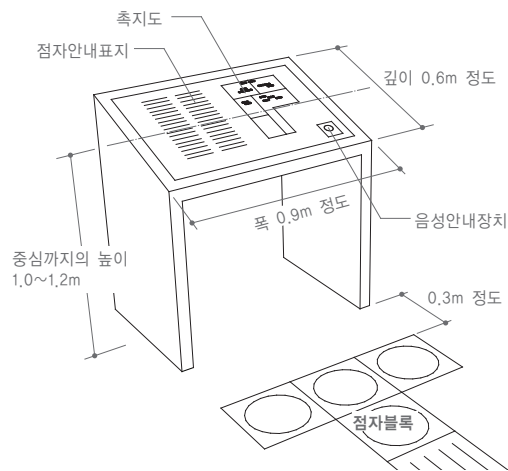
-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은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 화장실 등의 한정된 공간을 인지하기에는 촉지도식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를 함께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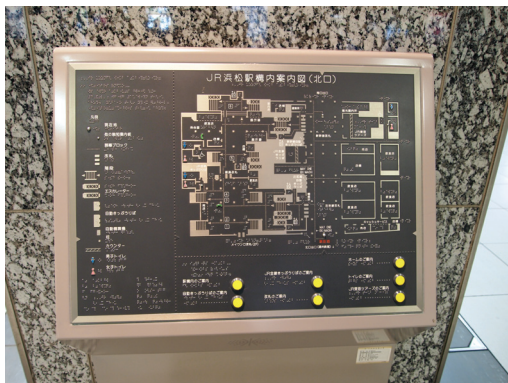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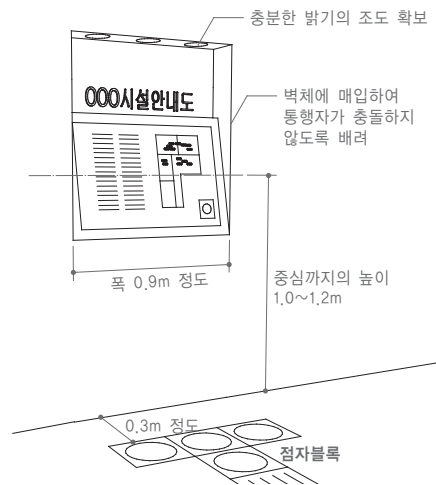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립형의 경우



▲ 권장 : 점자안내판 및 촉지도식안내판의 설치방법

• 벽 매입형의 경우



▲ 촉지도식안내판의 설치 예

부록

1. 참여자 교육프로그램

2.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부록

1. 참여자 교육프로그램

1.1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목적

- 교육프로그램은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취지에 따라 다양한 대상과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접근과 제도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보급시켜야 한다. 일반인은 연령별(성인, 청소년/어린이), 전문가는 디자인 분야와 행정전문가로 분류하며 수준별, 시수별 교육안을 제공하려고 한다.
- 본 과업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파일럿 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중간 결과로서 워크숍 실행과 보급을 위한 워크숍(안)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I

- 대상 : 디자인/건축 전문가/공공미술 작가 외
- 내용 : 실질적인 제작을 하는 전문가들이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정보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장애, 고령화, 연령, 다문화 등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개념 도입)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II

- 대상 : 행정 전문가
- 내용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 이해와 비평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I

예시

전문가를 위한 스튜디오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과 건축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 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부터 개념을 통해 실재를 만드는 디자인까지 실행할 수 있는 스튜디오 워크숍에 참가함으로써 올바른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워크숍 진행과정 및 내용 : 워크숍 참가자는 스튜디오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듣고 공공 공간에 필요한 시설, 건축물 등의 요소를 찾는 시트작성을 한다. 그리고 경기도 내의 지정된 현장으로 가서 시트에 평가 및 기록을 하면서 현장을 맵핑한다. 맵핑을 바탕으로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해 보고, 전문가 비평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실무를 경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 장소 : 디자인 스튜디오 및 현장
- 교육시간 : 총 14시간
- 참가자 : 건축·디자인 전문가 등 전문가 집단
- 비평 및 지도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행정전문가 참여)

| 진행단계 | 내용 |
|-------------------|---|
| 1. 현장탐색 | - 현장비평 - 실측 * 준비물: 카메라, 줄자 등 기록과 실측 관련 장비 ① 선택한 역과 주변을 사용자 입장에서 탐색 ② 사진 및 기록을 통하여 전체 맵핑 ③ 불편요소가 있어 보이는 요소(시설)를 3개 이상 선택 ④ 선택한 요소를 실측하여 자세히 기록 |
| 2. 디자인 요소 추출 및 분석 | - 결핍된 요소 분석 - 필요한 기능 첨부 ① 선택한 요소의 불편요소나 사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을 글로 기록 ② 부족한 디자인의 원인 분석 ③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인터뷰 진행 ④ 본래의 기능이나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의견 첨부 |
| 3. 디자인 실행 (사례 조사) | - 디자인 실행 - 우수한 디자인 사례 찾기 ①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통합한 디자인 실행 요소의 정리 ② 디자인 실행요소를 바탕으로 디자인 실행 ③ 국내외 우수한 디자인 사례를 통해 디자인 보완 |
| 4. 프로세스 및 디자인 비평 | - 전체 프로세스와 디자인 비평 ① 시트부터 디자인결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비평 ②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 |

일반인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 대상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 내용 : 배려와 존중이라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취지와 개념을 습득하고 공공 공간에 마련된 자신의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적절한 사용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장 실습 프로그램으로 공공시설 이용하는 방법과 체험을 제공한다.
- 교과 및 교구 마련하여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공하고 확산한다.

성인 일반인 참여 프로그램

- 대상 : 일반 성인
- 내용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취지와 자신의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개선하려는 기본적인 태도를 고취하고 기본교육으로서 전문가 프로그램 이전의 선행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예시

어린이를 위한 현장체험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현장체험을 통한 공공시설의 사용방법을 경험하면서 공공 공간에 마련된 자신의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취지와 개념인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함양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인성 및 도덕교육이 동시에 가능하다.
- 워크숍 진행과정 및 내용 : 교실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안내한 후 팀을 구성하고 참가자는 눈가리개를 착용하거나 목발 등을 사용하여 친구의 안내와 도움으로 학교 주변 시설이나 체험실을 탐방한다. 탐방 중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자신의 체험을 발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배려와 존중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 장소 : 학교 주변 시설 및 체험용 현장
- 교육시간 : 총 2시간
- 참가자 : 초등학교 전 학년 가능
- 비평 및 지도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 진행단계 | 내용 |
|------------|--|
| 1. 기본개념 학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 - 팀 구성 및 역할 분배 • 준비물: 안대, 목발, 모래주머니 등 불편요소를 위한 장비 ① 전문가가 연령에 알맞은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설명 ② 참가자들은 팀을 구성하여 역할을 분배 ③ 팀별은 미션 배분 ④ 안전 수칙 및 프로그램 안내 |
| 2. 현장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체험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실을 만들어 이용 가능 ① 지정된 현장에 가서 미션을 수행 ② 안전 수칙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 ③ 연령에 맞추어 교사가 직접 지도 혹은 관리 |
| 3. 발표 및 토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 후 과제로 학년에 따라 디자인을 하거나 에세이를 쓰도록 지도 ① 수행한 체험에 대한 팀별 발표 ②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의견 발표 및 토론 |

1.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파일럿 워크숍

개요

- 유니버설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파일럿 과정으로 워크숍을 개발하고 실행을 통해서 홍보, 인재육성,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본 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고하고 이후 가이드 북 및 강좌 등에 활용할 것이다.

목적

- 경기도의 공동체적 삶과 문화와 보편적인 복지를 반영하는 올바른 개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워크숍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 교육적이고 흥미롭게 구성된 워크숍 통해 참여자는 경기도의 일상에서 보이는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를 스스로 발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비평과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문가 워크숍까지 다양한 수준을 경험을 제공한다.
- 나아가 도민, 행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의

- 유니버설디자인은 실제의 공간 체험과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경기도를 실제 대상으로하고 경기도민을 위해 설계 향유되어야 한다.
- 성공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정책 및 사업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전문가, 일반인, 어린이 등의 다양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통한 확산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즐겁고 쾌적한 경기도 하루나들이 워크숍

워크숍 개요

- 만약 적절한 공공디자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하루 종일 필요한 물건을 넣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야만 한다는 워크숍, '즐겁고 쾌적한 경기도 하루나들이'를 기획하였다.
- 무거운 가방은 적절한 공공서비스에 올바른 유니버설 개념의 부재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지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도책, 휴식공간이 마땅치 않다면 의자 등을 휴대 해야만 한다.
- 즉 장애나 일상적인 어려움의 요소가 없는 사람이라도 짐처럼 버거운 요소를 들고 공공장소를 탐험함으로써 올바른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를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워크숍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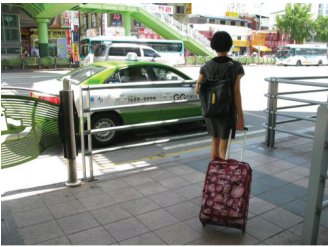
- 워크숍 내용 : 워크숍 참가자는 수원역에서 물건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들고 경기도 도청을 찾아가 진행경로에 마련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미션을 수행했다. 실외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공공시설과 건축이 기록된 간단한 시트에 기록을 하며, 시설을 파악하고 도청 회의실에서 공공디자인의 장단점과 새로운 제안을 하는 토론으로 마무리 하였다.
- 장소 : 수원역 역사 내부와 주변에서 경기도청 회의실
- 일시: 2010년 9월 1일 수요일 11시 ~ 14시(약 3시간)
- 참가자
 - 건축·디자인 전문가, 문화예술(시각장애인교육, 다문화 및 국제예술교류) 전문가
 - 경기도 공공디자인 관련 행정전문가
 -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워크숍 결과

사례A

- 미션 : 안대를 착용하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수원역에서 도청까지 시각장애인 안내보도로만 이용하여 이동하기.

| 경로 | 사진 | 평가 |
|------------------|---|--|
| 수원역 정문으로 이동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색을 따라가다 보니까 창피했다는 말은 노란색으로 해놓아서 창피한 것 같다. -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노란색으로 해야 하느냐는 의문 - 노랑은 색약에게는 구분이 가능한 색이므로 디자인을 생각하면 안어울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 주변과 어울리고 매력있으면서 시각장애인 등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바닥에 맞춰서 은색에 불륨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 점자 안내판 확인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의 점자는 많은 내용을 작은 공간안에 담고 있어서 가독률이 떨어진다. |
| 지하철 표 자동발매기 사용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블록이 매표소 앞에는 없고 반환기 앞에서 끊어져 있다. - 매표소는 음성보다는 장애인용 버튼이 있어서 음성 안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도움 없이는 터치식 매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

| 경로 | 사진 | 평가 |
|---------------|---|---|
| 실내 화장실 사용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가방이 못 들어간다. (가방은 사람도 의미) - 가방,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쓰기가 불편하다. |
| 공중전화 사용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기 앞까지는 블록이 안되어 있다. - 공중전화 500원 짜리라고 써 있는데 안들어 간다. - 정보 전달이 안되고 있다. - 제품에도 유다가 되어야 한다. |
| 2층으로 이동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스컬레이터 앞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 현재의 블록은 설치유무 검사를 위한, 표시 정도의 시설만 되어 있다. - 에스컬레이터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 유모차는 에스컬레이터 탑승이 금지되어 있어 블라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원역은 블라드가 없다. - 수원역은 장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다. |
| 정문으로 나오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하지만 중간에 끊기는 곳이 많다. - 자전거도로가 중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하다. - 여행용 가방에 있는 바퀴는 평탄하고 고급스런 바닥재에서는 잘 굴러가지만 거친곳에서는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 - 일반 도로에서는 여행용 가방을 끌고다니기 매우 불편하다. |
| 도청까지 택시로 이동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정류장을 잘못 찾아갔다. - 노란블럭을 따라가면 바로 앞의 택시정류장이 아닌 좀 더 앞으로 가서 탈 수 밖에 없다. |





종합

- 시각장애인에게 ‘눈’은 시각 이외의 감각기관이다. 시각장애인은 촉각, 청각, 후각을 각각 때로는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정보를 인지하고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나 시각으로 정보를 인지하는 것에 비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인지 속도는 더디고 인지의 스케일도 한정된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디자인 덕목은 규칙성과 지속성, 그리고 자율성이다. 촉각이나 청각 정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유지되는 디자인이야말로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공장소에 서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준다. 도움을 받는다는 인상 없이,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시각장애인의 개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디자인은 더 많은 시각장애인을 공공장소에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
- 이러한 수원역의 증상들은 일반인을 위해 설계된 기존 디자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을 덧붙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덧붙이는 디자인이 아니다. 설계 단계에서 모든 사람을 고려하는 디자인이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소수를 위한 디자인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소수를 위한 디자인이 결국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된다는 데에 있다. 즉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디자인은 시각장애인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은 결국 모두에게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례B

- 미션 : 외국인 입장에서 수원역에서 도청까지 영어 안내판, 안내 표시와 지도를 보면서 이동하기

| 경로 | 사진 | 코멘트 |
|-------------------|---|--|
| 수원역 지하철 내부에서 이동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판이 한글로 되어 있고 국가 표시가 있지만 인식하기 힘들다. - 전반적으로 해외는 영어밖에 안보이는데 우리는 영어 표기가 작아서 중요 내용이 숨어 있다. - 통로들이 어디로 이어져있는지 확인 불가능 하다. - 진행방향들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은 전혀 알 수 없다. |
| 엘리베이터 사용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한 안내문조차 전부 한글로만 되어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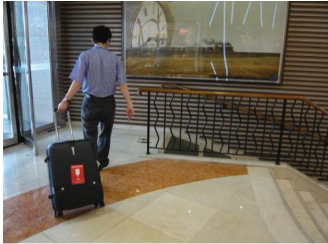



| 경로 | 사진 | 평가 |
|------------------------|---|---|
| 기차 매표소 기차시간 확인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차권 발권정보는 전부 한글 뿐이다. - 차표발매기 쪽에 영문과 한글이 있어서 봤지만 '무궁화호', '누리호' 라는 정보 밖에 없었다. - 가격차이는 알겠지만 중요한 정보는 알 수 없었다. - 시각표가 되어있지만 경우선 호남선은 영문표기가 되어있지만 서울가는 방향은 영어표기가 없다. - 전반적으로 영문과 한자 표기가 같이 되고 있는데 한자표기가 되어 있는것과 없는 것이 있어 안내가 일괄적이지 못하다. |
| 정문으로 나가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는 곳은 명확하게 잘 인식되고 있다. - 나가는곳에 안내소 표시가 있지만 한글로만 되어 있다. - 외부 안내판- 지도 안에서도 외국어 표기가 들쭉날쭉 하다. - 지도 하나에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하는데 한글과 영어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판독이 어렵다. |
| 잠시 앉아 휴식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을 곳이 없어서 찾으러 가는 길에 교통센터가 있는데 외국어 표기가 없어 무슨 건물인지 알 수 없다. - 앉을 곳이 없어서 조형물의 턱에 앉아서 쉬었다. - 광장에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앉을 곳이 없어서 앉기는 하지만 바닥이기 때문에 마음이 꺼려진다. |
| 택시로 이동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 타러 가는 곳에 보면 모범택시도 안내가 한글로만 되어 있다. - 표지판을 크게 한글만 쓰는 것 보다는 외국어도 같이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일반택시 타는곳을 못찾아 헤맸다. - 결국은 택시를 타는 곳에서 여러번 물어보게 되고 타는 것이 힘들다. |

종합

- 공공공간은 자본과 힘의 장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구상한다는 것은 이 힘의 장력을 평등하게 만드는 일이고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소수자도 공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사례C

- 미션 : 무거운 가방을 끌고 수원역에서 도청까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만을 이용하여 이동하기

| 경로 | 사진 | 평가 |
|-------------------|---|---|
| 수원역 앞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해서 엘리베이터를 찾았지만 못 찾았다. - 일반사람도 엘리베이터를 찾기 힘들다. - 표지가 없다. - 백화점으로 들어왔는데 경사로가 급하게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를 찾기위해 백화점을 한참 헤맸다. - 2층으로 가면 역으로 가는건지 써있지 않아서 헤맸다. |
|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노선 확인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노선안내도를 보기 어려워 버스를 타러 가기가 힘들다. - 버스정거장으로 가는 길에 블록이 시설물로 인해 끊겨 있다. - 바닥포장도 짐으로 소리가 심하고 흔들린다. - 의자가 디자인이 되었지만 앉고 싶지 않다. - 알파벳(버스 정류장의 번호)이 쓰여있지만 설명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
| 쓰레기통에 음료수 병 버리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통이 지저분해 사용하기 꺼려진다. |
| 실외화장실 이용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역 양쪽 화장실이 있지만 통행로 뒤에 숨어있고 안내표지판도 없어 찾기가 매우 어렵다. |

| 경로 | 사진 | 평가 |
|----------|---|--|
| 택시로 이동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퀴 끄는 것이 편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 택시승차장은 짐든 사람은 이동하기 힘들고 택시 승차장도 물어봐야 하고 길 한복판으로 걸어가야 택시를 타는 것이 가능하다. - 수원역 앞에 도로를 활보하는 사람이 많다. |
| 이동하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도 경사로, 엘리베이터 위치가 불편함 엘리베이터 표시는 있지만 짐 들고 올라가기까지가 힘들다. |

종합

- 우선 각각의 시설별 설계 또는 조성시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선 유니버설디자인을 제도화하고 이를 공공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는 한편, 공공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안내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여 어느 누구나 어느 장소에 가더라도 일관성있는 정보가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시설의 다른 시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치 및 시설설계 가이드라인 등 공공공간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설계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록

2. 국외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2.1 하마마쓰의 유니버설디자인

개요

- 일본 시즈오카현은 일본 지자체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곳이다. 여기서는 시즈오카현에 있는 하마마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정책 및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공공디자인 사례를 살펴본다.

2.2 하마마쓰시 유니버설디자인 계획¹⁾

기본이념

- 배려의 마음이 묶는 상냥한 거리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살기 쉬운 자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 뿐 만이 아니고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란 연령, 성별, 신체 능력, 거주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하마마쓰시에 통근·통학하는 사람이나 관광 등으로 방문하는 사람, 인터넷을 이용하고 마을의 홈 페이지에 접근하는 사람 등도 대상이 된다.

시민이 자유롭게 사회에 참가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고, 방문객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사람 만들기나 환경 만들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배려의 마음이 연결하는 상냥한 마을’을 목표로 한다.

기본목표

- 유니버설디자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람 만들기과 환경 만들기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동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무장애화와는 달리 대상자의 폭이 넓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제품의 제작자나 서비스 담당자의 의식에 의해 유니버설디자인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 본 계획에서는 환경 만들기를 담당하는 사람 만들기에 관한 목표, 자립 사회에 필요한 환경 만들기에 관한 목표를 계획의 기본 목표로 세우고 유니버설디자인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 상냥한 사람 만들기-모두 알고 있는 U·優디자인
 -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두근두근 모이는 U·優디자인
 - 걷고 싶어지는 안심·안전한 마을 만들기-확실히 갈 수 있는 U·優디자인
 - 이용하고 싶어지는 시설 만들기-살아 생생 U·優디자인
 - 사용해 보고 싶어지는 제품 만들기-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U·優디자인

1) 출처 www.city.hamamatsu.shizuoka.jp/lifeindex/study/universal/uuplan/uuplan_0.htm

기본방침

• 상냥한 사람 만들기의 기본방침

1. 시민의 마음에 유니버설디자인을!
2. 지역 안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진행시키는 인재들!

상냥한 사람 만들기에서는 서로의 개성을 이해하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나 지역 등의 친밀한 장면 안에서 정보 제공이나 학습, 만남 활동 등을 진행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 마음속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각인시킨다. 또, 실제의 생활 안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진행시키는 인재나 행정과 제휴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을 진행시키는 시민의 리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만들기를 실시하고, 지역 안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진행시키는 인재를 육성한다.

지금까지는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에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을 설치하거나 교통기관에 노약자 보호석을 마련하거나 하는 등의 무장애 대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상인의 약간의 부주의에 의해서 장애인의 사회참가를 방해할 수 있기도 했다. 지금부터는 상냥한 사람 만들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사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의 기본방침

1. 하마마쓰다운 시민참가를 지원하는 구조를!
2. 모두 정보를 공유화할 수 있는 환경을!
3. 모두가 참가하고 싶어지는 이벤트를!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서는 지역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서 자원봉사나 지역 활동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촉구하는 배려의 유니버설디자인 운동을 진행시켜 하마마쓰다운 시민참가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든다. 또, 시민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모두 정보를 공유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 모두가 참가하고 싶어지는 이벤트를 실속있게 진행한다.

환경 정비로 모든 도로나 교통 시설, 건물 등을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에 의해서 고령자나 외국인, 장애인 등의 사회참가(자립)를 돕는 지원 환경을 창출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자립이 가능하게 된다.

• 걷고 싶어지는 안심·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기본방침

1. 모두가 거리를 걷고 싶어지는 공간을!
2. 모두가 이용하고 싶어지는 공공 교통기관을!
3. 헤매지 않는 안내·사인을!

걷고 싶어지는 안심·안전한 마을 만들기에서는 매력있는 보행자 공간이나 만남의 거점이 되는 장치 만들기, 보행자 우선의 도로 정비를 진행시켜 모두가 거리를 걷고 싶어지는 공간을

만든다. 또, 역을 정비하고 모두가 이용하고 싶어지는 공공교통기관을 구축하고 알기 쉽고 헤매지 않는 안내·사인으로 정비해서 공공공간을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장으로 연출한다. 걷고 싶어지는 안심·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정비하는 것에 의해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만날 기회를 만들고, 서로 교류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거리를 구축한다.

- 이용하고 싶어지는 시설 만들기의 기본방침

1. 이용하기 쉬운 시설을(공공 공익 시설 등)!
2.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공원·스포츠 시설, 상업·관광 시설 등)!
3. 쾌적한 직장·기분의 좋은 주택을!

이용하고 싶어지는 시설 만들기에서는 이용자의 참가에 의해 공공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화를 진행시켜 이용하기 쉬운 시설이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한다. 또,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배려한 시설 만들기 참여시켜 쾌적한 직장·기분의 좋은 주택을 유도한다.

고령자, 신체장애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법률(하트빌딩법) 나 고령자, 신체장애인의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교통 무장애법), 시즈오카현 복지 마을 만들기 조례 등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는 무장애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시행 이전에 건축된 것이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의 배려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설도 있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의 건설·개선 정비 메뉴얼을 작성하고 이것을 모델로, 민간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화를 유도한다.

- 사용해 보고 싶어지는 것 만들기의 기본방침

1. 하마마쓰에서 세계로 펼쳐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어지는 것 만들기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의 시점에 서서 제품 만들기를 시민이나 민간 사업자, 대학 등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하마마쓰에서 세계로 수출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제품을 보급한다.

타자기와 같이 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정상인에게도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것이 되는 사례는 많이 있으므로 사용해 보고 싶어지는 것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2.3 하마마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하마마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2002년 12월 17일
하마마쓰시 조례 제 100호

목차

전문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제7조-제11조)

제3장 유니버설디자인에 배려한 교육의 추진(제12조-제14조)

제4장 모든 사람이 살기 쉬운 생활환경의 정비(제15조-제17조)

제5장 유니버설디자인 심의회(제18조-제21조)

제6장 잡칙(제22조)

부칙

모든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어 안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이 생기는 것은, 우리 하마마쓰시민의 소원이다.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장벽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차별되는 일 없이, 스스로의 의사로 자유롭게 행동해,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람 만들거나 환경 만들기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사람 한사람이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 사업자 및 시가 협동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배려의 마음이 묶는 상냥한 거리를 실현해, 이것을 서계에 넓은, 후세에 계승해 가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그 기본이념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 사업자 및 시의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모든 사람이 안심,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쌓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신체 능력 국적 등 사람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배려해 마음 풍부한 생활 만들기를 실시해 가려고 하는 생각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서로 존중하고 또한 시민, 사업자 및 시가 협동하고, 배려의 마음이 묶는 상냥한 거리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의 역할)

제4조 시민은, 스스로가 마을 만들기의 주체라는 인식하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모두 서로 지지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민은,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가 서로 안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사람 한사람이 배려의 마음을 가져, 행동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시민은, 사업자 및 시와 제휴해, 시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사업자의 역할)

제5조 사업자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일원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에의 이해가 깊어져 주체적이고 한편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자는, 연령, 성별, 신체 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시민이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의 확보 및 그 고용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는, 시민 및 시와 제휴해, 시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의 역할)

제6조 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책정 및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시민 및 사업자와의 협동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한다.
3. 시는, 시책의 추진에 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계획의 책정)

제7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인 동시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책정한다.

2. 시장은, 전항의 계획을 책정 또는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시민 및 하마마쓰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동시에, 해당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책정 또는 변경했을 때는 신속하게 이것을 공표해야한다.

(청내 체제)

제8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에 대해 종합 조정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을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한 청내 체제를 확립하는 것으로 한다.

(학술 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 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관해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과 협력하고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현 및 다른 시읍면과의 제휴 등)

제10조 시는, 국가, 현 및 다른 시읍면과 제휴 및 협력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임하는 것으로 한다.

(홍보 및 정보 제공)

제11조 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관해, 시민 및 사업자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홍보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유니버설디자인에 배려한 교육의 추진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대처)

제12조 학교 등의 장소에 있어 행해지는 교육(이하「학교 교육」이라고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니버설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 것을 인식해, 개개의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배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서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사회 교육에 있어서의 대처)

제13조 가정 및 직장 그 외 사회에 있어 행해지는 교육(이하「사회 교육」이라고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생애에 걸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배려의 마음을 기르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배려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는, 사회 교육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서로 서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인재육성 및 파견)

제14조 시는, 시민 및 사업자와 제휴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지는 사람(이하「전문가 등」이라고 한다.)을 육성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추진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 전문가 등을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모든 사람이 살기 쉬운 생활환경의 정비

(공공시설 등의 정비)

제15조 시는,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및 이것들에 부대하는 공작물(이하「공공시설 등」이라고 한다.)의 신축 등(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의 변경(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공공시설 등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안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근거해 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는, 공공시설 등의 신축 등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유니버설디자인의 관점으로부터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공공 교통 사업자 등의 노력)

제16조 일반 여객의 운송을 위한 철도,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이하「공공차량 등」이라고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이하「공공교통사업자 등」이라고 한다.)은 그 운영에 필요한, 한편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설 및 공작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심, 안전하고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근거하는 정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공공 교통 사업자 등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근거해 공공차량 등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설의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의 노력)

제17조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사람(전 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신축 등(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의 변경을 말한다.)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안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근거하는 정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상품의 제조 등(제조, 가공 및 설계를 말한다.)을 하는 사람은 해당 상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심,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근거하는 제조 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안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근거하여 제공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유니버설디자인 심의회

(설치)

제18조 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 심의하기 위해(때문에), 지방자치법(1974년 법률 제67호) 제138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하마마쓰시 유니버설디자인 심의회(이하「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조직)

제19조 심의회는, 위원16인 이내에서 조직한다.

2.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

(2) 사업자

(3) 지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4)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임기)

제20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의 기간으로 한다.

(회장 및 부회장)

제21조 심의회에 회장 및 부회장을 한사람씩 둔다.

2. 회장은, 위원이 서로 선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4. 회장은, 심의회를 대표해, 회의 사무를 정리해 이것을 관리한다.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해, 회장이 그 직무를 붙이지 않을 때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장 잡칙

(위임)

제22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4 하마마쓰시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개요

- 일본 시즈오카현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를 실행해 오고 있다. 무장애화에서 시작된 시즈오카현의 하마마쓰시의 유니버설디자인은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하마마쓰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디자인사례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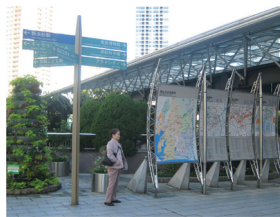
하마마쓰시의 위치

- 시즈오카는 일본의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마마쓰시는 시즈오카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디자인 사례

• 하마마쓰역



역전의 종합 안내판 처음으로 하마마쓰에 온 사람도 알기 쉬운 안내판이 있다.



역내의 안내판 시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음성이나오는 안내판이 있다.



폭이 넓은 개찰구 휠체어나 큰 짐을 든 사람이 지나가기 쉬운 넓은 개찰구가 있다.



에스컬레이터와 계단 옆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어 선택해 이동할 수 있다.



경사로와 계단 경사로는 휠체어 뿐만 아니라 유모차 등의 이동에도 편리하다.



엘리베이터 안이 보이는 엘리베이터는 안심하고 탈 수 있다.

• 버스터미널



역과 공공교통기관의 연계
공공교통의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
를 극대화하고 있다.



안내 싸인
색에 의해서 행선지를 알기 쉽게 나
타낸 안내 싸인이다.



버스승강장
역과 연계되어 계획된 버스승강장은
버스의 흐름은 물론 우천시 탑승객
보호도 고려하고 있다.

• 아쿠토시티



움직이는 보도
움직이는 보도는, 긴 거리에서도 편
하게 이동할 수 있다.



휠체어용 공중전화
넓은 공중전화 박스는 휠체어도 이용
할 수 있다.



계단과 경사로
하늘정원으로 가는 길은 계단과 함께
경사도가 계획되어있다.

• 아쿠토 거리



걷고싶은 가로조성
넓은 도로를 공원화하여 걷고 싶은
가로로 조성. 계단, EV, 에스컬레이
터 등의 다양한 이동방법을 제시하
고 있다.



패밀리 화장실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패밀리
화장실이 있다.



조명장치가 된 횡단보도
밤길의 안전을 위해 표지아래 횡단보
도를 밝히는 조명이 있다.

• 지역의 가로



가로의 벤치
조금 쉬고 싶을 때에 앉기 쉬운 UD
벤치가 있다.



가로의 안내 싸인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적재적소에서
헤매지 않게 유도한다.



단차가 없는 UD블록
시각장애인이 차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블록이다.



음향표시신호기
횡단지점에서 들을 수 있게 소리로
파란신호를 알려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게 한다.



버스
휠체어도 탈 수 있는 초저상 버스는
고령자에게도 타기 쉬운 버스이다.



휴지통
지하도의 휴지통은 홈을 파서 설치
하여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
고 있다.

종합

- 하마마쓰시는 일본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시즈오카현(한국의 도(都))의 지자체로 시(市) 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던 사업들을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실현하기 위해 전환하였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함께 생활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시작으로 물리적 환경은 물론,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하였고 지금도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7
- 건강도시 대구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07
- 도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8
- 고령자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규격 개발자 지침, 지식경제부, 2007
- 모두가 평생을 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충북산업디자인팀, 2007
-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가이드라인 설정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8
- 서울시 공공건축물·공공공간·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2009
-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대전광역시, 2008
-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시, 2010
-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건설교통부, 2007
-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교육인적자원부, 2006
- 화성시 공공시설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화성시, 2008
- 都立建築物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導入ガイドライン, 東京都, 2007
-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の理念に基づく福祉のまちづくりの推進に向けて, 東京都, 2007
- 観光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化 手引き集, 国土交通省総合政策局, 2008
- 知的障害者、精神障害者、発達障害者に対応したバリアフリー化施策に係る調査研究, 国土交通省, 2008
- 人にやさしいまちづくり条例, 福島県, 2007
-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政策大綱, 国土交通省, 2005
- 知的障害、発達障害、精神障害のある人のための施設整備のポイント, 2006
- 福祉のまちづくりをすすめるため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ガイドライン, 東京都, 2005
- まちづくり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ガイドライン, 岩手県, 2006
- 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建築ガイドライン, 熊本県, 2003

논문자료

- 서울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의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분석, 민병아·이수진·이연숙 저, 2009
- 일본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의 유니버설디자인 수법과 평가, 윤영삼·강병근 저, 2009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지하상업공간에 관한 연구, 이효창·하미경 저, 2007
- 유니버설디자인 원리에 따른 사인시스템(sign system) 평가 연구, 우진희·하미경 저, 2002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시설 현황조사, 하미경·박남희 저, 2001
-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기존시설물 평가연구, 하미경·제해성 저, 1997
- 지역문화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평가연구, 오찬옥 저, 2010
-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선행 연구 동향 분석, 이용민·권오정 저, 2009
- 공공도서관 실내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에 관한 연구, 이효창·하미경 저, 2007
-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의 업무시설 환경평가 연구, 하미경·구아현 저, 2000
- 지체장애인의 관점에서 본 소규모 아파트공간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오찬옥 저, 2000
- 노인요양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민정·최상현 저, 2009

| | | |
|--------------------|-------------|-----------------------|
| 발행처 경기도 | 책임연구원 최령 |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 |
| 발행부서 디자인총괄추진단 | 참여연구진 변혜령 |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수석연구원 |
| 발행일 2011. 4 | 김선태 |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책임연구원 |
| 경기도 채민규 디자인특별보좌관 | 이준민 |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책임연구원 |
|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 | 김지연 | 사단법인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원 |
| 채완석 공공디자인담당 팀장 | 김태경 | Space Da 대표 |
| 신용복 공공디자인담당 | 이울화 | 건국대학교 박사과정 |
| | 양승화 | 건국대학교 석사과정 |
| | 김세린 | 건국대학교 석사과정 |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